

P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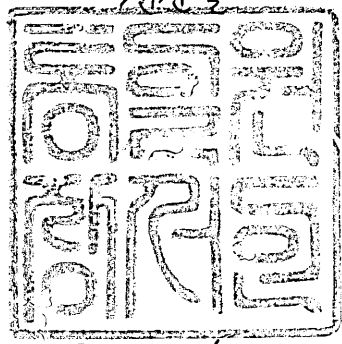
340.911
6912
1992

民主統一論

(統一問題)

(3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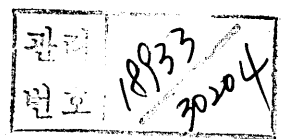
전사필



325
22 ch

30204

통일연수원



차 례

I. 南北韓 統一政策

1. 序 言5
2. 「南北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와 「韓半島의 非核化에 관한 共同宣言」:
和解協力の 里程碑 8
3. 第6共和國의 統一政策基調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28
4. 北韓의 統一戰略基調와 「高麗民主聯邦共和國
創立方案」59
5. 結 言104

II. 北韓의 對南革命戰略

1. 序 言109
2. 共產主義 戰略·戰術의 一般運用原理111
3. 北韓의 對南革命戰略129
4. 北韓의 對南革命戰術141
5. 結 言169

III. 南北對話

1. 序 言175
2. 南北韓의 基本立場177
3. 南北對話의 展開183
4. 主要爭點分析210
5. 結 言224

IV. 南北交流協力

1. 序 言229
2. 南北交流協力の 制度231
3. 南北交流協力の 現況248
4. 南北交流協力 推進計劃254
5. 結 言257

V. 周邊情勢와 統一環境

1. 周邊情勢에 대한 問題認識263
2. 國際情勢 概觀265
3. 周邊 主要國의 政策方向과 韓半島271
4. 周邊情勢의 急變과 統一環境321

I (南北韓 統一政策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중심으로

梁 榮 植(統一研修院 教授, 政博)

1. 序 言	5
2. 「南北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관한 合 意書」와 「韓半島의 非核化에 관한 共同宣言」: 和解協力 의 里程碑	8
가. 「南北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	9
나. 「韓半島의 非核化에 관한 共同宣言」	18
다. 「基本合意書」·「非核化 共同宣言」以後의 南北韓關 係 展望	23
3. 第6共和國의 統一政策基調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28
가. 統一政策의 基調	28
나. 「民族自尊과 統一繁榮을 위한 特別宣言」	34
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37
4. 北韓의 統一戰略基調와 「高麗民主聯邦共和國 創立方案」	59
가. 統一戰略의 基調	59
나. 「高麗民主聯邦共和國 創立方案」 分析	62
5. 結 言	104

1. 序言

“1992년 壬申年은 한민족공동체 건설의 偉業을 실현하는 元年이 될 것이다. 이제 南과 北은 통일을 향하여 함께 전진해야 한다.”¹⁾

이는 대통령의 “새해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의 한 대목이다. ‘한민족공동체 건설의 元年’이라는 政府의 표어 설정은 가시권 내에 한걸음 성큼 들어선 平和와 統一의 현주소를 읽게 해 준다.

제6공화국 정부가 한민족공동체 건설의 元年을 선포한 데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다.

남북한은 1991년 9월 유엔동시가입에 이어 같은해 12월 第5次 南北高位級會談에서 「南北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이하 基本合意書라 함.)를 채택하고 또 「韓半島의 非核化에 관한 共同宣言」에 합의했다. 이로써 南과 北은 對決時代의 終焉을 告하고 공식적으로 和解協力時代를 開幕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남북한 화해협력시대의 개막은 地球村을 품미하고 있는 脫冷戰・脫共產・脫分斷이라는 大潮流의 波紋에 힘입은 바 크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韓民族 스스로 韓半島冷戰의 壁을 헐기 시작함으로써 民族親和力을 蘇生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 및해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政治奇蹟이라 할 만한 것이다.

장차 南北韓政府當局이 민족구성원 모두가 바라는 대로 純粹性

1) ① 盧泰愚 대통령, “새해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新年辭),(中央日報,1992. 1. 1. 字)

② 정부는 1992년을 ‘한민족공동체건설 偉業의 元年’으로 정하고 南北頂上會談을 早期에 실현하는 한편, 늦어도 상반기안에 軍事當局者間 直通電話를 開設하고 軍事力均衡을 위한 南北協商에 착수키로 했다.(統一基盤造成을 위한 南北關係發展計劃 靑瓦臺報告<統一院・外務部・國防部,1992. 1. 21>), 朝鮮日報(1992. 1. 21.字)

과 眞正性을 회복·발휘하고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해 나감으로써, 今世紀가 지나기 전에 한민족의 政治共同體까지도 이룩할 수 있다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결코 感傷論이나 理想論으로 罵倒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民族自決의 自主原則과 主權尊重의 原則에 입각하여 민족내부의 和解協力體制를 확립하게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장차 南北間에 계속 진행될 南北協商으로 필경 過渡統一體制의 창설과, 統一民主共和國이라는 완성형 한민족통일국가 수립까지도 기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지금온 온 겨레의 평화와 통일의 염원을 담은 基本合意書라는 커다란 소쿠리²⁾를 정부당국이 짜냈으니, 민족구성원 모두가 民族親和力을 용출시켜 民族和合, 民主統一을 앞당기기 위하여 가일층 맘을 쏟아 넣어야 할 때이다.

이제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사항이 발효되었고, 잇달아 남북한정부의 最高位級 當局者들이 國民과 民族全體의 뜻과 의사를 받들어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구체적 統一推進方案을 협의하게 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은 사실상 過渡統一體制 또는 政治的 統一을 완성하기 위한 통일청사진을 마련하는 결정적인 轉機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비유컨대, 정상회담은 ‘平和統一의 이정표’와 같은 것으로 統一의 關門이 될 것이다.

요컨대, 基本合意書 실천시대의 첫해인 1992년은 한민족공동체 건설의 元年으로서 남북한간에 그 어느 때보다도 생산적인 對話協商이 전개될 것이며, 韓國의 주도하에 休戰體制의 대체문제와 南北聯合類型의 과도통일체제 형성문제를 비롯하여 總選舉를 통한 統一方法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통일방안들이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1992년은 “韓半島 平和構築을

2) 趙廷來, “南北合意書 署名을 보고” (中央日報, 1991. 12. 16. 字)

위한 南北韓間 本格的 協商의 元年³⁾으로도 기록될 것이다.

대내적으로도 1992년은 「4·19」직후와 「6·29」직후에 나타난 이른바 통일논의의 黃金時代에 이어 ‘화해협력의 黃金時代’로 기록될 공산이 크다. 「4·19」시대의 自主的 平和統一論과 「6·29」직후의 民衆統一論을 중심으로 한 통일논의가 주로 官邊統一論에 대한 挑戰의 형태로, 또는 政治鬭爭의 차원으로 飛火됨으로써 國論統一에 逆機能을 초래한 것과는 달리, 기본합의서 이후시대의 남북통일론은 주로 南北交流協力 실시문제, 정상회담문제, 과도 통일체제형성문제 등과 같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중심으로各界의 의견이 폭넓게 開陳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래의 黑白論理式 통일논의를 극복, 지양한 균형감있고 발전적인 ‘統一對話의 廣場’이 정부를 비롯한 국회, 학계, 통일유관 사회단체를 통해 계속 마련될 것이다.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시권안으로 진입한 和解協力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관한 基本設計圖의 내용에 전국민적·전민족적 관심이 쏠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統一政策과 方案은 무엇인가? 그리고 북한의 政策路線과 方案은 무엇이며, 적화통일의 革命戰略은 계속 불변인가? 그리고 과연 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幕이 오른 남북화해협력시대가 과도통일단계를 거쳐 1民族, 1國家, 1體制, 1政府의 완전통일단계로 순탄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 한민족정치공동체가 실현되는 ‘통일민주공화국’ 수립의 元年은 과연 언제쯤이나 될 것인가?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명쾌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南과 北이 추진하고 있는 統一政策·方案들을 놓고 비교·분석하는 일부터 시도하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한민족구성원 모두를 위해 가장

3) 金國振, “1992년도 국제정세전망—동북아 및 한반도정세를 중심으로”, 「주요국제문제 분석(92-01)」(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 1992. 1. 8), p. 22.

합리적이고 가능한 것인가를 自主의 原則, 平和의 原則, 民族大團結의 精神에 입각한 民主의 原則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평가해 보고, 역사적 통찰력을 발휘하여 民族統一의 장래를 전망하는 슬기를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本 教材는 주로 남북한정부의 統一政策基調와 統一方案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으며, 아울러 分斷 47年史에 있어 가장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事件으로 평가받고 있는 2大 合意文書의 의의와 내용 등을, 주로 정부의 입장과 관련하여 論述해 보고자 한다.⁴⁾

2. 「南北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와 「韓半島의 非核化에 관한 共同宣言」: 和解協力の 里程碑

냉전의 마지막 ‘火藥庫’ 한반도에 ‘平和의 봄’을 예고하는 남북한 간의 기본합의서가 1991년 12월 13일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鄭元植 국무총리와 延亨默 정무원총리에 의해 채택, 서명되었다.

또한 남북한은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는 가운데 舊臘 31일에 「韓半島의 非核化에 관한 共同宣言」을 採擇, 核問題를 타결지음으로써 南北關係 發展史에 또 하나의 획기적 진전을 이룩하였다.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은 統一論議의 방식 및 절차를 둘러싼 그

4) 統一政策을 論함에 있어서 포함되어야 할 問題들은 상당히 많다. 예컨대, ‘分斷의 原因과 責任’, ‘統一의 當爲性和 歷史的意義’, ‘統一問題의 本質과 特性’, ‘南北韓統一政策의 變遷過程’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本 教材에서는 수록 範圍를 統一過程과 統一實現方案에 焦點을 맞춰 記述했다.

포괄적인 분석내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논문을 참고할 것.

金旻泰(통일연수원 교수), “南北韓統一政策”, 「民主統一論」(統一硏修院, 1991년판), pp.7-124.

동안의 논란을 마무리 짓고, 정치·군사·교류협력분과위원회의 설치합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제도적 장치를 가시화시켰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회담성과를 집약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로써 남북한은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19년만에, 남북 고위급회담이 시작된 지 15개월만에 和解協力體制를 향한 구체적 ‘디딤돌’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기본합의서는 2월 18일부터 3박4일간 평양에서 열리는 제6차 회담에서 文本이 교환되는 순간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가. 「南北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남북의 총리가 발표한 합의서는 남북간 敵對的 關係를 청산할 구체적 방안들을 담고 있다.

(1) 基本合意書의 意義

기본합의서는 남북한 體制의 存在와 現實을 인정한 바탕에서 평화공존과 화해를 추진하기 위해 현재의 불안정한 休戰狀態를 平和狀態로 전환시킬 것을 밝히고 있다. 이는 평화체제구축의 主體가 南과 北의 당사자임을 천명한 것으로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던 기존의 입장을 바꾼 것으로 주목된다.

기본합의서는 통일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는데 쌍방이 인식을 같이 하면서 남북관계의 개선과 공존·번영을 위한 기본틀에 합의하고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남북간 지루한 論爭을 해 오던 先 軍축과 先 軍사적 신뢰구축이라는 상반된 입장이 並行推進이라는 절충안으로 타결됨으로써, 본격적인 協商時代를 열었다는 점은 그 意義가 큰 것으로 評價된다.

이와 함께 남북한은 실질적으로 離散家族問題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고 경제교류·협력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합의서의 발효로 남북간에 통행·통신시설이 연결되고 문학·과학·예술·체육분야 등에서의 交流가 활발해 질 전망이다.

더구나 합의서에는 신문·라디오·텔레비전 및 출판물의 교류협력도 포함하고 있어 장차 異質化를 극복해 나가는데 결정적 계기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기본합의서 채택은 남북한을 화해협력체제로 인도하는 역사적 里程碑⁵⁾라는 점에서 그 채택 자체가 획기적 사건으로 평가되고도 남음이 있다. 특히 합의서에 담긴 統一志向性, 自主性, 包括性, 實踐性은 두드러진다.

남북관계가 더이상 서로 다른 민족이 살고 있는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임을 明文化시킨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平和共存이 현상고착이 아니라 統一에로의 새로운 시작임을 암시하고 있음과 동시에, 남과 북이 통일을 지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합의서는 국제기구나 주변강대국의 중재에 의하지 않고 남북당사자가 직접 민족의 共同利益·繁榮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그 자주성이 부각되고 있다.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이 相互의 實體를 인정한 결과라면, 합의서 서명은 남북관계를 풀 主體力量들이 이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 틀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합의서는 또 남북간의 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한쪽의 필요만을 충족하기 위해 만들어진 강요된 協約이나 協議가 아니라는 점에서 커다란 意味를 찾을 수 있겠다.

5) 平和問題研究所研究室, “南北和解時代의 開幕, 第5次 南北高位級會談 分析”, 「통일한국」(1992年 1月號), p.33.

또한 기본합의서는 구체적 實踐措置들을 합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서명주체의 代表性面에서, 선언적 의미가 짙었던 「7·4 남북공동성명」과 일정한 차이점을 갖는다.

형식과 내용면에서 「7·4남북공동성명」이 自主·平和·民族大團結이라는 통일의 3대원칙을 천명하는데 그친 반면, 이번 합의서는 정치·군사·경제·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의 合意事項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 保障裝置(정치분과위, 군사분과위, 교류·협력분과위 등 각 분과위와 군사공동위, 경제교류협력공동위 등 실행기구)의 설치까지를 명시하고 있다.

또, 서명주체의 대표성에 있어서도 「7·4남북공동성명」이 당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김영주 노동당조직부장이라는 최고통치권자의 密使에 의해 비공개로 이루어진데 반해, 합의서는 남북한의 最高政策決定權者를 ‘합법적’으로 대신할 수 있는 국무총리와 정무원총리가 직접 서명, 채택했으며 공개리에 정부당국간 公式會談을 거쳐 성사시켰다는 점에서 「7·4남북공동성명」에서 보였던 한계를 상당부분 극복·해소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기본합의서는 「7·4南北共同聲明」과 비교할 때 文書의 形式, 內容, 代表資格 등 모든 면에서 格式을 갖춘 名實相符한 정부당국간 합의서로서 통일지향적인 共存共榮의 章典이라 할 수 있다.

남북관계 측면에서 볼 때, 合意書 서명은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청산하고 평화통일 기반구축의 기틀이라 할 수 있는 ‘和解協力의 制度化’를 이룩한 것으로 평가된다. 왜냐하면, 이번 合意書는 상대방 체제인정 및 존중, 내부분제 불간섭, 비방·중상중지, 파괴·전복행위 금지 등 和解協力에 관한 기본원칙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군사적 측면에서는 現 停戰狀態를 남북간의 공고한 平和狀態로 전환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對決狀態解消와 緊張

緩和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요컨대, 基本合意書는 제6공화국 출범이후 盧泰愚 大統領이 천명한 「7·7선언」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등 平和統一政策의 적극적 추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北方政策의 성공적 결실과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에 이어 한반도에서의 對決과 分斷의 時代를 청산하기 위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그 형식과 내용면에서도 사실상 國際社會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條約의 格式을 갖추었음은 물론 분단사상 처음으로 책임있는 政府 高位當局者인 쌍방 總理가 직접 署名하고 최고 통치자가 재가, 비준하였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의 본질적인 전환을 의미하고 있다.⁶⁾

(2) 基本合意書의 內容

먼저 合意書의 25개 조항을 集約하면 다음과 같다.⁷⁾

第1章 南北和解

第1條 相對方의 體制 認定・尊重

第2條 相對方의 內部問題 不干涉

第3條 相對方에 대한 誹謗・中傷 中止

第4條 相對方을 破壞・顛覆하려는 一切行爲 中止

第5條 停戰狀態를 남북간의 공고한 平和狀態로 轉換시키기 위하여 共同으로 努力하며 平和狀態가 이룩될 때까지 軍事停戰 協定 遵守

第6條 國際舞臺에서 對決과 競爭을 中止하고 서로 協力하며 民族의 尊嚴과 利益을 위해 共同努力

第7條 긴밀한 連絡과 協議를 위해 이 合意書 發效後 3개월 안에

6) 統一院, 「第5次 南北高位級會談 結果報告」(1991. 12), pp.26-30.

7) 統一院, 「南北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 採擇의 背景 및 意義」(第5次 南北高位級會談 報告資料, 1991. 12)

板門店에 南北連絡事務所를 設置・運營

第 8 條 合意書 發效後 1개월 以內에 南北政治分科委員會 構成

第2章 南北不可侵

第 9 條 相對方에 대한 武力使用 및 武力侵略 禁止

第10條 意見對立과 紛爭問題들을 對話와 協商을 통해 平和的으로 解決

第11條 不可侵의 境界線과 區域은 軍事停戰協定에 규정된 軍事分界線과 쌍방이 지금까지 管轄해 온 區域으로 함.

第12條 不可侵의 履行과 保障을 위해 이 合意書 발효후 3개월 이 內에 南北軍事共同委員會 構成・運營

南北軍事共同委員會에서는 대규모 部隊移動과 軍事演習의 通報 및 統制問題, 非武裝地帶의 平和的 利用問題, 軍人士 交流 및 情報交換問題, 大量殺傷 武器와 攻擊能力 除去를 비롯한 단계적 軍縮實現 問題, 檢證問題 등 軍事的 信賴造成과 軍縮實現을 위한 問題 協議・推進

第13條 軍事當局者間 直通電話 設置・運營

第14條 合意書 發效後 1개월 以內에 南北軍事分科委員會 構成

第3章 南北交流・協力

第15條 資源의 共同開發, 民族內部交流로서의 物資交流, 合作投資 등 經濟交流와 協力 實施

第16條 科學・技術, 教育, 文學・藝術, 保健, 體育, 環境과 新聞, 라 디오, 텔레비전 및 出版物을 비롯한 出版・報道 등 여러분야에서의 交流와 協力 實施

第17條 民族構成員들의 自由往來와 接觸 實現

第18條 離散家族・親戚들의 自由로운 書信去來, 相逢, 訪問 實施, 再結合 實現 및 人道的 問題에 대한 對策 講究

第19條 끊어진 鐵道・道路 連結 및 海路・航路 開設

第20條 郵便과 電氣通信 交流施設 設置・連結 및 郵便・電氣通信 交流의 祕密 保障

第21條 國際舞臺에서 經濟・文化 등 여러분야에서 相互 協力 및 對外 共同進出

第22條 合意書 發效後 3개월 以內에 南北經濟交流・協力共同委員會를 비롯한 部門別 共同委員會 構成・運營

第23條 合意書 發效後 1개월 以內에 南北交流・協力分科委員會 構成

第4章 修正 및 發效

第24條 쌍방 合意에 의해 修正 補充 可能

第25條 發效節次를 거쳐 文本 交換日로부터 效力 發生

또한 남북쌍방은 第6次 會談을 1992年 2月 18日~21日 平壤에서 개최키로 합의하고 核問題協議를 위한 대표접촉의 개최 등을 내용으로 한 「共同發表文」을 채택하였다.

<共同發表文 內容>

1. 남과 북은 1991년 12월 13일 「南北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력에 관한 合意書」에 署名하였으며, 빠른 時日안에 각기 發效에 필요한 節次를 거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韓半島에 核武器가 없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核問題를 協議하기 위하여 12월안에 板門店에서 代表接觸을 갖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第6次 南北高位級會談을 1992년 2월 18일 平壤에서 開催하기로 合意하였다.

이제 合意書의 部門別 主要內容을 分析해 보기로 하자.

먼저 合意書는 序文과 함께 本文 제1장 남북화해, 제2장 남북불가침, 제3장 남북교류·협력, 제4장 수정 및 발효 등의 순서로 모두 25個條로 構成되어 있다.

합의서 서문에는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을 따른 것”이라고 전제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할 것”임을 明示하고 있다.

이것은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이후 2개의 主權國이 사실상 존재하면서도 민족내부적으로는 ‘특수관계’를 약속함으로써 分斷固着化를 막는 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주변국가들의 남북한 時差承認과 協力時代의 막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쌍방의 관계가 국가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점을 재확인하여 밝혔는데 이는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국가로 반드시 통합되어야 함을 재확인한 것이다.

合意書의 主要內容을 和解部門, 不可侵部門 및 交流協力部門別로 보다 深層的으로 分析해 보기로 하자.

▲ 南北和解: 남북화해분야는 모두 8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 상대방의 체제인정 △ 내부분제 불간섭 △ 비방·중상 금지 △ 파괴·전복행위 금지 등을 명기함으로써 이미 언급한 바 和解協力の 원칙을 밝히고 있다.

합의서 5조에 “남북은 停戰狀態를 남북 사이의 平和狀態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밝혀 남북한이 平和協定の 당사자로 참여하여 체결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그동안 남한당국과는 不可侵宣言을, 미국과는 平和協定을 협상한다는 이중적 協商論理를 수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 6조에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밝혀 앞으로 消耗戰的外交競爭을 止揚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장차 유엔에서의 事案別 民族的 공동보조 협의·조정을 비롯하여 각종 국제기구의 조직·편성·운영문제에서 事前協議 등 광범한 협조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 ▲ 南北不可侵: 6개 조항의 불가침분야는 12조에 “합의서 발효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를 구성하여 군사적 신뢰구축과 단계적 군축을 협의 추진한다.”고 명기함으로써 남북한이 軍事力競爭을 중지하고 이를 民族福祉의 증진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특히 이 조항에는 비무장지대의 平和的 이용문제를 언급해 앞으로 비무장지대의 平和市化 및 합작투자공장, 평화공원, 텔레비전 송수신탑 등의 건설과 資源活用に 관한 협의를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불가침분야에선 軍事的 신뢰구축 및 보장장치와 軍備縮小問題 解決이 주요 당면과제로 부각되었다.

군사적 신뢰조성 방법으로 우리측은 △ 군사훈련·부대이동의 사전통보 △ 훈련참관단의 교환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또, 信賴構築措置 등을 확인하기 위한 군사정보교환·현장검증 등도 우리의 관심사항이다. 이 가운데 군사당국자간의 직통전화 설치의 가장 먼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軍縮論議도 병력 및 재래식무기 감축에 관한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향후 協商을 통해 얼마나 조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 南北 交流·協力: 남북간에 가장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이다. 15조에 “자원의 공동개발과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협력”을 밝히고 있는데, 이같은 남북당국의 實踐意志가 일치된다면 △ 금강산·설악산을 연계한 국제관광지구 조성 △ 지하자원 공동

개발 등이 본격적으로 거론되는 한편, 남한의 資本·技術과 북한의 勞動力·資源을 결합한 합작투자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16조에는 “라디오·텔레비전을 비롯한 출판·보도와 과학·문화·체육·환경 등의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고 밝혀 民族同質性回復을 위한 민간차원의 교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離散家族問題와 관련, 17조에는 이들의 서신거래와 상봉·방문을 실시하고 재결합을 실현한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19조에 육로·해로·항로 연결조항을 두었는데, 이에 따라 서울과 평양을 잇는 경의선과 문산~개성도리가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또 김포비행장과 평양의 순안비행장 사이에 양쪽의 여객기가 運航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인천~남포, 동해~청진항로도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위한 赤十字會談의 재개문제가 논의될 것이고, 合意文에 따라 離散家族 상봉면회소 설치, 서신거래, 생사확인절차 등이 적극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의 자유왕래를 보장하는 규정은 이와 관련된 각종 刑事法規의 정비문제를 수반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측의 국가보안법, 북한측의 형법의 재정비 문제도 分科委에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陸·海·空路를 연결해야 하므로 남북간의 각종 토목공사도 추진될 수 있다. 또 우편·전기통신 등을 잇기 위한 남북양측의 實務協議도 필수적이다. 특히 남북직교역의 대원칙이 표명됨으로써 이를 위한 양측 經濟人의 활발한 접촉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交易 확대를 위한 清算計定 설치문제 등이 토의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결국 우리측은 이번 合意書採擇을 통해 相互體制尊重, 內部問題不干涉, 誹謗·中傷中止, 不可侵, 破壞·顛覆行爲 禁止條項 등 남

북간의 화해협력에 관한 원칙을 관철시킴으로써 남북관계 정상화의 기본틀을 마련하였고, 現 停戰狀態를 平和狀態로 전환시키는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측의 3者會談論理를 봉쇄하고 남북당사자 해결원칙에 입각하여 한반도의 平和問題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 南北 離散家族問題의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함과 아울러 남북간 경제를 비롯한 여러분야의 制度的인 교류와 협력의 길을 틔우으로써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고통을 해소하고 民族同質性 回復와 共同繁榮을 추구하기 위한 물꼬를 트게 되었다.

합의서 발효후 3개월 이내에 南北連絡事務所, 南北軍事共同委員會, 南北經濟交流·協力共同委員會 등 3개 실천기구의 구성·운영을 관철시킴으로써 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확실히 保障할 裝置도 마련하였다.

나. 「韓半島의 非核化에 관한 共同宣言」⁸⁾

(1) 代表接觸의 成立 背景

북한측은 지난 第4次 南北高位級會談 (1991. 10. 22. 평양)에서 주한미군 및 핵무기의 철수와 이에 기초한 남북한 동시사찰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非核地帶化 宣言」을 제시한데 이어, 第5次 南北高位級會談(1991. 12. 10. 서울)에서도 이를 되풀이 주장하였다.

그러나 우리측은 第5次 南北高位級會談에서 북한측이 하루속히 國際核査察을 수용하고 핵무기개발을 포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韓半島의 非核化에 관한 共同宣言」案을 긴급 제안하는 한편, 국제원자력기구의 核査察과는 별도로 1992년 1월 31일 이전에

8) 統一院, 「非核化 共同宣言 關聯 背景 및 結果」(1992. 1)

우리측의 駐韓美軍事施設을 비롯하여 상대측이 선정하는 軍事 및 民間施設에 대한 동시 示範査察을 갖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쌍방은 「南北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를 서명・채택함과 동시에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991년 12월 안에 판문점 代表接觸을 갖기로 공동 발표하였다.

한편, 盧泰愚 대통령은 1991년 12월 18일 「核不在宣言」을 통해 우리측 지역 어디에도 단 하나의 핵무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혔다.

韓半島 核問題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대표접촉은 1991년 12월 26일~12월 31일에 板門店에서 세차례 개최되었으나 예상보다 쉽게 難題를 풀어 내 “超高速의 協商進度”⁹⁾를 보였다.

한편, 北韓側도 우리측의 주도적 노력에 자극받아 1991년 12월 22日 外交部 聲明을 통해 국제원자력기구와의 核安全措施協定 署名 및 査察受諾意思를 표명하였으며, 1992년 1월 30일 마침내 핵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남북 쌍방의 상호배려가 쌓임으로써 가장 넘기 어려운 險山峻嶺으로 간주되었던 북한의 核再處理施設 및 우라늄 濃縮施設 폐기의 토대가 마련되었다고도 할 것이다.

남북쌍방이 힘든 줄다리기 속에서도 核問題를 해결한 배경에는 북한측의 현실적 損益計算도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첫째, 북한측의 경우, 1991년 12월 24일 金正日을 人民軍 最高司令官으로 지위를 격상한 지 불과 1주일만에 핵문제를 놓고 남한측의 주장을 受容한 점은 일단 주목할 만하다.

이는 對南・對西方關係 改善에서 핵심적 장애요소였던 核問題를

9) “南北非核化宣言 合意 意味” (한국일보, 1992. 1. 1. 字)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하였던 것 같으며,¹⁰⁾ 또한 西方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지렛대’로 삼았던 핵문제의 効用價値도 떨어질대로 떨어져 북한에게 더이상 핵카드를 불필요해지지 않았나 하는 分析도 있다. 또한 權力世襲이라는 難題를 안고 있는 김일성으로서 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西方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김정일은 平和의 解決士’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한 복합적 의도도 작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식량과 에너지 부족 등 심각한 經濟難에 처해 있는 북한이 이를 타개할 한 방법으로 한국과 제한적이거나 ‘경제’분야에서의 交流・協力을 추진할 목적으로 南北關係 進展의 ‘상징적’ 과시로서 核問題의 조기타결을 서두른 것 같다고 보는 政治分析家도 있다.

셋째, 대외적으로는 핵사찰문제에 대한 양보로 국제적 고립에서 어느 정도 탈피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일본과의 關係改善 및 經濟援助를 내용으로 하는 회담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非核宣言을 통해 북한은 한국을 제쳐두고 미국이나 일본과 직접 협상한다는 非現實的인 정책을 그들의 체면을 손상하지 않은채 조용히 폐기시키는 효과를 얻었다. 이제 북한은 일본과 미국에 접근하기 전에 한국과의 관계개선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태진전은 한국정부가 북한정권과의 직접적인 相互接觸關係를 구축하는데 성공하였다는 견해를 더욱 확실하게 하고 있다. 분명히 금번의 남북간 비핵선언 채택은 한반도에서 核危險을 제거하는데 일보 전진하였으며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한국을 제쳐두고 미국이나 일본에 접근을 시도하는 것보다 한국정부와 직

10) 한국일보(1992. 1. 1. 字)

접적으로 접촉하는 쪽을 택했다는 점이다.¹¹⁾

(2) 「韓半島의 非核化에 관한 共同宣言」의 意義

南北高位級會談의 수석대표 명의로 되어 있는 共同宣言을 보면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安全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는 序文으로 시작하여 本文 6개항을 合意하였다.¹²⁾

- ① 남과 북은 핵무기의 試驗, 製造, 生産, 接受, 保有, 貯藏, 配備, 使用을 하지 아니한다.
- ②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 ③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濃縮施設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 ④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檢證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査察을 실시한다.
- ⑤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 ⑥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남북쌍방의 고위급 대표들은 1991. 12. 26.~12. 31.기간중 세차례 板門店에서 접촉하였으며, 12월 31일에는 文案整理를 끝내고 假署名한 후 다음과 같은 3개항으로 된 「남북공동발표문」을 발표

11) “Nuclear deal paves the way to peace:Unity of Purpose”,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anuary 9,1992.

12) 統一院, 「非核化共同宣言 關聯 背景 및 結果」(1992. 1)

했다.

- ①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 1992년 2월 19일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발효되도록 한다.
- ② 남과 북은 이를 위한 사전조치로서 1992년 1월 14일과 1월 21일 두차례에 걸쳐 쌍방 총리가 서명한 공동선언문을 판문점에서 교환한다.
- ③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쌍방의 합의에 따라 修正・補充할 수 있다는데 합의하였다.

한편 정부는 민족의 생존이 걸린 核問題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 ① 第46次 유엔總會 演說(1991. 9. 24)¹³⁾
- ② 韓半島의 非核化와 平和構築을 위한 宣言(1991. 11. 8)¹⁴⁾
- ③ 韓半島의 非核化 등에 관한 共同宣言 提案과 同時 核査察提議(1991. 12. 11)
- ④ 核不在 宣言(1991. 12. 18)을 통해 남북당사자에 의한 核協商과 非核化 實現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이 결과로 북한이 非核地帶化 宣言을 主張하면서 核査察을 회피하고 核武器開發을 추진하는 제반 구실을 근원적으로 봉쇄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문제에 대처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였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추진이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커다란 불신과 의혹을 받았으며, 韓半島 平和와 南北關係發展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해 온 점을 감안할 때, 이번 「共同宣言」을 통해 非核化를 검증하는 相互査察의 실시와 核再處理施設 不保有를 합의함으로써 韓

13) 노태우 대통령, “평화로운 하나의 세계공동체를 향하여”, 제46차 유엔총회연설 (1991. 8. 24), 통일원, 「統一政策關聯 主要演說文」(서울:웃고文化社, 1991), pp. 37-49.

14) 통일원, 같은 책, pp.50-53.

半島 非核化를 실현하는 보장책이 사실상 마련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로써 장차 「基本合意書」 이행을 준수하는데 장애요소가 제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核問題의 해결없는 합의서 채택으로 그 實効性에 대해 국내외에서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共同宣言 採擇으로 이러한 우려를 拂拭시키고 「基本合意書」의 발효를 보장함으로써 南北間 和解協力體制를 정착시키는 확고한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浮刻시킬만하다.

또한 이번 南北韓 非核共同宣言은 남북관계의 正常化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우리민족 스스로 핵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內外에 보여줌으로써 「기본합의서」 채택시 일부에서 憂慮했던 ‘핵문제 소홀취급’¹⁵⁾ 이라는 논란을 깨끗이 拂拭시켜 주었다고 할 것이다.

다. 「基本合意書」·「非核化 共同宣言」以後의 南北韓 關係 展望

第6次 南北高位級會談에서 합의서와 공동선언이 發効하게 됨으로써 남북한관계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게 된다. 장차 남북한관계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¹⁶⁾

(1) 和解協力時代에로의 進入

南北高位級會談의 진전으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됨에 따라 1990년대 중반이후 南北

15) 한국일보(1992. 1. 1. 字)

16) 外交安保研究院, “韓半島情勢-南北韓關係”, 「中·長期 國際情勢展望(1992年版)」, pp.51-53.

韓關係는 본격적인 和解協力時代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남 북한은 기본합의서 채택이후 南北韓의 政治·軍事·經濟協力 등 분야별 부속합의서에 대한 협상을 진행, 구체적인 세부 실천사항을 확정해야 하며 단순히 戰爭의 不在라는 '消極的 平和'가 아니라 다방면에서의 協力を 制度化하는 '積極的 平和'時代를 구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南北韓 和解協力時代를 규율하는 주요 문서로 基本合意書와 기존의 休戰協定이 병존·양립할 것이며, 南北韓이 협상을 통해 통일 준비단계로서 「南北聯合」을 제도화하는데 합의하게 되면 이를 규제하는 새로운 文書가 「民族共同體憲章」 등의 이름으로 채택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본합의서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행을 보장하는 여러개의 분야별 부속합의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南北韓 유엔동시가입 이후 휴전협정과 관련하여 제기된 유엔軍司令部問題 등도 相互協商을 통하여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판단된다.

(2) 南北間 軍縮協商의 本格的 展開

南北韓 和解協力時代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交流·協力の 制度化와 함께 軍事的 緊張緩和가 가시적으로 구현되는 것으로 南北韓은 기본합의서 채택이후 軍當局者間 직통전화 설치·운영, 군사 훈련 사전통보 및 참관 등 運用的 軍備統制의 경험을 바탕으로 構造的 軍備統制를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 군비감축협상이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다. 南北韓의 본격적인 군축협상에 있어서 주요 의제로 공격용무기 및 대량살상무기의 優先除去와 무기감축에 따른 병력감축 등이 부각될 展望이다.

南北韓의 非核化宣言과 北韓의 對日 및 對美修交를 위한 IAEA 核査察 수용이후 南北韓에는 핵무기가 없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보장받으면서 장차 非核地帶化協定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韓半島 非核地帶化 協定은 南北韓이 서명주체가 되며 美·日·中·獨立國家聯合(CIS) 등 4대 주변강국이 이를 保證(endorse)하는 형식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實質的 統一基盤의 構築

기본합의서 발효와 함께 和解協力이 제도화됨에 따라 남북한간에 對話와 交流·協力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統一에 진일보하기 위한 「南北聯合」이 예상보다 빨리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남북한간의 분야별 부속합의서 채택이후 북한사회의 점진적 개방은 北韓經濟를 크게 활성화시킬 것이며, 이는 또한 社會改革 促進劑로서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開放과 民主化에 대한 욕구를 자극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北韓社會의 開放·改革과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에 기반을 둔 남북관계 발전이 결합되는 경우 統一은 今世紀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南北韓이 주변 國際情勢變化의 好機를 유효적절하게 제 때에 이용하지 못하고 기본합의서의 내용을 파기하거나 갈등관계를 지속할 경우에는 뜻하지 않는 外勢의 介入으로 우리가 바라던 統一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이상과 같은 판단은 북한의 變化를 前提하지 않고는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분명 變化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變化壓力에 대응하여 그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북한당국이 아무리 변하지 않으려고 저항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몇가지 측면을 감안할 때 變化의 時間差는 있을지언정, 變化 자체를 거부할 수는 결코 없다고 사료된다.¹⁷⁾

17) 外交安保研究院, “北韓情勢”, 같은 책, pp. 49-51.

첫째, 북한의 體制維持를 위한 生存戰略의 最優先의 추구이다.

蘇聯共產黨의 붕괴와 東유럽 共產主義體制的 몰락, 獨逸統一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적응하기 위해 北韓은 體制維持의 方便으로 現實主義的 路線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

北韓은 對外關係改善과 經濟開放을 통해 外國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주민생활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물론, 北韓은 對外開放政策에 따른 사상적 汚染과 내부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思想教育을 계속 강화할 것이며, 中國의 天安門事態와 같은 住民蜂起의 가능성을 철저히 봉쇄하고 체제위협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社會的 統制를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社會開放過程에서 체제에 저항하는 북한주민들의 봉기가능성을 完全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회적 통제의 한계 및 김일성의 노령에 따른 신상변화에 대비하고 金正日後繼體制 유지를 위해 權力層의 世代交替가 이루어질 것이나 북한사회의 民主化 要求에 비추어 혁명과 이념을 추구하는 強硬派의 입장이 약화되고 改革·開放을 주도하는 세력이 등장,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축이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國際情勢 變化에 대한 북한의 유연한 對應 움직임이다.

北韓은 國際的 孤立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實利中心, 脫이데올로기적 입장에서 대외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社會主義經濟圈의 붕괴, 소련과 중국의 硬貨決濟 요구, 소련의 援助中斷, 그리고 자금자족의 動員經濟體制的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北韓은 심각한 經濟難을 겪고 있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과 修交하고 동남아, 유럽 등 자본주의국가와 關係改善을 적극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과 일본의 修交는 북한의 경제난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북한의 開放과 改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는 日本의 北韓에 대한 經濟的 영향력 확대를 초래함은 물론 북한은 이러한 日本과의 수교를 통한 경제

난 해소를 바탕으로 統一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피할 가능성도 전혀 排除할 수 없다.

北韓은 주변국가들의 東北亞 經濟協力體制 형성노력 등 활발한 움직임에 편승, 體制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노력과 함께 豆滿江地域 등 經濟特區의 지정·개발을 위하여 制限的 開放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의 개방이든 북한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회피할 수는 결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북한의 對南政策路線의 신중한 變化이다.

北韓은 김일성이 생존하는 한 ‘하나의 조선정책’을 적어도 선전적 차원에서는 변화시키지 않을지 모른다. 北韓이 당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難關과 挑戰을 극복하고 김일성이후 김정일체제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南北韓關係 進展에 상당한 신축성을 보이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상황이 지속된다면, 北韓은 더이상 버틸 수 없음을 스스로 인식, 北韓이 처해 있는 대내외적 난관을 타개하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실현 불가능한 기존 對南革命路線을 수정, 현상유지적 南北韓 平和共存戰略을 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北韓은 體制에 대한 위협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南韓과의 高位級會談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한 이상 南北韓 經濟交流를 적극 추진시키고 제한적인 通信·通行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東獨崩壞에서 얻은 교훈을 감안, 北韓은 자유로운 外部情報의 流入을 봉쇄하는데 전력투구할 것이다.

北韓은 당면한 경제파탄의 위기를 타개함은 물론 우리의 韓半島 非核化宣言 및 美國 등 주변세력의 압력 등을 감안할 때, 결국 IAEA에 의한 國際査察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北韓은 經濟破綻에 직면하여 더이상 종래와 같은 군비경쟁을 지속할 수 없는 한계점에 달해 있으므로 體制維持를 위하여 한국과

軍備統制協商에 신중하게 임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3. 第6共和國의 統一政策基調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¹⁸⁾

가. 統一政策의 基調

통일정책도 國家政策의 하나이다. 따라서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정책추진주체인 政府가 교체되면 국민에게 公約한 새로운 통일정책을 펴게 되고, 統一主導力量이 신장됨에 따라 보다 유연하고 포용적인 통일정책과 방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

더욱이 우리 통일정책은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고 국제정세와 같은 統一環境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 客體와 環境의 변화에 따라 이에 적응하고 대처하는 정책을 펴야 할 뿐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들의 변화를 先導하고 바람직한 통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前向的인 통일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統一의 目標와 統一祖國의 未來像을 염두에 두고, 그와 같은 통일을 실현하는데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길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할 때, 통일정책의 可變性이나 前向性에도 불구하고 그 政策基調는 근본적으로 크게 바뀔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우리 조국과 민족이 어떤 상태가 되어야 과연 통일이 완성되었

18) 第6共和國의 統一政策基調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관해서는 1991년도 統一研修院 基本教材(民主統一論 “統一問題”)의 관련부분을 발췌 또는 補完執筆하였다. 그 중 특히 참고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金旻泰, “南北韓統一政策” 「民主統一論」(통일연수원, 1991) pp. 53-84.

다고 할 수 있는가? 이 목표로서의 통일은 國家次元에서는 한반도와 그 附屬島嶼에 하나의 憲法아래 하나의 政府가 수립되는 單一主權國家의 건설이고, 民族次元에서 보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최선의 ‘한민족공동체’가 형성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통일의 목표는 ‘한민족’의 ‘자유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하는데 있다.¹⁹⁾

이같은 統一祖國이어야 ‘한민족’을 위한 名實相符한 통일이 실현되는 것이다.

민족을 위한 통일이려면 민족이 주체가 되어 民族自決의 정신에 따라 自主적으로 통일해야 한다. 외세에 의존하는 통일은 민족의 自存을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民主自尊을 保障하는 참다운 통일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족을 위한 통일이려면 민족의 생존과 번영이 보장되는 平和的 統一이어야 한다. 민족성원의 犧牲과 국토의 焦土化를 가져올 무력이나 폭력의 방법으로는 통일은커녕 오히려 민족의 自滅을 가져올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만일, 同族相殘으로 민족역량이 消盡되어 한반도에 힘의 眞空狀態가 생긴다면 비록 외형상 통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한반도의 地政學的 여건으로 볼 때 외세의 介入과 干渉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민족을 위한 통일이려면 민족성원의 참여와 단결을 바탕으로 한

19) ‘統一된 狀態’ 즉, ‘完全한 統一國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는 (1) 單一主權國家(外部世界에 이 國家를 대표하는 政府도 하나여야 하고, 國內에서도 最高統治權을 행사하는 政府가 하나여야 한다.) (2) 國民統合(外國國籍保有者를 제외한 한반도 居住者는 모두 하나의 國民을 형성하고 主權行使에 있어서도 居住地域에 관계없이 동일한 權限을 가져야 한다.) (3) 生活空間의 統一(모든 國民은 全領土에 걸쳐 居住移轉 및 通行의 自由를 가져야 한다.) (4) 法秩序와 軍隊統合(통일된 國家는 單一法體系와 單一軍隊를 保有하여야 한다.) 등 4대 要件을 갖춰야 하며, 이러한 狀態에 못 미치는 통일은 ‘形式的 統一’, ‘名目上的 統一’, ‘法形式上的 統一’로 보는 見解는 매우 說得力이 크다고 본다.

李相禹, “南北韓統一政策의 論理構造比較: 「民族和合」과 「階級鬭爭」의 對決”, 「統一韓國의 摸索~理念, 環境과 政策의 努力」(서울:博英社, 1987), p. 101. 參考.

民主的 統一이어야 한다. 통일은 결코 特定 政權이나 集團, 하물며 特定 階級이나 階層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生存과 自由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自主·平和·民主의 원칙이 적용되는 민족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에서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전쟁재발 위험성을 그대로 두고 南北韓關係의 정상화나 민족의 화합, 나아가서는 평화적 통일이란 실현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적 통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和解, 和合과 共同繁榮이 실현되는 민족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우리정부는 1970년 이래 ‘先 평화 後 통일’을 정책기조로 견지하여 왔다. 이는 1960년대 말까지의 ‘UN 감시하의 土着人口比例 自由總選舉’를 통한 평화적 통일정책의 경우, 사실상 대한민국의 법통성에 입각하여 북한지역을 수복하겠다는 흡수통합의지가 暗默的으로 표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平和統一路線에 입각한 統一政策·方案이라고 내세우기에는 힘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북한을 善意의 競爭의 대상, 對話協商의 상대로서 그 정치적 실체를 사실상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 「8·15선언」²⁰⁾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先 평화 後 통일’ 政策路線은 1970년대 초부터 그

20) 「8·15 宣言」은 북한측에 대하여 ‘善意의 南北體制競爭’을 제의한 것이 특징인데, 이는 분단이후 변화된 南北의 모습과 ‘特殊한 關係’를 현실로서 인정하고 통일에 접근해 나가려는 자제전환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 ‘善意의 南北體制競爭’제의는 南北의 統一政策史에 하나의 획을 긋는 효과가 있었다. 서로 국가로 인정할 수 없는 ‘특수한 관계’를 감안하여 ‘體制’라는 표현을 썼지만 국제적으로는 북한을 사실상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기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南韓이 「南北頂上會談」을 제의했고, 「南北 體制聯合」, 「南北韓 UN同時加入」 및 「南北交叉承認」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과 능동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體制競爭’제의를 통해 南北關係에서 南韓이 주도권을 確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① 李洪九外, 「分斷과 統一, 그리고 民族主義」(서울:博英社, 1984), p.165.

② 國土統一院, “한국의 統一觀과 統一政策基調”, 「南北韓 統一政策比較」(서울:정문사문화, 1990), p.53.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 先평화, 後통일의 정책기조가 1970년대의 통일정책에서는 ① 남북한 불가침협정 체결을 통한 평화정착, ②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한 사회개방과 민족적 신뢰회복, ③ 그 바탕 위에서 자유총선거를 통한 통일이라는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1974. 8. 15)으로 示顯되었고, 제5공화국의 통일정책에서는 ① 통일될 때까지의 과도조치로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暫定協定」을 체결하여 남북한관계를 정상화하고,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의 共同繁榮을 도모함으로써 평화와 화합을 실현시킨 바탕 위에서, ② 통일헌법을 함께 마련하여 ‘통일민주공화국’을 완성시키자는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1982. 1. 22)으로 구체화되었다.

그간의 통일정책을 집대성하고 체계화한 제6공화국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89. 9. 11)은 남북이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에 따라 「南北聯合」이라는 과도적 통일체제를 형성하여 민족의 共存共榮을 도모함으로써 民族統一을 실현시킨 바탕 위에 國家統一까지 완성하려는 것으로서 일관성 있게 先평화, 後통일을 政策基調로 堅持하고 있다.²¹⁾

우리 통일정책의 基調와 관련하여 北韓體制에 대한 한국의 인식(北韓觀)이 어떻게 바뀌어 왔으며, 남북대화의 多角化와 평화적

21) 第1期 南北對話時代인 1970년대 초이래 政府의 統一政策基調와 統一方案과의 연관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정세기조	평 화(先)		통 일(後)
	한 반 도	한 민 족	
평화통일 3대기본원칙 (1974. 8. 15)	평화정착	민족적 신뢰회복	총선통일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1982. 1. 22)	남북한관계 정상화	민족화합	「통일민주공화국」 완성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989. 9. 11)	남 북 연 합 (사회·문화·경제공동체)		「통일민주공화국」 완성 (정치공동체)

통일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對北認識의 변화(발전)추이가 相互主義的인 것이 아니라 우리측의 一方的이고 先制的인 양보에서 비롯된 것이고, 앞으로 예상되는 다각적인 남북대화의 전개과정에서 평화와 통일의 進展度를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의 北韓觀 즉, 북한체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면 一方主義的인 포용의 과정이었다. 즉 북한측은 우리체제를 부정하고 그 瓦解를 기도하는 이른바 ‘南朝鮮解放’이라는 전투적 대남혁명노선을 계속 표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970년대 이래 북한 정권을 政治的 實體로 인정하였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7·7선언」이후에는 북한을 오손도손 화목하며 공동번영해야 할 民族共同體로서 포용하는 통일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한관계의 實體는 상호주의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통일·외교정책에서 북한체제를 공동번영해야 할 민족공동체의 일부로 포용하고, 남북한관계를 同伴者關係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북한의 對南路線에 상응하는 변화가 없는 한, 바꾸어 말해서 남북한관계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軍事的·實定法的으로는 적대관계 또는 대결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간과할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남북관계에 대한 상황의 이중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 호응한 북한의 태도변화는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다.

‘先平和 後統一’ 政策基調와 더불어 우리 統一政策에 뿌리박고 있는 또다른 基調는 民主的 正統性和 民族史的 正統性이라고 할 수 있다.

民主的 正統性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民主原則의 확고한 견지 및 實踐을 大前提로 한다. 한편으로는 통일실현과정에 있어서 민족구성원의 뜻과 의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南北이 合意한 統一設計圖대로 통일국가를 수립함을 뜻

한다. 민주적 선거에 의한 통일국가의 수립이 必然的이며, 人權과 自由와 幸福이 보장되는 民主共和國를 건설하도록 定向될 수밖에 없다.

또 한편으로는 국내적으로 통일정책과 방안을 결정,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필히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이 適用되어야 함을 뜻한다. 統一論議의 開放化와 自由化를 보장하되, 民主國會와 政黨·社會團體, 여론조사 및 통일대화의 광장 등 각종 通路와 方法을 통해 각계각층 국민의 의견과 지혜를 수렴, 統一政策 決定過程에 反映함으로써 民主政府로서 명실상부하게 超黨的·汎國民的 統一政策을 推進한다는 말이다.

民族史的 正統性은 한민족사에 면면히 흘러 내려오고 있는 배달겨레의식(한민족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민족의 운명이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계급과 신분을 초월, 민족의 命脈을 수호해 온 民族團結精神을 大前提로 한다. 民族史的 正統性에 충실할수록 한편으로는 우리민족의 통일문제는 우리민족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民族自決의 自主原則을 견지함으로써 自主統一의 기치를 내세우게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南과 北사이에 민족공동체의식을 상호 발휘함으로써 同胞愛와 兄弟意識을 되일귀 民族自愛와 民族親和力을 분출하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의 統一政策의 나침판은 이미 平和統一, 民主統一, 自主統一의 方向으로 設置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통일원칙’으로서 자주원칙, 평화원칙, 민주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또 통일민주공화국의 미래상을 자유, 인권, 행복이 보장되는 單一 民主共和國로 설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과연 第6共和國의 統一政策基調가 무엇인가를 雄辯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²²⁾

22) 대한민국헌법 제4조를 참고할 것.(제4조: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나. 「民族自尊과 統一繁榮을 위한 特別宣言」

(1) 「7·7宣言」의 背景

盧泰愚 대통령은 1988년 7월 7일, 북한에 대한 인식과 통일·외교정책 기조의 一大轉換을 의미하는 이른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이하 「7·7선언」으로 略稱)을 내외에 밝혔다.

이 「7·7선언」의 배경은 우선 국내적 측면에서는, 「6·23선언」(1973. 6. 23)이후 1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국제질서와 주변정세의 변화에 힘입어 南北韓關係 發展史에 획기적 轉機를 이룩해야 한다는 時代的 召命意識에 따라, 과감하게 外交舞臺에서 북한을 도와 국제적 고립으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和解·協力の 새 時代에 同參케 하자는 필요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올림픽의 개최, 국력의 신장 등 국제적 지위의 향상으로 상승된 民族的 自矜心과 統一主導力量的 확보를 自負하는 국민적 자신감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제환경면에서도, 美·蘇의 화해와 협력추세 속에서 冷戰體制가 급기야 평화공존 및 협력구조로 轉換됨에 따라, 한반도 분단상황에 일대 地殼變動을 豫告하고 있었다.

또한 우리는 소련·중국·동구공산권에서 일고 있는 開放과 改革의 물결이 한반도의 북녘에까지 파급되도록 촉진하는 우회전략으로써 北方政策을 더욱 적극화할 필요가 있었다.

(2) 「7·7宣言」의 意義

이같은 배경에서 나온 「7·7선언」의 「政策宣言 6個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²³⁾

- ①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학자

23) 統一院(南北對話事務局), 「南北對話白書」(1988), p.95.

및 학생 등 南北同胞간의 相互交流를 적극 추진하며, 해외동포들이 자유로이 남북을 왕래하도록 門戶를 개방한다.

② 남북적십자회담이 타결되기 이전이라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이산가족들간에 生死・住所確認, 書信往來, 相互訪問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주선・지원한다.

③ 남북간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간 교역을 民族內部交易으로 간주한다.

④ 남북 모든 동포의 삶의 質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民族經濟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非軍事的 物資에 대해 우리 우방들이 북한과 교역을 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⑤ 남북간의 소모적인 경쟁・대결외교를 종결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발전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또한 남북대표가 國際舞臺에서 자유롭게 만나 민족의 共同利益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것을 희망한다.

⑥ 한반도의 평화를 定着시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이 미국・일본 등 우리 友邦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협조할 용의가 있으며, 우리는 소련・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과의 關係改善를 추구한다.

○ 우리의 조치에 북한측도 적극 호응해 줄 것을 기대하고, 북한 측이 긍정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보다 前進的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 6천만 겨레가 슬기와 힘을 모은다면, 이 世紀가 가기 전에 남북은 하나의 社會的・文化的・經濟的 共同體로 통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의 나라로 통일하는 偉業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와 같이 「7・7선언」은 남과 북이 비록 體制를 달리하고 있으나 하나의 민족이라는 民族共同體意識에서 북한동포도 민족의 一員으로 포용하여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긴장완화와 평

화통일의 길로 나아가려는 것이다.

이 「7·7선언」은 이제까지 폐쇄적인 북한을 봉쇄해 온 消極的인 政策을 지양하여 북한사회의 開放과 發展을 유도하는 등 積極적으로 통일여건을 조성하려는 統一政策基調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처럼 통일문제를 보는 視角과 認識에 큰 劃을 그어 놓은 「7·7宣言」은 두가지 측면에서 큰 意義를 찾을 수 있다.

첫째, 북한에 대한 認識의 대전환이 나타나고 있는데 큰 의의가 있다.

북한을 경쟁·대결·적대의 대상으로 고착시키지 않고 민족의 一員으로 포용하여 상호 신뢰·화해·협력을 바탕으로 共同繁榮을 추구해야 할 民族共同體로 인식함으로써 北韓觀의 전환을 가져온 것이다. 남북한이 단절과 불신속에서 民族自害行爲를 지속한다면 民族力量의 낭비는 물론 民族自尊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한 핏줄, 한 역사, 같은 문화와 전통을 이어온 민족공동체라는 의식을 회복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가 된다.

현실적으로 남북이 對決·誹謗·競爭하고 국제사회에서도 과당 경쟁으로 민족의 威信과 力量을 훼손한다는 것은 민족적 이익과 긍지를 손상시킬 뿐, 民族親和力을 소생시키는데 하등의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이다.

둘째, 統一·外交政策基調의 일대전환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 「선언」에서는 북한을 國際社會의 책임있는 成員으로 기여하게 하는데 우리가 협조함은 물론, 미국·일본 등 우리 友邦과의 관계개선까지도 돕겠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바로 통일·외교정책의 적극화를 의미할 뿐 아니라 정책기조의 전환을 뜻한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겠다는 것은 우리 力量과 自信感을 바탕으로 북한의 내부적 변화와 발전을 촉진 시킴으로써 平和統一與件을 개선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남북한간의 지나친 경제적 격차나 불균형은 오히려 平和統一의

障路要素가 될 수 있다는 현실적 이유와 함께, 이제 우리는 북한 동포의 삶의 質을 향상시키고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民族自尊의 精神과 同胞愛의 발현이 바로 이같은 정책전환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남북한간의 人的·物的交流를 적극 추진하고 북한동포의 복지향상을 위해 북한사회의 발전을 돕는 것이 실질적인 南北關係改善과 民族統合을 촉진하는 길이라고 본 것이다.

海外同胞들의 자유로운 남북왕래의 길을 우리가 먼저 연 것도 離散家族들의 고향방문, 친척상봉 등 人道的 問題를 해결할 뿐 아니라 폐쇄된 북한사회를 개방하고 북한동포의 人權狀況을 改善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 것이다.

이 「선언」은 외교면에서 남북한간의 소모적인 경쟁·대결을 종식시키면서 국제사회에서 민족의 共同利益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이어서, 정부는 이 「7·7선언」의 정책기조 위에서 대통령의 제 44주년 광복절 경축사(1989. 8. 15)를 통해 南北頂上會談개최를 제의²⁴⁾하게 되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천명된 것이다.

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노태우 대통령은 1989년 9월 11일, 제147회 정기국회가 열리던 날 특별연설을 통해 제6공화국의 통일방안으로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국내외에 천명하였다. 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주요내용을 대통령의 특별연설속에서 발췌·요약하고 새 통일방안의 闡明背景과 意義 및 그 主要特徵을 우리 통일정책의 基調위에

24) “第44回 光復節 慶祝辭(1989. 8. 15)”, 國土統一院, 「南北對話白書」(1989), pp.502. 참고.

서 照明하고자 한다.

(1)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主要內容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밝힌 특별연설의 주요내용을 발췌·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²⁵⁾

“憲法이 대통령에게 부과하고 있는 엄숙한 의무에 따라 南北이 자주·평화·민주의 3原則을 바탕으로 南北聯合의 중간과정을 거쳐 통일민주공화국을 실현하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밝히고자 한다.

통일된 우리 조국은 民族成員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하나의 民族共同體로서 각자의 자유와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여야 한다.

민족성원 모두의 參與와 機會均等이 보장되고 다양한 主義·主張이 자유로이 표현되는 民主共和體制는 온 겨레의 오랜 소망이며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할 수 있는 통일된 나라의 유일한 선택일 것이다.

통일된 조국은 民族成員 모두의 복지를 증진하며 민족의 恒久的安全을 보장하면서 모든 나라와 善隣友好關係를 이루어 세계의 平和와 인류의 福利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된 우리나라는 單一國家여야 하며, 이것이 민족의 所望이다.

理念과 體制가 다른 두 개의 나라를 永續시키는 형태는 온전한 통일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통일을 이루는 원칙은 어디까지나 民族自決의 정신에 따라 自主的으로, 武力行使에 의거하지 않고 平和的으로 그리고 民族大團結

25) 統一院,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발표 대통령 특별연설전문(1989. 9. 11)”,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이렇게 통일하자는 것이다.」(統一政策解說資料, 1989), pp. 40-55.

을 도모하고 民主的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통일은 하루빨리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가진 남과 북이 분단 40여년간 누적된 깊은 不信과 오랜 對決・敵對의 관계를 그대로 두고 하루아침에 통일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는 분단이 있기까지 5천년의 긴 역사를 통해 한 핏줄, 같은 言語, 같은 文化傳統, 그리고 같은 삶의 터전 위에서 하나의 民族共同體를 이루며 살아 왔다.

이 민족공동체가말로 현재도 남북으로 갈라진 민족을 하나로 묶고 있는 바탕이며, 우리 민족이 統合을 이루어야 할 當爲이자, 이를 보장하는 根本이다.

우리나라의 국토분단은 左右翼간의 流血鬭爭과 6・25남침으로 인한 동족간의 悽絶한 전쟁을 겪으면서 민족의 분열로 심화되었다. 敵對하는 두 체제로 나뉘어 半世紀 가까이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남북의 겨레는 生活樣式과 價値觀마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갈라지고 異質化된 민족사회를 그대로 두고 하나의 국가를 만들 수는 없다. 민족공동체를 올바르게 回復・發展시키는 일이야말로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다.

통일로 가는 중간단계로서 먼저 南과 北은 서로 다른 두 體制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바탕으로 서로를 認定하고 共存共榮하면서 민족사회의 同質化와 統合을 촉진해 나가야 한다.

남북간에 개방과 교류・협력을 넓혀 신뢰를 심어 민족국가로 통합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와 같이 하여 사회・문화・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서 남북간에 존재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해 간다면 政治的 統合의 여건은 성숙될 것이다.

통일을 촉진할 이 過程을 制度化하기 위해 쌍방이 합의하는 憲章에 따라 남북이 聯合하는 機構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聯合體制 아래에서 남과 북은 民族共同生活圈을 형성하여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토록 하여 민족공동체의 발전을 보다 加速化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완전한 통일국가로 가는 중간과정의 過渡的 統一體制라 할 수 있다.

南北聯合²⁶⁾은 最高決定機構로 「南北頂上會議」를 두고, 쌍방 정부 대표로 구성하는 「南北閣僚會議」와 남북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는 「南北評議會」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은 각료회의와 평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합의사항 이행 등 實務를 위해 共同事務處를 두고, 서울과 평양에 常駐連絡代表를 파견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사무처를 비롯한 남북연합의 기구와 시설은 非武裝地帶안에 平和區域을 만들어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평화구역은 점차 「統一平和市」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남북각료회의」는 남북의 總理를 共同議長으로 하여 각각 10명 내외의 閣僚級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안에 人道, 政治·外交, 經濟, 軍事, 社會·文化分野 등의 常任委員會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남북각료회의」는 남북간의 모든 懸案과 民族問題를 협의·조정하고 그 실행을 보장하되 구체적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人道的으로는 1천만 이산가족의 재결합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치·외교분야에서는 남북간의 정치적 대결상황을 완화시키고 국제사회에서 민족역량의 쓸모없는 낭비를 막으며 해외동포의 權

26) 南北聯合에 관한 研究로는 다음 論文을 參考할 것.

- ① 김학준, 「민족공동체와 남북한체제연합연구」, 「통일문제연구」, 1권 3호(통일원, 1989)
- ② 김명기, 「남북연합의 제도적·실천적 과제」, 「민족공동체헌장의 이론적 기초와 정책방향」(통일원, 1990)
- ③ 장명봉, 「특수한 국가결합형태로서의 유럽공동체와 노르딕 협력체」, 「통일문제연구」, 2권 3호(통일원, 1990)
- ④ 장운수, 「남북연합운영체계에 관한 연구」, 통일원,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실천을 위한 모색」(문성인쇄, 1991)

益은 물론 민족의 利益을 함께 신장시킬 것이다.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에서는 우선 남북사회의 개방과 다각적인 交流·交易·協力을 추진하고 민족문화를 함께 暢達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공동번영의 經濟圈을 형성하면 남북 모두의 발전을 이루고 民族成員 모두의 삶의 質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군사분야에서는 과도한 軍備競爭을 지양하고 武力對峙狀態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적 信賴構築과 군비통제를 실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의 休戰協定體制를 平和體制로 바뀌어나가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남북평의회」는 100명 내외로 쌍방을 대표하는 同數의 남북 國會議員으로 구성하되, 통일헌법의 起草 및 통일을 실현할 방법과 그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고, 「남북각료회의」의 諮問에 응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평의회」는 통일헌법의 起草過程에서 통일국가의 政治理念·國號·國家形態 등을 논의하고, 對內外政策의 기본방향이냐 정부형태는 물론 국회 구성을 위한 總選舉의 방법·시기·절차 등을 토의하여 합의해야 할 것이다.

남북은 각기 構想하는 통일헌법 草案을 「남북평의회」에 내놓고 합리적인 單一案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통일헌법안이 마련되면 민주적 방법과 절차를 거쳐 확정·공포하고, 이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여 統一國會와 統一政府를 구성할 수 있다.

통일조국의 국회는 地域代表性에 입각한 上院과 國民代表性에 입각한 下院으로 구성되는 兩院制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마침내 「統一民主共和國」을 수립하여 통일의 大業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우리 겨레의 理想과 意思에 맞

고, 남북의 현실에 부합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확신한다.

새 공화국 출범 이후 남북간의 화해와 통일의 轉機를 마련하는데 가장 實効性있는 방법이 남북의 頂上이 서로 만나는 것임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南北頂上會談」이 가능한한 빨리 열려 본격적인 남북협력과 통일의 시대를 열 憲章에 합의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이 현장에서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基本方案, 상호불가침에 관한 사항, 통일의 중간단계로서 남북이 연합하는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가 담겨질 수 있을 것이다.

하루속히 이같은 「民族共同體憲章」이 마련되어 온 겨레 앞에 공포되기를 기대한다.

분단 45년이 되는 내년(주:1990년) 8월 15일까지는 남북이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돌파구를 열어야 하겠다.

오늘날 사회주의국가들도 自由와 人權의 폭을 넓히며 다양한 의사를 대표하는 複數政黨制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은 이념과 체제를 떠난 普遍的 價値이다.

민족의 화해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이 우리의 북한동포에게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그들이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開放의 길로 나설 수도 없고, 우리와 교류·협력·연합하여 민족공동체에 合流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북한은 말로만 평화통일을 외칠 것이 아니라 赤化統一路線을 실질적으로 포기해야 한다. 그것 없이 自主·平和·民主的 統一의 길은 열릴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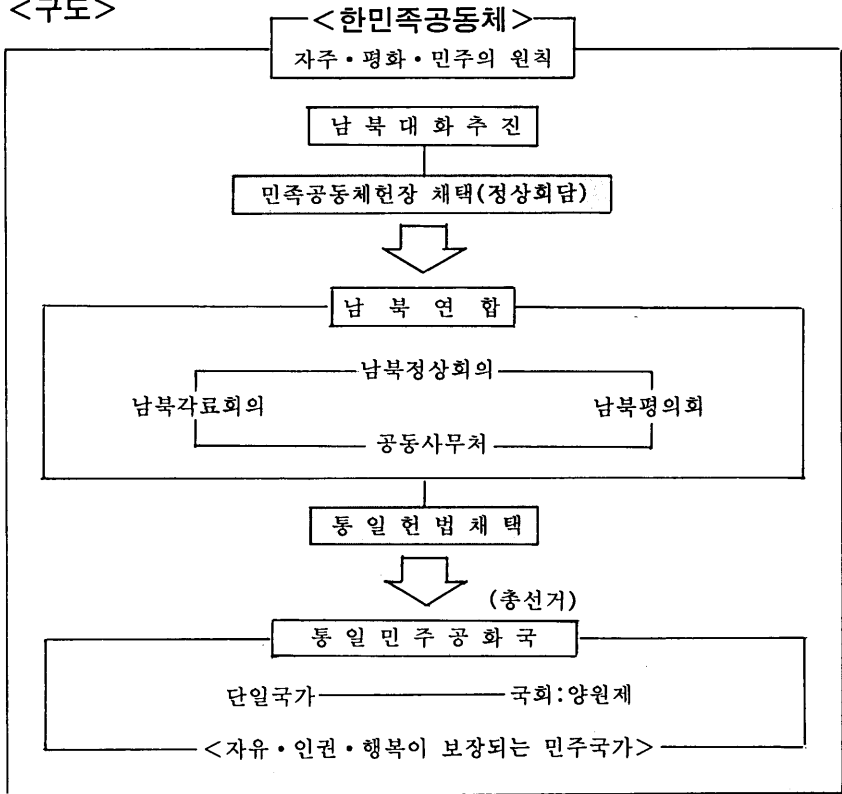
북한이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할 이같은 일을 실천할 경우 남북한관계에 새로운 紀元을 여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민주 번영으로 우리 統一力量이 더 한층 커질 때 분단의 벽은 무너질 것이며, 겨레의 단합된 힘이 통일의 날을 앞당길 것이다.

온갖 고난을 이겨내 오늘의 발전을 이룩한 겨레의 보람 위에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가장 훌륭한 올림픽이 이 땅에서 열렸듯이 온 민족의 至誠이 응집되어 통일의 날은 반드시 다가올 것이다.”

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내용골격을 構圖化하여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²⁷⁾

<구도>



27)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基本構圖”, 統一院, 앞의 자료, p. 33.

① 명칭

한민족공동체(The Korean National Community:KNC)통일방안

② 통일의 3원칙

自主-민족자결의 정신에 따라 자주적으로

平和-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民主-민족 대단결을 도모하고 민주적으로

③ 통일의 과정

공존공영의 토대 위에서 南과 北이 연합하여(南北聯合)

단일민족사회 지향→단일민족국가(통일민주공화국) 건설

④ 과도적 통일체제

○ 명칭: 南北聯合(The Korean Commonwealth)

○ 성격:통일국가 실현의 중간과정

○ 역할:민족의 공존공영, 민족사회의 동질화,
민족공동생활권형성

○ 사회·문화·경제공동체 실현

○ 헌장: 韓民族共同體憲章

• 南北頂上會談에서 채택, 공포

•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본방안, 상호불가침에 관한 사항,
「南北聯合」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남북간의 포괄적인
합의를 규정

○ 「南北聯合」의 기구

• 南北頂上會議(최고 결정기구)

• 南北閣僚會議(협의·조정 및 실행 보장기구)

- 공동의장(남북 총리)과 남북 각기 10명 내외의 각료급
위원으로 구성

- 남북간의 현안문제·민족문제에 대한 협의·조정 및 그
실행 보장

- 5개 상임위원회(人道, 政治·外交, 經濟, 軍事, 社會·文

化分野) 설치

- 이산가족 재결합 문제
- 정치적 대결상황 완화 문제
- 국제사회에서의 민족역량 낭비 방지 및 해외동포의 권익신장 문제
- 남북 사회개방과 다각적인 교류·교역·협력 추진문제
- 민족문화의 창달 문제
- 공동번영의 경제권 형성 문제
-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문제
- 현 휴전협정체제의 평화체제로의 대체 문제 등 협의, 해결

○ 南北評議會(統一 籌備機構)

- 100명 내외로 쌍방을 대표하는 동수의 남북 국회의원으로 구성
- 「남북각료회의」에 대한 자문, 통일헌법 기초 및 통일실현 방법·절차 마련

○ 共同事務處(실무 지원지구)

- 「남북각료회의」와 「남북평의회」의 업무지원, 합의사항 이행을 비롯한 실무문제 관장
- 상주연락대표를 서울·평양에 파견

○ 平和區域 設定

- 비무장지대내에 설정, 「남북연합」의 기구·시설 등 설치
- 「統一平和市」(Unification-Peace City)로 발전

⑤ 통일국가 수립 절차

- 「남북평의회」에서 마련한 통일헌법안을 민주적 방법과 절차로 확정, 공포
- 통일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 실시→통일국회와 통일정부 구성 →통일국가 완성

⑥ 통일국가의 미래상 : 민족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서 각자의 자유·인권·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

○ 국가형태:單一國家

○ 국회구성:兩院制

	上院	—	地域代表性
	下院	—	國民代表性

○ 정책기조

- 民主共和體制(민족성원의 참여와 기회균등 보장, 자유로운主義・主張 표현)
- 민족성원 모두의 복지 증진
- 민족의 항구적 안전이 보장되는 단일민족국가
- 모든 나라와 선린우호관계 유지, 세계평화에 기여

(2)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背景 및 意義

먼저, 새 통일방안의 천명배경을 살펴보자.

1982년 1월 22일에 발표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은 그때까지의 우리 統一政策을 종합, 체계화한 것으로서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비교적 合理的 통일방안이었으나 軍事問題와 中間過程의 設정이 미흡하였다.

한편, 그동안 통일과 관련된 국내외적 여건과 환경도 많이 변화·발전하였고, 「6·29宣言」과 제6공화국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統一問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능동적 접근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즉, 국내적으로는 政治의 민주화추세 속에서 統一論議가 활성화되고,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분출되고 있었다. 특히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北方政策의 활발한 추진 등으로 정부의 自信心이 제고됨으로써, 통일정책추진에 있어서도 보다 發展的인 자세를 가다듬고 있었다.

대외적으로는 東西和解와 공산권의 開放·改革 물결 등 세계질서의 再編움직임에 따라 바람직한 統一環境이 조성되는 한편, 한

반도 주변정세도 남북한관계의 개선과 통일접근에 능동적이고 탄력성있는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제6공화국 정부는 이러한 전반적인 통일여건의 변화에 對應하고 국민적 여망을 수용하여 북한을 對決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통일을 향한 民族共同體의 一員으로 포용한다는 차원에서 發想과 認識의 一大轉換에 따른 적극적인 통일정책을 펴 왔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7·7선언」, 대통령의 「UN총회 초청연설」, 「제44주년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이러한 政策路線이 꾸준히 천명되었다.

비록 北韓政權이 아직도 對南赤化戰略을 포기하지 않고, 화해와 협력을 위한 우리측의 성의와 노력을 외면하고 있으나, 北方外交의 성공적 추진과 민족공동체를 지향하는 우리의 실천조치들을 통해 平和와 統一을 위한 토대가 착실히 구축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時代狀況의 배경아래 정부는 국민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民族共同體의 視角에서 기존의 통일방안을 발전적으로 再定立, 이른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내놓게 된 것이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意義는 무엇인가? ① 국민적 合意基盤위에 형성된 정통성이 있는 제6공화국의 통일방안으로서, ② 分斷終熄의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였고, ③ 統一民族史를 전개하려는 정부와 국민의 自信心을 반영하였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첫째, 국민적 合意基盤위에 형성된 통일방안이다.

통일의 主役·主體는 민족성원 전체이고, 통일국가는 결국 민족 전체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두지 않은 통일방안은 正統性이 있는 통일정책이 될 수도 없으며, 또 국민적 지지기반이 취약하여 推進力을 확보할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방안은 그 합리성·현실성 못지않게 국민의 念願과 意見을 수렴하는 過程과 方法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부는 새 통일방안의 立案을 위해 統一論議를 개방하고 250회에 걸친 세미나, 간담회 등을 통해 학계·언론계·종교계·문화계·경제계·여성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하게 수렴하였다. 특히, 국회 통일특별위원회가 주관한 大公聽會 등을 통해 制度政治圈은 물론 在野의 의견까지도 수렴한 것은 注目할 만하다.

또한, 통일과 관련한 각계의 주장과 언론매체를 통해 발표된 統一論 등 총 426건을 취합하여 분석·정리하였다. 海外同胞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16,8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전문기관의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國民의 輿論을 수렴하였다.

따라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온 국민의 통일여망과 창의와 의지를 최대한 결집하여 창출해 낸 正統性있는 통일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分斷終熄의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남북한간에는 수많은 統一方案이나 相互提議가 있어 왔으나, 領土的·制度的·政治的 접근 등 이른바 ‘冷戰的 視角’의 것들과 지나치게 觀念論的이거나 感傷論的이거나 또는 非現實的이고 一方的인 것들이 많았던 것을 否認할 수 없다.

그 결과, 남과 북은 40여년간 적대와 대결속에 분단상태가 지속됨으로써 민족의 異質化가 심화되고 민족공동체는 계속 훼손되어 왔다. 실로 분단이 계속될 경우 민족공동체가 균열될 위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우리는 더이상 민족공동체의 훼손을 放置함으로써 民族社會가 영원히 분열되는 汚辱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넘겨줄 수 없으며, 이제야말로 분단 민족사를 종식시키고 民族統一의 大道로 나아가는 실천적 방향을 설정해야 할 歷史的인 시점이라는 각성을 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민족통일의 捷徑은 남북이 共有했던 문화와 전통을 회복하고 민족전체의 번영을 도모하면서 궁극적으로 統一國家를 건설하는 것이다. 民族共同體意識이 메말라 버린 가운데에서는 참된 통일민족 국가를 세울 수는 없는 일이다.

이와 같이 민족공동체의 회복·발전을 통한 통일에의 접근을 基調로 하는 새 통일방안의 제시는 理念과 體制의 差異로 인한 남북간의 대결·적대구조를 극복하고 民族自尊과 統一繁榮으로 나아가는 실천적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統一民族史 전개에 대한 국민적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민주화의 진전, 10대 무역국으로의 성장, 그리고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등을 통해 스스로의 位相에 대한 自信感과 自矜心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同胞愛的 차원에서 북한동포의 삶의 質을 높이는 데도 관심을 돌림으로써 성숙된 국민적 역량을 民族雄飛의 디딤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냉전구조속에서 이념과 체제에 집착해 온 세계 여러 나라가 앞을 다투어 和解와 協力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남북한만이 冷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民族力量을 낭비한다는 것은 민족적 자긍심에 비추어서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우리 민족은 스스로의 힘으로 統一問題를 풀어나갈 수 있을 만큼 역량을 갖추었으며, 북한당국도 세계적인 개방과 화해의 물결을 거역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열망을 더이상 외면할 수 없는 限界狀況을 맞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을 民族共同體의 一員으로 포용하여 共存共榮과 平和的 統一의 대열에 同參토록 우리가 이끌고 돕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새 통일방안은 성숙한 國民力量과 民族意識에서 비롯된 자신감과 통일환경의 긍정적 變化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今世紀안에 반드시 統一民族史의 새 章을 열겠다는 국민적 통일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特徵

(가) 統一 3原則의 再確認

自主·平和·民主의 3原則은 국민적 합의일 뿐 아니라 1972년 7월 4일의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남북이 합의한 바 있는 自主·平和·民族大團結을 수용한 것이며, 노태우 대통령의 제4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통일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통일의 원칙이란 통일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받아 들이고 지켜야 할 민족의 입장과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첫째, 自主의 원칙이 제시된 것은,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고 한반도의 主役인 남북한 당사자가 풀어야 할 민족의 문제이며,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 民族自決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주적으로 이룩하는 통일이어야 민족을 위한 민족의 통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족자결의 정신에 따라 自主적으로 통일한다는 것은 결코 友邦과의 기존의 協力關係를 단절하거나 國際社會에서의 고립과 폐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세계 모든 나라가 상호의존관계를 유지하고, 공산권마저 開放化·自由化·民主化를 추구하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더이상 國粹主義的이고 비타협적 자세는 통하지도 않으며 또 참다운 自主를 실현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둘째, 平和의 원칙을 제시한 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남북의 어느 一方이 무력행사나 전쟁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顛覆시키거나 併呑하는 방식이어서는 안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통일만이 민족의 生存과 繁榮을 도모하는 ‘민족을 위한 통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진정한 평화는 무력사용 排除뿐만 아니라 일체의 폭력적 방법도 배제하는 것을 뜻한다.

不幸하게도 우리 민족은 북한의 6·25남침으로 同族相殘의 비극을 겪었다. 이로 인해 남북은 극단적인 불신과 적대관계를 지속해 왔다. 만일 또다시 통일이라는 名分으로 무력이나 폭력이 사용된

다면 민족이 自滅하거나 永久分斷될 위험성이 있다.

노태우 대통령은 「UN총회 초청연설」(1988. 10. 18)을 통해 우리가 먼저 武力을 사용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밝히는 한편, “한반도에서 칼을 녹여 쟁기를 만드는 날, 세계에는 확실한 평화가 올 것”임을 강조하여 地域平和와 世界平和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을 천명함으로써 우리의 평화의지를 국제사회에 재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평화는 우리 一方의 신념이나 의지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 북한당국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確保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民主의 원칙을 제시한 것은, 통일의 과정에서 民族成員의 自由意思가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로써 통일해야 “민족에 의한, 민족을 위한 통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 통일방안에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고 민주적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民主原則을 제시한 것은, 40여년간 적대관계를 지속해 온 남과 북이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계급이나 특정집단만이 주도하는 革命主義的, 獨善的 통일이 아니라 민족적 입장에서 서로 和合의 精神을 가지고 임할 때 비로소 민족대단결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民族大團結이 민족공동체를 회복·발전시켜 국가적 통일로 나아가는 原動力이 되기 위해서는 민족성원 개개인의 基本的 權利가 보장되고 責任이 수반되어야 한다.

필경 민족대단결은 민주 원칙을 구현하는 바탕을 이루게 된다고 할 것이다.

새 통일방안은 자주·평화의 원칙과 함께 민주 원칙속에 ‘민족대단결’을 수용함으로써 「7·4남북공동성명」의 통일 3원칙의 有効性을 확인하는 한편, ‘민족대단결’의 실질적 의미를 규명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民族統一’을 통한 ‘國家統一’ 實現

우리가 통일문제를 올바르게 풀어 나가려면 分斷現實의 認定에서

부터 출발해야 한다. 분단의 지속으로 누적된 남북간의 불신과 갈등을 고려할 때, 통일로 가는 中間過程을 거치지 않고 통일국가를 一舉에 完成하겠다는 것은 感傷的이고 空虛한 名分論에 불과할 뿐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남과 북은 우선 서로 다른 理念과 體制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共存共榮을 도모하여 민족공동체를 회복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한민족공동체’는 현재도 남북으로 갈라진 민족을 하나로 묶고 있는 바탕이며, 우리 민족이 통합을 이루어야 할 當爲이자 이를 보장하는 根本이라는 데서 통일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

새 통일방안은 통일을 原狀復歸的인 공간적 개념의 통일이 아니라, 민족공동체의 회복·발전이라는 未來指向的인 시간적 개념의 통일로 보고, 중간단계의 統一過渡體制를 설정하고 있다는데 특징이 있다.

남북이 이 과도체제에서 통일을 지향하여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여 民族共同生活圈을 형성해 나감으로써 사회·문화·경제적 공동체를 이룩하고, 이같은 單一民族社會가 형성되어 ‘민족통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정치적 통합의 여건을 성숙시켜 궁극적으로 단일민족국가의 건설, 곧 ‘國家統一’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다) 過渡的 統一體制인 「南北聯合」提議

새 통일방안에서 제의한 「남북연합」은 그 자체가 통일국가의 최종형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남북이 상호협력과 공존공영의 관계를 증진시켜 統一基盤을 조성해 나가는 과도적 통일체제이다.

남과 북은 민족공동체라는 하나의 지붕밑에서 연합·연계됨으로써 국제법상의 국가관계가 아닌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를 유지하면서, 안으로는 남북간의 현안문제와 민족의 장래문제를 協議·調整·解決해 나가며, 밖으로는 소모적인 경쟁을 지양하고 민족의 이익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7·7선언」의 제3항에서 “남

북간 교역을 민족내부교역으로 간주”한 것도 이러한 認識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남북연합」은 既存 國際法上의 국가연합(Confederation)이나 연방(Federation)의 古典의 개념이 아니라 통일을 지향한 過渡的이고 特殊한 제3의 결합형태라고 할 수 있다. 즉 1 民族, 2 體制의 연합형태라고 볼 수 있다.

「남북연합」안에서 남북은 각기 外交・軍事權 등을 보유한 주권 국가로 남게 되지만, 수천년 동안 單一民族國家를 유지해 온 우리 민족의 전통으로 보아 「남북연합」은 통일을 지향한 잠정적이고 과도적인 결합형태, 즉 과도적 통일체제라고 할 수 있다.²⁸⁾

(라) 政治・軍事問題의 解決方案 提示

새 통일방안에서는 지금까지 북한측이 주장해 온 통일방안을 고려하고 또 그 일부를 긍정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남북간에 合意의 영역을 넓히려고 하였다. 즉, 「남북연합」의 테두리 안에서 남북한간의 모든 현안문제를 협의・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에서 民族同質性 회복을 위한 교류・협력과 병행하여 정치・군사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방안도 제시하였다.

남북한간에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평화를 제도화하는 일은 상호 신뢰조성 및 교류・협력 증진과도 연관되며, 민족공동체

28) 「南北聯合」의 發想은 國內의으로도 대체로 긍정적인 反應을 불러 일으켰다고 評價되고 있다. 다만,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발표직후 舊平和民主黨은 政治的 視角에서 새 統一方案이 國民的 합의과정을 거쳤느냐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南北聯合」은 “聯合體라기 보다는 사실상 協議體에 불과한 것”이라고 過小評價했다. 또한, “平和共存의 要諦인 軍事對決의 완화를 위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軍事問題 해결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같은 平民黨側의 主張은 3년이 지난 오늘날 「南北基本合意書」의 採擇과 「非核化 共同宣言」 合意로 充足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南北頂上會談이 개최되면, 「南北聯合」方案이 보다 구체화됨으로써 過渡統一體制의 意義와 重要性이 더욱 浮刻될 것이다.

各政黨의 反應에 관해서는 다음 자료를 參考할 것.

國土統一院,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各界 反應 資料(’89. 9. 11.-9. 30)」(서울: 陽東文化社, 1989), pp. 9-13.

를 回復・發展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이다.

새 통일방안은 「남북연합」기구인 「南北閣僚會議」가 “정치적 대결상황의 완화문제”,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문제” 나아가서는 “현 휴전협정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하는 문제”에 대하여 협의・조정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정치・외교와 군사분야를 다룰 常任委員會를 「남북각료회의」안에 둘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남북의 最高統治責任者의 만남인 「南北頂上會談」에서 채택하게 될 「民族共同體憲章」에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본방안”과 “상호불가침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간에 제반분야에서의 교류・협력 추진과 병행하여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軍人士의 상호교류, 고위 군사당국자간의 直通電話 架設 등을 통해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군비경쟁의 지양 및 군비통제,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조치들을 강구하여 平和統一基盤을 마련하는 일은 權限과 責任이 있는 남북한당국이 1차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다.

(마) ‘平和區域’ 및 ‘統一平和市’ 構想 提示

「남북연합」의 발족을 계기로 平和와 統一을 지향하는 민족의 의지를 온 세계에 과시하고, 민족공동체를 회복・발전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共同事業을 추진하기 위해 새 통일방안에서는 비무장지대내 적당한 지역을 ‘평화구역’으로 설정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이 ‘평화구역’에는 「공동사무처」 등 「南北聯合」機構의 建物과 각종 회의장소 등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간의 다양한 交流・協力の 場을 마련하고 쌍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건설해 나감으로써 민족공동체를 지향한 示範地域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京義線 철도를 연결하는

統一驛舍를 건설한다든지, 이산가족들의 만남의 廣場, 民族文化館, 學術交流센터, 商品交易場, 運動競技場, 各種의 共同集會場 등 민족의 화합과 공동번영을 위한 시설들을 이 '평화구역'에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평화구역'은 남북의 합의와 공동노력에 따라 점차 '統一平和市'로 확대·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며, 제2·제3의 '통일평화시'를 건설하여 비무장지대 전체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군사적 긴장이 감도는 오늘의 非武裝地帶를 平和와 統一地帶로, 交流協力の 地帶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바) 既存 統一方案과의 一貫性 維持

우리 통일정책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方案의 內容과 統一接近方法을 달리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基本的으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입각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한다는 정책기조를 지켜 왔다.

즉, 통일의 최종목표인 국가·체제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절차와 방법으로 統一憲法을 확정·공포하고, 그 헌법에 따라 總選舉를 실시하여 '통일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는 總選舉統一論은 歷代政府의 일관된 정책기조였다. 이는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이 민족에 의한, 민족을 위한, 민족의 통일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統一國家의 형태를 결정하고 統一政府와 國會를 구성함에 있어서 민족성원 모두의 참여와 자유의사의 반영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불가결의 命題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 통일정책의 基調는 ① 남북간에 신뢰를 조성하고 긴장완화와 전쟁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평화를 정착시키고, ② 사회개방·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의 화합과 공동번영을 실현시킨 바탕위에, ③ 국가적 통일까지 완성시킨다는 점진적 접근방식을 택해 왔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새 통일방안도 「남북연합」을 통한 民族統攝의 바탕위에 國家統一까지 완성하려는

것으로써, 이는 남북한관계의 현실을 외면한 無條件인 일괄타결 방식과는 대조적이라 할 것이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한편으로는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伸縮性과 實現性에 역점을 두고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과 발상을 전환하여 새로운 정세변화를 구체적으로 수용한 통일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사) 統一祖國의 未來像 提示

새 통일방안에서는 통일된 조국이 민족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한민족공동체’로서 자유²⁹⁾와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民主國家여야 하고 單一國家여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특정집단이나 특정계급의 專橫이나 專制가 없는 民主共和體制를 우리 민족이 응당 선택해야 할 것임을 提示하고 있다. 또한 이념과 체제가 다른 남북체제의 공존을 영구화할 위험이 있는 미완성형 過渡統一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單一民族國家의 완성을 통일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물론, 통일조국의 국호·정치이념·국가형태·대내외정책의 기본방향·정부형태 등은 궁극적으로 민족의 總意로서 채택할 통일헌법에 규정될 사항이지만, 통일조국은 반드시 민족의 自尊과 繁榮을 약속하고 인류의 복리에 기여해야 하므로 민족의 理想과 人類歷史의 進運에 부합되는 통일조국의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특히 통일조국의 政策基調로서 ① 민족성원 전체의 참여와 기회

29) 統一祖國의 未來像으로 제시되고 있는 ‘自由’에 대한 개념에 관해서는 다음 論文이 매우 有益하다. 이 論文은 ‘制約으로부터의 自由’가 아니라 ‘特定한 目標의 달성을 통한 自由’를 ‘적극적 自由’라고 規定하고서, ‘統一된 이 땅에서 民族의 自由와 個人의 自由를 동시에 실현시키는 우리의 自由’란 그 대답이 ‘國民的 對話를 통한 合意’를 바탕으로 해서만 마련될 수 있다는 前提아래 그러한 對話의 실마리로서 다음과 같은 네가지 自由를 例示하고 있다.

① 貧困으로부터의 自由 ② 無知로부터의 自由 ③ 暴力으로부터의 自由 ④ 卑屈로부터의 自由 등이 그것들이다.

李洪九, “統一理念으로서의 民主와 自由”, 李相禹(編), 같은 책, pp. 37-39.참고.

균등이 보장되고, 다양한 主義・主張의 표현이 보장되는 民主共和體制, ② 민족성원 모두의 복지증진, ③ 민족의 항구적 안전보장과 세계평화에의 기여, ④ 모든 나라와 선린우호관계 유지를 제시한 것은, 이것이 비단 우리 통일조국의 미래상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오늘날 모든 정치체제가 추구하고 염원하는 인류의 普遍的 價値라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³⁰⁾

이와 같은 民主福祉國家를 함께 완성하기 위해서는 통일의 道程에서 북한사회의 개방과 민주화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가 된다.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연설」에서 이를 촉구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상 언급한 特徵외에도 새 통일방안은 북한측의 주장을 수용하고 互惠平等的 정신과 相互主義에 입각하여 남북이 對等한 입장에서 민족문제를 더불어 풀어가려는 제도적 장치를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기존의 남북대화वाद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북한측이 주장해 온 ‘정치・군사문제의 先決’을 해결과제로 수용하였고, 「남북연합」의 모든 기구를 남북의 동등한 代表性에 기초하여 同數의 대표로써 구성토록 한데서 새 統一方案의 包容의 입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통일국가수립을 위한 籌備會議에 해당하는 「남북평의회」를 남북 동수의 국회의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는데, 통일헌법의 起草過程에서 쌍방은 각기 構想하는 統一憲法草案을 이 「남북평의

30) 統一祖國이 追求해야 할 理念的 指標로서는 民族主義, 民主主義, 國際主義가 상정된다. 統一國家가 이러한 보편적 原則들을 추구할 때 비로서 民族의 영원한 自尊과 繁榮 그리고 自由가 保障될 수 있으며 동시에 統一祖國의 未來像을 제시하게 됨으로써 統一環境을 造成할 수 있을 것이다.

參考資料: 李容弼, “民族共同體憲章과 統一國家의 理念,” 第6回 美洲地域統一問題學術會議主題發表論文, 國土統一院, 「한민족공동체 形成의 模索」(서울: 輝文印刷, 1990), p. 50.

회」에서 비교·검토하면서 합의를 통해 單一案을 창출해 내고, 이를 6천만 겨레의 總意로써 확정하는 민주적 절차를 밟는다면, 남북한의 人口隔差[4천만(南) 對 2천만(北)]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데서 우리 方案의 公明正大性을 알 수 있다.

끝으로, 「民族共同體憲章」의 성격과 내용면의 특성을 살펴보면, 그것은 「7·4남북공동성명」과 같은 단순한 원칙문제와 기구설치에 대한 합의만을 담는 것이 아니라 ‘통일민주공화국’을 건설할 때까지의 남북관계를 규율하고 정치공동체(國家統一) 형성의 기반인 사회·문화·경제적 공동체(民族統合)를 실현시키는 章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헌장」은 통일에 이르는 남북간의 잠정적인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국제법상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조약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이 「민족공동체헌장」은 그 명칭이 남북협상에서 어떻게 타협·조정되든, 통일을 위한 기본방안이며, 상호불가침에 관한 재확인이고, 「남북연합」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를 담게 될 것이다. 또한 이 「헌장」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확정하되 각기 국회의 동의를 얻어 민족앞에 공포함으로써 발효될 수 있을 것이다. 필경 이는 분단종식과 「남북연합」의 出帆이라는 역사적인 章을 여는 것을 의미한다.

4. 北韓의 統一戰略基調와 「高麗民主聯邦共和國 創立方案」

가. 統一戰略의 基調

종래 북한은 기본적으로 革命戰略의 視角에서 통일문제와 남북한관계를 보아온 것이 사실이다. 공표된 理論이나 主張을 종합해 보면,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으며 ‘先남조선혁명, 後조국통일’노선에 따라 혁명투쟁을 계속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남한을 화합으로 다시 統一・結合해야 할 헤어진 兄弟로서보다는 거의 의도적으로 “反革命勢力的 무리” 또는 “植民地 狀態에서 헐벗고 굶주리는 人民들”로 매도해 왔다.

북한의 혁명주의자들의 논리로는 남한은 해방되어야 할 대상일 뿐이었다. 또한 北韓은 “革命基地”³¹⁾가 되고 南韓은 “反動・反革命勢力的 소굴이며, 美帝強占下의 植民地땅”³²⁾으로, 民族內部的 兄弟關係보다는 革命勢력과 反革命勢力間의 鬭爭關係로 부각시켜 왔다.

따라서 혁명전략차원에서 볼 때 북한에게 있어서 祖國統一의 명제는 한낱 名分的 口號요, 副次的인 課業일 뿐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표방하는 祖國統一은 兩斷된 국토와 민족의 재결합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주의 제도의 수립을 지향하며 ‘朝鮮革命’의 終局的 勝利를 위한 투쟁과업으로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31)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인 도네시아 <알리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한 강의, 1965. 4. 14.(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65), p.36.

32) 같은 책, p.46.

즉, 革命이 上位概念이고 統一은 下位概念으로서 종속되고 있는 것이다.

祖國統一의 과업은 ‘南朝鮮革命’ 과업이 완수되고 ‘全朝鮮革命’ 과업이 실현되는 중간과정에서 제기되는 것으로서 북한의 「朝鮮勞動黨」 주도하에 남한의 聯共政權과 合作統一의 절차를 밟는 외형상의 평화적 통일협상이라고 할 것이다. 북한지배집단 스스로가 주장하는 바 “조국통일은 남조선혁명을 전제로 하는 조국통일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치하의 통일”³³⁾일 뿐이다.

북한지배집단이 표면적으로 공공연하게 표방해 온 南朝鮮革命의 기본성격은 대체로 두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³⁴⁾

첫째, 南朝鮮革命은 아직도 “외래제국주의의 예속하에 있는 우리나라 령토의 절반과 인구의 3분의 2를 해방하기 위한 혁명으로서 전체조선혁명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라는 점이며,

둘째, 南朝鮮革命은 “외래제국주의의 침략세력을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이며 봉건세력을 반대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이라는 점이다. 여기서의 人民民主主義革命이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 단계에서 로동계급이 그의 믿음직한 동맹자인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민주력량을 동원하여 착취계급의 낡은 통치기구를 혁명적 폭력으로 뒤집어 엮는 투쟁”³⁵⁾을 말한다.

教條主義的·革命主義的·階級主義的인 시각에서 정립하고 있는 남조선혁명의 개념과 기본성격 규정은 원천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民族統一·平和統一·民主統一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봐야 한다.

33) 조선로동당,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당의 방침」(평양:조국통일사, 1969), p.36.

34) 金日成의 인도네시아<알리아르함> 사회과학원 강의(1965. 4. 14),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 中央委員會 事業總和報告」(로동신문, 1970. 11. 3) 및 허중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 이론」(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75)을 참고할 것.

35)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평양:1973. 12), p.494.

그러나 이상과 같이 겉으로 표방해 온 북한정권의 戰鬪的 對南 革命戰略의 불변성에만 집착한 나머지 “북한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북한의 대남혁명노선과 적화통일노선은 불변이며 다만 전술적 후퇴나 僞裝變身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식으로 경계 일변도적인 시각을 고수한다면 엄청난 時代的 狀況의 변화와 북한의 전략적 변화요인 및 전개양상을 誤判하거나 看過해 버리는愚를 犯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북한의 統一戰略路線의 변화 촉진문제에 관한 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올바르게 정확히 통찰하는 안목과 접근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북한당국자들의 입이나 선전매체의 소리만 놓고 狀況을 判斷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움직이는 손과 발의 方向도 確認해야 하며 ‘남조선해방’보다는 북한체제의 存續이라는 一種의 生存戰略에 급급한 것이 아닌가라는 관점을 가지고 客觀的 狀況을 정확히 診斷해야 한다는 것이다. 긍정과 부정, 強과 穩, 적극성과 신중성을 겸비하여 역사가 부여하고 있는 和解協力의 기회와 平和統一을 위한 大轉機를 逸失하지 않도록 기민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최근 몇해 동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놓고 보면 누구나 지금이 엄청난 변화의 시대, 개혁의 시대임을 實感하지 않을 수 없다. 韓·蘇修交와 소련 공산체제의 몰락,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및 기본합의서 채택만 놓고 보더라도 과연 북한이 언제까지 教條的인 혁명투쟁노선을 행동으로 고수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특히 최근 북한이 봉착하고 있는 총체적 難局을 감안할 때, 북한 최고당국자의 주목되는 發言(1991年 新年辭中 聯邦制 관련 부분과 制度統一回避 언급부분, 1992年 新年辭中 책임있는 정부당국의 중요성 인정 등)이나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 합의를 위해 북한측이 보인 양보의 자세를 단순히 전

술적 차원의 변화나 후퇴로만 봐야 할 것인지는 좀 더 주목해 봐야 할 것이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이 종래의 攻勢的이고 好戰的인 統一論으로부터 守勢的이고 現狀維持的인 統一論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感知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북한정권이 처한 현재의 상황은 北韓體制의 생존이라는 ‘살아남기’전략에 충력을 경주해야 할 형국이라고 볼 때 남북관계에 있어서 과연 북한이 종래의 先 남조선혁명, 後 조국통일이라는 대남혁명투쟁노선을 언제까지 계속 고수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해 볼 만하다.

이상과 같은 問題意識을 가지고 북한의 이른바 ‘聯邦制’ 統一方案의 변천과정과 그 虛實을 구명해 보고자 한다.

나. 「高麗民主聯邦共和國 創立方案」 分析

“敵으로 하여금 言語의 마술에 걸리게 하라.”는 공산주의자들 특유의 구호전술이 철저히 반영된 것이 종래 북한이 주장해 온 ‘연방제’ 통일방안이었다고 할 수 있다.

회고컨대, 「4·19혁명」후 통일논의의 百花齊放時代에 편승하여 과장적으로 전개한 대남통일심리전 공세속에서 過渡的 對策으로서의 남북연방제 실시제의가 처음 등장하였다. (1960년 8월 14일, 「8·15해방 1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김일성연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80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 6차대회에서 한 김일성연설에서는 남북연방제 실시방안이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이라는 빛좋은 어휘들로 장식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으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어느 누구도 위에서 제기한 光輝로운 정치술어 그 자체에 是非를 걸 수는 없을 것이다. 분명 북한측은 心理戰上 구호적인 어휘

구사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도 일부 국민, 심지어 識者層에서조차 그 방안의 내용을 살펴보기도 전에 “왜, 연방제 제의를 못 받지?”, “연방제가 뭐가 나쁜가? 미국도 연방이고 스위스도 연방이고 통일독일도 연방인데”라는 상투적인 질문을 하는 것을 가끔 접하게 된다.

만일에 남한측이 ‘聯邦制’ 명칭을 구사한 통일방안을 先占하여 제의를 했다면, 또는 1960年代에 북한의 제의를 과감히 수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가정해 보면, 남북한 관계사에 있어서 직대적 심리전의 傷痕이 얼마나 깊은가를 알 수 있다. 북한이 먼저 사용하고 제의한 것은 반사적으로 부정해 버리고, 역으로 남한이 주장하고 제의한 것은 북한이 이를 매도해 버리곤 했던 과거의 冷戰的 사례들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聯邦制’라는 어휘만 들어도 반사적으로 북한의 이른바 연방제 통일방안과 의례 동일시함으로써 不可觸・不可論의 것인양 피해망상증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히 「6・29선언」과 6공화국 출범을 전후로 하여서는 政界와 在野로부터 북한연방제론에 대한 代案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됨으로써 국내 통일논의의 場에 큰 파문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물론, 이런 점에서는 적극적인 上向式 統一論議의 일환으로서 연방제론의 제기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새 統一方案을 成案하는 데 陰陽으로 刺戟劑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金大中 당시 평화민주당 총재의 이른바 국가연합단계를 거치는 연방국가 수립방안인 「共和國 聯邦制論」³⁶⁾이다.

36) 金大中 당시 平民黨총재의 「共和國聯邦制」는 平和統一 3단계(① 平和共存 ② 平和交流 ③ 平和統一)과정에서 완전통일로 가는 과도기적 중간형태를 말한다. 남북한 양지역에 이념과 체제를 달리 하는 완전한 독립정부가 상호인정하에 중앙연방을 설립하는 것, 이것은 각 독립정부위에 권한과 기능이 극히 제한된 상징적인 기구로서 經濟・文化・學術・體育・言論・人道的 交流 등의 權限을 부여받는 말하자면, 國家

물론, 이와는 뉘앙스가 다르지만, 密入北하여 金日成과의 면담을 비롯, 「祖平統」과의 공동성명발표를 통하여 북한의 聯邦制論의 상당부분에 긍정적으로 同調한 것으로 나타난 文益煥 목사의 이른바 「聯邦制 統一 3段階方案」³⁷⁾을 또 하나의 경우로 들 수 있다.

이제, 先入見을 버리고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의 실체를 파헤쳐 봐야 한다. 과연, 그들의 주장이 무엇이며,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참된 연방제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왜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는가? 진실로 연방제 통일을 하자는 것인가? 현실적으로 우리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南北聯合」과는 타협할 수 있는 것인가? 또 蘇聯邦의 붕괴후 성립된 新生 「獨立國家聯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북한의 연방제 주장을 분석·평가해 보기로 한다.

(1) ‘過渡的 對策’으로서의 南北聯邦制論(1960. 8. 14)³⁸⁾

북한이 최초로 주장한 남북연방제 실시 제의 내용은 일반 국제법상에 통용되는 논리와 흡사할 정도로 分斷現實을 인정하는 듯한

聯合(Commonwealth 또는 Confederation)의 성격을 갖는다. 이 형태의 유지속에서 南北共存·交流를 통해 신뢰성과 동질성을 회복시켜 나간 후에 상호이해·조정을 바탕으로 國防·外交權까지 그 권한을 中央政府로 이관하여 완전한 통일국가(Federation)를 이룩하는 것이다. 북한의 「고려연방제」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說明하고 있다.(趙淳昇, “平和民主黨의 統一政策”, 韓國政治學會의 統一理論과 政策심포지움, 月刊「民族知性」(1989년 4월호), pp. 151-154. 참고)

- 37) 文益煥 목사는 「민족통일에 관한 구체적인 제안」을 7단계로 나누어 제시하면서 그 중 4, 6, 7단계를 「연방제통일 3단계」로 설정, 설명하고 있다.
 ① 평화협정체결 ② 미군철수 ③ UN동시가입 ④ 연방제통일 제1단계(金大中씨가 주장해 온 것으로서 大英帝國의 聯邦制와 같은 것.) ⑤ 영세중립화선언 ⑥ 연방제통일 제2단계(金日成이 제안하는 聯邦制案이며 中國이 추구하고 있는 聯邦制統一案과 같은 것.) ⑦ 연방제통일 제3단계(미·소의 聯邦制보다 더 철저한 지방자치제) 문익환,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건설준비위원회가 주최한 <한반도 평화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국민대토론회>에서 발표(1988. 4. 16. 연세대 노천극장), 「理念問題週報」(通卷 第17號, 1988. 5. 17), pp. 49-53. 「자료 2」참고.
- 38) 「8·15해방 1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김일성연설」 전문, 「로동신문」(1960. 8. 15. 자)

인상을 질게 풍기고 있다.

1960년 8월 14일의 金日成 연설가운데 연방제 언급부분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없이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평화적 조국통일의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길이라는 것은 논박할 여지가 없다. … 만일 그래도 남조선당국이 남조선이 다 공산주의화가 될까 두려워서 아직은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먼저 민족적으로 긴급하게 나서는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하여 과도적인 대책이라도 세워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대책으로서 남북조선의 련방제를 실시할 것을 제의한다. 우리가 말하는 련방제는 당분간 남북조선의 현재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독자적인 활동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두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를 조직하여, 주로 남북조선의 경제 문화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련방제의 실시는 남북의 접촉과 협상을 보장함으로써 호상리해와 협조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호상간의 불신임도 없애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실시한다면, 조국의 완전한 평화적 통일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 우리는 인정한다. 특히 이러한 련방제 실시는…… 통일적인 국가적 지도는 못하더라도 이 련방의 최고민족위원회에서 전민족에 리로운 경제 문화적 문제들을 협의하며 남북조선의 경제 문화교류와 호상협조를 보장함으로써 남조선의 경제적 파국을 수습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남조선의 민족경제를 바로 잡으며 도탄에 빠진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긴급한 문제이다.……”

이 제의는 당시 張勉政府가 북한측과의 對話・協商을 원천적으

로 부정함으로써 對共協商不可論의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한측의 수락 가능성은 全無한 상황이었다. 필경 북한측으로서는 마음놓고 平和攻勢에 임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측 제의내용은 사실상 南侵의 張本人이며 국제사회에서 戰犯集團으로 전락한 처지에서 남한측의 수락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배제된 가운데 북한의 평화 이미지 投射戰略과 대남통일공세전략의 측면에서 ‘과도적 대책’으로서 연방제 方案을 제기한 것은 注目을 받을 만한 것이었다.

북한측 주장 내용중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다음 몇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自由總選舉方案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平和統一의 길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이다. 심지어 북한측은 1960년 11월 22일 대한민국국회에 보낸 「최고인민회의」편지³⁹⁾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반드시 자주적으로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없이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총선거는 반드시 일반적이고 평등적이고, 투표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는 민주주의적 선거로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선인민은 자기의 진정한 의사를 대표하는 통일적인 전조선적 민주주의정부를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까지 강조하면서, 이것을 남한측이 접수 못할 상황이라면, ‘과도적 대책’이라도 세워 연방제를 실시해야 되며, 또 그것도 안된다면 ‘순전한 경제위원회’라도 조직하자고 호언한 바 있다.

둘째, 남북연방제는 분명 ‘과도적 대책’이며, ‘당분간’ 두 정치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사실상 통일과정에 있어서 平和共存을 수락하는 표현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39) “대한민국 국회 및 남조선의 제정당·사회단체들과 인민들에게 보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편지(1960. 11. 22. 평양)” 「조선중앙년감」(1961년판) (평양:동평양인쇄소, 1962), pp. 43-48.참고

그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발표후에는 북한측이 ‘과도적 대책’, ‘당분간’이라는 어휘를 더이상 연방제방안과 함께 사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한의 평화공존정책을 ‘분열주의’, ‘두개의 조선조작책동’으로 매도, 맹렬히 비난해 왔던 것은 참으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後述할 것이지만, 1991년에 이르러 金日成 스스로가 ‘두개의 지역정부에 잠정적으로 權限을 더 많이 주는’ 형식의 聯邦制 統一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북한측이 1960년대 초의 ‘과도적 대책’으로서의 ‘南北聯邦制’주장으로 다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인상을 불식할 수 없다.

셋째, 남북한 정부당국 대표들로(이 경우 대한민국이라는 정식 國號를 따옴표속에 표기) 일종의 협의조정기구인 「최고민족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사실상 조약체결의 언급은 없으나, ‘국가연합적 성격’의 남북협력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1970년대초의 「남북조절위원회」 구성은 바로 이와 같은 發想의 연장선상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

아직도 북한측은 정당, 사회단체, 개별인사, 해외동포로 구성하는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를 내세움으로써 1960년대에 정부당국 대표들만으로 구성하자던 「최고민족위원회」 주장은 虛言이었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 대남공작 차원에서 조직한 「祖國統一汎民族聯合」같은 것도 이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북한이 統一戰線戰術次元에서 탈피하지 않고 있음을 일단 확인하게 된다.

넷째, 남북한 협의조정기구이며 동시에 中央政府格인 「최고민족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內治權・外交權・軍事權(軍統帥權)의 영역을 전혀 침해하지 않고, 다만 경제・문화분야 발전의 ‘통일적 조절’에 국한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남북접촉과 협상의 보장, 상호이해와 협조가능, 不信解消,

經濟·文化交流과 직결된 현실적인 조절기능을 중시한 것으로서 그후 북한측이 주장을 바꿔 政治·外交·軍事權의 단일화를 내세운 「고려민주연방공화국」방안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북한은 과도적 대책으로서의 남북연방제 실시제의를 통해 對南·對外的으로 선전효과를 얻는 한편, ‘연방제’어휘의 사실상 독점을 통하여 총선거통일방안 대신에 연방제통일방안을 점차로 대체시켜 나갈 戰略的 立地를 확보한 셈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⁴⁰⁾

이는 1970년대 제1기 남북대화시대의 개막을 전후로 국내외일각에서 ‘연방제’라는 세글자를 놓고 術學的인 서방측 개방사회 知識人들이 제멋대로 해석하는 현상을 보임으로써⁴¹⁾ 북한의 연방제론 자체를 일반 국제법상의 연방제와 동일시함으로써 마치 그것이 平和志向的, 統一志向的, 民主主義的 發想인 양 의미를 부여하는 愚를 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高麗聯邦共和國」單一國號의 南北聯邦制論(1973. 6. 23)⁴²⁾

1961년 「5·16軍事革命」으로부터 1971년 8월 南北赤十字會談의 서막이 올릴 때까지 참여화된 남북대치상태는 통일심리전의 냉각기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美·中和解의 진전과 제1기 남북대화시대의 개막으로 水面下에 들어갔던 북한의 聯邦制 主張은 또다시 水面위로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40) 俞完植, “共產黨의 統一戰線戰略에서 본 北韓의 聯邦制 評價”, 국토통일원, 앞의 책, p.52.

筆者는 북한이 남북대화 이후에는 「남북연방제」를 사실상 유일한 통일방안으로 들고 있으며 이는 「남북연방제」안이 1960년대에는 선전적, 전술적 차원에 불과한 것이었다면, 1970년대에는 전략적 차원의 것임을 뜻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41) 朴奉植 “북한연방제 제의의 대남전략적 底意”, 국토통일원, 「北韓의 南北 聯邦制 批判 심포지움 結果報告」(1980. 9), p.69.

42) “민족의 분열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체스꼬슬로벤스꼬 사회주의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한 김일성의 연설, 1973. 6. 23), (「資料로 본 北韓, 1945~1988」, 「신동아」, 1989년 1월호 별책부록, pp. 295-298)

북한측은 1972년 5월 남북고위급 비밀접촉과 同年 11월 남북조절위원회 평양회담 기간중 金日成이 우리측 대표들과의 談話에서 조국통일의 3대원칙과 북과 남 사이의 合作實現 문제를 언급하는 가운데 政治合作을 실현하기 위한 統一方案을 거론했다고 한다.⁴³⁾

이 談話에서 김일성은 ‘政治合作’ 優先論을 제기하고 경제·문화 합작과 군사문제(긴장상태 완화 및 군비를 줄이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간에 정치합작을 실현해야 하는데, 그 방안으로서 남북연방제를 거론했다는 것이다.

김일성이 政治合作으로서의 南北聯邦制를 언급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⁴⁴⁾

“... 우리가 생각하는 남북연방제는 지금 남에 존재하고 있는 정치체도를 당분간 그대로 두고 하나의 통일국가를 만들자는 것이다. 북과 남의 각 정당·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각층 대표들, 저명한 인사들이 광범히 모여 최고민족회의를 조직하고 거기에서 민족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들을 공동으로 토의하여 결정하며 대외적으로 하나의 구호를 가지고 활동하면 연방제가 될 것이다. 연방국의 국호는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고려라는 이름을 살려 고려연방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남북연방제가 실시되면, 북과 남사이의 관계와 합작이 모든 분야에 걸쳐 전면적으로 실현될 것이며, 우리민족의 대외적 권위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하나의 민족인 우리가 무엇때문에 대외적으로 두개 나라로 활동하여야 하겠는가? 나는 우리나라가 분열된 상태에서 북과 남이 제각기 유엔에 들어가는 것을 절대로 찬성하지 않는다. 앞으로 연방제에

43) 김일성,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대하여:북과 남사이의 고위정치회담에 참가한 남조선측 대표들과 한 회담(1972. 5. 3, 11. 3)”, 「김일성저작집(27)」(1972. 1.~1972. 12)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4. 15), pp. 163-193. 참고.

44) 같은 책, pp. 191-192.

대하여 구체적인 문제를 더 논의하면 보다 좋은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 담화내용을 보면, 「7·4남북공동성명」에서 南北韓이 합의한 남북조절위원회 기구의 성격과 기능을 감안할 때, 정치합작으로서의 남북연방제 발상과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直視하게 된다. 또한 ‘高麗’라는 국호를 이미 구상하고 있었고 연방제가 실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유엔 個別加入 또는 同時加入에 대한 반대입장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73년에 접어들어 「7·4남북공동성명」의 합의가 사실상 同床異夢의 드라마로 轉落해 감으로써 구체적 실천이 뒤따르지 못하고 南北對話마저 論爭과 誹謗의 늪으로 빠져 들어 교착상태에 봉착하게 되었다. 당시의 상황은 한편으로는 제1기 남북대화시대의 終幕을 내다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국제적 和解氣流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치열한 外交競爭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발표된 것이 1973년 6월 23일 이른바 「조국통일 5대강령」이었다. 그날 오전에는 대한민국정부가 大統領特別宣言을 통해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前提下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불반대 등을 내용으로 한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⁴⁵⁾을 발표하였다. 같은 날 오후에 북한측이 발표한 이 「5대강령」선언은 한국측의 「6·23선언」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으로서 한국의 「6·23선언」의 호소력을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5대강령」의 제시로 封鎖 내지 相殺시키려고 한 것이 분명하다.⁴⁶⁾

45) “平和統一外交政策에 관한 特別聲明(全文), 1973. 6. 23.”, 南北調節委員會, 「南北對話白書」(서울:大韓公論社, 1978), pp. 261-264. 참고

46) 김일성은 1973. 6. 25. 조선로동당 정치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남조선당국자들이 들고 나온 반민족적인 주장을 제때에 단호히 짓부서 버리고 온 민족앞에 조국통일의 확고한 전망과 뚜렷한 방도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였다.”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난 6월 23일 오후에 새로운 구국대책으로서 조국통일 5대방침을 내놓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김일성, “조국통일 5대방침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한 연설, 1973. 6. 25.”, 「김일성 저작집(28)」, p. 398)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총비서 후사크의 북한방문을 환영하는 평양시 群衆大會에서 행한 김일성연설에서 「祖國統一 5大綱領」이 발표되었는데, 그중 4항과 5항이 단일국호하의 남북연방제 관련 제의내용이다.

“당과 공화국 정부의 자주적 평화통일 방침을 새로이 내외에 천명한다.”고 전제한 이 선언은 1.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 2. 다방면적 합작과 교류실현 3. 대민족회의 소집 4. 단일국호의 남북연방제 실시 5. 단일국호에 의한 유엔가입 등 5개 강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3항과 4항, 5항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⁴⁷⁾

“3.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의 광범한 각계각층 인민들이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애국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다만 북과 남의 당국자들사이의 범위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벌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북반부의 로동자, 근로농민, 근로인테리, 청년학생, 병사들과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군인, 민족자본가, 소자산계급과 같은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를 소집하여 여기에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광범히 협의하여 해결할 것을 제의한다.

4. 오늘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연방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47) 김일성, “민족의 분열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체코슬로벤스꼬 사회주의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한 김일성의 연설, 1973. 6. 23), 「김일성 저작집(27)」, pp. 390-392.

나라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에는 물론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조성된 조건에서 대민족회의를 소집하고 민족적 단결을 이룩한데 기초하여 북과 남에 현존하는 두 제도는 당분간 그대로 두고 남북연방제를 실시하는 것이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로 된다고 인정한다.

남북연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연방국가의 국호는 우리 나라의 판도우에 존재하였던 통일국가로서 세계에 널리 알려진 고려라는 이름을 살려 고려연방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것은 남북쌍방에 다같이 접수될 수 있는 좋은 국호로 될 것이다.

고려연방공화국의 창설은 나라의 분렬을 막고 북과 남사이의 관계와 합작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며 완전한 통일을 앞당기는 길에서 결정적인 국면을 열어놓게 될 것이다.

5. 우리는 분렬이 고착되어 우리 나라가 <두개 조선>으로 영원히 갈라지는 것을 막아야 하며 대외관계분야에서도 북과 남이 공동으로 나가야 한다고 인정한다. 우리는 유엔에도 북과 남이 각각 들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나라의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유엔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적어도 연방제라도 실현된 다음 고려연방공화국의 국호를 가지고 하나의 국가로 들어가야 한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유엔가입문제와는 달리 유엔에서 조선에 관한 문제가 상정토의되는 경우에는 응당 우리 공화국대표가 당사자로서 거기에 참가하여 발언을 하여야 할 것이다.”

1960년 8월 14일 연설과 1973년 8월 23일의 연설내용을 비교할 때, 연방제론의 내용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음을 感知하게 된다.

첫째, 남북한 自由總選舉가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통일방안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대신 남북연방제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로 美化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총선거’라는 어휘조차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나라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에는 물론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정도로 얼버무리고 있다. 이는 總選舉統一方案의 포기인가, 거부인가? 아니면 회피인가?를 정면으로 따져야 할 부분으로서 북한이 최종적 통일 실현방안으로 留保하고 있는지, 북한측의 속셈이 무엇인가를 계속 注視해야 할 대목이다.

왜 북한은 남북한 총선거방안의 언급을 회피하는 것일까?

특히 최근의 舊蘇聯을 비롯한 東歐의 改革도미노 현상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 自由選舉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민주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정치적 통일국가 수립단계에서의 남북한 自由總選舉 實施는 당위의 命題로 부각시켜야 마땅하다. 또 북한이 이를 받아들여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과도적 대책’이라는 어휘가 빠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신에 「大民族會議」를 소집하고 민족적 단결을 이룩한 데 기초하여 현존하는 두 제도를 ‘당분간’ 그대로 둔다는 언급만 하고 있을 뿐이다.

‘당분간’이라는 어휘는 평화공존적 단계 설정으로 이해되는 ‘과도적 대책’이란 어휘의 소멸을 눈가림하기 위한 代替用語로서 그 뉘앙스가 다르다. 또한 현존하는 두 제도의 차이를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지만, 필경 민족적 단결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공산주의 합작통일방식에 따라 聯共의 길, 親共의 길, 吸收의 길을 가게 마련인 한, 용어혼란전술의 구사임을 감지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이라는 어휘가 存續되는 한, 그 의미는 과도적인 중간단계를 설정하는 셈이 되며 共產主義式 統一戰線 戰術次元을 떠나 일반 국제법상의 논리로 보면 상호주권존중, 정치적·법적승인의 의미가 강한 것을 否認할 수 없다. 말하자면, 혁명논리와 국제법상의 논리와의 모순성을 그대로 露呈시키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논리는 김일성 연설내용 가운데 “고려련방공화국 창설은 완전한 통일을 앞당기는 길에서 결정적인 국면을 열어놓게 될 것이다.”라는 언급에서도 확인된다. 즉, 完全統一로 가는 과정에서 不完全統一이라는 중간통일형태의 불가피성을 스스로 인정함으로써 논리상 남한의 존재를 승인하는 입장에 서게 되는 셈이다.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한다면서 유엔동시가입은 안된다는 논리는 “두 개의 조선”은 곧 “분렬주의조선”이라고 비난해 온 스스로의 논리를 정면 부정하는 셈이 된다. ‘당분간’이라는 어휘는 북한 스스로도 목안의 가시처럼 느끼면서도 일단 이 용어를 ‘과도적 대책’이라는 강렬한 平和共存的 合成語 대신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정부대표로 구성하는 「최고민족위원회」가 사라지고, 대신 群衆集會形式의 「대민족회의」가 나타나고 있다. 또 경제·문화분야뿐만 아니라 대외관계에 있어서의 ‘共同步調’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2항에서는 정치·군사·외교분야 전반의 남북합작을 언급) 이는 사실상 대한민국정부의 대표성과 권위·권능을 인정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이며, 더 나가서는 이를 무시하는 處事인 것이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1972년의 남북고위급정치회담 대표들과의 담화에서 언급한 「最高民族會議」은 남북조절위원회를 정부 당국간의 협의조정기구로 간주하는 視角에서 일종의 過渡的 統一議會(물론 북측은 정당·사회단체의 정치협상회의를 상정한 것이지만)의 형태와 흡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이미 북한측은 사실상 대한민국정부를 노골적으로 타도의 대상, 교체해야 할 政權으로 매도하지는 않고 있으나, 그러한 의도를 깔고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1970년 11월 2일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김일성의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해”라는 題下의 보고연설⁴⁸⁾을 통하여 대한민국정부를 “現 反動政權”으로 매도하고 있으며, 이를 “뒤집어엎고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세움으로써 남조선혁명의 목적을 이룩하고자 할 것”이라고 호언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美帝의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며, 현 군사팃썬독제를 뒤집어엎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여 남조선에 참다운 人民政權이 서면, 공화국 북반부의 사회주의 력량과 남조선의 애국적 민주력량이 단합된 힘에 의하여 우리조국의 통일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吐露했다.

전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남조선혁명의 당면과업에 남한정권은 “뒤집어엎어야 할” 타도대상임이 분명함에도 南北聯邦制 統一方案提議에서 만큼은 의도적으로 빼거나 우회적 표현을 구사함으로써 북한측은 연방제 제의공세를 加熱化하고 있다. 이 점은 국내 통일 논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거론되어야 할 대목이다.

한편, “대의관계에 있어서의 共同步調”나 “정치·군사분야의 合作”을 언급한 것은 1960년대의 南北聯邦制 실시제의시 정치·외교·군사분야 문제를 제외한 것과는 判異한 事項이다. ‘당분간’이라는 전제하에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가장 민감하고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정치·외교·군사분야의 中央統制權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 留意해야 한다.

요컨대, ‘당분간’이라는 어휘를 제외하고는 1960년대의 ‘과도적 대책’으로서의 남북연방제는 본질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연방제방안의 명칭만큼은 진일보시킨 반면, 알맹이를 거의 다 다른 것

48) 김일성,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1970. 11. 2.”, 「김일성 저작집(25)」 (1970. 1.~1970. 12)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4), p.311. 및 p.314.

으로 代替시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즉, 羊頭狗肉의 聯邦制로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고려연방공화국」의 單一國號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일단 남북연방제 통일방안의 명칭을 한 차원 발전시킨 것이다. 新羅의 三國統一과 비교되는 高麗의 後三國統一을 연상시키고 있다. 외세를 끌어들이는 신라의 무력통일에 비판적인 사람들로부터 ‘고려’라는 국호는 好感을 주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동시에 북한은 통일을 위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國號까지도 과감히 버릴 용의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유도함으로써 統一志向의 인상을 부각시킬 수 있는 好材의 用語를 구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單一國號下의 UN加入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의 UN同時加入 주장을, 前述한 바와 같이 ‘두개 조선 조작 책동’으로 매도함으로써 北은 統一志向의인 반면 南은 分裂志向의임을 선전함과 동시에 사실상 연방제에 대한 남한측의 실질적 거부를 유도하기 위한 二重的 戰略布石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聯共合作的 「高麗民主聯邦共和國 創立方案」(1980. 10. 10)⁴⁹⁾

북한의 南北聯邦制 통일방안과 관련, 6次 黨大會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통상 10년 주기로 열리는 黨大會라는 점 보다는 1970년대 제1기 남북대화 시대를 마감하고 1980년대를 시작한 첫해로서 북한정권 수립이래 前例없이 방대하고도 구체적인 통일방안을 북한측이 내놓았기 때문이다. 「高麗民主聯邦共和國 創立方案」으로 통칭되는

49)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1980. 10. 10.」중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 제하의 내용(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4), pp. 338-356.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기존의 통일방안·제의를 총체적으로 修正·體系化한 ‘唯一無二’의 方案으로 제시되었던 것이다.

이는 1970년대에 줄곧 선전해 온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의 方向 및 북한의 전략적 입장의 변화전망과 관련하여, 내외의 관심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1980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제6차대회 중앙위원회에서 행한 김일성의 사업총화보고중 南北聯邦制 제의내용은 크게 다음 두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先決條件의 제시 둘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제시 (△ 연방형성의 원칙 △ 연방기구의 구성, 임무 및 기능 △ 연방국가의 국호 및 대외정책 노선 △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10大 施政方針」)로 나눌 수 있다. 이제 그 주요내용을 부분별로 요약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自主的 平和統一’을 위한 先決條件의 提示

김일성은 우선 조국통일을 黨앞에 제기된 “가장 중요한 혁명임무”라고 못박고, “우리세대가 반드시 조국을 통일한다는 확고부동한 결의에 기초하여…… 적극적인 투쟁을 벌였으며” 그 결과 1970년대에 북한의 “주동적인 발기와 노력에 의해” 남북대화가 열리고 勞動黨이 제시한 조국통일 3대원칙이 “민족공동의 유일한 통일강령”으로 됨으로써 “전민족적 범위에서 조국통일기운이 급격히 높아졌다.”고 정세를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조선 전체인민들의 양양된 투쟁기세에 접을 먹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통일을 지연시키고 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하여 <두개 조선>정책을 들고나옴으로써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엄중한 난관이 가로 놓이게 되었다.”고 吐露하고 있다.

따라서 “國土兩斷과 民族分裂의 비극을 끝장내며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분렬주의자들의 <두

개 조선> 조작 책동을 저지파탄시키며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하는 것이 중심과업으로 나서게 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남북조선인민들과 전체 조선민족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정세판단 아래 다음과 같은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先決條件의 充足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① 南朝鮮의 軍事파쇼統治 清算 및 社會의 民主化 實現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팻쏘적인 악법들을 폐지하고 모든 폭압통치기구들을 없애버려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을 합법화하고 정당, 사회단체, 개별적 인사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체포투옥된 민주인사들과 애국적인민들을 석방하고 그들에게 가해진 모든 형벌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유신체제>를 청산한 기초 위에서 군사팻쏘<정권>을 광범한 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의를 옹호하며 대변하는 민주주의적인 정권으로 교체하여야 할 것이다.”

② 緊張狀態의 緩和 및 戰爭危險의 除去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전쟁위험을 가시는 것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는 문제는 오직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꿈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다. 우리는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협상할 것을 미국에 다시 한번 제의한다.…… 미국당국자들은 남조선에서 자기의 군대를 하루 빨리 철거함으로써 미국인민을 포함한 세계인민들의 일치한 념원과 의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할 것이다.”

③ 自主·平和統一·民族大團結의 3大 原則에 基礎한 統一實現

“우리는 7·4남북공동성명에서 북과 남이 공동으로 천명한 숭고한 리념과 원칙에 기초하여 그리고 나라의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있는 우리나라의 구체적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가장

빠르고 확신성있는 조국통일방도를 찾아야 하며 적극적인 노력으로써 그것을 실현하여야 한다.”

(나) 「高麗民主聯邦共和國 創立方案」의 提示

① 聯邦形成의 原則

“우리 당은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는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련합하여 하나의 련방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인정한다.

해방 후 오늘까지 북과 남에는 오랜 기간 서로 다른 제도가 존재하여 왔으며 거기에서는 서로 다른 사상이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민족적단합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면 어느 한쪽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화하지 말아야 한다. 한나라안에서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살수 있으며 하나의 통일 국가안에 서로 다른 사회제도가 함께 존재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결코 남조선에 강요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복종시킬 것이다.

우리 당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할 것을 주장한다.”

② 聯邦機構의 構成, 任務 및 機能

“련방형식의 통일국가에서는 북과 남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 대표들로 최고민족련방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련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을 지도하며 련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최고민족련방회의와 그 상임기구인 련방상설위원회는 련방국가

의 통일정부로서 전 민족의 단결, 합작, 통일의 념원에 맞게 공정한 원칙에서 정치문제와 조국방위문제, 대외관계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 리익과 관계되는 공동의 문제를 토의결정하며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단결과 합작을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은 련방정부의 지도밑에 전민족의 근본리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며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③ 聯邦國家의 國號 및 對外政策路線

“련방국가의 국호는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 나라 통일국가의 이름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과 남의 공통한 정치리념을 반영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어떠한 정치군사적동맹이나 끌럭에도 가담하지 않는 중립국가로 되어야 한다.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가지고 있는 북과 남의 두 지역을 하나의 련방국가로 통일하는 조건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중립국가로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며 또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것이다.”

④ 高麗民主聯邦共和國의 10大 施政方針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서 제시한 10대 시정방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自主的 政策 實施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그 어떤 나라의 위성국으로도 되지 않으며 그 어떤 외세에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끌럭불가담국가로 되어야 할 것이다.”

2 全地域·社會의 民主主義 實施 및 民族의 大團結 圖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독재정치와 정보정치를 반대하고 인

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 보장하는 민주주의적인 사회정치 체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련방국가는 정당, 사회단체의 조직과 활동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며 북과 남에 살고 있는 인민들이 나라의 모든 지역을 자유로이 오고 가며 임의의 지역에서 정치, 경제, 문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련방정부는 통일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북과 남의 어떠한 단체나 개별적 인사에 대하여서도 과거를 묻지 않고 단결하여 나가며 어떤 형태의 정치적보복이나 박해도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3. 經濟的 合作과 交流 實施 및 民族經濟의 自立的 發展 保障

“련방정부는 북과 남에 있는 국가소유와 협동단체소유, 사적소유와 개인소유를 다같이 인정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자본가들의 소유와 기업활동에 대해서도 독점과 매판 행위를 추구하지 않고 민족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에서는 그것을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북과 남의 당국 또는 기업체들 사이에 공동회사, 공동시장 같은 것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4. 科學, 文化, 教育分野의 交流協調 實現 및 科學技術과 民族文化藝術, 民族教育의 統一的 發展

5. 交通·遞信의 連結 및 全國的 範圍의 交通·遞信手段의 自由로운 利用保障

“련방국가는 북과 남을 연결하는 철길과 자동차길을 복구하고 배길과 비행기길을 개설하여 땅과 바다, 하늘을 통한 북과 남사이의 자유로운 래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북과 남의 전지역에 걸쳐 전신, 전화가 통하고 우편물이 자유로이 오고가도록 하여야 한다.”

6. 勞働者・農民을 비롯한 勤勞大衆과 全體人民들의 生活安定 圖謀 및 福祉의 系統的 增進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하여 주며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중산층의 생활수준으로 끌어올려 전체 인민이 다 잘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련방국가는 로동능력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업을 알선해 주고 로동조건과 휴식조건을 마련해주며 근로자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제도와 가격정책, 공정한 세금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영세농어민들과 소상공인, 수공업자들의 경리를 국가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련방국가는 근로자들의 교육과 건강증진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국가적인 보상대책을 세워 모든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병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軍事的 對峙狀態 解消와 民族聯合軍 組織 및 外來侵略으로부터의 民族保衛

“쌍방의 군대를 각각 10만~15만명으로 줄여야 한다. 이와 함께 북과 남을 갈라놓고 있는 군사분계선을 없애고 그 일대의 모든 군사시설을 제거하며 북과 남에 있는 민간군사조직들을 해산하고 민간군사훈련을 금지하여야 한다.

련방국가는 조선인민군과 남조선 <국군>을 통합하여 단일한 민족연합군을 조직하여야 한다. 민족연합군은 북과 남의 어느쪽에도 속하지 않는 통일국가의 민족군대로서 련방정부의 통일적인 지휘밑에 조국보위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민족연합군을 유지하며 조국을 보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부담을 북과 남이 공동으로 져야 할 것이다.”

8. 海外同胞들의 民族的 權利와 利益의 擁護

“민주주의적 민족권리를 위한 투쟁의 지지성원 및 조국에로의 자유래왕 및 거주·활동의 권리 보장”

9. 統一以前의 對外關係의 處理 및 두 地域政府의 對外活動의 統一的 調節

“또한 통일이 된 다음에도 북과 남이 일정한 범위에서 각각 다른 나라들과 독자적인 대외관계를 가지게되는 조건에서 련방정부가 두 지역정부의 대외활동을 통일적으로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이 통일이전에 다른 나라들과 일방적으로 맺은 군사조약을 비롯하여 민족적단합에 배치되는 모든 조약과 협정들을 폐기하여야 한다. 북과 남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 가운데서 경쟁관계를 비롯하여 민족공동의 이익에 어긋나지 않는 대외관계는 계속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이 사회제도에 관계없이 다른 나라들과 경제적으로 합작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련방국가는 나라가 통일되기전에 남조선에 투자한 다른나라의 자본을 다치지 말며 그 권리를 계속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10. 平和愛護的 對外政策의 實施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대외관계에서 전체 조선민족을 유일적으로 대표하여야 한다. 련방국가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에 전조선민족을 대표하여 참가하며 전민족을 대표하여야 할 모든 국제적인 행사들에 유일대표단을 보내야 할 것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중립로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빨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며 자주성과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 평화공존의 원칙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인접한 나라들과의 선린관계를 적극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연방국가는 우리 나라 령토에 다른 나라 군대의 주둔과 다른 나라 군사기지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으며 핵무기의 생산과 반입, 그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조선반도를 영원한 평화지대로, 비핵지대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제기한 후 金日成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창립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勞動黨뿐만 아니라 남북한 그리고 해외에 있는 모든 동포들이 사상과 제도, 黨派와 政見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의 旗幟아래 하나의 ‘民族大統一戰線’에 굳게 뭉쳐 투쟁할 것을 선동하는 것으로 매듭을 짓고 있다.

(다) 北韓의 似而非 聯邦制論의 虛와 實 評價

1980년대의 북한의 聯邦制提議는 과거 1960년대 및 1970년대와 비교할 때 다음 몇가지 점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방안의 명칭과 구성내용이 형식과 구성체계 자체에서부터 차이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1970년대의 「高麗聯邦共和國」이란 國號에 ‘民主’라는 광휘로운 어휘를 추가 삼입하여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더욱 선전효과를 노리고 있다. 또한 ‘창립방안’이라는 어휘가 말해 주듯이 종래의 통일방안은 복합적인 내용으로서 연방제방안을 ‘그중의 일부분’으로 내세웠으나, 이제는 연방제통일국가 창립방안이 ‘유일무이’한 최상의 통일방안이며 이 청사진속에 종래의 통일방안의 주요내용들을 선택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5대 강령」을 예로 들어 보면, 제1항(군사적 대치상태 해소)은 先決條件에 포함시키고 있고, 제2항(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은 통일국가의 「10大 施政方針」에, 제3항(대민족회의 소집)은 연방기구인 「最高民族聯邦會議」 구성안과 「民族大統一戰線」 형성·투쟁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제4항(단일국호의 남북연방제 실시)과 제5항(고려연방공화국 단일국호에 의한 유엔가입)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란 명칭 자체와 연방구성원칙 등에 反映하

고 있는 것이다.

1960년대에 총선거통일을 전제로 한 과도적 대책의 남북 연방제를 전술적으로 들고 나왔던 사실을 想起할 때, 1980년대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하나의 統一完成型 연방국가를 창립하기 위한 종합설계도와 같은 것으로 부각시켰다.

方案의 내용구성이 우선 상당히 방대하며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종래에 “내용이 모호하고 구체성도 없다.”는 비판을 무색케 할 정도이다. 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선전의 효과를 겨냥한 것이었다.

연방구성의 원칙, 연방기구의 구성방안과 기능 및 통일정부의 施政方針 등의 제시로 일반국제법에 해당되는 연방제는 아니지만 북한식의 독특한 연방제이론을 정립하여 제시하는 것인 양 받아들일 소지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통일국가의 「10大 施政方針」은 통일조국의 미래상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북한의 연방제론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그들의 主張과 論理가 상당히 구체적이며 통일지향적이라는 인상을 줌으로써 현혹될 소지가 큰 것이다.

요컨대, 「고려민주연방제」는 명칭과 내용구성에 있어서 일단 量과 質에서부터 종래에 비해 훨씬 구체적으로 다듬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둘째, 북한이 「고려민주연방제」를 唯一無二의 最上의 統一方案으로 부각시켰다는 사실⁵⁰⁾은 곧 南北韓 自由總選舉方案의 포기를 意味한다고 할 수 있다.

1970년의 경우 그나마 통일방안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식의 표현으로 일말의 융통성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50) 「로동신문」(1983. 9. 10. 字)

김일성은 1983년 「9·9월 연설」중에 “고려민주공화국만이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확신하며, 따라서 우리나라의 통일은 반드시 이 방안에 따라 하루 빨리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80년대의 경우에는 ‘총선거’라는 어휘는커녕 그 가능성마저도 배제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투표와 자유총선거를 前提한 統一憲法의 마련을 제시한 우리의 통일방안을 감안할 때, 북한의 연방제론은 聯邦憲法의 채택마저 회피함으로서 사실상 선거개념의 차단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聯邦憲法도 없는 聯邦’, ‘聯邦裁判所도 없는 聯邦’, ‘국민의 意思도 묻지 않는 선거없는 無條件 合作統一’의 方式인 限, 그것은 순수한 연방제논리도 아니며 오히려 총선거통일의 거부를 의미할 뿐이다.

요컨대,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은 1960년대에는 당시 최상의 統一方案이었던 南北韓自由總選舉의 下位概念으로써 출발한 것인데, 1970년대에는 오히려 上位概念으로 顛倒되었고, 급기야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총선거방안을 默殺, 放棄함으로써 唯一最上の 개념으로 둔갑시켰다고 할 것이다.

셋째, ‘과도적 대책’이라든지 ‘당분간’이라는 이른바 통일의 중간 단계조치를 상징해 온 어휘들이 완전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대신에 ‘하나의’ 통일국가, 통일정부를 강조함으로써 완전히 통일을 이룩한 새로운 통일중립국가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민주’라는 빛나는 어휘를 덧붙여 國號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또 한단계 발전시킴으로써 선전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것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단절된 폐쇄와 적대의 과거를 청산하는 화해·협력·교류의 실시조치도 전혀 없이, 또다시 피를 보지 말자는 무력불가침·불행사의 保障도 없이, 그리고 당분간 平和共存의 지혜를 함께 터득하는 중간과정을 거침도 없이 곧바로 연방국가를 수립한다는 것은 실로 주춧돌과 기둥과 서까래도 없이 지붕을 올리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는 平和共存을 分裂主義·分斷固着化로만 매도하는 單細胞的 發想이 아직도 북한당국의 뇌리에 깊숙히 자리잡고 있었음을 反證해 주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북한측 연방제주장이 본질

상 ‘남조선 혁명’노선에 논리적으로 모순관계에 있었던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이를 뒤늦게 교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先革命 後統一’路線을 계속 固守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도 할 것이다.

넷째, 연방국가를 최종적인 통일완성형 국가로 설정함으로써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모순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으로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용납하는 원칙위에서 연방정부를 수립한다고 전제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통일국가의 施政方針으로 「국군」과 「인민군」을 통폐합하여 「민족연합군」을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二律背反的이며 不可兩立的인 臆說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결코 남조선에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豪言은 그만큼 聯共合作의 통일노선을 不知不識간에 암시하는 我田引水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10大 施政方針」中 第9項의 표현, 즉 “통일되기 전 남조선에 투자한 다른 나라의 자본을 다치지 말며, 그 利權을 계속 보장하겠다.”는 표현을 상기할 때, 더욱 그 底意가 드러난다. 왜 남조선에 투자한 것만 해당이 되며, 또 누가 다치지 않겠다는 것인가? 북한측은 직접적 언급을 회피하고 있으나, 남조선혁명이 실현된다는 가정하에 정치적 합작의 최고형태인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의 통일방안의 본질적 약점은 혁명론의 主張과 평화통일론 主張의 不調和에 있다. 이 둘은 서로 떼어놓고 논리를 전개할 때에는 하등 모순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남조선혁명이 완성된다는 전제하에 평화적인 合作統一을 실현한다는 先·後概念에서 볼 때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단 동시에 兩者를 함께 들여다 볼 때에는 그 矛盾과 兩立不可能性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왜냐하면, 필경 폭력으로 기존정권을 무너뜨리고 聯共 또는 親共 政權을 세운다는 ‘남조선혁명론’과 상호체제의 차이와 정권의 합법

성을 인정하는 이른바 共存의 原則에서 自主的 平和統一의 길을 모색한다는, ‘평화통일론’은 상호 용납될 수 없으며 조화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른바 ‘自主的 平和統一論’은 혁명주의노선에 뿌리박고 있는 限,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논리적 모순을 결코 극복할 수 없다. 따라서 혁명논리를 견지하는 限, ‘先革命, 後統一’의 시각에서 共產政權과 親共政權間的 合作통일방식을 표방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南의 政權(이경우 反共·自由民主主義政府)을 타도대상으로, 또 한편으로는 南의 政權(이경우 교체된 親共政權)을 공존의 협상 대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북한의 聯邦制方案 자체가 이를 응변적으로 代辯하고 있는 셈이다.

김일성의 언급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⁵¹⁾ “가장 중요한 혁명임무”가 곧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임을 전제로 하고서, “분렬주의 세력”인 현 정권을 끝장내는 투쟁을 전개하는 한, 현정권과 연방제통일논의를 한다는 것은 上層統一戰線次元의 戰術的 標榜은 될 지언정, 진정한 협상에 의한 평화통일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 계속 두개의 국가적 실체를 인정하며, “분렬주의 세력”을 합법정권으로 승인하는 한, 이는 엄청난 “반혁명적 입장”에 스스로 서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두개의 지역정부의 同等權은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政治·外交·軍事權은 인정하지 않고 통일중앙정부로서의 「연방상설위원회」가 관장하도록 주장하게 되며, 단일국호를 지닌 통일국가의 유엔가입을 주장하고 개별가입이나 동시가입을 반대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낱 전술적 방편마련의 구실로 革命論理를 쉽게 포기한다는 것은 북한공산집단에 관한 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본합의서」 채택은 실로 남북관계사에 혁명적 변화라

51) 김일성, 6차 당대회 보고연설(1980. 10. 10) 참고.

아니할 수 없다.

다섯째, 위의 내용과 연결되는 것이지만, 統一政府格인 「연방상설위원회」가 政治·外交·軍事權을 비롯 전반적인 國事를 관할한다는 것은 思想과 制度의 차이를 둔 채 自治權을 행사하도록 한다는 두 地域政府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어떻게 思想과 制度가 다른데 남북한 군사력이 통합될 수 있으며, 만일 통합이 되었다고 할 경우에 統帥權은 과연 누가 장악할 것이며, 「공동위원장」이 윤번제로 선출될 경우, 누가 먼저 통수권을 장악, 행사할 것인가?

북한측은 1983년 9월 9일 「9·9절」 경축연회에서 한 김일성 연설⁵²⁾에서 “「련방상설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윤번제로 운영하자”고 주장한 바 있는데, 북쪽이 이를 선점하여 「민족연합군」의 통수권을 먼저 행사하는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불가능한 것을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연방제 자체를 南側이 원천적으로 거부하도록 만드는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10大 施政方針」의 제시는 선전목적임이 뚜렷한 것이다. 일종의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연방제를 ‘似而非 聯邦制’⁵³⁾, ‘羊頭狗肉의인 聯邦制’라는 비판에 논쟁의 초점을 모아온 남한내부에게 통일의 미래상에 관한 논쟁거리를 줌으로써 북한측의 연방제를 무조건 비판하기 전에 통일의 미래상 등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통일의 비전을 제시하는 체계적인 통일방안의 청사진을 마련하라는 反政府的 여론을 선동하는 촉진제로 이용할 가능성

52)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35돐 경축연회에서 한 연설” 「로동신문」(1983.9.10.字), 김일성은 북한정권을 일컬어 “남북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창건되었으며, 전체조선민족의 리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정권”이라고 규정하면서, “련방국가의 통일정부인 최고민족련방회의와 련방상설위원회는 북과 남의 공동의장과 공동위원장을 각각 선출하여 그들이 윤번제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 일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53) 金永俊, “북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형태와 실제—동태적인 분석시각의 모색을 위하여”, 북한연구소, 북한학회, 「北韓學報」제13집(서울: 新生文化社, 1989), p.181.

도 고려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어느 나라나 國政指標와 方針은 다 가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특기할 것은 못된다. 그러나 非同盟中立路線, 韓半島 非核平和地帶化, 外軍軍事基地設置不許, 休戰線撤廢 등의 내용은 현실적으로도 예민하게 논란이 되고 있었던 문제로서 연방제논의와 관계없이도 남한내의 통일논의에 충분히 引火劑役割을 할 수 있는 소재가 되는 것이었다.

「10大 施政方針」中 특히 7, 9, 10項은 軍事・外交條項으로 聯邦制라는 美名아래 한국정부의 군사권과 외교권을 박탈하려는 저의를 숨긴 ‘毒素條項’⁵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선전목적의 내용으로는 勞動者・農民을 지칭한 “근로대중과 인민들의 生活安定 도모 및 福利의 계통적 증진”을 비롯하여 거의 全分野에 걸친 交流・協力 增進方針 등을 들 수 있다.

일곱째, 「高麗民主聯邦共和國 創立方案」은 전반부에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몇가지 基本的으로 해결해야 할 조건들이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사실상 남북간에 북한식의 연방제를 실시하려면, 이 선결조건들이 充足되어야 하며, 逆으로 이 선결조건들이 充足되지 않으면 사실상 연방제통일협상은 진행될 수 없다는 걸림돌을 놓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이 先決條件들은 필경 남조선혁명의 결정적 여건조성과 직결된 것이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이 先決條件論은 한마디로 “손들고 나오라”는 것이며, 연방제협상을 하려면 南韓內에 親共政權을 수립해야 되고, 이를 위하여 反美・反韓鬭爭을 강력히 전개하여 合作통일의 길을 예비하라는 노골적인 투쟁선동의 信號가 되는 것이다.

54) 姜在倫, “南北韓 統一對話 政策의 歷史의 展望”, 李相禹(編), 『統一韓國의 未來像—現在, 環境과 政策의 努力』, 제3부, 제8장(“정치적 통합방안으로서의 聯邦制: 북한이 제의한 연방제 통일방안의 分析”) (서울: 博英社, 1987), p.225.

한국측이 성실성과 폭력혁명노선의 포기를 촉구하는 것 외에는 여하한 先決條件도 제시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측은 일방적으로 先決條件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남조선의 사회민주화’ 실현을 강변하면서, 反共自由民主主義政府를 ‘팍쑤政權’으로 몰아 부치고 이를 ‘民主政權’(이를 人民政權=容共政權=聯北政權=親共政權의 어휘와 혼용하고 있음.)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함은 內政干涉이요, 더 나가서는 남북 대화나 관계개선에 진정으로 관심이 없거나 또는 협상의 일반적인 규칙들을 모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⁵⁵⁾

또 한편으로 北韓側이 先決條件을 내놓고 있는 底意는 源泉의으로 연방제의 구체적 논의가능성을 배제한 채, 일방적인 心理的 效果를 노리는 측면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先決條件을 내세우는 것은 일방적 요구이며 사실상 대화하지 말자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1980년대의 「高麗民主聯邦制 統一方案」은 명칭의 어휘, 방안내용의 구체성 및 국가연합적·연방제적 인상을 풍기는 似而非 構成原則과 기구의 제시 그리고 통일국가로서의 미래상과 중립주의, 한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 근로대중의익 등 施政方針의 부각으로 선전·선동의 效果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呼訴力을 가져 왔던 점을 否認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내용을 꿰뚫어 보면, 논리적 모순점과 방안자체의 혁명전략적 위협요인 및 사실상의 협상대상의 否定 등으로 연방제 統一方案의 허구성이 발견되고 있으며, 협상추진자세의 僞計性이 露出되고 있다. 더 나가서는 ‘先決條件’의 執着이라는 點에서 국제적으로 通用되고 있는 廣意의 개념으로서의 聯邦制(聯邦國家와 國

55) Sung Chul Yang, "Korean Reunification : Autism and Realism", Korea & World Affairs, Vol.6. No.1, Spring, 1982. p.65.

家聯合의 의미를 포용하는 總括概念)는 사실상 원칙적으로 拒否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先決條件’이 充足되어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창립할 수 있으며, 일단 통일정부가 성립되면 그때에 비로소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실시한다는 點에서 북한의 聯邦制 統一方案은 사실상 단계론적 發想을 깔고 있으며 民族親和力을 소생시키기 위한 민족화합차원의 交流協力の 실시 자체도 조건부실시를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다. 즉, ‘先 남조선혁명 後 조국통일’이라는 혁명주의적 적화통일노선의 固守를 의미한다. 이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이 곧 통일정부의 수립이요, 통일국가의 완성이라는 等式에 하등 모순을 느낄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누차 지적한 바와 같이 先決條件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이미 남한의 反共自由民主主義政權은 聯共政權으로 교체됨으로써 사실상 第2의 越南版赤化의 方向으로 進入하게 될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合作統一의 形式만 빌어 곧바로 북한주도의 흡수통일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식의 평화공존적 발상과 중간과정의 설정과는 본질적으로 그 맥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高麗民主聯邦共和國」案에 숨겨져 있는 전략적 관점은 ‘先 先決條件의 貫徹, 後 合作共產化’에 있다. 다시 말해서 聯邦制는 表皮的인 형식이고 全韓半島의 公산화가 實體라는 뜻이다. 그들이 다방면적 合作·교류를 위한 「10大政綱」을 연방제수립이후의 단계로 미룬 것은 先決條件을 먼저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다.⁵⁶⁾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라는 聯邦構成의 원칙과 “통일국가안에서 서로 다른 사회제도가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口號的 공존의 표방은 대한민국이 反共政策을 포기해야 한다는 선전공세용일지언정

56) 金永俊, 앞의 論文, p.13.

북한의 이른바 主體思想을 뛰어 넘는 민족주의적 시각의 超越的 사상이나 제도의 개념은 결코 아니다. 또한 두개의 지역정부의 法的地位는 분명 국가승인을 수반하는 두개의 국가적 실체와 대한 민국정부의 법률적 국가승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전문가의 寄稿文에서 우리는 이를 확인하게 된다. 예를 들면, 한웅식은 김일성연설이 있는 직후인 1980年 11월에 발간된 「로동당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11월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⁵⁷⁾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은 무엇보다도 주체사상의 원리로 부터 출발하고 그것으로 일관되게 관통되어 있다... 그 어떤 전술적 대책이 아니다... 주체사상과 우리나라의 구체적 현실에 기초하고 있는 가장 정당한 통일강령이며, 통일구국헌장이다.”라고 강변하고 있다.

또 한사람의 북한의 전문가인 럽태준은 1988년 5월호 「근로자」에 투고한 기고문⁵⁸⁾을 통해 “우리의 련방국가의 특징은 단일민족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통일국가를 형성하되, 북과 남을 두개의 국가로서가 아니라 두개의 자치지역으로 그 법적지위를 규정하여 서로 다른 두 제도를 그대로 두고 평화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게 되는 데 있다.”고 지적하면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통일국가 안에 두 자치지역사이의 련합의 형태로 민족적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련합형식, 통일방식에서 전혀 새롭고 독창적인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그는 “련방국가창설방안은 철두철미 주체사상의 심원한 진리와 우리나라의 현실에 바탕을 두고 우리민족의 근본이익과 한결같은 의사를 구현한 가장 정당한 통일헌장이며,

57) 한웅식,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는 것은 조국통일의 가장 합리적인 방도”, 「근로자」, 1980년 제11호(463), (평양종합인쇄공장, 1980.11.5), p.54.

58) 럽태준, “련방국가를 창설하는 것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 「근로자」, 1988년 제5호 (1988.5.3), p.87.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접수될 수 있는 공명정대한 구국강령”이라고 옹호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북한의 연방제방안이 기존의 국제법상 연방제이론과는 전혀 다르며, 合作戰術의 저의를 비판해 온 것을 감안했는지 북한의 연방제는 전혀 새로운 것인양 粉飾하고 있는 점이다.

그는 이 문제와 관련 이렇게 논급하고 있다. 김일성이 “각이한 제도에 기초한 련방국가 창설에 관한 독창적인 이론을 내놓음으로써 국가에 관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 발전에 또 하나의 불멸의 공헌을 하였으며, …… 이 이론은 역사상 처음으로 제시된 전혀 새로운 련방국가리론이다.”라고 선전하고 있다. 또한 그는 일반론적인 연방제와 김일성식 연방제의 차이를 이렇게 區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련방국가에 관한 문제는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들에서 주권을 장악한 계급의 사상과 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국가제도의 문제로 제기되었다. 사회주의련방국가제도는 로동계급의 사상을 실현하여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데 복무한다면, 자본주의련방국가제도는 자본주의 사상을 실현하며, 자본주의제도를 공고히 하는데 복무한다. 이것은 련방국가는 단일한 사회제도에 기초하여 한 련방국가 안에는 서로 다른 사회제도가 존재할 수 없다는 기성의 련방국가에 관한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같은 제도 우에서 주로 민족을 단위로 련방제가 실시되는 것 인만큼 단일한 사회정치적 리해관계를 실현하는 범위에서 해당민족의 독자성을 보장한다. 그러나 우리의 련방국가 창설방안은 한 나라, 한 민족안에서 민족의 단합과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는 범위에서 서로 다른 제도의 독자성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김일성저작집 제35권, pp.355-356)⁵⁹⁾

북한의 전문가들의 글을 보면, 김일성이 제시했기 때문에 獨創

59) 같은 책, p.88.

的인 이론이 되고 김일성의 주체사상이기에 전혀 구속을 받지 않는 예외적인 방안이 되어 민족자체가 받아들여야 할 思想이 된다는 관점에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또한 연방제 실현의 捷徑은 결국 金日成이 주장하는 ‘民族大統一戰線’의 형성에 있다고 歸結짓고, 마침내 ‘分裂勢力 對 統一勢力’의 투쟁에서 승리하는 길이 곧 통일의 길이라는 我田引水의 혁명투쟁논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북한의 기본입장은 명백해진다. 즉, 현존하는 남한의 反共政權이 聯共政權으로 교체되지 않는 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한다는 聯邦形成의 원칙은 한낱 전술적 구호일 뿐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1980년 10월에 제시된 「고려민주연방제」방안이 그 이후 198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는 보완이 되거나, 방안협의문제와 관련 전술적 변화의 信號가 나타나고 있으나, 위에서 확인된 전략적 기본입장은 본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評價할 만한 언급이나 남북대화 진전상황은 없었다. 다음과 같은 김일성의 公言과 북한 언론매체들의 論評 등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은 1988년 9월 8일 북한정권창건 40돌 경축보고대회 연설에서 ‘공존의 원칙’이라는 어휘를 과감히 사용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북과 남에 현실적으로 서로 다른 思想과 制度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누가 누구를 먹거나 먹히우지 않고, 일방이 타방을 압도하거나 압도당하지 않는 共存의 原則에서 두 制度를 그대로 두고 두 자치정부를 聯合하는 方法으로 하나의 통일국가를 형성”⁶⁰⁾할 것을 주장하였다. 종래의 “함께 존재

60) 김일성,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조선창건 40돌 중앙경축보고대회에서 한 연설), 「근로자」, 1988년 제10호(558호), (1988.10.3), p.19.

할 수 있다.”는 간접적 표현을 탈피하여 共存이라는 말을 사용한 점은 분명 변화임에 틀림없다. 共存이란 어휘를 의식적으로 회피해 온 북한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국제적 화해조류에 편승한다는 의미가 큰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남북관계에 직접적으로 ‘공존의 원칙’의 어휘를 사용한 점에서 일단 전술적 변화이지만 留意해 뒤야 할 점이다.

한편, 같은 연설에서 金日成은 남북대화와 雙務的・多務的 접촉과 협상을 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 「最高位級會談」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그 누구의 구속이나 보증도 받지 않는” 南北 不可侵宣言과 聯邦政府 實現을 목적으로 한 「平和統一委員會」 창설문제를 협의해야 한다고 못박았다.⁶¹⁾ 그러나 동시에 反美自主化鬭爭과 反파쇼民主化鬭爭을 선동하면서 “남조선당국자들의 파쇼적 정체”, “민족반역의 무리”, “反파쇼민주화투쟁”, “敵들의 탄압”이라는 원색적인 표현으로 한국정부를 공격하고 있으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先決條件의 해결과 민족적 대단결에 입각한 舉族的 反美反韓鬭爭을 선동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언론매체들은 우리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발표를 전후하여 연방제 통일공세를 재개하는 가운데 두개의 지역정부의 법적지위와 남한정부에 대한 불승인방침 및 교차승인과 유엔 동시가입 반대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1989년 8월 12일자 「로동신문」 논설⁶²⁾을 보면, 연방정부는 곧 민족통일정부로서 “우리 나라 전 領土와 온 民族을 대표하는 통일적 중앙주권기관”이며, “정치문제와 조국방위문제, 대외관계문제들을 비롯하여 공동의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며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 사이에 단결과 합작 실현사업을 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동시에 지역정부의 지위

61) 같은 자료, pp.22-23. 참고

62) 「로동신문」(1989.8.12.字) 논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가장 합리적인 통일국가 형태”

에 관해서는 “독립국가로서가 아니라 自治制를 실시하는 한 나라의 두 지역”으로 보고 있으며, “완전권력을 가진 독립정부로서가 아니라 민족통일정부의 지도 밑에서 필요한 독자성을 가지는 지역 자치정부”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교차승인·유엔가입정책에 대해서 1989년 10월 20일자 「로동신문」 논설⁶³⁾은 “교차승인과 유엔가입을 시도하고 있는 남조선의 이른바 정권은 남조선인민을 대표할 수 없는 美帝의 식민지 정권이며, 그 어떤 자주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정권이다.”라고 斷罪하고 있다. 또한 같은 달 30일 「로동신문」⁶⁴⁾은 “남조선 괴뢰들의 유엔가입책동을 부추기어 그에 동조하는 것은 우리 민족 내부문제에 대한 간섭이며 조선의 통일에 제동을 거는 반동적 행위이다.”라고 매도하면서, “북과 남은 나라가 통일되기 전에 유엔에 들어가도 안되고, 어느 일방만이 단독으로 들어가도 안되며, 적어도 련방제라도 실현된 다음 단일국호로 유엔에 가입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변함없는 원칙적 입장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던 날인 1989년 9월 11일 「로동신문」⁶⁵⁾은 記名論評을 통하여 「7·7선언」을 비난하면서, “로××일당은 우리의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이 남조선인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가로막아 보려고 통일력량에 대한 칼부림을 일삼는 한편, 《통일》의 외피를 씌운 분렬주의적인 《7·7선언》 따위를 들고 나와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하였다. 동시에 “련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하는 남조선인민들을 총칼탄압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로××일당은 분렬주의자, 통일

63) 「로동신문」(1989.10.20.字) 논설, “교차승인 유엔가입 시도는 두개 조선 조작을 위한 범죄행위”

64) 「로동신문」(1989.10.30.字) 논설, “식민지 남조선의 유엔가입책동은 파탄을 면할 수 없다.”

65) 엄일규, “가장 현실적이고 확신성있는 통일방안”, 「로동신문」(1989.9.·11. 字)

의 원수로서의 정체를 날날이 드러내놓고 있다.”고 극렬한 비난을 퍼부었다.

1990년 4월 金泳三 민주자유당 대표최고위원의 모스크바방문 및 고르바초프 前대통령과의 만남과 관련, 북한은 「로동신문」에 論評員의 글⁶⁶⁾의 형식을 빌어 韓·蘇간의 相互關係正常化 問題에 매우 민감한 反應을 보이면서 한국정부의 정통성을 다음과 같이 부인한 바 있다.

“원래 소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조선민족의 유일한 합법적 국가로서 인정한 첫나라이다.…정상적인 궤도에서는 소련이 근본원칙을 어기고 남조선을 인정함으로써 두개 조선 정책에 가담하게 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소련이 우리 공화국과 국가관계를 설정하던 그 때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남조선은 미국의 강점하에 놓여 있으며… 帝國의 식민지로서의 남조선의 지위와 식민지 통치기구로서의 남조선 괴뢰정권의 성격에서는 본질상 변화된 것이 없다. 남조선 괴뢰들은 현실인정을 운운하나 현실인정이란 곧 분렬 고착화의 인정으로 될 따름이다.… 식민지 남조선은 유엔에 들어갈 자격도 없다.… 만일 소련이 남조선과 외교관계를 설정한다면, 그것은 조선에 두개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승인하고 조선반도의 분단상태를 더욱 고착시키는 것으로 된다.”

요컨대, 북한은 1980년대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서는 마치 대한민국과 상호 평화공존, 다른 사상과 제도의 인정, 두개의 지역정부의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 대한민국을 名實相符한 주권국가로 승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66) 「로동신문」(1990.4.6.字), “김영삼의 모스크바 행각을 논함”

(4) 暫定的 統一로 旋回한 「高麗民主聯邦共和國 創立方案」

(1991.1.1)⁶⁷⁾

金日成은 1991年 新年辭에서 “우리는 반드시 가까운 몇해안에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하여야 한다. …현시기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祖國統一方途를 확정짓는 것이다.”라고 前提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북과 남이 서로 다른 두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조국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지 않는 원칙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를 그대로 두고 그후에 하나의 통일적인 민족 국가를 세우는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우리의 련방제통일방안은 하나의 민족국가안에 서로 다른 두 제도와 두 정부가 함께 있을 수 있다는데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제도에 의한 제도통일론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의 분렬을 끊임없이 지속시키자는 것이며 결국 통일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북과 남이 서로 다른 제도로 하나의 제도를 만드는 문제는 앞으로 천천히 순탄하게 풀어 나가도록 후대들에게 맡겨도 되지만,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으로서 하나의 통일국가를 세우는 일은 이제 더는 미루지 말아야 한다. 북과 남의 서로 다른 제도, 두개 정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어느 일방도 자기의 것을 양보하려 하지 않는 조건에서 하나의 제도에 의한 통일은 비현실적인 것이며 언제 실현되겠는지 예측할 수도 없는 것이다.

67) “1991年度 金日成新年辭全文<資料>”, 「內外通信」(綜合版43)(內外通信社, 1991), pp.10-24. 참고

더욱이 제도를 단일화 하려는 것은 그 실현방도가 어떠한지 상대방을 먹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어느측에도 접수될 수 없는 것이다. 접수될 수 없는 것을 강요하려 한다면 기필코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충돌과 돌이킬 수 없는 민족적 재난까지 빚어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다른 나라의 흡수통합방식에 현혹된 남조선 당국자들은 북방정책을 내걸고 청탁외교를 벌이면서 남의 힘을 빌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방식을 실현해 보려는 어리석은 꿈을 꾸고 있다. 남조선 당국자들이 동족과의 회담에서 성실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자기의 것을 상대방에 강요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들의 간섭과 개입을 간청하는 것은 그들의 사대근성과 분렬주의 입장의 표현이며 이미 파손된 승공통일책동의 재현이다.

우리나라에서 승공통일이란 어느 때도 실현될 수 없는 망상이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에 관심이 있다면, 실현할 수 없는 승공통일을 꿈꾸거나 적화통일의 유령으로 인민들을 우롱할 것이 아니라 승공과 적화도, 북침과 남침도 다 용납하지 않는 우리의 련방제통일방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에 대한 민족적 합의의 보다는 쉽게 이루기 위하여 잠정적으로는 련방공화국의 지역적 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더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련방제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문제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 우리는 유엔에 들어가는 문제도 련방제통일이 실현된 다음 단일한 국호를 가지고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인정하지만, 하나의 의식으로 가입하는 조건에서라면 그 전이라도 북과 남이 유엔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위의 내용가운데 既存의 聯邦制主張 특히 「高麗民主聯邦共和國 創立方案」과 관련,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들이 있다.

첫째, 연방제통일 방식과 制度統一 방식의 구별이다. 북한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지 않는 原則”에 따라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형태의 聯邦制統一을 내세운 것은 完成型 연방제 통일국가가 아니라 사실상 ‘잠정적’ 未完成型 연방제 통일모형을 자의로 만들어 냈다고 할 것이다. 이는 사실상 북한 스스로 사상과 제도가 서로 다른 남북한정부가 상당기간 공존기간을 거칠 수밖에 없음을 논리적으로 是認한 셈이다. 남한이 赤色革命을 통해 북한에 흡수되지 않는한 종래의 聯共合作方式의 完成型 聯邦制統一은 현실적으로 不可能하다는 인식을 북한 스스로 露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통상 이해하고 있는 體制統一(이를 북한은 制度統一이라고 지칭하고 있음.)이란 민족구성원 모두가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즉, 자유선거방식을 통해 통일정부와 통일국회를 구성함으로써 하나의 체제로서의 民主共和國를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은 바로 이러한 통일을 ‘제도통일’로 인식, 연방제통일과 구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제도통일’의 課題는 분명 ‘後代들에게 맡겨도 될’ 미래의 문제로 미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현 북한당국이 사실상 사상과 제도가 하나로 된 統一民主共和國의 수립을 포기함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종래의 聯共合作의 攻勢的 聯邦制 赤化戰略戰術의 변화가 가능성을 예상케 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換言하면, 북한 정권은 體制・政權의 보전이라는 守勢的 ‘살아남기 戰略’에 全力投球해야 할 심각한 국면에 봉착해 있음을 감지케 해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둔 채 중앙정부와 2개의 지역정부가 並存하는 것은 平和統一을 위한 中間과정의 平和共存과 過渡的 統一體制일 수는 있을지언정, 결코 완전한 민주통일국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일성이 구호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1995년 통일론’은 제도통일을 미룬 잠정적 통일인 북한식 聯邦制統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제도통일은 ‘상대방을 먹는 것’을 前提로 한다고 이해함으로써 결코 접수될 수 없는 것으로 완강히 排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다른 나라의 吸收統合方式’에 남한이 현혹된 것처럼 주장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는 이를 강요하려 할 때, ‘민족적 재난’ 즉,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결의표명에 우리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실상 東西獨이 서독주도하의 自由統一을 실현한 데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독일통일을 본 북한당국자들이 북한이 제2의 東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스스로의 被害意識에서 비롯된 것이다.⁶⁸⁾

결국, 金日成이 언급한 ‘제도통일’은 ‘자유통일’이요 ‘흡수통일’이며, ‘승공통일’로서 南韓主導下의 자유민주주의통일과 同義語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넷째, 구태여 ‘後代들’ 즉 ‘다음세대’를 지칭하고 있는 것은 現북한의 정치세대에 관한 限, 정치적 통일의 실현보다는 명분상 과도적인 聯邦形式(이는 國家聯合的인 모형에 더욱 가깝다.)의 통일체제에 戰略的 布石을 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는 종래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제도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결과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종래 주장에 변화를 보인 결정적인 부분이 地域政府의 權限強化論이다. 즉 ‘잠정적으로’ ‘두개의 지역정부’에 권한을 강화시켜 주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창립방안에 대한 민주적 합의를

68) 崔浩中, “유엔同時加入 以後의 南北韓關係” 國際學術院 主催 大韓民國유엔加入 慶祝講演會에서의 副總理演說文, 統一院(1991.9.18), p.10.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하여 잠정적으로는 연방공화국의 지역적 자치 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더 높여 나가는 방향에서 연방제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문제도 합의할 용의가 있다.”는 부분은 종래의 中央政府強化論과는 전혀 상반된 것이다.

地域政府의 權限強化論은 북한의 윤기복 最高人民會議 統一政策 審議委員長에 의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있다. 그는 1991년 4월 28일 IPU총회에 참가한 韓國代表團을 만수대의사당에 초청한 자리에서, “북과 남의 제도를 그대로 두고 聯邦統一國家를 세우자. 그러나 잠정적으로 地域自治政府에 더많은 權限 즉 外交權, 軍事權, 內政權 등을 줄 수도 있다.”고 부연 설명했던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북한이 「高麗民主聯邦共和國 創立方案」을 ‘唯一無二’의 또는 ‘절대절명’의 통일강령으로 고집해 온 입장의 수정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⁶⁹⁾

지난 몇년동안 동구권의 自由化, 독일의 自由統一(Einheitvin Freiheit)⁷⁰⁾ 및 소련공산체제의 붕괴란 엄청난 地殼變動과 세계적인 민주화개혁의 熱風에 충격을 받은 북한당국이 對南赤化에 힘을 쏟기 보다는 김일성부자세습체제의 生存維持에 더욱 힘을 쏟는 쪽으로 전략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북한은 김일성신년사를 통하여 前例없이 制度統一의 위협성을 강조하면서 ‘後代들’의 시대에 가서야 합의·해결될 미래의 課題가 된다고 주장한 것은, 현재의 북한의 연방제론의 불가피한 수정을 예고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

환언하면, 김일성신년사의 내용은 종래의 完成型 「고려민주연방 공화국 창립방안」을 잠정적 연방제실현방안으로 수정한 것으로 보

69) 李東旭, “北韓統一案 修正의 意味”, 東亞日報(1991.5.2.字)

70) 북한은 독일의 ‘自由統一’을 ‘흡수통일’로 간주하고 있다.(1991年 金日成新年辭 참고)

이며, 이러한 잠정적인 연방제는 일반국제법에서 통용되어 온 국가연합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장차 南北頂上會談에서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북한의 「高麗民主聯邦共和國 創立方案」을 놓고 민족통일을 위한 기본방향을 논의하게 될 것인데, 특히 「南北聯合」案과 북한측의 修正된 「잠정적 聯邦制」案이 주요 협상쟁점이 될 것으로 豫想되며,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완전통일을 이룩하기 전단계인 韓半島 過渡統一體制의 창설에 민족적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기대된다.

여하간 남북정상회담은 北韓側의 수정된 잠정적 연방제통일론이 民族和合・統一指向의이나 아니면 革命・赤化統一 고수냐의 可否를 판가름하는 역사적이며 중대한 分水嶺이 될 것이다.

5. 結 言

이제 통일은 꿈이 아니라 현실로서 우리 앞에 다가옴에 따라 우리는 우리民族이 이룩하고자 하는 統一祖國의 모습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그것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7千萬 한민족 구성원의 自由와 人權과 幸福이 보장되는 統一民主共和國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민족이 민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理念과 體制를 떠나 전인류가 추구해야 할 普遍的 價値인 個人的 自由와 民主的 自由이다. 우리가 통일을 이룩하려는 목적이 統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통해 우리민족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幸福의 폭을 넓히려는 데 있다고 할진대, 統一國家의 미래상은 반드시 이같은 要件을 具備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統一은 어디까지나 自主・平和・民主의 원칙을 바탕으로 現實的이고 合理的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冷嚴한 현실을 통찰하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함으로써 和解協力을 통해 통일로 접근하는 漸進的이고 段階的인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미 남과 북은 「基本合意書」를 產出함으로써 통일의 大道를 향해 堂堂한 출발을 하였다.

통일로 가는 中間段階로서 먼저 남북한은 서로 다른 두 체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現實을 바탕으로 평화적으로 共存共榮하면서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을 통해 民族社會의 同質化와 統合을 촉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급격히 전개되는 統一環境의 변화와 南北韓關係의 현황에 기초하여 앞으로 南北韓關係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물론, 북한은 앞으로도 對南革命路線에 따라 「民族統一政治協商會議」 소집주장 등을 내세워 우리사회를 교란시키려 할 것이다. 북한이 기존태도를 쉽사리 바꾸려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政策混調現狀으로 인한 비정상적 남북한관계가 오래 가지는 못할 것으로 判斷된다.

그 이유는 북한이 최근 對外的으로 보이고 있는 現實主義的 움직임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들 內部的으로 또는 對內關係에서도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시책이 나타나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革命主義路線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설령 南北和解協力體制를 자기들의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보호막으로만 이용하려고 할지라도 남북한관계는 유엔 同時加入, 北韓의 制限的 開放, 平和共存・交流協力段階를 거치면서 平和統一의 기틀은 더욱 다져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상황전개 과정에서, 만약 예상외의 突出的 사건이 북한내부에서 발생한다면 北韓體制의 변화양상은 크게 달라질 것이며 南北韓關係나 統一問題에도 심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향후 수년은 民族分斷史에 분수령을 이루는 일대 전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統一方案을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일을 주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姿勢와 民主力量의 結集이 더 긴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동시에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統一問題에 관한 國民的 합의기반을 구축하고 우리국민의 단합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한 民主的 政治發展과 持續的 經濟成長 그리고 社會正義의 具現을 통해 사회를 안정시키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것이 統一의 튼튼한 기반을 다져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Ⅱ 北韓의 對南革命戰略

章 洙 棟 (統一研修院 教授)

1. 序 言	109
2. 共產主義 戰略·戰術의 一般運用原理	111
가. 共產集團의 思考 및 行動方式	111
나. 共產化 革命戰略 및 戰術類型	116
다. 共產化 革命戰略 및 戰術計劃	124
3. 北韓의 對南革命戰略	129
가. 對南革命 및 ‘祖國統一’觀	129
나. 對南革命戰略의 基調	132
4. 北韓의 對南革命戰術	141
가. 對南革命戰術의 基調	141
나. 對南革命戰術의 變遷過程	146
5. 結 言	169
가. 對南策動의 展望	169
나. 우리의 對應方向	171

1. 序 言

여기에서 論及하는 ‘戰略’·‘戰術’이란 흔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戰爭과 관련된 狹義의 軍事的 概念이 아니라 共產化 革命과 관련된 廣義의 政治的 概念인 것이다.

현재 북한공산집단이 구사하고 있는 대남전략·전술도 金日成의 獨創物이 아니며 레닌이 개발하고 스탈린이 定式化¹⁾ 시킨 것을 남한실정에 맞게 소위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북한공산집단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국민으로서는 누구나 북한공산집단이 驅使하는 戰略·戰術에 관하여 전혀 무관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하여 모든 국민이 그들이 구사하는 전략·전술을 원리적 차원에서 체계성있게 파악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된다.

공산주의는 사실상 내면적으로는 전략·전술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의 ‘전략’과 ‘전술’이란 그 운용차원을 달리 하면서도 상호유기적인 연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양자간의 상호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공산주의를 올바르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는 이 양자간의 운용차원 및 상호관계를 분명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전략이 마치 전술을 수식하는 형용사인 것처럼 혼돈하고 있는가 하면, 특히 자본주의 발달이 미숙한 중진국이나 후진국(식민지, 종속국)에서 적용키로 되어 있는 ‘레닌주의적 連續2段階 革命戰略의 운용원리²⁾’를 근본적으로 이

1) 스탈린, 「레닌主義의 基礎에 대하여」(1924), 스탈린, 「레닌主義의 諸問題」(1939), 모스크바, 外國文書籍出版部, 1949(韓國語版), pp.111-119.

2) 마르크스·엔겔스, 共產黨宣言, 宮川實譯, 解説의三, 第3인터내서닐과 그 「綱領」, 東京, 青木書店, 1955, pp.160-165.

해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非—非再한 실정이다. 이러한 인식부족 때문에 전략과 전술이 모두 일률적으로 임기응변하는 것으로 해석되는가 하면, 또한 私有制를 타파하는 ‘社會主義革命’으로 이행하기 이전의 前段階革命인 ‘부르주아 民主主義革命’이나 ‘人民民主主義的 革命’만으로 그들의 행동이 종료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향도 적지 않은 형편이다.

그리고 그들의 戰略이란 해당단계의 혁명목적이 달성될 때까지는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전략이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것이 아니지만, 戰術이란 그같은 전략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策動技法이기 때문에 전략과는 달리 주어진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것이다. 따라서 戰略이란 공산화혁명운동에 있어서의 비교적 지속성이 있는 기본적 계략이라 한다면 戰術이란 가변성이 있는 구체적 행동강령이면서도 전략에 종속되는 것이다. 그리고 전략이란 2段階로 수행되는 中進國 또는 後進國의 혁명에 있어서는 그 단계별 전략이 각각 別途로 마련되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까다로운 이유 때문에 북한공산집단의 連續2段階革命戰略과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戰術의 전개방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과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本 教材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은 혼돈을 막고 북한공산집단의 對南革命戰略을 명확히 이해시키는 토대 위에서 狀況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변화무쌍한 戰術에 이르기까지의 그들의 모든 行動原理를 상호 聯關性 있게 分析, 解說함으로써 그들의 反民族的, 反平和의 음모의 正體를 폭로하여 ‘知彼知己면 百戰不殆’의 효과를 거두자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여기에 한가지 添言할 것은 소련이 解體되고 蘇聯共產黨이 붕괴되었다고 해서 全世界 共產黨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또한 공산당이

존재하는 한 레닌주의 戰略・戰術은 不可不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2. 共產主義 戰略・戰術의 一般運用原理

가. 共產集團의 思考 및 行動方式

(1) 唯物史觀的 思考

유물사관이란 唯物辨證法에 입각한 역사관으로서 人類의 역사를 原始共同體社會가 분업에 따른 계급의 분화로 말미암아 사유제사회인 계급사회로 反轉되어 노예제사회, 봉건제사회, 자본주의사회를 거쳐 그것이 다시 공산주의사회로 再反轉되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보는 滅舊生新的 역사해석 태도이다.

이와 같은 유물변증법적인 역사관에 따르면 “원시공동체가 분업 및 계급분화에 따라 質的으로 다른 계급사회로 轉化된 이후 자본주의사회에 이르기까지 줄곧 계급투쟁을 전개해 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노예사회로부터 봉건사회, 자본주의사회에 이르기까지는 불완전한 질적변화(革命)만을 거듭해 왔기 때문에 다만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형태가 바뀐데 불과하고 사유제사회인 계급사회로서의 그 본질만은 변함없이 그대로 존속되어 왔으나 자본주의사회에 이르면 고도산업화에 따라 극소수화된 부르주아지를 압도적으로 다수화된 프롤레타리아트가 타도함으로써 드디어 근본적으로 私有制와 그에 따른 계급 자체가 없어지는 공산주의사회 즉 “발전된 완전한 無階級 共有制社會가 도래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의 ‘質的變化’가 곧 그들이 강조하는 바의 대립물의 투쟁결과로 얻어지는 ‘矛盾克服’이며 또는 ‘否定’으로 보는 혁명인바, 그것은 낡은 것의 소멸과 새로운 것의 발생에 의한 滅舊生新的인 唯一化, 즉 ‘非妥協的 征服’이며 결코 시간적인 先後關係를

초월한 통합 즉, '상호공존적 종합'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³⁾ 여기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유물사관에 입각하고 있는 북한공산집단이 추구하는 바의 '統一'이 결코 남북한의 대등한 융합적 통합이 아니라 공산주의적인 새로운 요소에 의하여 자본주의를 포함한 낡은 요소들이 구축, 소멸되는 식의 멸구생신적 征服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이치를 알게 될 때, 그들이 말하는 合作統一論(고려연방제)이 결코 이념적인 것이 될 수 없으며 전적으로 戰術的인 僞計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思考 및 行動方式을 각각 독립적으로서가 아니라 상호 연관성 있게 유기적으로 관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에 착안하여야 할 것이다.

(2) 戰略・戰術的 行動

(가) 沿革

공산주의 전략·전술은 대중을 혁명에 동원 및 유도하는 책략적 운동기법으로서 레닌에 의하여 개발되어 스탈린에 이르러 그 이론적 '틀'이 정식화되었으며 그 내용이 더욱 보완되었다. 레닌은 전략적 차원에 대하여 언급하는 경우까지도 모두 전술이라는 용어로 일괄 표현하였으나 스탈린은 그 중에서 구분하여 본질부분을 '전략', 그리고 가변적 현상부분을 '전술'로 구분하여 논술하였다.

레닌은 러시아革命的 현실적 가능성을 분명히 내다보면서도 그 사회발전단계상 마르크스의 正統的 革命論에 의해서는 도저히 社會主義革命的 타당성을 설명할 수 없는데 고심하였다. 따라서 레

3) 蘇聯邦科學院哲學研究所, 哲學教程, 第2分冊, 森宏一, 寺澤恒信 譯, 合同新書, 1968, pp.418-437.

三浦つとむ「辨證法이란 어떤 科學인가」, 東京, 講談社, 現代新書, 1968, p.237.

마르크스, 「헤겔法哲學批判」(1844), 新明正道 服部英太郎 譯, 마르크스·엥겔스 全集, 第1卷, 東京, 改造社, 1928, p.353.

金永學, 「마르크스·레닌主義白書」(明成出版社, 1982), p.133.

닌은 러시아혁명이 직접 私有制를 타도하는 사회주의혁명으로 직행하는 데는 무리가 있음을 일단 인정하고 먼저 부르주아 社會段階를 조속히 끝맺게 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고 나서 이어서 그 여세를 몰아 사회주의혁명을 지체없이 수행하는 ‘연속2단계 혁명’방식을 구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레닌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한 것은 어디까지나 사회주의혁명이므로 비록 부르주아민주혁명을 수행하는 단계라 하더라도 그 혁명의 주도권만은 프롤레타리아트(共産黨)가 장악해야 하며 無力하고 非革命的인 부르주아지에게 주도권을 맡기는 것은 부르주아혁명 그 자체의 수행도 어렵거니와 설사 프롤레타리아트가 그들을 지원하여 혁명을 성취한다 하더라도 그들에 의하여 사회주의혁명으로의 전환이 방해당할 것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부르주아는 다만 專制君主勢力에 협력하지 않도록 격리, 중립화시키고 수적으로 우세하며 프롤레타리아트와 처지가 비슷한 農民大衆을 同盟軍(예비군 또는 보조군)으로 삼고 전체군주제를 타도한 다음 지체없이 부르주아를 타도하는 사회주의혁명으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 그러나 이에 대하여 멘셰비키(Menshevik)들은⁵⁾ 부르주아혁명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부르주아지가 혁명을 주도하여야 하며 프롤레타리아트로서는 다만 부르주아지를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 수행후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발전되고 프롤레타리아트가 상당히 성장한 다음에 비로소 프롤레타리아트가 주도하는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소위 非連續 2段階革命論) 농민과의 동맹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4) 스탈린, 앞의 책, pp.111-112.

5) 멘셰비키는 멘세비크(少數派)에 속한 構成員 즉, Menshevik를 뜻한다. 지금의 소련 共産黨의 前身인 「러시아 社會民主勞動黨」에는 當時 마르토프를 支持하는 멘세비크(少數派)와 레닌을 支持하는 볼셰비크(多數派)가 있었는데 이 兩派間에는 共産革命을 위한 方法論上的 차이는 있었지만 그 本質的인 目的에는 差異가 없었다.

이와 같이 볼셰비크(Bolshevik)와 멘셰비크(Menshevik)는 부르주아 민주혁명을 먼저 수행하고 나서 사회주의혁명으로 이행한다는 基本方針에 있어서는 서로 일치하였으나 主力軍과 補助軍(예비군)의 편성 배치에 있어서는 상이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즉, 마르토프 중심의 멘셰비크가 마르크스주의 교리를 教條主義의으로 해석하며 기계적으로 실천하려고 하였다면 레닌 중심의 볼셰비크는 그 교리를 러시아의 구체적 현실에 創造的으로 적용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는 것이었다.

레닌은 멘셰비크의 태도를 觀照主義라고 비난하고 러시아사회민주당 제2차대회(1903. 7)이후 사사건건 이들 양파가 대립하였는데, 그 중요원인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전략적 力量配置計劃과 그에 따른 黨組織論에서 비롯되었다. 즉, 레닌은 자신의 전략구상에 따라 소수정예, 비밀 및 집권적인 黨을 원한데 반하여 마르토프 등 멘셰비크는 대중, 공개 및 분권적인 黨을 원하였다. 그것은 멘셰비크가 서구적 마르크스主義黨에 의한 합법적 투쟁을 구상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레닌의 「무엇을 할 것인가」(1902년), 「一步前進 二步後退」(1904년), 「민주주의혁명에 있어서의 사회민주당의 두가지 전술」(1905년), 「帝國主義論」(1916년), 「국가와 혁명」(1917년), 「프롤레타리아트 혁명과 背教者 카우츠키」(1918년)⁶⁾ 및 「공산주의의 좌익소아병」(1920년) 등 일련의 著述들은 한결같이 러시아혁명 및 과도기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전략과 전술적 기법에 관하여 언급한 것이다. 이같은 레닌의 저술들은 후일 스탈린에 의하여 「레닌주의의 기초에 대하여」(1924년)라는 저작물로 집대성되었는데 戰略과 戰術이 이 책의 제7장에서 체계적으로 정식화됨으로써 모든 레닌主

6) 레닌은 카우츠키를 프롤레타리아革命을 기피하는 背教者로서 규탄하였는데 그 理由는 그가 暴力使用을 反對하였기 때문이었다.

義黨의 行動指針으로 삼기에 이르렀다.

(나) 特徵

스탈린은 레닌주의의 전략과 전술에 대하여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계급투쟁을 지도하는데 관한 과학”이라고 규정하고 전략과 전술에 대한 개별적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즉, 戰略은 “혁명의 해당단계의 토대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主攻方向을 결정하고 혁명적 역량(主力軍 및 副次的 補助軍)의 적절한 배치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혁명단계 전기간에 걸쳐 그 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투쟁”이라고 하였다.⁷⁾ 말하자면 프롤레타리아트(共産黨)가 해당 혁명단계중 타도하고 成就할 목표를 정하고 그같은 목표달성을 위해서 프롤레타리아트가 누구와 동맹하고 누구를 중립화(격리)시킬 것인가를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는 基本計略이 바로 전략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전략은 상황의 일시적 변화에 따라 임기응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본목표 달성시까지의 일관성있게 지속된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그러나 戰術은 “運動의 滿潮와 干潮, 革命的 昂揚과 沈滯 등 비교적 단기간에 걸친 프롤레타리아트의 행동노선을 결정하고 투쟁형태, 조직형태 및 표어를 교체하거나 배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路線을 실천해 나가는 투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⁸⁾ 따라서 이같은 전술은 일정한 혁명단계 전반에 걸쳐 시행되는 기본계략이 아니라 그 기본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어진 상황에 맞도록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 혁명단계에도 그리고 그 다음 혁명단계에 있어서도 여건(정세)에 따라 수시로 변모하게 된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전략계획을 실수없이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통제하는 것을 戰略的 指導라고 하며 戰術計劃을 적시적절하

7) 스탈린, 앞의 책, p.111.

8) 스탈린, 앞의 책, p.113.

게 통제하는 것을 戰術的 指導라고 부르게 된다. 그런데 전략적 지도면에서 볼 때 필요한 보조군과의 동맹을 외면하면 전략적 左傾이 되고, 반면에 지나치게 同盟의 幅을 넓히거나 그 時期를 연장시키려는 것은 전략적 右傾이 되며, 전술적 지도면에서도 干潮期에 있어 滿潮期에 쓰이는 투쟁형태, 조직형태 및 표어를 내걸면 전술적 左傾이 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전술적 右傾으로 지적된다.⁹⁾ 대체로 右傾誤謬는 소심한 견장이 간부에 의해서 그리고 左傾誤謬에는 혹시 잘못하면 우경으로 몰릴 것을 우려하는 나머지 지나치게 급진적 경향을 나타내는 데서 비롯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는 左·右傾이 모두 기회주의이며 다만 그같은 기회주의가 안으로 굽으면 ‘左傾’이 되고 밖으로 굽으면 ‘右傾’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共產化 革命戰略 및 戰術類型

(1) 革命의 基本類型

戰略의 유형은 革命의 유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먼저 혁명의 유형부터 고찰할 필요가 있다. 원래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면 필연적으로 反資本主義的 혁명이 일어나 사회주의로 전환되는 것으로만 설명하였고 후진국가에서의 혁명문제에 관해서까지 자세히 논한 바는 없었다. 그런데 레닌은 자본주의국가 상호간의 발전이 불균등함을 전제로 종전의 선진국가와 새로운 선진국가가 되려는 국가사이의 殖民地 쟁탈전으로 나타나는 帝國主義段階에 있어서는, 선진국가는 식민지에서의 수탈로써 국내적 갈등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데 반하여 후진국가는 대내적 갈등이 상대적으로 더욱 첨예화됨으로써 국제제국주

9) 金永學, 앞의 책, pp.219-220.

의 전선중 가장 약한 고리로 된다고 하였고¹⁰⁾ 바로 그같은 처지에 있는 곳이 러시아이므로 “러시아에서 가장 먼저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였다.

이같은 레닌의 敎示를 토대로 하여 코민테른(國際共產黨) 제6차 대회(1929년 7월~8월)에서 채택된 강령에 의하면 각국의 정치경제적 발전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가지 一國革命方式이 제시되고 있다.

(가) 先進國의 革命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선진국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충분히 성장한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여 즉시 프롤레타리아(共產黨) 獨裁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혁명 방식은 선진국가에서는 이미 민주화가 이룩되었고 또한 프롤레타리아가 충분히 성장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바, 아직 이같은 방식으로 공산화혁명을 성취한 국가는 사실상 이 地球上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中進國의 革命

중진국에 있어서는 일단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고 나서 사회주의혁명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2段階革命이 必要한 理由는 중진국가에서는 아직 封建制度가 잔존하며 또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성장도 불충분하기 때문이라는 것인바, 이같은 방식으로 공산화된 국가가 바로 소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後進國의 革命

식민지, 반식민지 및 종속국에 있어서는 민족독립투쟁과 반봉건 민주혁명을 성취하고 나서 사회주의혁명으로 이행하되 특히 이미 공산화된 國家(소련)의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10) 레닌, 「資本主義의 最後 段階로서의 帝國主義」(1916), 共產主義要典, 東京, 日刊勞動通信社, 1959, p.148.

방식이 필요한 이유는 후진국에는 外勢가 침투되어 있으며 또한 봉건제도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인바, 이같은 방식에 의하여 공산화된 것이 소련 이외의 거의 모든 공산국가였다고 할 수 있다.

(2) 戰略의 基本類型

전략의 유형은 진술한 혁명유형에 따라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전략, 反帝·反封建民主主義(新民主主義·人民民主主義)혁명전략 및 사회주의혁명전략 그리고 이같은 一國革命 성취후에 수행되는 세계혁명전략으로 구분된다.¹¹⁾ 그런데 이들 각이한 혁명전략의 차이점은 그 궁극적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단계·절차상의 당면목표 및 목표수행을 위한 革命力量의 配置計劃에 있는데 불과한 것인바 그 대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부르주아民主主義 革命戰略

이것은 中進國에서의 前段階革命戰略인바 그 전략적 당면목표는 우선 封建制度를 소탕하는데 있으며 그같은 목표수행을 위해서 數的으로 열등한 프롤레타리아트를 主力軍으로 삼되 수적으로 우세한 농민을 그 同盟軍으로 이용하게 된다. 따라서 그 명칭은 부르주아민주주의 혁명전략이면서도 부르주아지는 專制君主勢力과 협력하지 못하도록 격리, 중립화시켜 無力化한 다음 전제군주세력을 먼저 타도하는데 이용하고 그 다음 단계인 사회주의혁명에서 부르주아지를 타도하는 것으로 미리 책정해 놓고 있는 것이다.¹²⁾

(나) 人民民主主義 革命戰略

이것은 후진국에서의 前豫備段階革命戰略인 바 그 전략적 당면목표는 먼저 外勢驅逐 및 國內封建制度를 타파하는데 있으며 그같은 목표수행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노동자계급 영도하의 勞·農同

11) <표 1> 戰略의 類型 및 運用原理 參照.

12) 스탈린, 앞의 책, p.112.

盟軍을 주력군으로 삼고 타도대상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각계각층 인민을 동맹세력으로 포섭하게 되는 것이다.¹³⁾ 그런데 이 혁명 전략단계에서는 그때그때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외세와 국내 반공세력의 타도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한 양자를 격리·고립화시켜 차례로 각개격파하는 방식도 적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戰略的 指導’에 속한다.

(다) 社會主義 革命戰略

이것은 선진국 또는 중진국과 후진국에서의 後段階革命戰略인바 그 전략적 당면목표는 부르주아지를 타도하고 私有制를 청산하는데 있으며 그같은 목표수행을 위한 主力軍은 프롤레타리아트이고 補助軍은 小作人 등 極貧農에 국한된다.¹⁴⁾ 따라서 小市民階層은 부르주아지와 협력하지 못하도록 격리, 中立化시켜 부르주아지를 먼저 타도하고 난 다음 그들을 제거하거나 노동자로 개조하도록 책정하고 있다.

(라) 世界革命戰略

이것은 각국이 자국의 사회주의혁명을 기본적으로 성취한 후에 그 혁명을 밖으로 확대 수출하는 단계의 전략인바 그 전략목표는 국제자본주의의 타도이며 그같은 목표수행을 위하여 전세계 프롤레타리아트를 주력군으로 삼고 전세계 선진제국의 半프롤레타리아트(貧·中農, 都市貧民, 小規模 自營業者 등)와 후진제국의 민족해방투쟁세력을 동맹세력으로 책정하고 있다.¹⁵⁾ 따라서 그들은 각국의 小부르주아民主諸黨이 부르주아와 협력하지 못하도록 격리, 中立化시켜 부르주아지를 집중 공격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년에 와서 中·蘇의 지도자들이 취하고 있는 언동이나 東歐事

13) 허중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p.85.

14) 스탈린, 앞의 책, p.112.

15) 스탈린, 앞의 책, pp.112-113.

態등은 以上에서 언급한 世界革命戰略에 대한 認識上的의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바, 이는 공산주의 세계관의 변화여부와 더불어 우리들의 주목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3) 戰術의 基本類型

전술이란 어떤 혁명단계에 있어서나 구체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임기응변하는 것이어서 전략과 같이 단조로운 것이 아니라 다종다양한 것이 그 특징이다.¹⁶⁾ 그리고 아직까지 개발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전술들이 새로이 조성되는 상황변동에 적응하도록 창안될 수 있다.

전술은 만조기에는 攻擊, 간조기에는 後退, 그리고 그 중간기에는 防禦를 취하게 된다. 또한 완전한 만조기가 조성되기 이전에는 역량배치계획에서 책정된 동맹세력들을 포섭 統一戰線을 형성하여 기회있는대로 우회공격함으로써 부단히 主敵에 대하여 압박을 가하는 수법을 구사하는바, 그 개요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攻擊型 戰術

혁명의 主·客體的 與件이 昂揚期라고 간주될 때 공산당은 평화적 붕기로써 彼我의 力量을 ‘計算’해 보며, 어느 정도 자신이 서게 되면 彼我力量을 직접 시험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소위 ‘만조기’가 조성되면 이 때를 놓치지 않고 武裝蜂起를 단행하는 것이 그들의 붕기방식이다.

만조기란 타도대상인 상층지도계급 내부에 균열이 일어나서 기존체제의 유지가 어렵게 되거나¹⁷⁾ 하층계급의 고통이 극도로 악화되어 반항기운이 충만하였을 때¹⁸⁾를 뜻한다.

16) <표 2> 戰術의 類型 및 運用原理 參照.

17) 소위 ‘上層階級の 危機’이다.

레닌, 제2인터내셔널의 崩壞(1914), 吉田弘 譯, 東京, 國民文庫版, p.36.

18) 소위 ‘下層階級の 危機’이다. 같은 책, p.37.

이와 같은 만조기에 공산당은 정치적 파업과 시위, 국회보이콧, 폭동전개 및 전투적 표어를 제시하여 투쟁하며 그 조직형태는 혁명적 공장위원회, 농민위원회, 파업위원회 및 공공연한 공산당의 地上活動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공격형 전술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무장봉기전술과 人民戰爭戰術 등이 있다.

(나) 後退型 戰術

전술한 바와 같은 공격에 임하였을 때 상대방의 우세한 반격에 직면하여 오히려 위급한 사태에 이르게 되면 그들은 지체없이 후퇴함으로써 자체의 생존유지를 꾀하게 된다.

후퇴에는 ‘退却’과 ‘妥協’이 포함되는데, 이와 같은 후퇴는 결코 후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幹部救出과 주요진지(既得權)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며, 후퇴후 隊列을 정비하고 역량을 회복하게 되면 또다시 새로운 공격을 시도하게 된다. ‘퇴각’은 덜 중요한 陣地를 내주면서 계획적으로 예정된 시기에 필요한 만큼 후퇴하는 것이며¹⁹⁾ ‘타협’은 일정한 지역과 자체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그 정권의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만 타협하는 것²⁰⁾을 뜻한다. 이와 같은 수난기를 맞이하게 되면 그들은 투쟁형태, 조직형태 및 표어를 간조기용으로 교체하고 地上에 숨어 들어 전력 재정비에 임하게 된다.

(다) 防禦型 戰術

공산당은 일단 후퇴하고 나서 自體戰力을 재정비하는 기간에는 방어를 취하게 되는 것인데, 潮水의 침체에기는 수세적 방어로 임하되 조수가 양양함에 따라 점차 공세적 방어로 전환하게 된다. 방어형전술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平和(共存)戰術이며 중립화

19) 中共黨의 「2萬5千里 大長征」(1934)이 그 代表的 事例이다.

20) 레닌이 10月革命 直後 對獨講和를 呼訴하여 成就시킨 「브레스트·리톱스크」講和 및 韓國動亂時 北韓共產集團이 蘇聯(말리크 UN代表)을 내세워 休戰을 제의한 것이 그 代表的 事例이다.

전술, 침투·폭로전술 등도 방어형에 속하는 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

平和戰術은 主敵을 상대로 자체역량을 비축하는 기간중 상대방으로부터의 공격을 피하려는 수법이고 中立化戰術은 中間浮動層을 反政府的, 親共의 集團으로 만들려는 것이며 浸透·暴露戰術은 유리한 객관적 여건을 만들어 내기 위한 공세적 방어수법이다. 이와 같은 방어기간중 공산당은 간조기 및 만조기용 투쟁, 조직형태 및 표어를 배합하게 되며 조수가 昂揚됨에 따라 攻勢的 要素를 가중시켜 나가는 것이 戰術的 配合의 原理이다. 공세적 방어수법으로는 平和蜂起戰術과 계릴라戰術도 포함된다.

(라) 迂迴의 戰術

혁명운동이 대체로 양양기에 있을 때 상대방을 공격하는 방법으로서 통일전선전술²¹⁾에 의한 우회공격이 있다. 통일전선전술에 있

21) '위로부터'란 幹部經由, '밑으로부터'란 直接 下部要員·大衆을 包攝하는 것이다. 統一戰線戰術이란 쉽게 要約하면 共產黨이 所期의 目的을 달성할 때까지 各界各層의 廣範한 非共產勢力을 利用하기 위한 잠정적인 政略의 聯合(提携 또는 同盟)術策을 뜻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上層統一戰線戰術(戰術의 提携, '위로부터')과 下層統一戰線戰術(戰略의 同盟, '밑으로부터')이 있는데 共產黨이 基本으로 삼는것은 下層統一戰線戰術이며 上層統一戰線戰術은 下層統一戰線戰術에 寄與하기 위해 存在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北韓을 相對로 할때 當局間對話나 人民間對話나 하는데 當局間對話나 人民間對話는 그것이 指向하는 바 目的이 다를뿐, 같은 上層統一戰線戰術의 對象이다.

統一戰線戰術의 시발은 공산당이 대중으로부터 고립되지 않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공산당이 主敵을 포위, 고립시키고 혁명역량을 보호하는데 쓰이는 능동적인 전술로까지 발전되었다.

統一戰線戰術의 來歷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統一戰線戰術의 효시는 1920年 레닌이 쓴 「공산주의의 좌익 소아병」이란 저술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레닌은 이 저술에서 “정면공격이 뜻대로 되지 않는 정세하에서는 상대편 내부의 대립과 갈등을 이용하고 또한 동맹가능한 부동층과도 타협하거나 협조할 줄 알아야 한다.”

“비록 불확실하고 조건적인 세력일지라도 기본목표 수행에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세력이면 동맹군으로 삼고 主敵을 압박하는 迂迴攻擊任務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여 공산당의 행동요령을 밝히고 있는데 레닌의 이 교시에서 시작된 우회공격전술로서의 통일전선전술은 오늘날까지 세계 도처의 공산당이 국내외적으로 매우 중요시하며 애용하는 전술로 되어 있다.

레닌의 教唆를 부연해서 설명하면 공산주의가 본질적으로 계급주의이고 프롤레타리아獨裁를 지향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공산당이 아직 정권을 잡지 못한 어려운 시

어서도 그 구체적 방법면에서 위로부터의 또는 밑으로부터의 統一戰線構築, 그리고 국제적 통일전선의 형성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그 양상이 다양하게 변모하게 된다. 이같은 통일전선에 의한 수법은 1920년대에 레닌에 의해 개발된 이래 점차 국제화되면서 1930년대 후반에 反파쇼 人民戰線戰術을 거쳐 第2次 世界大戰 이후에는 반제·반봉건적 人民民主戰線의 형태를 취하면서 주로 후진국에서의 人民民主主義 革命戰略으로 階梯化되었다. 공산당은 이같은 통일전선의 수법을 구사함에 있어서 守勢 및 攻勢的 방어 전술을 교묘히 배합해 가면서 가능한 투쟁·조직형태 및 표어를 취하게 되며 만조기가 조성되면 정면공격으로 전환하게 된다.

기에는 우선은 이용가치가 있는 계층이 싫어할 구호를 미리 성급하게 내걸지 말고 그들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는 구호를 제시하면서 그들의 힘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타도대상이라 할 지라도 그들 내부에 일시적일지언정 분열과 갈등이 있을 수 있는 법이므로 그러한 갈등기에는 파고 들어가 내부를 뒤흔들고 서로를 이간시켜 무력화시키는 수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산당은 전자를 '직접보조군의 이용'이라 부르고 후자를 '간접보조군의 이용'이라 부르고 있다.

이에 대하여 공산당내의 극좌세력으로부터 개량주의라는 비난을 받게 되자 스탈린은 「레닌주의의 기본에 관하여」라는 저서에서 개량주의와 혁명주의의 구분은 비공산세력과 타협이나 협상을 하고 않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면서 타협이나 협상을 공산화혁명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결코 개량주의가 아니라고 하여 오히려 그것을 장려하였다.

이와 같은 공산당의 우회공격 수법이 정식으로 통일전선전술이란 명칭으로 쓰여지고 혁명전술로서 강조되게 된 것은 1921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3차 코민테른(국제공산당)대회에서 레닌이 제시한 "통일전선에 관한 테제"가 채택되면서부터이다. 이 테제가 나오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1921년 3월 독일의 만스펠트 鑛山地方에서의 노동자파업을 통한 공산화혁명이 타협가능한 동맹세력을 이용할 줄 모르는 좌경오류 때문에 실패하여 독일공산당세력을 파멸로 이끈 사건에서 얻은 교훈때문이지만 그 간접적인 동기는 1920년대에 서구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 기대하였던 공산화혁명이 모두 좌절된 극좌적인 좌경 모험주의적 지도노선때문에 실패한 데서 나온 교훈때문이었다.

統一戰線戰術이란 다시 한번 간추려서 규정하면 "공산당이 일정한 혁명단계에서 主敵을 타도하는데 필요한 동조세력을 획득하고 그들과 잠정적인 동맹체를 형성하여 투쟁하는 기법"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 전술은 공산당이 그들의 세력이 약할 때 일차적으로 主敵 이외의 모든 비공산세력을 이용하는데 주요점을 둔 것으로서 공산혁명을 지지하는 자만 남을 때까지 계속되는 전술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저들끼리의 정적을 숙청, 제거하는 데도 쓰이는 전술이다.

다. 共產化 革命戰略 및 戰術計劃

(1) 段階의 轉換原理

전략은 해당 혁명단계중 일관성있게 적용되는 기본계략이므로 잠정적인 정세 또는 여건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다. 즉,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 또는 人民民主主義革命段階에 있어서는 그 혁명이 달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 전략 또는 인민민주주의혁명전략이 일관성있게 적용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前豫備段階革命이 一段落되어 사회주의혁명으로 이행시에는 戰略 역시 社會主義革命戰略으로 전환된다.

이와 같이 하나의 혁명단계는 그 자체의 혁명전략을 지닌다는 점에서 革命과 戰略사이에는 1대1의 관계가 형성되며 이같은 관계를 革命과 戰略段階의 一致性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들의 행동에서 변화무쌍한 것은 전략이 아니라 바로 전술부분인 것인바, 하나의 혁명전략 단계중에서도 정세나 여건변화에 상응하여 공격, 후퇴, 방어 및 우회공격 등으로 변모하는 것이 전술의 단계 전환원리이다. 그러면서도 전술은 반드시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략에 대한 종속성이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2) 目標의 設定原理

전략과 전술의 단계란 어떠한 목표 및 임무를 성취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일정기간을 뜻하는 것이므로 전략과 전술단계의 차이는 곧 지향목표상의 차이와 직결된다. 戰略이 지향하는 목표는 해당 혁명을 직접 완수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이나 전술이 달성해야 할 임무는 만조기에는 전략목표의 직접공격, 그리고 간조기에는 일시적으로 후퇴임무가 할당되는 것이다.

그리고 일단 후퇴임무를 달성하고 나면 곧이어 방어임무로 전환

하게 되며 수세적 방어에 어느 정도 성공하고 나면 점차 공세적 방어로 전환하여 정세의 호전을 포착하는 대로 다시 공격을 취하는 등 戰術任務는 혁명여건의 干滿에 따라 수시로 전환하게 된다. 한편 완전한 滿潮期가 조성되기 이전에는 공산당은 그저 팔짱만 끼고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용가능한 세력이면 그것이 비록 불확실하고 조건적인 세력일지라도 동맹군으로 삼고 主敵을 압박하는 우회공격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인바²²⁾ 이것이 바로 공산당의 統一戰線 수법이다. 그런데 전술적 성공이 전략적 견지에서 도움이 되지 않거나 또는 오히려 유해로운 경우에는 그같은 戰術任務 자체를 변경하거나 그 성공을 포기하는 것이 전술운영상의 원리로 되어 있다. 공산당이 중시하는 것은 전술적 임무 그 자체가 아니라 전략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전술적 성과이므로 전략적 見地에서 가치가 인정되는 전술임무가 아니고서는 사실상 그 임무가 설정될 수조차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戰略・戰術的 指導

전략적 지도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力量配置計劃에서 책정된 보조군을 옹계 이용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스탈린은 혁명에 이용가능한 보조군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여 그 이용방법을 가르치고 있다.²³⁾

<直接補助力量>

- ① 자국의 농민과 중간층(第1)
- ② 인접국의 프롤레타리아트(第2)
- ③ 식민지, 종속국의 독립투쟁(第2)
- ④ 既 쟁취한 프롤레타리아 독재권력(第2)

22) 레닌, 「共產主義의 左翼小兒病」(1920), 스탈린, 앞의 책, p.127.

23) 스탈린, 앞의 책, p.115.

<間接補助力量>

⑤ 자국내의 비공산주의 세력간의 충돌

⑥ 자본주의 국가간의 모순 및 전쟁

상술한 바의 보조군, 즉 혁명적 제세력으로 하여금 적시에 공격 또는 후퇴를 취하게 함으로써 속도상실 또는 시기상조에 빠지지 않도록 전술전환의 속도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적 指導課題이다. 그리고 어떠한 형태의 전술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도 즉 후퇴시까지도 前衛로 하여금 결코 전략목표를 망각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투쟁의 방향을 견지하게 하는 것 역시 戰略的 指導에 속하는 과제이다.

한편 戰術的 指導의 主課題는 상황에 알맞는 투쟁·조직형태 및 표어를 구체적으로 교체 및 배합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당면한 혁명투쟁을 전개하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고리²⁴⁾를 포착하여 그것을 적시에 끌어당기는 것도 戰術的 指導의 소관분야이다.

<표 1> 戰略의 類型과 運用原理

유 형	운 용	비고(註)
부르주아민주주의 혁명전략 1.중진국의 前段階혁명 전략 2.사유제가 존속하는 연합독재 3.사회주의 혁명전략으 로 이행	1. 目標：封建遺制 清算 (名分上) 2. 指導 가.역량배치 ¹⁾ ○주력군：프롤레타리 아트 ○보조군：농민 나.속도유지 (戰術交替時期) ²⁾ 다.방향유지 (후퇴시포함) ³⁾	1) 동맹 및 孤立化對象을 채정하고 임무부여 2) 공격 및 후퇴 時期決 定, 交替統制 3) 어떤 戰術下에서도 前 衛로 하여금 戰略目 標를 명심하도록 통 제

24) 여러 難題中에서 그것만 해결하면 나머지 문제들도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핵심적 문제를 뜻한다. 북한 「정치용어사전」(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70), p.558.

<p>人民民主主義革命 (新民主主義 혁명전략)</p> <p>1. 後進國의 前段階의 혁명전략</p> <p>2. 사유제가 존속하는 연합독재</p> <p>3. 사회주의혁명전략으로 이행</p>	<p>1. 目標 : 外勢驅逐 封建制 청산(名分上)</p> <p>2. 指導</p> <p>가.역량배치</p> <p>○주력군 : 勞農同盟軍¹⁾</p> <p>○보조군(Ⅰ) : 各계각층</p> <p>○보조군(Ⅱ) : 국제혁명역량²⁾</p> <p>나.속도유지(전술교체시기)</p> <p>다.방향유지(후퇴시 포함)</p>	<p>1) 노동자계급 영도하의 勞・農同盟軍이다.</p> <p>2) 공산국 및 비동맹국의 反서방세력을 뜻한다.</p>
<p>社會主義革命戰略</p> <p>1. 중・후진국의 後段階 혁명전략</p> <p>2. 선진국의 혁명전략</p> <p>3. 私有制를 否定하는 프롤레타리아 獨裁</p> <p>4. 世界革命戰略으로 移行</p>	<p>1. 目標 : 私有制 清算</p> <p>2. 指導</p> <p>가.역량배치¹⁾</p> <p>○주력군 : 프롤레타리아트</p> <p>○보조군(Ⅰ) : 極貧農²⁾</p> <p>○보조군(Ⅱ) : 隣接國 프롤레타리아트</p> <p>나.속도유지(전술교체시기)</p> <p>다.방향유지(후퇴시 포함)</p>	<p>1) 비공산주의 세력간의 갈등 및 자본주의국가간의 전쟁을 '有利한 契機' 즉 간접보조군으로 삼는다.</p> <p>2) 富農은 타도대상, 中農・小農은 중립화(隔離) 대상이 된다.</p>
<p>世界革命戰略</p> <p>1. 모든국가의 最終段階 革命戰略</p> <p>2. 一國社會主義革命後에 移行</p>	<p>1. 目標 : 혁명의 擴大, 輸出*</p> <p>2. 指導</p> <p>가.역량배치</p> <p>○주력군 : 國際프롤레타리아트</p> <p>○보조군 : 半프롤레타리아트 및 民族解放運動</p> <p>나.속도유지(전술교체시기)</p> <p>다.방향유지(후퇴시 포함)</p>	<p>* 소련중심의 世界革命戰略은 와해되었으나 모든 공산당이 세계혁명을 추구하는 목표만은 변함이 없다.</p>

※ 전략단계는 혁명단계와 일치하며 지속성이 있다.

<표 2> 戰術의 類型과 運用原理

유 형	운 용	비고(註)
攻撃型 戰術 1. 무장봉기전술 2. 인민전쟁전술	1. 任務 : 전략목표 직접공격* 2. 指導 가.투쟁형태 : 비합법적 투쟁 나.조직형태 : 비합법적 조직 다.투쟁표어 : 好戰의 표어 라.중심고리 : 정권탈취	* 전략목표 달성에 직접 기여하는 공격임무
後退型 戰術 1. 퇴각전술 2. 타협전술 ※타협은 일정지역 장악 시 후퇴	1. 任務 : 전술적 후퇴* 2. 指導 가.투쟁형태 : 합법적투쟁 나.조직형태 : 합법적조직 다.투쟁표어 : 평화적 표어 라.중심고리 : 생존유지	* 간부구출 및 중요한 陣地(既得權) 유지임무
防禦型 戰術 1. 게릴라전술 2. 평화봉기전술 3. 침투전술 4. 폭로전술 5. 평화(共存)전술 6. 중립화전술	1. 任務 : 守勢 및 攻撃的 防禦 ¹⁾ 2. 指導 ²⁾ 가.투쟁형태 : 합법·비합법(配合) 나.조직형태 : 합법·비합법(配合) 다. 투쟁표어 : 平和·好戰(配合) 라.중심고리 : 만조기조성	1) 대열정비 및 역량비축 임무 2) 조수가 양양함에 따라 비합법적 요소가 강화된다.
迂迴型 戰術 1. 통일전선전술 2. 인민전선전술 3. 인민민주주의전선 전술(전략화)	1. 任務 : 포위 및 우회공격* 2. 指導 가.투쟁형태(上同) 나.조직형태(上同) 다.투쟁표어(上同) 라.중심고리(上同)	* 타도대상을 고립화 만조기 조성 임무

※ 전술단계는 조수의 간만과 일치하며 가변성이 있다.

이와 같이 戰略計劃을 총체적으로 지도하며 그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전략적 지도과제라고 한다면, 戰術計劃을 적시적절하게 집행해 나가는 것은 전술적 지도과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전술계획 자체가 전략계획에 종속되고 있으므로 전술적 지도 역시 전략적 지도에 따라 수행됨은 재언할 필요가 없다.

3. 北韓의 對南革命戰略

현재 북한공산집단이 구사하고 있는 대남전략은 이미 序言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결코 김일성집단의 독창물이 아닌 것이다. 그들은 굳이 주체사상에 기초했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마르크스가 창안한 唯物史觀的 사고방식에 입각하여 혁명의 실천기법으로서 레닌이 開發하고 스탈린이 定式化한 전략·전술 모델을 남한 사회 실정에 맞도록 그들 나름대로 응용하고 있는 것이다.

가. 對南革命 및 ‘祖國統一’觀

(1) 革命의 基本節次 問題

북한공산집단이 말하는 소위 ‘全朝鮮革命’이란 한반도 전역에 걸친 공산화혁명을 의미하는 것이며 남한지역의 공산화까지를 자기 임무로 삼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들의 뜻대로 되기만 한다면 본래 ‘조선혁명’은 한반도 전역에 걸쳐 동시적으로 수행되어야만 하겠으나 美軍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다는 객관적 여건의 제약때문에 북한지역에서만 先行된 셈이다.

이와 같이 북한지역에 한해서만 선행된 공산화 작업을 그들은 ‘半國的 革命’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같은 半國的 革命은 남한지역까지를 공산화하는 소위 ‘全朝鮮革命’을 위한 혁명기지 구축에 해

당되며 이를 가리켜 ‘民主基地路線’²⁵⁾이라고 부르면서 무장력, 정치·경제력 및 선전선동 기능강화에 광분하고 있다.

6·25남침이야말로 바로 半國的 革命을 그들의 무력을 이용하여 조급하게 전국적 혁명으로 확대하려는 기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나 실패로 끝나자, 그들은 우선 북한지역에 대해서만이라도 본격적인 공산화 작업을 전개해 나가기로 작정하고 1953년 8월부터 人民民主主義革命에서 社會主義革命으로 혁명단계를 전환시켰다. 그러나 남조선혁명은 여전히 인민민주주의 혁명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그들은 비록 남북간의 혁명단계는 다르다 하더라도 북한의 혁명기지적 역할을 내세워²⁶⁾ 남조선혁명을 전조선혁명의 절차상의 문제로 취급하고 있다. 그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장차 제2의 朴憲永같은 對北 非從屬的 공산주의자들이 출현할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하는 포석이 된다고 믿고 있으며 이같은 점에서 그들이 기도하는 대남혁명은 곧 북한공산집단의 영도하에 수행되는 남한의 정복을 뜻하고 있는 것이다.

(2) 南朝鮮革命과 統一問題

金日成은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상관성, 공통성 및 차이점 등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對南工作要員들에게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이 별개의 문제는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완전히 같은 문제도 아니다.”라고 설명하면

25) 民主基地路線이란 「바그훈」교수에 따르면 “소련의 統制權이 미치는 部分에 우선 소련의 衛星國을 樹立하고 그 衛星國을 그 나라의 殘餘部分에 대한 支配權 確立의 作戰基地로 利用하는 공산화 幟張정책”의 表現이다.(共産圈問題研究所, 北韓總鑑, 「1945~1968년」 1968. 6.25. p.828.)

韓半島의 경우는 北韓地域을 強力한 政治, 軍事, 經濟的 「革命基地」로 만들어 南韓地域까지 공산화하려는 「스탈린」의 소련위성국 확대정책에 따른 對南共産化革命의 戰略的 指導路線에 해당된다.

26) 허종호, 앞의 책, pp.21-27.

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²⁷⁾

첫째, 南朝鮮革命과 祖國統一은 다같은 조선혁명의 일환으로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곧 남조선혁명을 위한 투쟁으로 되며, 남조선혁명을 수행하는 것은 그만큼 조국통일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되어 兩者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不可分離의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즉, 남한의 共產化는 그들이 바라고 있는 조국통일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은 다같이 朝鮮革命에 기여한다는 공통성이 있고 또한 駐韓美軍과 한국의 반공정권을 타도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데에도 공통성이 있으며, 특히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 혁명투쟁이라는데 있어서도 공통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즉, 김일성이 내세우고 있는 소위 주체사상, 주체적 전략·전술에 입각하여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남한의 自由民主政權을 타도하기 위한 혁명이라는 점에서 양자가 일치한다는 것이다.

셋째,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은 각기 그가 포괄하는 지역적 범위, 그리고 그를 직접 수행하는 主體가 서로 다르며 그 수행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즉, 남조선혁명은 남한지역에서 그리고 조국통일은 한반도지역에서 수행되며, 그것을 수행하는 주체도 남조선혁명은 남한의 地下黨과 그 주위에 뭉친 勞·農同盟軍과 각계각층인데 비하여 조국통일에서의 主力軍은 남북한전역의 노·농동맹군이고 그것을 지도하는 黨도 김일성이 직접 이끄는 북한의 「로동당」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 수행방도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남조선혁명은 폭력적 방법에 의하되, 조국통일은 남조선혁명을 이룩하여 人民政權(共產黨이 주도하는 연합정권)을 수립한 후 이 人民政權과 북한의 공산정권이 形

27) 金日成敎示, 「조국통일과 남조선혁명의 호상관계에 대하여」(1968.7.8)에서 歸順者(金用珪)證言, 內外政策研究所, 內外論叢, 第4輯, 1982, pp.118-119.

式上의 平和協商節次를 거치는 이른바 合作統一이라는 평화적 방법에 의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3) 北韓의 ‘祖國統一’觀

공산주의자들은 해당 사회 하부구조의 발달정도에 따라 혁명의 방식을 결정하며 그에 따른 전략·전술을 실천하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바로 이같은 원리에 입각하여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조국통일에 관한 주장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그들은 조국통일이 ‘民族解放 人民民主主義革命’과 ‘民族的 및 國際的 性格’을 띠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⁸⁾ 조국통일이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성격을 띠게 되는 이유는 남한사회가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적 半封建社會(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 이후부터는 식민지적 半資本主義社會)라는 데서 그리고 민족적 및 국제적 성격을 띠게 되는 까닭은 조국통일문제가 우리민족 내부적인 一國革命인 동시에 世界革命의 일부분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북한공산집단은 사실상 조국통일은 오직 혁명에 의해서만 성취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나. 對南革命戰略의 基調

(1) 戰略階段과 目標

북한공산집단의 對南革命戰略은 한국의 현 體制를 타파하기 위해 이용가능한 각계각층을 규합하여 투쟁하는 기본계획을 의미한다. 그러한 기도하에 그들은 남한의 현 처지를 미국 및 일본의 식민지적 從屬國이라고 모함하면서 소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

28) 허종호, 앞의 책, pp.45-46.

명'을 수행해야 한다고 強辯하고 있다.²⁹⁾

따라서 결국 그들이 어떠한 구실을 내건다 하더라도 결국 그들의 대남혁명전략의 目標가 주한미군의 철수와 반공정권의 타도에 의한 소위 '인민정권의 수립'에 있음을 곧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대남혁명의 目標를 反帝니, 反封建이니, 反파쇼니하고 애써 내세우고 있으나, 남한이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며 또한 봉건적·파쇼적 요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 자신이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그와 같은 주장을 펴게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광범한 反美·反政府統一戰線을 형성하여 그들이 기도하는 혁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명분과 구실을 조작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그리고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일단 성취하고 나면 곧 2단계 사회주의혁명으로 이행할 것이라는 점은 그들의 革命原理上 지극히 명백한 사실이다.

그들이 黨規約 前文에서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을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다.”고 하였고 최종목적을 “은 사회의 주체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규정한 것은 바로 그같은 기도를 명백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2) 統一의 두가지 方法

김일성은 祖國統一課業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바 ‘非平和的 方法’과 ‘平和的 方法’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다.³⁰⁾

이같은 김일성의 발언은 비평화적 방법이 여의치 않는 여건에서 평화적 방법을 구상해 낸 것이며 또한 그 평화적 방법 자체도 결

29) 제5차 노동당대회(1970. 11) 및 제6차 노동당대회(1980. 10)에서 改正한 黨規約 前文參照.

30) 허종호, 앞의 책, pp.264-270.

코 폭력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는데 유념해야 한다. 즉, 비평화적 방법이란 북한이 무력을 직접 동원함으로써 본격적인 투쟁을 통하여 남한을 정복하는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평화적 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中心고리 전술이 바로 駐韓美軍 撤收論인 것이다.

한편, 平和的 方法이란 남한 자체내에서 人民民主主義革命이 수행된 다음, 남북정권을 통합하거나 또는 남한의 현정권(反共自由民主政權)이 聯共政權(人民政權과 같은 개념임.)으로 교체된 다음 남북간의 합작³¹⁾을 통하여 통일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적 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중심고리 전술은 바로 남북연방제 통일론인 것이다.

그런데 前者나 後者가 모두 남한의 反共政權을 배제하려는 것이어서 現存하는 남북체제사이에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김일성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관한 우리의 주장은 결코 美帝國主義者들과의 투쟁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것이 남조선당국자들과 그 어떠한 협상이나 타협을 하자는 것과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다.”³²⁾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북한공산집단이 것처럼 요란하게 평화적 통일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국제정세의 흐름에 맞추어 평화공세를 펴는 한편, 대한민국이 마치 파쇼적이며, 호전적인 집단인 것처럼 왜곡·선전하려는 데 그 진의가 있으며 또한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들의 對共 경각심을 이완시켜 혁명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려

31) 북한공산집단은 合作的 뜻을 대부분의 경우 統一戰線戰術과 同義語로 쓰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南北間의 合作과 交流는 國家間의 一般의 合作交流과 엄격히 區分되며 同時에 두 制度間의 共存을 위한 合作과 交流와도 本質的으로 區別된다...” “따라서 北과 南의 多方面的 合作과 交流는 廣範圍한 群衆을 階級的으로 覺醒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偉大한 主體思想을 唯一한 指導思想으로 하고 首領님의 두리에 굳게 뭉치게 하며 首領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祖國統一을 위한 鬪爭에 힘차게 떨쳐나서게 하는 重要한 條件으로 된다.” 云云하고 있다.

허중호, 앞의 책, pp.229-230.

32) 김일성저작선집 4권, 1968, p.239.

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것처럼 평화를 애호하고 있는 듯이 위장선전하는 데는 앞으로 야기될 수도 있는 제2의 6·25와 같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모두 남한측에 전가하려는 저의도 아울러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3) 戰略的 指導課題

戰略的 指導란 바로 전략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革命力量을 옹기 편성·배치하고 결정적 시기에 맞추어 너무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는 속도로 攻擊戰術을 동원하도록 조정하며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前衛로 하여금 전략목표를 망각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임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一般原理를 북한공산집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3大革命力量의 編成

혁명과 반혁명의 역량대비관계에 있어서 혁명역량의 압도적 우세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혁명의 주력군과 보조군을 어떻게 책정, 편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김일성은 소위 '3대혁명역량의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즉, 김일성은 1964년 2월 27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세가지 혁명역량을 편성·강화하도록 강조하였다.

- ① 공화국 북반부의 사회주의 혁명역량
- ② 남조선의 혁명역량
- ③ 국제혁명역량

여기에서 남조선의 혁명역량이란 노동자계급(共産黨)이 영도하는 勞·農同盟軍을 주력군으로³³⁾ 삼고 청년학생, 지식인, 종교인, 소시민 등에 이르는 각계각층을 혁명의 보조군으로 삼아 反美·反

33) 1985. 7. 27. 한국민족민주전선(통일혁명당의 후신) 중앙위원회 名義로 發表한 “한국 민족자주선언”以後는 主力軍을 勞·農·學同盟과 그속에 뿌리박은 前衛組織으로 再策定하고 있다.; 不穩油印物, “주체사상강좌” 제3장 민족해방운동의 전략과 전술, 1987. 3. p.6. 參照.

政府的인 統一戰線으로 묶어 세운 상태를 뜻한다. 그리고 국제혁명역량이란 공산제국은 물론이며 선진제국에서의 노동운동 및 비동맹권에서의 反韓·反西方運動 등을 모두 지칭하는 것이다. 또한 남한내의 각 정당 및 사회단체간의 갈등과 노사간의 갈등, 미·일 양국을 위시한 자본주의 제국간의 갈등을 間接補助軍, 즉 對南革命을 간접적으로 돕는 유리한 요소로 보고 있음은 재언할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은 革命力量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하는 말은 일단 뒤로 미루고 反帝, 反封建, 反파쇼의 구호를 내걸어 주한미군의 철수와 反共政權의 타도를 실현하여 人民政權이라는 共產政權을 수립하는 것을 당면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이른바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正體이다.

(나) 3大革命力量의 配置

3大革命力量을 편성, 강화하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하는 문제는 혁명수행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직접전쟁의 방법을 취하느냐 또는 남한 자체내에서의 혁명방식을 위주로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것을 主力軍으로 하며 무엇을 補助軍(여기서도 우선순위가 있음.)으로 배치하는가의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다. 공산주의 혁명원리에 따르면 아무리 혁명역량을 잘 편성하더라도 그것을 적절하게 배치하지 못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혁명역량의 편성과 함께 그 배치문제가 중시되는 것인데 김일성이 對南革命戰略의 指導에서 제시한 비평화적 방법과 평화적 방법의 역량배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⁴⁾

① 非平和的 方法의 경우

첫째, 主力軍은 북한 자체의 사회주의 혁명역량인 소위 「인민

34) 內外政策研究所, 앞의 책, pp.131-132.

군」이며 이들은 미군과의 충돌을 될수록 피하면서 국군을 공격하여 섬멸한 후 남한전역을 강점한다.

둘째, 第1補助軍은 남한의 혁명역량이며 이들은 남진하는 인민군의 군사행동을 보조하면서 폭동을 일으켜 남한의 군사력을 분산, 약화시킨다.

셋째, 第2補助軍은 국제혁명역량이며 이들은 국제적으로 북한공산집단의 입장을 지지, 성원하고 남한에 대한 구체적 지원을 지지한다.

② 平和的 方法의 경우

첫째, 主力軍은 남한의 혁명역량중 地下黨(소위 「統一革命黨」 또는 「韓國民族民主戰線」)과 그 주위에 결속된 ‘勞·農同盟軍’이며 이들은 남한 전역에서 무장봉기를 일으켜 현정권(反共自由民主政權)을 전복한다. 그리하여 혁명정부 수립선포와 동시에 대외적으로 중립을 선언하면서 북한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한다.

둘째, 제1보조군은 통일전선에 망라된 각계각층이며 이들은 主力軍의 혁명투쟁을 보조하면서 각 지역에서 地主, 資本家 및 反革命官僚들을 타도한다. 그리고 일부 浮動層에 대해서는 반혁명의 편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격리, 중립화시킨다.

셋째, 제2보조군은 북한의 社會主義革命力量이며 이들은 대남공작 요원을 대량 남파하여 주력군과 합류해서 무장폭동을 확대시킨다. 그리고 남한의 친공적 혁명정권이 요청한 바에 의하여 지원한다는 구실하에 인민군이 직접 무력침공을 감행한다.

넷째, 제3보조군은 국제혁명역량이며 이들은 국제무대에서 미국을 비롯한 남한 지원역량을 약화, 남한을 고립시키고 북한공산집단의 입장을 지지, 성원한다.

(다) 速度維持의 問題

共産黨이 말하는 ‘결정적 시기’란 혁명운동의 주·객체적 여건이 성숙되어 소위 “반혁명적 폭력을 혁명적 폭력으로써 일격에 소탕

할 수 있는 절호의 시점”을 뜻한다.

이러한 시점은 全革命戰略 段階중에서도 그리 쉽게 얻어낼 수 없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귀중한 시기를 어떻게 조성, 선택 및 이용하는가 하는 속도유지문제는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戰略的 指導課題로서 매우 중요시되는 것이다.

① 決定的 時機의 展望

그들은 ‘결정적 시기’가 도래하는 전망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³⁵⁾

첫째, 기습남침, 즉 非平和的 方法을 취하는데 가장 유리한 시기이다. 이는 ▲세계도처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나 미국의 軍事力이 세계도처에서 분산되지 않을 수 없는 시기 ▲미국내부 輿論의 압력으로 주한미군철수가 불가피해지는 시기 ▲남한 전역에서 反美, 反政府의인 대혼란이 벌어지는 시기 등이다.

둘째, 남한 자체내부에서의 革命, 즉 평화적 방법을 감행하는데 유리한 시기이다. 이는 ▲남한에서 지도층 내부의 갈등이 첨예화되어 갈광질광하게 되는 시기(上層階級の 危機) ▲남한 내부에서 계급적 갈등이 격화되어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下層部의 생활이 극도로 어려워지는 시기(下層階級の 危機) ▲남한의 혁명역량이 튼튼히 편성되어 反革命勢力을 충분히 압도할 수 있는 시기 등이다.

② 決定的 時機의 造成

김일성은 “혁명이란 革命家들의 적극적이고 간고한 투쟁을 통해서만 전진될 수 있으며 성숙될 수 있는 것”³⁶⁾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즉,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주동적으로 앞당기기 위해서는 그 여건을 意圖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혁명여건을 의도적으로 조성하여 결정적 시기를 주동적으로 앞당기기 위해

35) 内外政策研究所, 앞의 책, pp.133-134.

36) 허종호, 앞의 책, p.173.

서 필요한 과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에 마르크스·레닌주의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地下黨을 구축하고 그 주위에 ‘勞·農同盟軍’을 비롯한 광범위한 동조세력을 규합하여 革命的 力量을 튼튼히 꾸리며,

둘째, 광범한 군중속에서 反政府 感情이 일어나 각종 群衆鬪爭(대중투쟁)을 부단히 전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동시에 反革命勢力을 고립, 약화시키며,

셋째, 국제무대를 통한 해외공작을 전개하여 남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③ 決定的 時機의 選擇

김일성은 “우리가 혁명적 여건을 의도적으로 성숙시키는 그 궁극적 목적은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앞당겨 조국통일의 사변을 主動的으로 맞이하자는데 있다.”고 전제하고 “중요한 것은 혁명여건을 분석·판단하고 결정적 시기를 제때에 선택 포착하는 것이며, 일단 시기를 선택한 다음에는 지체없이 決定的 鬪爭으로 돌입하는 것이다.”³⁷⁾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時機選擇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는 이유는 제아무리 혁명역량을 잘 편성하고 배치하더라도 결정적 시기를 놓치게 되면 승리를 거둘 수 없으며 심한 우여곡절을 겪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정적 시기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들이 중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즉, 첫째는 혁명의 主·客體的 與件을 勞動者階級の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하는 것이며, 둘째는 혁명과 반혁명간의 力量對比關係의 변화를 정확히 ‘계산’하고 ‘시험’해야 한다는 것이다.³⁸⁾

④ 決定的 時機의 利用

37)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 선전부, 김일성주의 혁명론, 1978, p.173.

38) 허중호, 앞의 책, p.176.

김일성은 일단 결정적 시기를 선택한 다음에는 지체없이 反動統治輩들을 짓부수는 결정적 투쟁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혁명에 있어 근본문제는 政權에 관한 문제이다. 적들의 수중에서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는 모든 형태의 투쟁을 政治鬭爭, 武裝鬭爭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³⁹⁾고 강조하고 있다. 즉 결정적 시기를 선택한 다음에는 지체없이 총공격으로 돌입하도록 하는 것이 전략적 지도의 과제이다. 공산주의자들이 총공격을 개시한다는 것은 무장봉기를 단행함을 뜻한다. 북한공산집단은 지난날 남한의 「4·19」를 보면서 본격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했던 것은 戰後復舊事業에 몰두하여 그때까지 主體的 力量을 완전히 정비하지 못했던 탓인데 지금도 그것을 “千秋의 恨”으로 삼고 있다.

(라) 方向維持의 問題

혁명 수행과정에서 결정적 시기를 조성, 선택, 이용하여 적시에 공격으로 전환하게 하는 경우에는 ‘速度調整問題’가 전략적 지도과제로 제기되나 사태가 불리하여 후퇴하게 되는 경우에는 ‘方向維持問題’(戰略目標堅持)가 戰略的 指導課題로 제기된다.⁴⁰⁾ 즉 ‘退却’이나 ‘妥協’은 퇴각 또는 타협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며 장차 새로운 공격을 위한 잠정적인 퇴각이나 타협임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하여금 명심케하는 것이다.

이같은 전술의 戰略目標 지향문제는 비단 후퇴시의 경우만이 아니고 어떤 형태의 전술하에서도 강조되는 것이어서 심지어는 戰略上에 기여되지 않는 전술의 成果를 스스로 내던져야 하는 것이 공산주의 전략·전술의 기본운영원리다. 다만, 전략의 목표를 망각하기 쉬운 시기가 후퇴를 강요당하는 干潮期이므로 이 시기에 특히 方向維持問題가 강조되는 것이다.

39)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 선전부, 앞의 책, p.109.

40) 김일성저작선집 4권, 1968, p.392.

북한공산집단이 6·25動亂中 위급한 시기에 소련을 내세워 休戰을 제의하여 생존을 유지하고 나서 戰後復舊에 임하였고, 이어서 軍備擴張에 광분했던 것은 바로 전략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는 證左이다. 말하자면 어떠한 전술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그것이 전략목표달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戰略的 指導의 과제가 되는 것이다.

4. 北韓의 對南革命戰術

가. 對南革命戰術의 基調

(1) 戰術段階와 任務

북한공산집단의 對南革命戰術은 남한을 공산화함에 있어 구체적 상황이 전개되는데 따라서 수행되는 바의 비교적 '짧은 기간'에 적용되는 투쟁형태, 조직형태, 표어의 交替 및 配合技術을 의미한다. 즉, 만조기에는 공격을 취하고 간조기에는 후퇴하면서 총체적으로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展開해 나가는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나의 전략단계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전술단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술적 단계가 변화하였다고 하여 전략적 단계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만조기에는 전략적 목표인 '駐韓美軍의 축출'과 '反共政權의 타도'를 성취하기에 유리한 시기이므로 공격 및 공세적 임무가 할당되며, 간조기에는 불리한 시기이므로 후퇴 및 수세적 임무가 할당된다. 요컨대 戰術的 段階나 任務만 독자적으로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節次 및 手段으로 설정되는 것이므로 전술적 후퇴가 결코 전략적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사실상 공산주의적 見地에서는 전략적 후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外見上 후퇴로 보이는 것은 모두 戰術的 후퇴인바, 그 대표적 事例가 6·25動亂時 그들의 休戰提議라 할 것이다.

(2) 戰術的 指導課題

전술적 지도란 바로 戰術任務의 달성을 위해서 투쟁형태, 조직형태 및 표어(Slogan)를 적시적절하게 교체 및 배합하는 동시에 해당 시점에 있어서의 ‘중심고리’를 포착하여 그것을 제때에 끌어당기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술적 지도는 戰略的 指導의 한 부분이며 전략적 지도의 統制下에 수행되는 현지에서의 구체적 통제이므로 現地幹部들의 책임소관에 속한다.

金日成은 “조성될 여건을 과학적으로 분석 판단하고 혁명발전의 요구와 군중의 의식수준을 잘 참작하여 그에 알맞는 투쟁구호를 내세우고 투쟁형태와 투쟁방법을 옹기 선택하여 내부모순과 약점들을 비롯한 온갖 가능성을 능숙히 리용해야 한다.”⁴¹⁾고 설명하고 있다. 김일성이 남한의 구체적 정세를 정확히 판단하고 거기에 알맞는 투쟁형태와 조직형태 및 표어를 적시적절하게 결정할 수 있으며 남한 사회내의 갈등과 약점을 능숙하게 이용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現地黨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현지에서 主·客體的 여건을 정확히 판단하여 상황에 알맞은 투쟁을 지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전술적 指導課題이다.⁴²⁾ 이와 같은 관점에서 북한공산집단이 어떻게 對南革命의 전술적 지도를 펴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鬭爭形態의 交替·配合

滿潮期에는 공격을 취하며 干潮期에는 후퇴로 전환해야 한다는

41) 김일성저작선집 5권, 1972, p.487.

42) 김일성저작선집 4권, 1968, p.91.

것이 그들의 투쟁형태 交替原理라는 것은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다. 그러나 간조기도 아니며 그렇다하여 만조기도 아닌 상황에서는 각종 투쟁형태를 적절히 배합해 나가는 것이 戰術의 指導의 과제로 제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群衆의 사상적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대규모 투쟁이나 고도의 政治鬭爭을 선택하더라도 군중이 따라오지 못할 것이고, 반대로 군중의 혁명적 氣勢가 높다 하더라도 彼我間의 力量關係를 무시한다면 그 혁명은 성공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혁명의 主·客體의 與件이 무르익었는데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투쟁형태를 취하는 것은 모처럼의 성숙된 기회를 헛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하여 모든 투쟁형태가 혁명의 주·객체적 여건과 군중의 意識水準 및 彼我間의 力量關係에 알맞게 선택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그들의 견해이다.⁴³⁾

① 政治鬭爭과 經濟鬭爭의 配合

북한공산집단이 바라고 있는 것은 政權奪取를 위한 대규모 과업, 시위, 폭동, 武裝鬭爭 등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남한의 노동자들이 아직 정치적 각성면에서 부족하므로 임금인상, 노동시간의 단축, 勞動條件의 改善 등을 요구하는 경제투쟁으로써 혁명적 意識化工作을 선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투쟁이 정치투쟁과 적절히 배합되지 못하면 經濟至上主義, 機會主義로 빠져 경제투쟁 그 자체의 목적도 달성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경제투쟁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는 토대위에서 반드시 정치투쟁이 배합되어야만 혁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⁴⁴⁾

② 合法, 半合法, 非合法鬭爭의 配合

북한공산집단은 남한에서 합법적으로 투쟁할 수 있는 조건이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半合法 및 非合法鬭爭이 불가피하며 또

43) 허종호, 앞의 책, p.649.

44) 허종호, 앞의 책, p.150.

한 그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합법투쟁’이란 경제투쟁과 같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수행하는 것이고, ‘비합법투쟁’이란 정치투쟁과 같이 법률에 저촉되는 본격적인 혁명투쟁을 뜻하며 ‘半合法鬭爭’이란 기본적으로는 비합법투쟁에 속하면서도 法網의 허점을 이용하여 전개하는 방식 등이 이에 포함된다.

그리고 비합법투쟁은 廣範한 大衆을 끌어들이 수 없는 短點이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합법투쟁만 전개하는 것은 黨의 지도적 역할을 높일 수 없으며 심지어는 합법투쟁 그 자체까지도 성공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합법·반합법·비합법투쟁을 적절히 배합함으로써만 모든 가능성을 최대로 이용하면서 革命力量을 育成, 強化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견해이다.⁴⁵⁾

③ 暴力鬭爭과 非暴力鬭爭의 配合

폭력투쟁이란 테러, 파괴, 무장투쟁 등인바 말하자면 최고의 비합법적 정치투쟁을 뜻하는 별칭이며 非暴力鬭爭은 폭력이외의 온갖 방법으로 전개하는 투쟁으로서 합법적 경제투쟁 등을 基本手段으로 하면서 여기에 정치 및 경제투쟁, 소규모 및 大規模鬭爭을 동시에 전개하면서 反革命的 세력을 분산, 약화시켜 혁명을 성공으로 이끌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각종 투쟁을 결합시키는 데 무관심하고 비합법적, 정치적 폭력투쟁에만 치우치면 左傾 영웅주의적 誤謬가 되며 그 반대의 경우는 右傾 투항주의적 오류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⁴⁶⁾

(나) 組織形態의 交替·配合

상술한 바와 같은 투쟁형태의 교체 및 배합문제는 필연적으로 조직형태의 교체 및 배합을 수반하게 된다. 滿潮期에 있어서는 黨이 地上으로 나타나며 혁명적 파업위원회 등을 조직하게 되나 干

45) 허중호, 앞의 책, pp.151-152.

46) 허중호, 앞의 책, p.152.

潮期에는 黨이 地下에 잠입하며 합법적인 문화·계몽단체 또는 기존의 勞動組合 및 協同組合 등에 침투하여 공작하게 된다. 그러나 간조기도 아니며 그렇다고하여 만조기도 아닌 현 시점에 있어서는 합법 및 비합법적 조직형태를 배합하여 工作하는 것이 그들의 공작원리이다. 이와 같은 배합에 있어서 그들이 重視하는 것은 비합법적 조직인 것이나 대중을 혁명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합법적 조직을 통한 공작이 유용하다고 보는 것이다.

말하자면 여건이 不利할수록 既存法에 저촉되지 않는 합법적 조직의 이용도를 높이며 여건이 유리해질수록 비합법적 조직의 이용도를 확대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즉, 이용가능한 조직형태를 주어진 여건에 알맞게 최대로 활용하면서 대남공작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것이 북한공산집단의 속셈인 것이다.

(다) 鬭爭標語의 交替·配合

만조기에는 혁명적이며 好戰的인 표어를 제시하며, 간조기에는 타협적이며 평화적인 표어를 내걸게 되는 것은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다. 그러나 각종 투쟁 및 組織形態를 배합하는 시기에는 이에 상응하는 표어의 배합이 요구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와 같은 표어의 배합에 있어서 특히 강조되는 원칙은 戰略的 및 戰術的 표어의 배합, 政治的 및 經濟的 표어의 배합, 그리고 民族的 및 階級的 표어를 상호 배합하는 것이다.⁴⁷⁾ 그들이 이와 같이 각종 표어를 배합하는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전술적 표어는 전술적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나 그같은 투쟁이 방향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표어로서 駐韓美軍의 철수와 反共政權의 타도가 투쟁의 기본방향임을 상기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을 서로 배합함에 있어서는 경제적 및 정치적 표어의

47) 허종호, 앞의 책, pp.147-148.

배합이 요구되며 또한 反美思想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民族的 표어가 요구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라) 中心고리의 捕捉・處理

‘中心(核心的)고리’란 해당시점에 있어서 전술적 성과를 얻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核心的 問題, 즉 그것만 적시에 끌어당기면 順次的으로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전술적 지도과제를 뜻한다.⁴⁸⁾ 이와 같은 중심고리를 찾아낼 줄 알고 그것을 적시적절하게 끌어당겨 戰略的 성공에 기여하는 것이 혁명가로서 지녀야 할 기본요건이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駐韓美軍의 철수와 反共政權의 타도를 위해서 그때그때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되는가를 찾아내서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중심고리의 발견과 그 적시적절한 처리문제에 대한 先例는 러시아혁명 직후 전시공산체제하에서 파괴된 산업의 부흥을 위하여 NEP(New Economic Policy : 新經濟政策)를 취한데서 찾을 수 있다. NEP는 전술적으로 후퇴하는 것이었으나,⁴⁹⁾ 전략적으로는 전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다.

말하자면 전략적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 취하는 전략적 指導에 따라 該當時點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할 전술적 지도과제가 바로 중심고리의 포착 및 그 조치인 것이다.

나. 對南革命戰術의 變遷過程

북한공산집단은 解放以後 오늘에 이르기까지 對南戰術을 여러번 바꾸어 왔는데 그러한 전술들이 모두 대남전략에 從屬된 것이었음은 재언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서는 그들이 현재까지 취해 온 대남혁명전술의 형태를 전술단계와 任務 그리고 ‘전술적 중심고리’를

48) 北韓에서는 ‘중심고리’라고 표현하고 있다. (註24 참조)

49) 共產主義的 방향에 逆行되는 個人經營 및 自由商業을 일시 許容하였기 때문이다.

위주로 분석해 봄으로써 그들의 행동원리를 재확인하기로 한다.

(1) 8·15光復~6·25南侵

이 기간은 북한공산집단이 혁명의 주체적 여건(북한)을 沈滯期 전술단계로 보고 그 객체적 여건(남한)을 昂揚期 전술단계로 간주하여 한편으로는 북한의 자체 역량을 비축하기 위한 守勢的 방어형전술을 구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의 對應力量을 약화시켜 무력남침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세적 방어형 전술과 우회공격형 전술(統一戰線戰術)을 배합한 兩面戰術을 구사하였다. 즉, 북한에서는 소위 '民主基地路線'(북한혁명기지노선)에 의거하여 공산주의적 정치·경제적 諸改革을 단행하고 소련 지원하에 軍事力을 강화하는 한편, 남한 각지에서는 무장유격전과 軍內叛亂 그리고 10·1대구폭동, 4·3제주도폭동 등을 일으키게 해 놓고서도 엉뚱하게 「남북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⁵⁰⁾등을 제안하는 술책을 썼다.

이 시기에 그들이 賦與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술적 중심고리'로 삼은 것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의 철수가 실현되기만 하면 그간에 준비한 압도적인 武力으로써 남한정복은 자동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바로 그같은 打算에 의하여 소련과 공모하여 1948년 12월 북한주둔 蘇聯軍이 先制撤收하면서 남한주둔 미군의 철수를 유도하는 대대적인 평화공세를 전개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1949년 6월에 美軍이 남한에서 철수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의도가 실현된 것이다.

50) 一種의 上層統一戰線戰術로서 그들이 원하는 바 下層統一戰線構築에 活路를 열어 주기 위한 수단이다.

(2) 6·25南侵~休戰提議

이 기간은 북한공산집단이 혁명의 주·객체적인 여건을 滿潮期 段階로 보고 彼我力量計算과 試驗을 마치고 결정적 시기를 포착한 바탕위에서 본격적인 正面攻擊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격형전술을 구사하였다. 즉, 이미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1950년 1월 초에는 애치슨 美國務長官이 한국을 미국의 極東防衛線에서 제외시켰으며 더욱이 남한내부에서는 정치적·사회적 불안상황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이에 힘입어 전무장력을 동원하여 노골적으로 무력남침을 단행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만조기전술단계의 정면공격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남한 각지에 南勞黨系 당간부를 파견, 각 지구당을 양성화시켰으며 또한 好戰的 표어를 내걸고 남한 주민들을 선동하면서 소위 「人民軍」의 남침작전을 지원하도록 공작하였다. 이에 따라 남한 각지에서는 각종 左翼團體가 雨後竹筍처럼 조직되었고 소위 ‘反動分子’ 숙청이란 명분하에 수많은 양민을 처형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그들이 全力을 다하여 성취하려고 했던 전술적 중심고리는 남한전역을 조속히 강점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남한전역을 武力으로 강점하기만 하면 나머지 공산화목표는 자동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확신하였기 때문이었다.

(3) 休戰提議~休戰成立

이 기간은 북한공산집단에 의한 본격적인 정면공격이 UN군의 강력한 반격에 직면하자 혁명의 주·객체적 여건을 간조기 전술단계로 보고 자체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하여 후퇴형전술을 구사하였다. 즉, 1950년 9월 UN군의 仁川上陸作戰을 계기로 그들이 위기에 몰리자 생존유지책으로서 1951년 6월 소련의 UN대표 말리크를 통하여 휴전협상을 제의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타협적 협상을 내세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하여 死力을 다해서 싸우는 양면적
술로 임하였다. 그리하여 남한내의 瓦解된 地下黨을 행정구역과는
관계없이 5個地區黨으로 개편·재건하고⁵¹⁾ 心理戰을 강화하면서 5
개지구당 통제하에 유격전을 자행케 함으로써 南韓의 전투력을 약
화시켜 戰線에서의 보다 나은 戰勢를 유지하는 가운데 休戰을 가
능한 한 유리하게 매듭지으려고 애를 썼다.

이 시기에 그들이 부여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술적 중심고리로 삼은 것은 戰線과 남한내의 後方에서 전개하는
유격전을 결합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과 보다 명예로운 地位를 차
지하면서 휴전을 성립시키는 것이었다. 그들은 휴전을 하지 않고
서는 生存할 방도가 없었으므로 어차피 휴전을 하기는 하되, 장차
의 再南侵을 위하여 한치의 땅이라도 더 확보함과 아울러 조금이
라도 더 地位를 格上시켜 대내외적으로 체면을 유지함으로써 ‘침
략자’의 오명을 씻고 현실적인 국가로서 認定받기 위해 死力을 다
했던 것이다.

(4) 休戰成立~4·19義舉

이 기간은 북한공산집단이 혁명의 주·객체적 與件을 沈滯期 전
술단계로 판단하여 그들의 자체역량을 비축하고 전쟁으로 말미암
아 와해된 隊列을 정비하기 위하여 수세적 방어형전술을 구사하였
다. 즉 6·25남침 실패의 책임을 南勞黨系에 전가시켜 政敵을 숙
청하는 한편, 민주기지노선을 재확인하고 전후복구 3개년계획 수
행에 착수하였으며 이어서 1957년부터는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
전시키는 데 역점을 둔 5개년계획 실천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51) 極東問題研究所, 北韓全書(下卷), 1974, p.71. 參照.

第1地區黨: 서울과 경기도 全域統管, 第2地區黨: 蔚珍郡(과거에는 강원도)을 除外한
강원도 全域統管, 第3地區黨: 忠清南北道 全域統管, 第4地區黨: 慶北全域과 江原道
蔚珍郡(지금은 慶北) 및 洛東江 以東의 慶南全域統管, 第5地區黨: 全南北과 洛東江
以西의 慶南地域 및 忠南論山地域統管.

1955년 5월에는 日本에 있는 「在日本朝鮮民主主義統一戰線」을 「在日本朝鮮人總聯合會」로 개편하여 남한 공산화의 間接基地를 만들어 내었고 그들을 내세워 재일동포 北送工作을 추진한 결과 1959년 11월부터 재일동포의 北送이 개시되어 북한의 부족한 勞動力의 일부를 보충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어느 정도 대열정비와 力量備蓄이 이루어지자 이 무렵부터는 보다 적극적인 ‘평화통일’을 내세워 對南宣傳을 강화함으로써 마치 남한은 好戰의이고 저들이 평화지향적인 정권인 것처럼 위장하는 평화공세를 펴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動向은 守勢的防禦戰術에서 앞으로 공세적 방어전술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포석이었으며 6·25동란이 남침 아닌 북침에 의하여 야기된 것으로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韓·美兩國을 침략자로 조작하려는 賊反荷杖格인 전술이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그들이 부여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술적 중심고리로 삼은 것은 앞으로의 再南侵을 위하여 북한자체의 정치·경제·군사력을 복구함과 아울러 6·25로 말미암아 꺾일된 남한내의 地下黨을 再建하는 것이었다.

(5) 4·19義舉~5·16革命

이 기간은 북한공산집단이 혁명의 객체적 여건을 만조기 전술단계로 판단했으나 그들의 주체적 여건이 미비했기 때문에 남한에서 야기된 4·19義舉라고 하는 무력재남침에 유리한 여건을 눈앞에 바라보면서도 노골적인 정면공격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오직 맹렬한 平和攻勢에 의존한 공세적 방어형전술만 구사하였다. 즉 공산화혁명 성취에 직접 연결된 적극적인 행동은 단행하지 못하고 4·19學生義舉가 마치 북한공산집단을 지지하여 일어난 人民蜂起인 것처럼 왜곡하면서 南北協商⁵²⁾만이 그 유일한 해결방법이라고 대

52) ‘南北協商’이나 ‘聯邦制統一案’은 모두 上層統一戰線戰術의 對象이다.

내외적으로 선전·선동하는데 치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에 조성된 정치·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목적으로 그들의 工作員(間諜)을 대량 남파시킴으로써 對南 上·下層 統一戰線戰術을 적절히 配合하여 구사하였다.

그리고 「4·19」가 일어난 해인 1960년 8월 14일, 8·15光復 15주년 기념대회 석상에서 김일성은 聯邦制統一案을 제의하는 등, 평화공세를 취하면서 남한의 政局混亂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또한 이 기간중에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⁵³⁾를 새로이 조직하였고 「조선민주주의청년동맹」(1964년 5월 「社勞靑」으로 改稱)내에 포함되어 있는 學生組織을 별개의 독립된 조직같이 「조선학생위원회」로 탈바꿈시켜 남한학생들의 조직과 대등하게 꾸며서 학생들에 대한 선동과 침투공작을 강화하였다. 더욱이 북한공산집단은 한편으로는 당시 우후죽순처럼 나타난 남한의 革新系列을 지원하여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종속적 괴뢰당으로서의 지하당 조직을 서들면서 겉으로는 ‘평화통일’을 요란하게 내세웠던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북한공산집단은 이 시기에는 자체역량의 準備不足으로 인해 본격적인 정면공격을 취할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남한내에 지하당 구축을 비롯한 容共勢力 扶植을 戰術的 中心고리로 삼고 간첩의 대량투입과 平和統一論을 요란하게 선전하는데 광분하였던 것이다.

(6) 5·16革命~對話開始

이 기간은 북한공산집단이 혁명의 주·객체적 여건을 정면공격

53)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이란 「南朝鮮民主主義·民族統一戰線」(1946. 2. 15)과 「北朝鮮民主主義·民族統一戰線」(1946. 7. 22)을 통합하여 1949. 6. 27에 창립한 黨·政 聯合體로서 對南平和偽裝統一攻勢에 써먹기 위해 만들은 勞動黨의 앞잡이 기구이고 「祖國平和統一委員會」(1961. 5. 13. 발족)란 4·19以後 南韓에서 擡頭된 一部 南北 協商論에 呼應하기 위해 急造한 平和偽裝統一團體로서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構成組織의 하나이다.

임무가 부여되는 만조기 직전의 양양기 전술단계로 간주하고 본격적인 공격에 대비, 피아역량을 계산·시험하는 완전한 공세적 방어형 전술을 구사하였다. 즉, 이 기간은 5·16군사혁명을 계기로 남한의 反共態勢가 강화되자 이에 맞서 4大軍事路線(1962. 12)을 서둘러 추구하였고, 그 결과 강화된 군사력을 배경으로 하여 1966년부터는 적극적인 폭력적 대남도발공작으로 전술방향을 전환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1968년 1월 21일부터는 31명의 무장공비를 침투시켜 靑瓦臺 기습을 시도하였고, 同年 10월에는 울진·삼척지역에 120명에 달하는 대규모 무장공비를 침투시켜 再南侵의 가능성을 시험하였던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力量의 시험은 끝내는 실패하였으나 서울의 심장부에까지 그들의 게릴라를 침투시킬 수 있었다는 데 고무되어 비정규전적인 폭력에 의한 남한공산화를 본격적으로 획책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人民武力部偵察局 산하의 124군부대, 283군부대, 17정찰여단 등의 특수 게릴라部隊를 통합·개편하여 특수8군단(一名 輕步教導指導局이라 부르기도 함.)을 신설, 약 10만명 내외의 特攻兵力을 확보하였다,

이와 같이 그들은 게릴라 투입에 의한 對南共產化를 노려 광분해 보았으나 그들이 뜻하는 바대로 사태가 진전되지 않자 김일성은 제5차 「로동당」대회(1970. 11)에서 북한혁명기지만 가지고서는 부족하므로 남한에서의 자체혁명역량을 육성, 강화시켜서 경제투쟁과 정치투쟁, 합법·반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 대규모투쟁과 소규모투쟁 등을 배합하여 혁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7) 對話開始~對話中斷

이 기간은 북한공산집단이 혁명의 主·客體의 與件을 昂揚期戰

術段階로 간주하고 남북대화(당국간 대화)⁵⁴⁾라고 하는 우회적 방법을 써서 혁명의 만조기를 조성하고자 우회공격형 전술을 구사하였다. 즉 이 기간은 무력도발을 통한 남한공산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대화를 계기로 남한국민들이 統一霧圍氣에 들뜬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편승하여 남한국민들의 대북 경각심을 이완시킴으로써 容共霧圍氣를 조성하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남북대화를 병자한 합법적 방법으로 대남선전전동을 강화하면서 드디어는 대화의 지속 및 진전의 조건으로서 공산주의자들의 남한내에서의 합법적인 활동을 요구하며 그것을 保障받으려고 획책하였다. 그와 같은 의도에서 내걸게 된 것이 바로 反共法·國家保安法의 철폐, 좌익사상범의 석방, 소위 「統一革命黨」을 포함한 각 정당·사회단체의 대화참여 요구였다. 이것을 두고一名 남한사회의 ‘법률적·사회적 조건환경개선론’이라고도 하였다.

이 시기에 그들이 전술적 중심고리로 삼은 것은 남북대화를 통해 공산주의 활동을 합법화시킴으로써 공산화혁명의 여건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저들의 의도가 쉽사리 달성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남북대화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엉뚱한 문제를 가지고 생트집을 잡으면서 1973년 8월 28일 소위 ‘金英柱聲明’을 통하여 일방적인 대화중단을 선언하기에 이른 것이다.

(8) 對話中斷~버마事件

이 기간은 북한공산집단이 혁명의 주·객체적 여건을 양양기전술단계로 보고 下層統一戰線戰術을 極大化시켜 남한자체내에서의 반미·반정부운동을 조성, 소위 ‘인민혁명’의 여건을 고조시키는데 역점을 둔 공세적 방어형전술을 구사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카터 美大統領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公布하였을

54) 一種의 上層統一戰線戰術의 對象이다.

당시에는 對南戰略目標의 우선순위를 先 주한미군철수에 두었고, 레이건 大統領이 등장하여 주한미군의 철수계획을 白紙化하자 이번에는 전략목표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先 반공정권타도의 편으로 옮기는 방향에서 신축성있는 전술운용으로 임하였다. 그리하여 이 기간에는 남북대화를 통한 공산화혁명의 여건조성을 斷念함으로써 남한이 제의하는 대화 및 통일방안을 사리에 맞지 않는 구실을 붙여 반대하면서도 형식상으로는 ‘대민족회의’니, ‘全民族大會’니, ‘政治協商會議’니, ‘100인 정치연합회의’니 하면서 연방제안을 고집스럽게 내걸고 남한의 국론분열을 겨냥한 上層統一戰線戰術을 下層統一戰線戰術의 補助手段으로 구사한 것이다.

그들이 내놓은 연방제라고 하는 南北合作統一論의 저의를 살펴보면 대외적으로는 남한내 미군주둔의 명분을 퇴색시켜 그 철수를 촉진하고 한·미간의 유대를 와해시켜 남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 한편, 對南面에서는 反共의 명분을 퇴색시켜 남한에서의 공산당 활동을 합법화하고 남한의 국론을 분열시켜 소위 ‘인민정권’의 출현을 촉진시키려는 데 있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人民政權이란 본질적으로 공산당이 주도권을 장악한 잠정적인 聯合政權을 뜻하는 것으로서 저들이 주장하는 世稱 「통일혁명당」 또는 「한국민족민주전선」 주도하의 聯合政權을 뜻하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종전에 주장하던 「고려연방공화국」안에 ‘민주’라는 용어를 첨가하여 「고려민주연방공화국」 創立方案이라는 것을 내놓고 雙方의 군대를 10~15만명선으로 상호감축하고 ‘민족연합군’의 창설·운용을 제창하고 있는데⁵⁵⁾ 이는 곧 南北聯邦이 실현되면 그들 예비군(주로 「勞·農赤衛隊」)의 우위성을 이용하는 한편 민족연합군 내부에 프락치를 침투시켜 적당한 기회가 포착되는대로 政

55) 金日成, 第6次 黨大會(1980. 10) 演說에서.

變을 기도하겠다는 저의가 담겨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마르크스·레닌主義의 사고방식은 ‘正·反·合’의 통일이 아닌 滅舊生新的 ‘밀어내기식 정복’을 합법칙적인 것으로 신봉하는 것이기 때문에,⁵⁶⁾ 만약 김일성이 진심으로 남북한의 체제를 공존하게 하는 聯邦을 구상하려 한다면 그는 이미 마르크스·레닌主義를 포기하는 것이 된다. 그 반면에 그가 마르크스·레닌主義를 그대로 견지하면서 연방제 즉 합작통일론을 제창하는 것은 政權奪取 目的의 소위 ‘인민민주주의혁명’ 단계에 다른 전략적 지도로서 이는 남한에서의 보다 광범한 혁명역량을 동원, 배치하고 주한미군 축출과 공산당활동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술책, 즉 上層統一戰線戰術을 구사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런데 김일성은 자신의 주체사상을 두고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조선혁명을 위해 창조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음은 周知의 사실로서⁵⁷⁾ 이는 後者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證左인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이 시기에 全力을 다하여 붙잡고 끌어당기려는 전술적 중심고리는 金斗煥 前大統領을 살해함으로써 남한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社會變亂이 발생하도록 誘導하는 것이었다.

(9) 버마事件~88서울올림픽

이 기간은 북한공산집단이 혁명의 주체적 여건을 침체기전술단계로 보고 그 객체적 여건을 만조기 직전의 完全한 양양기 전술단계로 간주하여 한편으로는 북한의 자체 역량비축 및 隊列整備을 위한 守勢的 防禦型戰術을 구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의 혁명여건을 만조기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공세적 방어형전술을 구사하는 양면전술로 임하였다. 즉, 북한에 해당되는 혁명의 주체

56) <표 5> 헤겔변증법과 유물변증법의 특징비교 참조.

57) 金日成의 ‘主體思想’ 또는 ‘自主路線’이란 마르크스·레닌主義의 테두리 안에서 自身의 行爲를 合理化시키려는 統治名分이지 결코 獨創的인 理論의 ‘틀’을 갖춘 ‘主義’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

적 여건을 보면 대외적으로는 1983년 10월 9일 버마 아웅산폭파 만행사건으로 자초한 국제적 고립상태를 만회해야 하고 또한 주한 미군 철수를 겨냥한 3者會談을 성사시켜야만 되기 때문에 힘에 겨운 대남수재물자제공이라는 人道主義的 탈을 써야 했고 남북대화를 재개해야만 되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도 소위 「合營法」까지 내놓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심각한 經濟的 難局에 몰려 있을 뿐만 아니라, 김일성 후계체제 구축문제가 막바지에 이른 시점이기 때문에 서방계국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더라도 당면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주민생활을 向上시켜 줌으로써 金正日의 統治名分을 창출해 주어야만 했던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든 싫든 간에 남북대화에 응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마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 것처럼 꾸며내야만 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혁명의 주체적 여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전술적 중심고리를 남북대화의 유지에 둔 것 같았으나 1985년에 기도한 남북대화의 성과가 여의치 않자 1986년에 접어들면서부터는 기존 대화 不振의 책임을 한국측의 팀스피리트군사훈련으로 돌려 대화를 일단 중단시키고 그를 위한 새로운 중심고리 찾기에 무척 고심한 나머지 「軍事3當局회담(1986. 6. 17)」, 「남북고위급 政治軍事會談(1987. 1. 11)」, 「多國的 軍縮協商(1987. 7. 23)」, 「3者外務長官會談(1987. 8. 6)」, 「南北連席會議(1988. 1. 1)」, 「南北國會連席會議(1988. 7. 21)」 등⁵⁸⁾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남한에 해당되는 혁명의 객체적 여건을 보면 운동권 학생들에 의한 대학소요가 점점 暴力化, 極左化되고 있고, 勞使爭議가 부분적이거나 단순한 賃金鬭爭의 線을 넘어 반체제적 정치투쟁화, 계급투쟁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다가 1985년 2월 12일 총선거를 계기로 나타난 與·野間의 갈등, 특히 1988년 4월 26일

58) 이 모두가 上層統一戰線戰術의 對象이다.

총선거를 계기로 대두된 與小野大 현상의 결과로서 여·야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여건을 남조선혁명 전술 운용상의 고양된 양양기 전술단계로 판단하고 이 好機를 놓치지 않고 혁명의 객체적 여건을 만조기 전술단계로 끌어 올리기 위해 혈안이 되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온갖 可用 보도매체를 총동원하고 무장 또는 비무장 공작원(간첩)을 집요하게 남파하여 學園騷擾와 勞使爭議를 선동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각종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民·官·軍 離間을 통한 남한의 정치·사회적 혼란과 國論分裂을 조성하기에 광분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서는 그들이 조작한 남한내 유령지하조직인 「통일혁명당」의 명칭을 시국의 변화와 黨自體의 발전적 요구라는 명분아래 1985년 7월 27일, 「한국민족민주전선」으로 개칭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일혁명당 목소리방송」도 同年 8월 8일부터 「구국의 소리방송」으로 개칭한데 이어 同年 8월 15일부터는 소위 「민중의 메아리방송」을 신설, 운용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1988년 9월 17일부터 서울에서 개최기로 되어 있는 제24회 88서울올림픽이 성공리에 마무리되면 그들의 소위 ‘3대 혁명역량강화’에 치명적인 타격이 된다는 판단하에 이를 沮止키 위해 온갖 방해공작을 다하다가 마침내는 1987년 11월 30일 잔인 무도하게도 한국의 KAL858여객기를 그들 工作員을 시켜 공중폭파시키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따라서 그들이 이 시기에 포착하고자 한 전술적 중심고리는 上·下層統一戰線戰術을 極大化시켜 88서울올림픽개최를 저지시키고 문제학생들과 노동자들을 연결시킨 ‘勞學連繫鬭爭’戰列形成에 있었던 것이다.

(10) 88서울올림픽~鄭總理 暴行事件

이 기간은 북한공산집단이 혁명의 주체적 여건을 침체기 전술단계로 보고, 그 객체적 여건을 高揚性 양양기 전술단계로 간주하여 한편으로는 북한의 자체 역량비축 및 대열정비를 위한 수세적 방어형전술을 구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의 혁명여건을 만조기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공세적 방어형전술을 구사하는 兩面戰術로 임하고 있다. 즉, 북한에 해당되는 혁명의 주체적 여건을 보면 남한에서 개최한 88서울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또한 이로 말미암은 남한의 北方政策이 의외로 순조롭게 추진됨으로써⁵⁹⁾ 상대적으로 북한의 국제혁명역량이 위축되었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 힘에 겨운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平祝行事, 1989. 7. 1.~7. 8.)을 치러야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퇴조되었던 國際革命力量을 어느 정도 만회하기는 하였으나, 이로 말미암아 金日成이 젊어지고 있는 가장 큰 난제인 소위 '인민생활향상'은 더욱 큰 장벽에 부닥치게 되었고, 또한 그들이 내세운 1980년대 10대전망목표 및 제3차 7개년경제계획(1987~1993년) 달성에는 엄청난 차질을 빚게 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만신창이가 된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대내적으로는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더욱 다그치게 되었고, 또한 근년에 신설한 合營工業部(1988. 11. 26)를 통해 서방제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할 목적으로 그 분위기 造成上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는지 분명치는 않으나 1989년 초에 한·미간의 연례행사인 팀스피리트 훈련과 同年 4월 17일 문익환 목사 구속문제를

59) 88서울올림픽을 전후해서 이루어진 韓國과 共產諸國과의 關係改善 樣相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헝가리(1989. 2. 1), 폴란드(1989. 11. 1), 유고슬라비아(1989. 12. 27), 체코슬로바키아(1990. 3. 22), 불가리아(1990. 3. 23), 루마니아(1990. 3. 30), 소련(1990. 9. 30)과는 大使級 國交가 樹立되었고 中國(1991. 1. 30)과는 무역대표부를 開設하였다.

그리고 交易面에 있어서도 1989년에 소련과는 約6億弗(輸出 2億 8百萬弗, 輸入 3億 9千 2百萬弗), 中國과는 約32億弗(輸出14億 3千 8百萬弗, 輸入 17億 5百萬弗)의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出處: 外交關係는 外務部, 交易關係는 KOTRA)

평계로 중지시켰던 「남북체육회담」,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등 기존의 남북대화를 1989년 9월 27일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계기로 형식적이거나 전면 재개하기까지에 이르더니 이것 역시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효시로 東歐共產圈을 풍미한 ‘民主化’, ‘自由化’ 물결의 북한내 침습 가능성에 겁먹은듯 1990년 2월 7일을 기하여 전면 중단시키고 말았다. 그리하여 “우리식대로의 社會主義”를 내걸고 집안단속을 어느 정도 마무리짓더니 國際적으로는 남한의 北方政策에 대한 反作用으로서의 美·日接近을 겨냥하고, 對南面으로는 남한에서 조성된 3黨統合으로 인해 첨예화된 여·야갈등을 부채질하며 남한내의 소위 ‘民衆民主主義革命’ 세력을 선동함과 아울러 다급하게 된 남한의 단독 UN가입을 저지할 목적으로 1990년 7월 3일의 제7차 예비회담을 거쳐 南北高位級會談(사실상의 총리회담)을 서울(1990. 9. 4.~9.7)과 평양(1990. 10. 16.~10. 19) 그리고 다시 서울(1990. 12. 11.~12. 14)을 번갈아 왔다 갔다 하면서 3차례 開催하였는데, 여기에서 특히 注目할 점은 여태까지 언제나 國會를 상대로 「南北不可侵宣言」을 하자고 고집하던 北韓共產集團이 어찌하여 갑자기 제2차 平壤會談에서부터 그동안 기피하던 우리政府를 상대로 不可侵宣言을 강도있게 요구하느냐는 문제이다. 여기에는 1, 2차 南北總理會談의 중간시기(1990. 9. 24.~9. 28)에 日本 自民黨의 前副總裁인 가네마루 신(金丸信)을 團長으로하는 日本代表團一行이 訪北하여 金日成과 수차에 걸쳐 심도있는 회담을 한 내용(대일배상금 포함)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남한에 해당되는 혁명의 객체적 여건을 보면 운동권 학생들에 의한 대학가의 좌익적 난동이 점차 극렬해져 가고 있고, 勞使爭議 또한 대기업일수록 정치투쟁화, 계급투쟁화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다가, 특히 1988년 4월 26일 총선거를 계기로 나타난 與小野大 현상, 방종에 가까운 ‘民主化’ 바람, ‘5共清算’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의 갈등, 그리고 예상을 뒤엎은 3黨統合과 이로 인한 野黨의 國會보이콧 등 政局不安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여건을 남조선혁명 전술운동상의 高揚性 양양기 전술단계로 간주하고 이 好機를 놓치지 않고 革命의 客體的인 여건을 만조기전술단계로 끌어올리기에 온갖 계획을 다 동원하였다.

또한 그들은 88서울올림픽을 끝까지 방해하기 위하여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을 올림픽 개최 직전인 1988년 8월 19일까지 끌고가는 집요함을 보이다가 이 공작이 무산되자 1989년 들어서서는 노태우 대통령의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에 관한 대통령 특별선언」(1988. 7. 7. 발표)을 핑계삼아 文益煥,黃皙暎(1989. 3. 25)등 在野人士들을 個別的으로 入北시켜 그들을 통해 남북간의 민간레벨 접촉에 관심을 표명하여 남한내의 각종 반체제성향의 민간단체들에 추파를 던짐으로써 ‘민주화조류’에 편승한 남한사회의 국론분열을 기도하였다. 1989년 7월을 前後해서는 平祝行事를 최대한으로 이용, 그들의 실추된 국제혁명역량 만회는 말할 것도 없고, 이 행사를 소위 ‘남조선혁명역량강화’의 일환으로서의 반정부·반체제투쟁을 고무진작하는 데 십분 활용하였다. 그 좋은 예가 남북학생회담 명분하에 임수경(外大 佛文科 4년)을 마치 남한학생의 총대표인 양 平祝行事期間에 密入北시켜(1989. 6. 30) 對南·對美 비방용으로 이용하고 끝내는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체결이후 그 선례도 없었고 쌍방 합의도 없이 판문점 越境事件을 자행케 했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1989년 7월 9일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 許鎔 명의로 북과 남 그리고 해외동포들이 참가하는 「범민족대회」를 1990년 8월 15일, 판문점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함으로써 남한국민과 해외동포를 이간시키고 남한의 국론분열을 꾀하려 하였으며, 1989년 9월 11일 우리의 노태우 대통령이 국회연설에서 내놓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마저 분단

고착방안이라 일축하면서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채택을 위한 「민족통일협상회의」(1989. 9. 28), 「南北最高位級當局 및 政黨首腦協商會議」(1990. 1. 1), 「祖國統一5個方針」(1990. 5. 24), 「民族統一政治協商會議」(1991. 1. 1) 등 상층 統一戰線戰術에 立脚한 상투적인 군중집회방식의 회의개최를 고집함으로써 ‘민족통일’이 아닌 남한 공산화혁명에 血眼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이 시점에서 포착하고자 하는 전술적 중심고리는 88서울올림픽의 成功的 개최에 따른 波及效果로서의 한국의 北方政策成果를 最小化함과 아울러 남한내에서의 반체제적 노·학·재야 연계투쟁 戰列形成이라고 하는 下層統一戰線戰術 成果의 극대화를 위해 工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政府를 相對로 한 不可侵宣言을 成事시킴으로써 駐韓美軍 撤收促進은 말할 것도 없고 日本으로부터 배상금조의 막대한 資金을 利害當事者인 韓國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받아들이다는데 底意를 둔 上層統一戰線戰術의 성과를 極大化하자는데 있었던 것 같다.

(11) 鄭總理 暴行事件~現在까지

이 기간은 북한공산집단이 혁명의 주체적 여건을 침체기 전술단계로 보고 그 객체적 여건을 下降性 양양기 전술단계로 간주하여 한편으로는, 북한의 자체 역량비축 및 대열정비를 위한 수세적 방어형전술을 구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의 혁명여건을 양양기 단계로 유지하기 위한 공세적 방어형전술을 구사하는 兩面戰術로 임하고 있다. 즉 북한에 해당되는 혁명의 주체적 여건을 보면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효시로 東歐共產圈을 풍미한 ‘民主化’, ‘自由化’ 물결에 뒤이어 1991년 9월 6일에는 北韓의 宗主國이었던 소련에서의 共產黨 活動이 禁止(소련 人民代議員大會決定)되는 등, 北韓의 國際革命力量이 致命的인 상처를 입게 되었다. 한편 남한의 UN加入이 거의 결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자 그

동안 反統一의 分裂主義者의 作態라고 비난, 반대하던 南北韓 UN 同時加入을 북한이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의 소위 ‘國際革命力量 強化路線’이 限界에 부닥치게 되었고, 또한 1985年 NPT(核武器擴散防止條約)에 가입해 놓고도 國際條約上의 의무사항인 IAEA(國際原子力機構)와의 核安全措施協定締結을 뒤로 미룬 채 核武器生産에 血眼이 된 나머지, 日·美를 비롯한 全世界 平和愛護諸國의 미움을 삼으로써 破綻지경에 이른 經濟難局 解決策이 벽에 부닥치게 되었으므로, 북한은 그 打開策의 一環으로써 不得不 그동안 기피해 오던 第4次 南北高位級會談(1991. 10. 22.~10. 25)을 평양에서 개최하게 되었고, 서울에서의 第5次 南北高位級會談(1991. 12. 10.~12. 13)에서는 서둘러 「南北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이하 「基本合意書」라 함.)를 서명, 채택하기에 이르렀고 그와 더불어 대내적으로는 요란스럽게 ‘社會主義 必勝의 合法則性’과 ‘北韓式 社會主義의 優越性’을 강조하면서 住民의 思想動搖防止에 心血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남한에 해당되는 혁명의 객체적 여건을 보면 남한에서 계속되는 「全大協」(全國大學生代表者協議會) 主導下의 反政府, 反體制的 大學街 騷擾와 「全民聯」(全國民族民主運動聯合), 「全農」(全國農民會總聯盟), 「全教組」(全國教職員勞動組合), 「全貧聯」(全國貧民聯合), 「全勞協」(全國勞動組合協議會) 등 反政府·反體制的 在野勢力의 親北言動이 極甚하였으므로 이에 힘입어 北韓은 한때 世稱 「汎民聯」(祖國統一汎民族聯合, 1990. 11. 21) 등을 앞세워 8·15 「汎民族大會」 등을 名分으로 對南共產化革命을 앞당기기 위한 統一戰線戰術 次元의 對南宣傳·煽動에 氣勢를 올렸었다.

그러나 1991년 6월 3일, 예기치 않게 한국의국어대학교에서 학생들에 의한 鄭元植 總理署理에 대한 폭행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운동권학생 주도하의 合法·半合法的인 反정부·반체제투쟁은 침체기 단계적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되자 북한은 경희대생

朴聖熙(1991. 8. 5)와 건국대생 成墉乘(1991. 8. 10)을 全大協 代表로 密入北시켜 소위 「祖國統一促進 白頭·漢拏大行進」 出征式을 갖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汎靑學聯」(祖國統一汎民族靑年學生聯合, 1991. 11. 2) 등을 결성함으로써 남한에서의 反政府·反體制的인 大學騷擾 활성화에 안간힘을 기울임과 아울러 1991년 12월 1일 결성된 남한내 소위 「民主主義民族統一全國聯合」(13個 部門別團體와 8個 地域別團體로 구성)이란 統一戰線體를 이용하여 남한에서의 反體制的인 在野勢力 活性化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이 시점에서 포착하고자 하는 전술적 중심고리는 「基本合意書」 채택이라고 하는 上層統一戰線戰術의 결실효과를 극대화시켜 특히 對日接近을 통한 경제난 타개와 金正日 政權承繼의 명분을 찾고, 다른 한편으로는 1992년에 치를 남한의 선거기를 틈타 「基本合意書」 내용의 북한식 해석을 통해 침체된 反體制的인 運動圈 鬭爭을 활성화하자는 데 있는 것 같다.(例, 韓美防衛條約撤廢, 駐韓美軍撤收, 國家保安法撤廢 등의 當爲性 主張 名分提供)

以上에서 북한공산집단의 광복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대남전술의 변천과정을 원리적 차원에서 分析해 보았다. 그들은 일단 혁명의 만조기가 조성되었다고 판단하면 본격적인 정면공격을 자행하고, 그것이 강력한 반격에 부딪치면 후퇴하여 재공격을 위한 隊列整備와 力量備蓄에 임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열정비와 역량비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수세적 방어에서 공세적 방어태세로 전환하여 彼我間의 力量을 계산하고 시험하는 등 또다시 만조기를 조성하기 위한 工作에 임하게 된다.

이러는 동안 그들은 각종 투쟁형태, 조직형태 및 표어를 배합해 가며 이용가능한 모순과 약점에 파고들어 우리사회 내부의 분열을 획책하는 것이다. 이때에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합법적인 경제투쟁 및 소규모투쟁을 위주로 하지만, 상황이 허용되면 비합법적인

政治鬭爭 및 대규모투쟁으로 擴大시켜 나가는 것이 그들의 전술적 지도원칙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그들의 行動體系는 휴식이 없는 지속적인 투쟁으로 일관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들은 이같은 과정에서 혁명의 주력군으로 간주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장차 除去 또는 改造對象으로 책정하고 있는 靑年 인텔리층(특히 대학생)과 宗教人들의 현실비판의식을 이용하기 위해 이들을 “혁명의 기폭제”, “혁명의 씨앗을 뿌리는 매개자”, “노동자·농민들에게 혁명을 전파하는 교두보”, “반미·반파쇼 민주구국투쟁의 기수” 운운하며 고무, 찬양하고 있는데, 이같은 策略이야말로 社會主義革命의 前段階革命인 人民民主主義 革命戰略段階의 전략적 지도에 따른 보조군의 이용수법인 下層統一戰線戰術의 일환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인민민주주의혁명이 성취되고 나면 사회주의혁명으로 이행함에 있어서 그들 인텔리 및 종교인들은 마땅히 除去 또는 改造對象으로 취급되게 마련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단계이기 때문에 장차 사회주의 혁명단계에서 숙청하도록 책정되어 있는 계층까지도 “민족의 해방”이니, “정치적 민주화”니, “평화적 통일”이니 하는 위장된 구호들을 내걸고 그들 인텔리 및 浮動的 중립계층의 비위를 맞추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해당 혁명단계의 전략적 지도에 맞추어 전술적 지도가 수행된다는 점에서 그들 공산당의 戰略·戰術을 두고 “음모의 과학이며 파괴와 반항의 기술”이라고 한 왓슨⁶⁰⁾교수의 표현은 매우 적절하다 할 것이다.

60) Hugh Seton Watson, *From Lenin to Malenkov, History of World Communism*, Praeger, N. Y., 1954, 2nd ed, Preface.

Watson은 런던대학 교수로서 父子 2대를 이어온 슬라브·東歐問題 專門家이며本書以外에도 「新帝國主義」(1961) 등 多數의 著述이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들의 戰術이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모하면서도 해당 혁명단계의 戰略的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원리를 알 수 있다.⁶¹⁾ 바로 이같은 원리때문에 전술의 전략에 대한 從屬性이 유지되며 또한 전략적 목표를 指向하며 奉仕하는 방향유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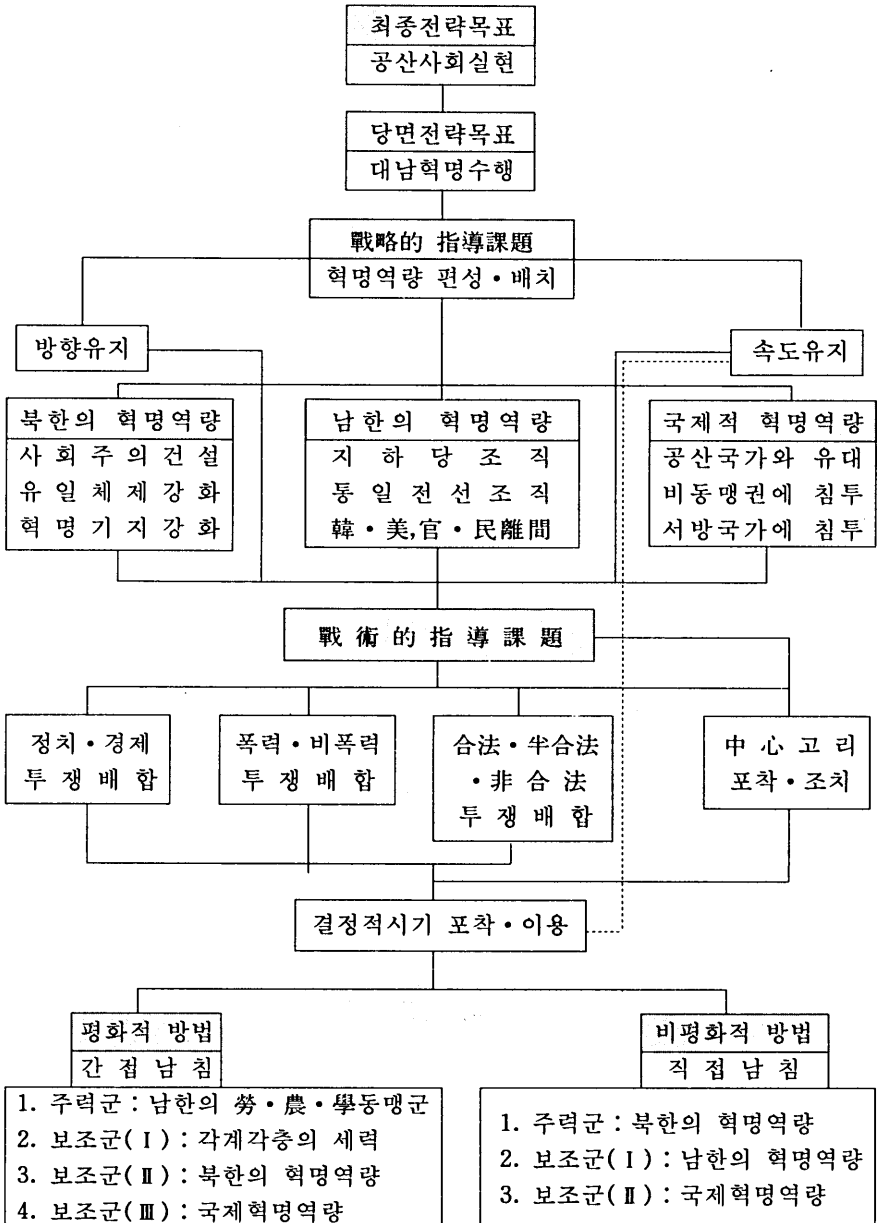
<표 3> 對南戰術의 原理的 分析

단 계	운 용	비 고
1. 8·15光復~ 6·25南侵	1. 임무: 역량비축 및 역량시험, 迂迴攻撃 2. 지도 가. 각종투쟁형태, 조직형태 및 표어배합 나. 中心고리는 미군철수 실현*	*美軍撤收가 실행됨.
2. 6·25남침~ 휴전제의	1. 임무: 정면공격 2. 지도 가. 非合法 남침단행 나. 중심고리는 남한전역 강점*	*남한전역 강점 에 실패하였음.
3. 휴전제의~ 휴전성립	1. 임무: 생존책 강구 2. 지도 가. 휴전제의로 협상전개 나. 중심고리는 유리한 휴전성취*	*휴전을 성립시 켜 생존유지에 성공하였음.
4. 휴전성립~ 4·19義舉	1. 임무: 대열정비 2. 지도 가. 평화적 선전강화 나. 중심고리는 전후 복구사업*	*전후복구 사업 을 일단 완료하 였음.
5. 4·19義舉~ 5·16革命	1. 임무: 역량계산 2. 지도 가. 간첩 남파침투, 지하당구축 시도 나. 중심고리는 지하당 구축*	*지하당 구축에 실패하였음.

61) <표 4> 對南戰略·戰術의 綜合體系 참조.

<p>6. 5·16革命~ 대화개시</p>	<p>1. 임무 : 공격준비, 역량시험 2. 지도 가. 비합법적 투쟁, 무장공비 납파 및 비정규전 시도 나. 중심고리는 만조기 조성*</p>	<p>*만조기 조성에 실패하였음.</p>
<p>7. 대화개시~ 대화중단</p>	<p>1. 임무 : 우회공격 2. 지도 가. 합법적 선전·선동 강화 나. 중심고리는 지하당 구축 및 합법화 실현*</p>	<p>*지하당 구축 및 합법화 실현에 실패하였음.</p>
<p>8. 대화중단~ 버마사건</p>	<p>1. 임무 : 공격준비, 역량시험 2. 지도 가. 각종 투쟁형태, 조직형태 및 표어배합 나. 중심고리는 국론분열 및 반정부세력 강화*</p>	<p>*연속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시도하였음.</p>
<p>9. 버마사건~ 88서울올림픽</p>	<p>1. 임무 : 역량비축 및 역량계산·시험 2. 지도 가. 각종 투쟁형태, 조직형태, 표어배합 나. 중심고리는 88올림픽 沮止 및 勞·學 연계투쟁 전열형태*</p>	<p>*攻·守 양면 전술(和·戰양면 전술)을 구사하였음.</p>
<p>10. 88서울올림픽~ 鄭總理 暴行事件</p>	<p>1. 임무 : 역량비축 및 역량계산·시험 2. 지도 가. 각종 투쟁형태, 조직형태, 표어배합 나. 북방정책 成果 극소화, 노·학·재야 연계투쟁전열형성 및 불가침선언 실현*</p>	<p>*功·守 양면 전술을 구사하였음.</p>
<p>11. 鄭總理 暴行事件~ 현재까지</p>	<p>1. 임무 : 역량비축 및 대일정비 2. 지도 가. 각종 투쟁형태, 조직형태, 표어배합 나. 중심고리는 「기본합의서」라고 하는 상층통일전선전술 전취물효과의 대내외적 극대화*</p>	<p>*「기본합의서」창출을 김정일 업적으로 돌려 정권승계에 활용 가능성이 있음.</p>

<표4> 對南戰略·戰術의 綜合體系



5. 結 言

가. 對南策動의 展望

북한공산집단은 결코 무원칙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유물사관적 思考 및 전략·전술적 行動方式으로 대남공산화혁명을 책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6·25남침에 의한 남한 공산화가 좌절되었다고 해서 남한 공산화의 기도를 결코 포기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休戰後에도 지난 39년 동안 대남공산화혁명을 성취하기 위해 全力投球해 왔으며 앞으로도 힘이 미치는 한 그와 같은 책동을 자행해 나갈 것이다.

북한공산집단의 향후 책동방향은 그들의 근본적인 사고 및 행동방식과 지금까지 그들이 취해온 행태들을 원리적으로 분석해 볼 때 明若觀火한 것이다. 즉 그들의 전략은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이 「로동당」규약에 명시되고 있는 한 그것이 달성될 때까지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며 그들의 戰術은 主·客觀的 여건에 따라 투쟁형태, 조직형태 및 표어만을 달리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북한공산집단의 향후 동향은 그 전술상의 변화가 있을 뿐, 戰略的 本質은 그들이 마르크스·레닌主義를 그대로 신봉하는 한 결코 변할 수 없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그들이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투쟁을 기도할 것인가에 우리의 關心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우리의 관심은 노골적인 무력남침(직접 침략) 또는 남한내에서의 혁명유발(간접침략)을 위하여 그들이 어떻게 力量을 '계산' 및 '시험'하면서 소위 만조기를 조성하고 결정적 시기를 포착·이용하려 할 것인가에 집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들은 최근 한국이 제시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같이 합

리적이며 구체적인 통일방안마저도 한마디로 ‘분열방안’, ‘분열주의’ 운운하며 거부와 반대로 일관하고 있는데서 아직도 민족적 입장에서 평화통일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음을 사실상 드러내고 있다.

또한 그들은 서울에서 개최된 88서울올림픽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國際大行事を 방해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에서 온갖 추태를 다 부렸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대통령을 살해하기 위해서 버마에까지 무장공비를 투입하는 등, 그들의 잔인무도한 본성을 여지없이 드러낸 바 있다.

그들은 근래에 와서 비교적 용이하게 각종 남북대화에 응해 오고 있으며 또한 「통일축구대회」, 「통일음악제」 등 제한적인 민간인교류에도 응해 오고 또한 「南北卓球單一팀」(코리아팀)이나 「南北靑少年蹴球單一팀」(코리아팀)을 구성하여 國際競技大會에도 參加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1989년 여름에 무리해서 개최한 平祝行事로 말미암은 경제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西方資本이 북한으로서는 매우 필요하고 그 해결책으로 도입한 것이 「합영법」인바, 「합영법」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둔 전술적 위계에 불과한 것이며, 특히 최근의 제5차 南北高位級會談에서 不可侵條項이 包含된 「基本合意書」採擇을 서둘러 同意한 것도 알고 보면 日本으로부터 어떤 名分이든 經濟支援을 얻어, 악화일로에 있는 북한경제(북조선 혁명역량)를 강화하자는데 목적을 둔 것이지 결코 대남공산화혁명을 포기한 것은 아닌 것이다.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로서는 남북대화를 통해 평화 제스처어를 쓰면서도 그 이면에서는 간첩을 계속 남파하고 남한의 운동권 학생이나 노동계 또는 각종 재야단체를 반체제적으로 선동하는 등, 남한사회에 대한 교란공작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일련의 동향으로 미루어 보아 그들이 앞으로도 대남혁명 전략목표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自認될 때까지 당분간은 東歐圈에

서 불고 있는 改革과 民主化 바람이 북한으로의 浸濕 抑制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基本合意書」內容의 자기식 해석과 ‘고려연방제’ 통일주장 등을 고집하는 한편, 남한내에 혁명의 전술적 지도참모부로서의 지하당의 구축 또는 강화와 소위 민중민주주의혁명세력(主로 主思派)이 주도하는 반체제적 ‘勞·農·學·在野 連繫鬭爭’ 戰列形成에 최대의 力點을 두고 남한의 정치적 전환기를 틈타 각종 투쟁형태를 배합하는 등 전술적 지도를 자행해 나갈 것이 전망된다.

나. 우리의 對應方向

以上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공산집단의 악랄하고 집요한 대남공산화 기도를 효과적으로 분쇄하고 우리 민족이 염원하는 조국의 民主的 平和統一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과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첫째는, 우리사회에 잠재적, 현재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취약점을 극소화시킴으로써 共產主義라는 독버섯이 기생할 수 있는 소지를 拔本塞源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북한공산집단의 전략·전술적 음모나 술수를 우리 4천3백만 국민이 다같이 알도록 보다 효율적인 國民啓導活動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우리의 국력을 對北絶對優位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伸張시켜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공산집단은 스스로가 自進해서 대남공산화혁명 기도를 포기하리만큼 순박하고 양심적인 집단이 아니므로 오직 타율적인 힘, 즉 우리의 國力伸張을 통한 힘의 뒷받침에 의해서만 그들의 對南共產化 기도를 좌절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특히 유의할 점은 국력신

장에는 物質國力 못지않게 精神國力이 뒤따라 주어야 하는 것이며, 또한 精神國力과 函數關係에 있는 物質國力으로서의 經濟繁榮도 이는 반드시 우리 國民의 삶의 質을 높여주는 福祉社會 建設이 大前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닛제는, 북한공산집단의 生理야 어떻든간에 南北對話를 통해 끈기있는 對北說得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국력이 물질이나 정신 양면에서 대북절대우위를 확보할 때까지는 正規戰이든 非正規戰이든간에 이 땅에서의 전쟁을 예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要件들이 갖추어질 때 북한공산집단의 대남공산화혁명 야욕은 효과적으로 분쇄될 것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 7千萬民族이 갈망하는 自由와 人權과 幸福이 保障되는 자유민주체제하의 平和의 民族統一의 길도 멀지만은 않을 것이다.

“平和를 바라거든 戰爭에 대비하라.”

—베제티우스(VEGETIUS)—

“戰爭을 치름에 있어 物質을 칼집이라 한다면 精神은 칼날이다.”

—클라우제비츠(CLAUSEWITZ)—

“共産主義와의 鬪爭에서 이기는 길은 그들의 전략·전술을 역이용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니이버(NIEBUHR)—

“共産主義와의 싸움은 3分物理 7分心理, 3分軍事 7分政治이다.”

—장개석(蔣介石)

이상의警句는 우리의 對共安保鬪爭에 있어 어느 하나 빼어 버릴 수 없는 敎訓的 名言이라 생각된다.

III (南北對話

—對話進行과 爭點分析—

張 錫 潑 (統一研修院 教授, 行博)

1. 序 言	175
2. 南北韓의 基本立場	177
가. 우리의 立場	177
나.北韓의 立場	180
3. 南北對話의 展開	183
가. 1970年代의 南北對話	183
나. 1980年代의 南北對話	188
다. 1990年代의 南北對話	193
4. 主要爭點分析	210
가. 「南北不可侵宣言」問題	210
나. 「韓半島 非核地帶化」問題	213
다. 「팀스피리트訓練」問題	216
라. 「駐韓美軍 撤收」問題	219
마. 「多角的 交流·協力」問題	221
5. 結 言	224

1. 序 言

지난 20여년 동안 南北韓間에는 크고 작은 여러가지 形態의 接觸과 對話가 200여회가 넘게 있었다. 1970년대의 「7·4 南北共同聲明」의 발표, 1980년대의 「離散家族 故鄉訪問團」의 교환 등, 부분적인 결실도 있었지만 남북간의 不信과 對立의 간격을 좁히지는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가 1991년 12월 13일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서명·채택함으로써 새로운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맞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지난날의 南北對話가 分斷 民族史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크다 하겠으며, 그것은 우리 民族의 自尊과 統一繁榮을 지향하는 정당한 노력으로 높이 評價되어야 한다.

지난날의 南北對話에서 찾을 수 있는 잘잘못은 모두 값진 敎訓이자 소중한 資産이 될 것이며, 앞으로 「화해·불가침·교류협력의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실천사업을 마련하여 南北關係를 개선시켜 나아갈 原動力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제 南北對話가 成年期를 맞이하였고 더구나 정부간 공식합의를 채택한 마당에, 남북한은 상호간에 현실과 실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民族共存共榮의 관계를 도모하여 平和統一의 基盤을 구축해 나아가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南北韓 UN同時加入」은 기존의 南北對話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의 轉換點이 될 것이며, 이번의 「합의서」 서명은 앞으로 남북간의 새로운 화해·협력의 발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여러가지 情況으로 보아 북한은 南北對話의 필요성과 위험

성을 다 함께 인식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실질적 진전보다는 형식적 차원에서 대화에 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북한을 「對話의 場」으로 誘導함으로써, 평화를 制度化하고 交流와 協力の 길을 넓혀 民族統合의 與件을 성숙시켜 나아가야 한다.

지금 內外狀況이 남북한 和解協力과 統一與件 造成에 유리한 방향으로 급격한 變化樣相을 보이고 있어서, 머지않아 북한도 生存과 體制의 유지를 위하여 그들의 기본입장을 修正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의 變化에 대비하면서 對話에 임하는 북한의 協商戰術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책을 강구하고 대화를 계속 주도함으로써 變化를 促進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認識을 바탕으로 하여 本 教材에서는

첫째, 남북대화에 임하는 남북한의 基本立場을 파악하고

둘째, 主要 南北對話의 과정을 분야별로 정리 분석하며

셋째, 主要 懸案別 爭點을 分析함으로써 쌍방의 認識의 差異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결국 南北對話는 필연적으로 남북한 모두에게 강요되고 있는 ‘統一의 手段’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이 平和統一을 전제로 하는 한, 남북대화는 ‘필요가 아닌 당위의 명제’인 것이다. 왜냐하면, 남북대화의 성공은 곧바로 평화 통일실현의 첩경이기 때문이다.

2. 南北韓의 基本立場

가. 우리의 立場

(1) 南北對話의 概念認識

「대화」란, “서로 마주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¹⁾, 또는 “相互 理解와 調和를 찾기 위해, 허심탄회하게 주고 받는 생각의 교환과 토론”²⁾을 말한다.

이와 같이 대화의 참뜻은 一方通行이 아니라 雙方通行이라는 관점에서 南北對話는 곧 ‘남북한 상호간의 의사소통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단의 현실, 특히 체제와 이념의 차이 및 同族相殘으로 인한 민족내부의 심각한 대결과 반목현상을 감안할 때, 남북대화는 단순한 의사소통을 위한 接觸이나 회담의 진행이라는 소극적 의미로만 해석될 수 없다. 남북한간에 相互理解·妥協·調整 및 合意를 이루어 나아가기 위한 ‘交涉’ 내지 ‘協商’이라는 적극적 의미를 포괄하는 概念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남북대화는 ‘南北接觸’, ‘南北協商’, ‘南北會談’, ‘南北交涉’과 同義語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2) 南北對話에 臨하는 우리의 基本立場

우리가 남북대화에 임하는 基本立場은 다음과 같다.

남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對話와 協商의 방법을 통

1) 이희승 편저, 「국어대사전」(민중서관, 1986), P.866.

2) 「Webster's New Twentieth Century Dictionary of English Language」(World Publishing co. Inc, 1983), P.503.

하여 斷絶과 對決狀態의 非정상적 관계를 和解와 協力の 정상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共存共榮의 동반자로서 相互 社會開放과 交流協力を 넓혀 민족공동체로의 사회·문화·경제적 기반을 확고히 닦음으로써 統合與件을 성숙시켜 나아가야 한다³⁾는 것이다.

또한 民族共同體를 회복·발전시키고 통일된 民主福祉國家를 건설해 나아가기 위하여는 현실을 토대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화해·교류·협력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성실하고 생산적인 대화 자세를 가다듬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는 필연적으로 責任과 權限을 가진 쌍방의 政府當局이 앞장서야 한다. 만약, 쌍방의 정부당국이 냉전적 思考에 젖어 대립적 자세와 적대적 태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남북한 관계개선은 이루어질 수 없으며, 민족적 화해와 평화통일도 이룩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쌍방의 정부당국은 마땅히 ‘대결이 아닌 화해로, 적대가 아닌 협력으로’ 민족 내부의 갈등과 불신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⁴⁾

이와 같은 취지에 입각하여 우리측은 다음과 같은 4個項의 當面課題에 대한 基本立場을 제시했다.⁵⁾

첫째, 南北關係 狀況變化에 대한 立場

우리측은 최근 남북간에 인적·물적교류가 활성화되고 증대되는 등, 交流와 協力の 길을 넓혀가고 있으며, 남북한이 UN에 同時加入함으로써 남북이 共存共榮의 관계를 이루어 平和統一로 나아가기 위한 轉機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남북한 관계개선과 평화통일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화를 제도화하고 交流協力關係를 발전시켜 共存共榮의 질서 구

3) 통일원,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회의록」(남북대화사무국, 1990.9), PP.24-27. 參照.

4) 梁榮植, 「민주통일론」, 「南北對話」(통일연수원, 1991), P.132.

5) 統一院, 「第4次 南北高位級會談結果報告」, (1991.10), P.8.

축에 시급히 착수해야 한다.

둘째, 平和와 統一에 대한 立場

우리측은 平和定着과 統一을 앞당기기 위한 「적극적인 관계」를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 現 休戰狀態를 南北間 平和狀態로 전환하고, 군사적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軍備減縮을 추진하며, 「사람·물자·정보의 자유로운 交流의 길」을 열어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實踐努力을 경주해야 한다.

또한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相互體制의 尊重, 상대방에 대한 敵對政策의 拋棄, 相互不信의 除去 및 信賴構築부터 이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북한은 對南革命路線을 포기하고, 核武器開發을 중단해야 하며, 모든 核物質과 施設에 대한 국제기구의 사찰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

한편, 우리측은 吸收統一이 아닌 남북한의 공존공영을 통해 民族共同體를 회복·발전시켜 民族統合을 이룩하자는 것과, 통일된 우리 조국은 單一國家로서 民族構成員 모두가 주인이 되고, 각자에게 自由와 人權, 그리고 幸福과 繁榮을 가져다 주는 民主福祉國家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立場이다.

셋째, 和解·不可侵과 交流協力에 대한 立場

우리측은 「和解·不可侵과 交流協力에 대한 合意書(案)」를 제시하였다.⁶⁾ 그 동안 북한측이 제시한 내용을 고려하여 전체 條文을 유사하도록 조정하고, 북한측 제안 중, 빠져 있는 重要內容과 실천성을 보장하는 기본적 내용을 補完하여 합의를 이루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그 결과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화해·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서명·채택되었다.

넷째, 離散家族問題에 대한 立場

우리측은 離散家族問題의 해결은 분단으로 빚어진 고통과 상처

6) 1991.10.23.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序文 및 基本事項(全15個條項)의 案을 제시했다. 그리고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도 제의됐고, 남북간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를 치유하는 先決課題이며 相互信賴回復의 징표인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의 초보적 조치임을 지적하고, 「南北高位級會談」의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立場이다.

나. 北韓의 立場

(1) 南北對話의 概念認識

「대화」란, “마주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 또는 “對峙狀態에 있는 쌍방이 社會・政治問題를 가지고 마주 앉아 논의하는 것”⁷⁾으로 개념을 정립하여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북과 남 사이에 對話를 하고 合作을 실현하는 것은, 나라의 자주적 平和統一을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남북대화」의 개념을 “남조선 혁명을 위한 중요한 방도로서의 合作統一의 기본수단”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政治用語辭典을 보면, 「남북협상」이란, “우리 인민의 최대의 민족적 과업인 祖國統一을 실현하기 위하여 북조선대표와 남조선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앉아서 의논하는 것”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대화’나 ‘남북대화’의 概念을 南朝鮮 革命鬭爭의 연장선상에서 合作統一의 수단으로 동원된 혁명투쟁의 한 방법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 혁명투쟁의 속성을 버리지 않는 한, 본질적으로 ‘대화’는 ‘적대적 대화’의 영역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에 우리는 유의해야 한다.

7) 「현대조선말사전」(과학백과사전출판사(평양종합인쇄공장), 1981), P.755.

8) 「정치용어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0), p.117.

(2) 南北對話에 臨하는 北韓의 基本立場

북한이 남북대화에 임하는 基本立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혁명성으로 일관된 主體思想의 觀點을 견지한다.

둘째, 조국통일의 전제조건인 南朝鮮 革命路線을 관철한다.

북한은 남북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도 서슴지 않고 “조국통일을 위하여는 남조선 인민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통일문제도 주체사상으로 해결할 것을 강변하고 있다.

최근 우리사회 일각에, 특히 大學街에 主體思想이 急進左傾派 학생조직의 指導理念으로 등장한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의 남북대화 협상전술을 주체사상에 따라 관철하려는 속셈을 결코 혁명적 환상주의의 발작현상이라고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南朝鮮 革命路線을 견지한다는 것은 「反帝民族解放, 反파쇼, 人民民主主義革命」을 완수하기 위한 결정적 시기를 조성하는 데, 모든 鬭爭力量을 동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른바 ‘3大革命力量強化’라든지, ‘反美自主化·反파쇼民主化鬭爭’, ‘反美救國民族大統一戰線’, ‘統一勢力 對 反統一勢力鬭爭’ 등의 구호는 모두 남조선 혁명노선의 관철을 위한 결정적 시기를 겨냥한 것이다. 즉, 결정적 시기에 남한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反革命勢力을 타도함으로써 親北聯共政權을 세운다는 것이다.

북한이 남북대화에 임하는 목적은 분명하다. 즉, 남한 내에서 階級革命의 여건을 향상시켜 보려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북한의 統一指向的인 인상을 남한의 지식층, 근로대중에게 심어줌으로써 反北姿勢을 악화시키는 한편, 남한 당국자와의 上層統一戰線을 형성함으로써 階級鬭爭을 억제하는 제도를 완화하여 자유로운 革命鬭爭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자는 데, 그 目的이 있는 것이다.

북한은 최근 평양에서 개최된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다음

과 같은 4個項의 立場을 밝혔다.

첫째, 民族 大團結에 대한 立場

“서로 다른 思想과 制度사이의 우열을 겨루려는 뿌리깊은 對決 意識이 북남회담을 순조롭게 진척시키지 못한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우리측이 民族 大團結의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더욱 대결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非難하였다.

둘째, 平和問題에 대한 立場

한반도에서의 平和는 外軍撤收와 南北軍縮으로 이루어지며 이 問題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南北間 信賴構築을 위한 최선의 방도이자 남북관계 정상화와 관계개선을 위한 가장 가까운 길이라고 주장하면서, UN軍司令部 解體, 駐韓美軍 撤收, 對美平和協定 締結 등을 되풀이하였다.

셋째, 「朝鮮半島 非核地帶化」에 대한 立場

“조선반도 비핵지대화 실현이 평화를 위한 전환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가장 急先務”라고 주장하고 「朝鮮半島 非核地帶化에 관한 宣言(案)」⁹⁾을 제시하였다.

넷째, 信賴問題에 대한 立場

不可侵宣言과 軍縮의 우선 해결을 분명히 하면서 「和解와 協力・交流實現을 위한 제반문제」¹⁰⁾도 함께 “협의・해결되기를 바란다.”는 立場을 밝혔다.

9) 「朝鮮半島의 非核地帶化에 관한 宣言(案)」은 9個條文으로 되어 있다.

10) 「不可侵과 和解 및 協力交流에 관한 宣言(案)」은 1. 北南不可侵(1~7條), 2. 北南和解(8~13條), 3. 北南協力交流(14~19條), 4. 修正 및 効力(20~21條)으로 되어 있다.

3. 南北對話의 展開

가. 1970年代의 南北對話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남북한 내부상황과 한반도 주변정세는 엄청난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국은 祖國近代化의 추진으로 급속한 經濟成長을 이루어 북한을 앞지르게 되었으나, 군사력에 있어서는 열세인 형편이었다.

雪上加霜으로 「닉슨 독트린」에 의한 駐韓美軍의 撤收壓力에 봉착해, 스스로의 존립을 모색하게 되었다. 따라서 「先建設 後統一」路線을 견지해 오던 정책을 재고할 필요성에 따라 남북대화의 추진을 신중히 고려하게 되었다.

한편, 북한은 남북대화를 성립시킴으로써 이를 매개로 합법적 방법으로 「統一戰線」을 형성코자 하였으며, 그들의 對內經濟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남북대화를 이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남북대화가 韓國軍의 「장비현대화계획」에 제동을 걸면서 남북간 군사력 수준을 동결시키는 명분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절감되는 財源을 경제부문에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는 판단아래 남북대화를 고려하게 되었다.

당시 한반도 주변정세는 美·蘇가 상호공존의 데탕트를 모색하기 시작하였고, 동북아의 세력구조도 양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변화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美·中和解」가 시작되고, 1972년 2월 닉슨 대통령이 북경을 방문하여 「중국의 UN가입」과 「중국과 美·日간의 외교수립에 합의」하는 단계에 이르러 한반도 주변정세가 새로운 국면을 맞

게 되었다.

이러한 주변정세의 변화는 역사적으로 주변강국의 교차점으로 간주되던 한반도의 南과 北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남북한은 종래의 대결구조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정립을 모색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마침내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은 「平和統一構想」¹¹⁾을 선언하게 되었다.

이 선언에 따라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는 북한적십자회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南北赤十字會談」 개최를 제의했으며, 북한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본격적인 1970년대 남북대화가 시작되었다.

(1) 南北赤十字會談

1971년 8월 12일 최두선 대한적십자사총재는 특별성명을 발표, 離散家族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南北赤十字會談」을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북한은 8월 14일 이 제의를 수락함으로써 이후 남북적십자간에 접촉과 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5차에 걸친 실무자 접촉을 통하여 「南北赤十字 豫備會談」의 준비를 끝내고, 9월 20일 첫 회담을 갖게 되었다.

이후, 쌍방은 본회담의 議題에 완전히 합의하기까지 무려 25회의 예비회담 전체회의와 16회의 비공개 실무회담을 가져야 했다.

「남북적십자회담」은 1972년 8월 30일에 시작하여 서울과 평양

11) 박정희 대통령은 1970.8.15. “인도적 견지와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남북한에 가로놓인 인위적 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이고도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그 어느 체제가 국민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으며, 더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회인가를 입증하는 개발과 건설과 창조의 경쟁을 촉구한다.”는 「평화통일구상」을 발표했다.

을 번갈아 오가며 개최되다가 「제7차 본회담」¹²⁾이후 1973년 8월 28일 북한의 「對話拒否聲明發表」로 중단되고 말았다.

「제1차 본회담」에서 합의된 의제는 다음과 같다.

①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지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

②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지들 사이의 자유로운 방문과 자유로운 상봉을 실현하는 문제

③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지들 사이의 자유로운 서신거래를 실시하는 문제

④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 문제

⑤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

「제2차 본회담」에서는 다음과 같은 2개항의 합의문서를 각각 서명하여 교환하였다.

① 쌍방은 온 겨레의 의사와 염원을 반영하여 「남북적십자회담」의 의제로 설정된 모든 문제들의 해결에 있어서 민주주의적 원칙과 자유로운 원칙, 남북공동성명의 정신과 동포애 그리고 적십자인도주의 정신을 철저히 구현한다.

② 쌍방은 「제1·2차 본회담」을 통하여 다져진 쌍방간의 이해와 분위기를 바탕으로 하여 「제3차 본회담」부터는 의제에 대한 토의를 진행한다.

그리고 「제4차 본회담」에서는 「제3차 본회담」에 이어 제1항의 토의에 들어갔으나, 이른바 法律的·社會的 障礙除去(反共法·國

12) 남북적십자 본 회담 진행 경과.

- 제1차 : 평양, 1972. 8.29. - 9. 2.
- 제2차 : 서울, 1972. 9.12. - 9.16.
- 제3차 : 평양, 1972.10.23. - 10.26.
- 제4차 : 서울, 1972.11.22. - 11.24.
- 제5차 : 평양, 1973. 3.20. - 3.23.
- 제6차 : 서울, 1973. 5. 8. - 5.11.
- 제7차 : 평양, 1973. 7.10. - 7.13.

家保安法 撤廢, 反共政策 中止, 反共團體 解散)라는 先決條件을 내놓고 고집함으로써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합의를 보게 되었다.

①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합의되는 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南北赤十字 共同委員會」와 「共同事務所」를 판문점에 설치한다.

② 이 두 기구의 기능과 운영절차 및 구성은 따로 토의, 결정한다.

③ 「남북적십자회담」의 협력사항 실행을 위하여, 그 밖의 기구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앞으로 토의, 결정한다.

그러나 여기서 합의된 사업기구는 끝내 그 설치가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는 북한이 名分과 輿論 때문에 회담에 성의를 보이는 척 했을 뿐, 진정한 實踐意志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드디어, 북한은 8월 28일 평양방송을 통하여 「對話拒否聲明」을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남북적십자회담」은 중단되고 말았다.

그후, 회담 재개를 위한 「實務會談」을 25차에 걸쳐 개최하면서 5년 동안 노력하였으나, 북한은 마침내 1978년 3월 19일 「팀스피리트훈련」을 트집삼아 「실무회담」마저 중단시키고 말았다.

(2) 南北調節委員會會談

1972년 5월 2일부터 3泊4日間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극비리에 평양을 방문하고, 김일성과 2회, 김영주와 2회의 회담을 가졌고, 북한의 박성철은 5월 29일부터 3泊4日間 극비리에 서울을 방문하여 박정희 대통령과 1회,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2회의 회담을 가졌다.

그 결과, 역사적인 「7·4南北共同聲明」 발표와 「南北調節委員會」의 발족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3회에 걸쳐 「南北調節委員會 共同委員長會議」를 개최하게 되었다.

「제1차 회의」(1972.10.12. 판문점)에서는 「7·4남북공동성명」의 제1항(통일 3원칙)에 대한 해석과 실천방법에 관해 토의하였으나, 의견차이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제2차 회의」(1972.11.2.~3. 평양)에서는 「南北調節委員會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署名・交換했고, 대남·대북비방방송중지, 군사분계선상에서의 확성기에 의한 대남·대북방송중지, 상호 상대방 지역에 대한 전단살포중지 등에 합의, 이를 1972년 11월 11일 0시를 기해 발효하기로 합의하였다.

「제3차 회의」(1972.11.30. 서울)에서는 쌍방 「남북조절위원회」의 구성절차를 마치게 되었다.

이어서 3회에 걸친 「南北調節委員會 本會議」가 진행되었다.

「제1차 본회의」(1972.11.30.~12.1. 서울)에서 쌍방은 계속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제2차 본회의」(1973.3.14.~15. 평양)에서는 계속된 견해차이로 공동발표도 없이 끝났다.

「제3차 본회의」(1973.6.12.~13. 서울)에서 북한측은 군사 5개 항목 우선토의, 남북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개최, 남북조절위원회 5개 분과위원회의 一括 同時設置 등을 거듭 주장했다.

1973년 8월 28일 북한은 김영주의 명의로 「남북조절위원회」 운영의 일방적 중단을 선언했다. 그 이유는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을 “두 개 조선 로선의 공개적 선포”라고 트집 잡은 것이다.

그후, 우리측은 11회에 걸친 부위원장회의를 전개하면서 對話再開를 모색했으나, 결국 남북한 직통전화마저 단절되고 말았다.

(3) 南北卓球會談

1979년 2월 20일 북한탁구협회는 「제35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평양) 개최를 불과 수개월 앞두고 당초부터 실현가능성을 예상하

기 힘든 「남북한 단일팀」 참가에 관한 협의를 제의해 왔다.

「남북탁구회담」은 4회에¹³⁾ 걸쳐 판문점에서 개최되었으나, 아무런 성과없이 시간만 흘러가 「남북한 단일팀」 구성은 물론 평양대회에 한국 선수단의 참가마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나. 1980年代의 南北對話

1980년대는 다양한 접촉과 대화의 통로가 마련되어 「제2기 南北對話期」라 할 수 있다. 1980년부터 전개된 남북대화는 서로 상대방을 불신하는 가운데, 그래도 해가 거듭할수록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양상을 보였다.

「10·26」 직후인 1980년 초에 개최된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실무접촉과 비마사건 직후인 1984년 봄의 「제23회 LA올림픽」 단일팀 참가를 위한 「體育會談」은 예상했던 대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으나 水災物資의 引渡·引受 이후 개최된 「적십자회담」과 「經濟會談」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또한 「제24회 서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로잔느體育會談」이 열렸고, 국회회담을 위한 「예비접촉」도 열렸다.

이와 같이 1980년대는 國會·經濟·體育 등 여러 분야의 회담이 열렸고, 離散家族들의 交換訪問도 실시되는 등 「제1기 남북대화기」와는 성격상 다른 면모를 드러내 보였다.

(1) 南北總理會談 實務代表 接觸

북한은 1980년 1월 12일 ‘통일과 관련된 제안’을 담은 「편지」¹⁴⁾

-
- 13) ○ 제1차 회의: 1979.2.27. 판문점.
○ 제2차 회의: 1979.3. 5. 판문점.
○ 제3차 회의: 1979.3. 9. 판문점.
○ 제4차 회의: 1979.3.12. 판문점.

- 14) 便紙는 신현화 국무총리 앞으로 보내는 이종욱 정무원총리의 편지와, 김일 부주석이 한국정계 및 각계 인사에게 보내는 12통의 편지였다.

를 판문점을 통해 우리측에게 전달했다.

우리측은 1980년 1월 24일 실무대표단(차관급 수석대표, 실무대표 3명, 수행원 약간명)을 구성하여, 2월 6일 판문점에서 접촉을 갖자고 제의했다.

그리하여 총리회담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이 이루어져 모두 10회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총리회담의 절차 마련을 위한 「제11차 실무대표 접촉」을 이틀 앞둔 9월 24일 돌연 접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다고 선언하고, 南北直通電話마저 받지 않음으로써 아무런 성과도 없이 완전 결렬되고 말았다.

(2) 南北體育會談

북한은 1984년 3월 30일 정주영 대한올림픽위원회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내와 “「제23회 LA올림픽대회」와 「아시아경기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에 남북단일팀을 구성하여 출전할 것”에 대해 「체육회담」을 갖자고 제의해 왔다.

이에 대하여 우리측은 「제23회 LA올림픽대회」 참가 선수명단 제출 마감일이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이를 남북간의 人的·物的 交流와 協力增大의 계기로 삼기 위해 수락함으로써 「남북체육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1984년 4월 9일에 「제1차 남북체육회담」이 시작되어 5월 25일 「제3차 남북체육회담」까지 진행되었으나, 본질적인 문제는 토의도 제대로 해 보지도 못하고 끝나고 말았다.

(3) 로잔느體育會談

1981년 9월 바덴바덴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총회」에서 「제24회 올림픽대회」의 개최지가 서울로 결정된 이래, 북한은 이를 극력 반대해 왔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사마란치 IOC위원장이 「IOC 주재하의 南北體育會談開催」를 제의해 왔다.

북한은 이 제의를 계속 외면해 오다가, 1985년 7월 6일 돌연 태도를 바꾸어 회담에 참석할 의사를 밝혔다.

그리하여 IOC측은 7월 24일 로잔느에서 「남북체육회담」을 개최할 것을 공식발표하고, 「제1차 남북체육회담」을 10월 8일부터 9일까지 개최할 것을 남북한에 각기 통보했다.

이렇게 하여 열린 「남북체육회담」은 3者 合同會議를 2회, 한국과 IOC간 개별회의를 2회, 북한과 IOC간 개별회의를 2회 열었으나, 북한측이 「南北韓共同主催案」을 끝내 고집함으로써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회담은 결렬되고 말았다.

(4) 南北赤十字會談

1984년 8월 20일 전두환 대통령은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 동포들의 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술과 물자를 무상으로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천명했다.

북한은 이 제의를 비방하고 거부해 오다가 9월 8일 북한적십자회가 “서울·경기일원의 水災民에게 쌀 5만석, 천 50만미터, 시멘트 10만톤, 기타 의약품을 보내겠다.”고 밝히면서 대한적십자사가 협력해 줄 것을 제의해 왔다.

이에 대해 대한적십자사는 9월 14일 ‘남북한 관계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해 보겠다’는 의도에서 북한의 제의를 수락하고, 인수절차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갖자고 제의했다.

그리하여 9월 18일 판문점에서 「제1차 실무접촉」을 갖게 되었고, 이 접촉에서 “引渡·引受장소로 해상수송의 경우는 인천항과 북평항으로 한다.”는 합의를 보았으나, 육로 수송의 경우는 韓赤은 판문점, 北赤은 서울로 異見을 좁히지 못해 성과없이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북한은 9월 19일 태도를 바꾸어 “인천·북평·판문점으로 보내겠다.”고 밝혔다.

그렇게 하여 9월 29일부터 10일간에 걸쳐 남북적십자간에 수재물자 인도·인수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1984년 10월 4일 유창순 대한적십자사총재는 “남북간에 폭넓은 교류협력을 하자.”는 서한을 손성필 북한적십자회위원장에게 보냈다. 이에 대하여 北赤은 10월 29일 호응하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 왔다.

이렇게 해서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이 이루어졌고, 이미 합의한 사항들을 토대로 본회담 개최에 따른 議題, 場所, 代表團構成 등, 제반운영절차를 재확인하는 것들이 비교적 쉽게 타결되었다.

그리하여 「남북적십자회담」은 중단 12년만에 1985년 5월 27일 서울에서 「제8차 본회담」을 열게 되었으며, 모두 세 차례 본회담¹⁵⁾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제11차 본회담」을 1986년 2월 26일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合意하였으나, 북한은 「팀스피리트 '86」을 口實삼아 “남북대화를 전면 중단한다.”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개최되지 못했다.

그러나 3회에 걸친 실무대표 접촉에서 합의하고, 「제9차 본회담」에서 확인함에 따라, 이산가족과 예술단의 서울과 평양 交換訪問이 성사된 것은 큰 성과라 하겠다. 즉, 1985년 9월 20일 「南北離散家族 故鄉訪問 및 藝術公演團」의 동시 교환방문이 실현되었다.¹⁶⁾

15) ○ 제8차 본회담 : 1985. 5. 27. 서울.

○ 제9차 본회담 : 1985. 8. 27. 평양.

○ 제10차 본회담 : 1985. 12. 3. 서울.

16) 서울과 평양에 도착한 「남북한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각각 151명은, 평양 방문중 35명이 41명과 상봉했고, 서울 방문중 30명이 51명과 상봉했다. 예술단은 9월21-22일에, 서울예술단은 평양대극장에서, 평양예술단은 국립극장에서 2회의 공연을 가졌다.

(5) 南北經濟會談

1984년 10월 12일 신병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북한 최영림 정무원부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남북간 교역과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상설기구로서 쌍방 당국과 경제계 대표들로 구성되는 「南北韓經濟協力機構」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南北經濟會談」의 개최를 제의했다.

북한은 10월 16일 김환 부총리의 명의로, 이 제의에 호응하여 11월 15일 판문점에서 「제1차 남북경제회담」을 개최할 것과 대표단은 차관급을 단장으로 하여 5명의 대표로 구성할 것을 알려 왔다.

우리측은 북한에 電話通知文을 보내 “대표단을 7명으로 하자.”고 修正提議를 했고, 북한측도 이에 동의함으로써 11월 15일 「제1차 남북경제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5회의 회담¹⁷⁾이 진행되었으나, 북한은 「팀스피리트 '86」을 구실로 진행중인 모든 南北對話의 연기를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남북경제회담」도 중단되고 말았다.

결국 「남북경제회담」은 아무런 合意文書나 物資交流를 하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으나, 이 회담은 최초의 남북한 政府間 회담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컸고, 交易品目, 自然資源의 공동개발, 공동어로구역 설정, 경의선 연결, 경제협력위원회 설치 등에 의견일치를 봄으로써 경제분야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했다.

(6) 南北國會會談 豫備接觸

북한은 1985년 4월 9일 양형섭 최고인민회의의장 명의로 채문

-
- 17) ○ 제1차 남북경제회담 : 1984. 11. 15. 판문점.
 ○ 제2차 남북경제회담 : 1985. 5. 17. 판문점.
 ○ 제3차 남북경제회담 : 1985. 6. 20. 판문점.
 ○ 제4차 남북경제회담 : 1985. 9. 18. 판문점.
 ○ 제5차 남북경제회담 : 1985. 11. 20. 판문점.

식 국회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南北國會會談」을 제의해 왔다.

이 제의에 대하여 국회는 6월 1일 「남북국회회담에 관한 回信文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6월 3일 “대한민국 국회는 統一憲法 제정을 위한 남북간의 협의기구 구성문제와 統一基盤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토의하기 위한 「南北國會會談」 개최를 환영한다.”는 회신을 보냈다.

1985년 7월 23일 판문점에서 「제1차 예비접촉」이 공개리에 진행되었다. 쌍방 대표들은 절차문제에는 대체적으로 합의¹⁸⁾를 보았으나, 본회담 의제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9월 25일 판문점에서 「제2차 예비접촉」이 열렸다.

이 날은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제1차 접촉에서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와 같이 국회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은 2회가 진행된 후, 북한이 「타임피리트 '86」을 이유로 모든 남북대화를 중단시킴에 따라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도 결렬되고 말았다.

그러나 「국회회담」은 북한이 주장하는 政治會談의 실상에 대한 탐색이 되었고, 국민대표기관인 입법부간의 접촉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다. 1990년대의 南北對話

정부는 제6공화국 출범 이후, 남북간에 和解와 協力政策을 바탕

18) 쌍방의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회담형식-쌍방 국회의 대표회담.
- ② 대표단규모-각각 11명.
- ③ 회담장소-서울·평양.
- ④ 일시-예비회담 끝나고, 1개월내 개최.
- ⑤ 보도·기록-각기 편리한 대로.
- ⑥ 대표단 왕래절차-종전 관례대로.

으로 새시대를 열어 놓기 위해,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南北對話에 노력해 왔다. 南北對話가 중요한 것은 민족적 차원에서 남북의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민족적 화합을 이룩하고, 민주적 평화통일의 길을 터 나아가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견지에서 남북한 당국간의 對話通路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南北高位級會談」을 성사시키게 되었다.

한편, 「7·7宣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단의 벽을 허물고 모든 부문에 걸쳐 교류를 실천”하여 상호간 공동번영과 이산가족들의 고통해소를 적극 추진하는 남북관계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88년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이 시작된 이래, 1991년 12월까지 4년 동안 「남북고위급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8회, 실무대표접촉 5회, 본회담 5회,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10회,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8회, 「남북체육회담」 10회, 실무대표접촉 6회 등, 폭 넓은 대화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

(1) 南北高位級會談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은 1988년 12월 28일 강영훈 국무총리가 북한 연형묵 정무원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남북이 각기 총리를 首席代表로 하는 7명의 대표를 구성, 남북간에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아가기 위한 「南北高位當局者會談」을 열 것”을 제의한 데 대한 북한측의 수용으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남북한은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南北高位級會談」을 마련하기 위하여 1989년 2월 8일부터 1990년 7월 26일까지 8회의

예비회담과 2회의 실무대표접촉¹⁹⁾을 가졌다.

「제1차 예비회담」에서 남북한은 쌍방 총리들이 만나는데 필요한 제반 절차문제에 관한 구체안을 제시했으나, 북한측이 「팀스피리트훈련 중지」문제를 전제조건으로 내놓아 절차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제2차 예비회담」에서도 북한측은 「팀스피리트훈련 중지」와 「3개항의 緊急提案」을 들고나와 공전되고 말았다.

「제3차 예비회담」에서는 「문익환, 임수경, 문규현의 석방」, 「民族統一協商會議」의 소집 등, 會談外的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공전되고 말았다.

「제4차 예비회담」에서 節次問題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6개항의 의제를 포괄하는 절충안을 單一議題로 제시했으나, 북한측은 ‘交流·協力’을 표기하는 데 반대함으로써 결렬되고 말았다.

「제5차 예비회담」에서는 절차문제에서 본회담 명칭, 대표단 구성에 대한 합의를 보았다.(남북고위급회담 대표단에는 군사대표 2명 이내, 수행원 33명)

「제6차 예비회담」에서 우리측은 「南北高位級會談 개최에 관한 合意書(案)」를 제시하고 의제문제를 타결한 후, 文案調整에 들어갈 것을 제의했으나, 북한측은 또다시 「팀스피리트훈련 중지」문제의 우선 해결을 요구함으로써 공전되고 말았다.

-
- 19) ○ 제1차 예비회담 : 1989. 2. 8. 판문점 ‘평화의 집’
 ○ 제2차 예비회담 : 1989. 3. 2. 판문점 ‘통일각’
 ○ 제3차 예비회담 : 1989. 10. 12. 판문점 ‘평화의 집’
 ○ 제4차 예비회담 : 1989. 11. 15. 판문점 ‘통일각’
 ○ 제5차 예비회담 : 1989. 12. 20. 판문점 ‘평화의 집’
 ○ 제6차 예비회담 : 1990. 1. 31. 판문점 ‘통일각’
 ○ 제7차 예비회담 : 1990. 7. 3. 판문점 ‘평화의 집’
 - 제1차 실무대표접촉 : 1990. 7. 6. 판문점 ‘중감위’회의실
 - 제2차 실무대표접촉 : 1990. 7. 12. 판문점 ‘중감위’회의실
 ○ 제8차 예비회담 : 1990. 7. 26. 판문점 ‘통일각’

「제7차 예비회담」은 우리측이 북한측의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의제표기 순서문제 합의 및 절차문제 전반에 걸쳐 타결을 보았다.(2회의 실무대표 접촉으로, 19개항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제8차 예비회담」에서 합의서를 확인하고 서명·교환했다.

(가) 第1次 南北高位級會談

1990년 9월 5일 서울에서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南北關係 개선을 위한 基本合意書(案)²⁰⁾」를 제시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교류협력 실시문제를 병행하여 토의한다는 입장에서 10개항의 「다각적인 交流協力 實施方案²¹⁾」과 8개항의 「政治·軍事的 信賴構築方案²²⁾」을 제시했다.

20)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안)」

- ① 통일 이전까지 상대방의 체제인정·존중
- ② 상호 비방·증상 중지 및 상대방 내정에 대한 불간섭
- ③ 상호 의견대립과 분쟁은 당국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
- ④ 상대방에 대한 파괴·전복행위 중지
- ⑤ 자유왕래와 다각적인 교류협력 실현 및 사회개방과 민족적 유대 회복
- ⑥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감축 실현
- ⑦ 국제무대에서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이익과 공존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
- ⑧ 현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21) 「다각적인 교류협력 실시방안」

- ① 이산가족의 자유방문과 재결합을 조속히 실현하고, 60세 이상 이산가족의 고향방문 즉각 실현
- ② 민족명절과 기념일 전후 민족대교류 실현 및 문화행사 교환 개최
- ③ 각 분야별 남북동포간의 교류협력 방안 협의·실현
- ④ 교역 문화개방 및 물자교류
- ⑤ 자원 공동개발 및 합작투자, 경제분야에서의 공동 대외진출 및 대화협력 사업 추진
- ⑥ 관광자원 공동개발 및 관광사업 공동추진
- ⑦ 남북간 철도·도로 복원 및 해로·공로 개설
- ⑧ 우편물 교환 및 전신·전화 개통
- ⑨ 통행·통신·통상에 관한 합의서 채택
- ⑩ 부총리급 경제협력공동기구 설치

22) 「정치·군사적 신뢰구축방안」

- ① 상호 체제인정 및 존중의 바탕 위에서 상대방 지명 공격, 비방 증상 등의 중지
- ② 신문, 방송 및 출판물 상호 개방
- ③ 서울·평양에 상주연락대표부 설치

그러나 북한측은 회담에서 지켜야 할 「3개 원칙²³⁾」과 UN加入問題, 팀스피리트訓練 中止, 訪北人士 釋放 등, 「3개 緊急課題」를 우선 해결하자고 하면서 「先政治·軍事問題 解決, 後交流·協力 推進」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북한 쌍방은 이러한 상반된 입장의 차이로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나, UN加入問題와 관련한 實務代表접촉과 「적십자 회담」 재개를 촉구한다는 데 합의를 보았다.

(나) 第2次 南北高位級會談

10월 17일 평양에서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북한측이 제시한 「3個原則」을 수용한 「南北關係 개선을 위한 基本合意書」 修正案과 「通行·通信·通商(경제교류협력)에 관한 方案」을 제시했고, 의제토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交流協力分科委員會」와 「政治·軍事分科委員會」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3個 當面課題」로 북한측의 대남혁명노선 포기, 이산가족문제의 우선 해결, 경제교류협력을 제시했다.

그러나 북한측은 7개항의 「北南不可侵에 관한 宣言(案)²⁴⁾」을 제

④ 군인사 상호방문 및 교류실시

⑤ 군사정보 상호공개 및 교환

⑥ 군부대 이동 및 기동훈련의 사전통보와 상대방 초청 참관

⑦ 한국의 국방부장관과 북한의 인민무력부장 직통전화 설치 운영

⑧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실현 및 평화적 이용

23) 「회담 전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3개원칙」

① 7·4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 재확인 및 준수

② 일방의 이익보다 민족공영의 이익을 우선

③ 회담분위기를 흐리게 하거나 회담진전에 저촉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함.

24) 북한측의 「북남불가침에 관한 선언(초안)」 내용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서 문] 7·4공동성명의 3원칙을 재확인·준수하고, 상대방의 사상·제도를 인정·존중하며, 상대방 내부문제에 불간섭할 것을 약속

제1조: 상대방에 대한 무력불사용 및 무력불침해

제2조: 의견상이와 분쟁문제들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제3조: 불가침의 경계선은 1953년 7월 27일부 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으로 설정

제4조: 불가침 약정의 담보를 위한 군비경쟁중지 및 무력의 단계적 감축

제5조: 우발적 무력충돌 확대방지 위해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운영

안하면서 당장 합의·서명하자고 주장하는 한편, 토의안건을 정치적 대결상대 해소방안, 군사적 대결상대 해소방안, 다방면적 협력 교류 실현방안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일괄합의·동시집행을 주장했다.

우리측은 또다시 이를 대폭 수용하여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基本原則問題를 포괄하여 「南北間の 和解와 協力을 위한 共同宣言(案)²⁵⁾」을 제시했으나, 북한측은 이를 거부했다.

(다) 第3次 南北高位級會談

12월 11일 서울에서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먼저 「남북고위급회담」이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하고, 「南北關係 개선을 위한 基本合意書」의 修正案²⁶⁾

제6조: 동 선언은 쌍방합의에 의해 수정·보충 가능

제7조: 동 선언은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통고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어느 일방이 폐기를 통고하지 않는 한 통일실현시까지 효력 유지

25)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안)」 요지

[서문]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합의

- ① 7·4공동성명의 3원칙 재확인, 상대방 체제인정·존중, 내정 불간섭
- ② 경제 교류·협력 촉진과 인적교류·협력실시
- ③ 무력불사용 및 파괴·전복행위 금지
- ④ 분쟁의 평화적 해결
- ⑤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감축 실현
- ⑥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운영
- ⑦ 비방·중상 중지
- ⑧ 국제무대에서의 경쟁·대결 중지와 상호협력 및 공동노력

26)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수정안)」

[서문]

- ① 7·4공동성명의 통일 3원칙 재확인
- ② 민족공동의 이익과 민족화해를 이룩하는 방향으로 대화 추진
- ③ 긴장상태 완화와 교류협력을 통한 신뢰구축
- ④ 상호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남북관계개선과 평화통일 성취를 위한 공동노력 경주

[기본사항]

- ① 통일시까지 상대방의 체제존중, 내부문제 불간섭, 분쟁문제의 평화적 해결, 비방·중상행위 중지
- ② 신문, 라디오·TV 및 출판물의 상호 개방과 교류실시

을 제시했다.

또한 북한측이 내놓은 불가침선언과 관련하여 實踐意志, 상대방에 대한 敵對政策의 포기, 확고한 保障裝置의 강구 등이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政治·軍事分科委員會」에서 협의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북한측은 「不可侵宣言 採擇→對美平和協定 締結→駐韓美軍 撤收」를 주장하고, 우리의 北方政策과 UN加入 노력을 비난하면서 「3個 緊急課題」를 다시 거론했다.

(라) 第4次 南北高位級會談

1991년 10월 22일 평양에서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남북고위급회담」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합의서 타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의 3개 합의를 하나로 묶은 포괄적인 單一合意書인 「和解·不可侵과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案)²⁷⁾」를 제시했다.

-
- ③ 경제·인적교류협력 실시 및 이를 위한 통행, 통신, 경제교류와 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
 - ④ 이산가족들의 서신거래 및 상봉, 방문실시와 재결합 추진
 - ⑤ 군비경쟁 지양, 군사적 신뢰구축, 단계적 군비감축 실현
 - ⑥ 불가침에 관한 합의서 채택
 - ⑦ 현 휴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과 국제적 평화보장장치 마련
 - ⑧ 국제무대에서의 상호 협력
 - ⑨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이내에 교류협력과 정치군사분과위 설치
 - ⑩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상대방에 통고한 날로부터 효력 발생
- 27) 「和解·不可侵과 교류협력에 관한 合意書(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문]

- 7·4공동성명의 통일 3원칙 재확인
- 민족공동의 이익과 민족화해 방향으로 대화추진
- 긴장상태 완화와 교류협력을 통한 신뢰구축
- 통일시까지 남북관계 잠정적 특수관계임을 인정
-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노력

[기본사항]

- ① 상대방 체제존중, 비방중상 중지, 내부문제 불간섭
- ② 신문, 라디오, TV 및 출판물의 상호 개방과 교류
- ③ 이산가족의 서신왕래, 상봉, 방문실시 및 재결합 추진
- ④ 상대방에 대한 침략, 파괴, 전복활동 금지, 불가침 영역은 군사정전협정에 따라 관할지역으로 함.

이에 대하여 북한측은 「北南 不可侵과 和解 및 協力交流에 관한 宣言(案)²⁸⁾」을 제시했다.

이러한 쌍방의 견해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實務代表接觸에서 우선 합의서 명칭을 「남북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라는 單一文件으로 하는데 합의를 보았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판문점에서 합의서의 내용과 文案調整을 위한 代表接觸을 갖기로 합의하였다

- ⑤ 상호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
 - ⑥ 군비경쟁 지양, 군사적 신뢰구축, 단계적 군비감축 실현
 - ⑦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노력 및 평화체제 마련시까지 휴전협정 준수
 - ⑧ 경제, 교통, 체신, 학술, 교육, 문화, 예술, 보도, 체육, 보건, 기술, 종교, 환경 보전 등 교류협력 실시
 - ⑨ 자유로운 통행·통신·통상 및 경제협력 지원 보장
 - ⑩ 국제무대에서 상호협력, 민족이익과 자존 위해 공동노력
 - ⑪ 서울·평양 상주연락대표부 설치
 - ⑫ 「정치·군사분과위원회」와 「경제협력분과위원회」 설치
 - ⑬ 본 합의서는 양자·다자간 체결에 무영향
 - ⑭ 쌍방 합의에 의해 수정 가능
 - ⑮ 발효절차를 거쳐 문본 교환일로부터 효력발생
- 28) 「北南不可侵과 和解 및 協力交流에 관한 宣言(案)」은 다음과 같다.
- ① 상대방에 대한 무력사용 및 침략금지
 - ② 의견상이와 분쟁문제의 평화적 해결
 - ③ 불가침 경계선은 1953. 7. 27. 군사정전협정의 규정에 따름
 - ④ 군비경쟁중지, 군축실현
 - ⑤ 쌍방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운영
 - ⑥ 동 선언발표후, 2개월내에 「북남군사공동위원회」구성·운영
 - ⑦ 불가침의 존중을 위한 대외적 조치강구
 - ⑧ 상대방의 사상·제도인정
 - ⑨ 상대방 내부문제 불간섭
 - ⑩ 상대방에 대한 비방증상중지
 - ⑪ 상대방에 대한 파괴전복 행위 금지
 - ⑫ 각계인사, 동포들의 자유왕래·접촉실현
 - ⑬ 동 선언발표후, 2개월내에 「북남정치분과위원회」구성·운영
 - ⑭ 민족경제의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경제협력, 교류실현
 - ⑮ 과학, 기술, 교육, 보건, 체육, 보도 등 각분야의 교류실현
 - ⑯ 끊어진 철도·도로연결, 해로·항로시설 및 통신망 연결
 - ⑰ 인도적 분야에서 상호협력·교류실현 및 이산가족·친척들의 고통해소 대책 강구
 - ⑱ 국제무대에서의 상호협력 및 대외공동진출
 - ⑲ 동 선언발표후, 2개월내에 「북남협력교류분과위원회」구성·운영
 - ⑳ 쌍방 합의에 의해 수정·보충 가능
 - ㉑ 발효절차를 거쳐 문본 교환일로부터 효력발생

그러나 북한측은 UN군사령부 해체, 주한미군 철수, 「對美平和協定」 締結 등,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한반도 非核地帶化」 실현이 급선무라며 「朝鮮半島의 非核地帶化에 관한 宣言(案)²⁹⁾」을 緊急提案으로 내놓았다.

이에 대하여, 우리측은 “북한이 먼저 핵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찰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當面課題로서 중단된 「南北赤十字會談」의 再開와 70세 이상 高齡 이산가족의 조속한 交流訪問을 실시할 것과 남북간 間接交易을 直交易으로 전환하고, 설악산·금강산을 비롯한 觀光資源의 공동개발에 착수할 것을 제의하였다.

(마) 第5次 南北高位級會談

1991년 12월 10일 서울에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되었다.

그리고 쌍방 대표는 12월 13일 공개회의에서 남북한의 관계를 화해·협력관계로 명시하고, 이를 相互規律하는 序文과 本文 25個條로 構成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서명·채택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9) 「朝鮮半島의 非核地帶化에 관한 宣言(案)」은 다음과 같다.

- ① 핵무기의 실험, 생산, 반입, 소유, 사용금지
- ② 핵무기 배치 금지, 핵무기를 적재한 비행기·함선의 영공 영해 통과·착륙·기항 금지
- ③ 핵무기 적재, 저장 및 핵우산 제공협약 체결금지
- ④ 핵무기와 핵장비 동원이나 핵전쟁을 가정한 군사연습중지
- ⑤ 미국의 핵무기와 미군철수 및 핵기지 철폐를 위해 공동노력
- ⑥ 미국 핵무기의 완전철수와 핵기지 철폐 공동확인, 핵 동시사찰 의무이행 및 비핵지대화 선언
- ⑦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를 위한 대외적 조치 강구
- ⑧ 동 선언의 이행을 위한 공동기구 설치
- ⑨ 발효절차를 거쳐 문본 교환일로부터 효력발생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 의 서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남 북 화 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2 장 남 북 불 가 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찰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3 장 남 북 교 류 · 협 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4 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이 合意書는 분단후, 최초로 남북한의 政府代表가 서명한 정부간 公式文書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큰 것이다.

이제 남북한은 '和解・交流協力の 時代'를 열 수 있는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 그것은 대결이 아니라 협력하는 民族共存共榮의 바탕이 마련됐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남북한 정부간의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인식케 한다.

남북한은 앞으로 합의사항을 실천하기 위하여 해당 分科委員會를 조속히 개최하여야 한다.

그리고 쌍방에 가장 민감한 문제로 제기된 核問題를 타결해 나아가야 한다.

'南北和解時代의 開幕'은 바로 主敵概念의 변화를 뜻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대상황에 상응할 수 있는 安保體制와 國內法體系의 整備 등, 하나씩 신중하게 대응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들은 하나하나가 신중히 취급되어야 할 성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한가지 우려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7·4 南北共同聲明」 발표후, 별다른 화해·협력의 실천없이 오늘에 이르렀던 것과 같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물론 이번의 「合意書」는 「7·4 南北共同聲明」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7·4 南北共同聲明」이 남한의 중앙정보부장과 북한의 노동당 조직부장의 합의였다면, 이번의 「합의서」는 남북한 정부의 총리가 공식적으로 합의하고 서명한 문서이기 때문이다.

이제 「民族和解의 時代를 열고 平和統一로 가는 문」이 어렵게나마 열렸다. 그 문이 다시 닫히는 일이 결코 없도록 쌍방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2) 南北國會會談

1985년 7월과 9월, 2회의 南北國會會談 豫備接觸을 거친 다음 1988년 8월 19일부터 1990년 1월 24일까지 10회³⁰⁾에 걸쳐 진행된 準備接觸에서 쌍방은 회담형식·의제 등 남북국회회담을 위한 實務節次問題를 논의하였다.

그리하여 쌍방간에 의견이 접근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남북국회회담」은 쌍방 국회의원 전원이 참가하는 開會 및 閉會

30)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진행상황

- 제1차 준비접촉: 1988.8.19. 판문점 '통일각'
- 제2차 준비접촉: 1988.8.20. 판문점 '평화의 집'
- 제3차 준비접촉: 1988.8.22. 판문점 '통일각'
- 쌍방 수석대표 단독접촉: 1988.8.24. 판문점 '평화의 집'
- 제4차 준비접촉: 1988.8.26. 판문점 '평화의 집'
- 제5차 준비접촉: 1988.10.13. 판문점 '통일각'
- 제6차 준비접촉: 1988.11.17. 판문점 '평화의 집'
- 제7차 준비접촉: 1988.12.29. 판문점 '통일각'
- 제8차 준비접촉: 1989.10.25. 판문점 '평화의 집'
- 제9차 준비접촉: 1989.11.29. 판문점 '통일각'
- 제10차 준비접촉: 1990.1.24. 판문점 '평화의 집'

會議과 각기 50명씩의 대표가 참가하는 議題討議會議로 나누어 진행하고, 本會議 의제는 ‘南北間의 다각적인 交流・協力問題’와 ‘南北不可侵宣言問題’로 하며, 회담장소는 開會會議은 평양, 討議會議은 서울・평양에서, 그리고 閉會會議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쌍방은 ‘議題 討議會議 형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와 ‘정상회담 개최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의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우리측은 의제의 성격이나 남북관계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의제토의회의의 형식과 운영은 쌍방 합의방식, 즉 代表會談方式으로 해야 한다는데 反하여, 북한측은 雙務會談方式이 아닌 連席會議方式 즉 代表會議方式을 고집하게 되었다.

이것은 北韓側이 南北側 內部の 意見分裂을 이용하여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쌍방은 의견차이를 극복하지 못한채, 10회의 준비접촉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북한측은 갑자기 콘크리트 장벽문제, 남북당국・정당수뇌급 협상회의개최, 팀스피리트훈련문제 등을 緊急議題로 제기하면서 회담을 결렬시키고 말았다.

(3) 南北赤十字會談

1989년 1월 24일 우리측은 “「제11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을 재개하자.”고 제의했고, 5월31일 북한측은 “제2차 故鄉訪問團 및 藝術公演團 交換訪問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대표접촉을 갖자.”고 제의해 왔다.

그리하여 회담이 중단된지 근 4년만에 다시 접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989년 9월 27일부터 1990년 11월 8일까지 8회³¹⁾에 걸쳐 진행된 실무대표접촉에서 쌍방은 고향방문단 교환실시와 본회담 재개의 先後問題, 고향방문단의 인원문제와³²⁾ 방문지 및 방문기간문제 그리고 예술공연단의 공연내용문제 등에 대한 견해차이로 난항이 거듭되었다. 특히, 예술공연단의 公演內容에 있어서 쌍방은 ‘민족적인 것’, ‘건전한 것’,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는데 일단 합의를 보았으나, 북한측은 꽃파는 처녀, 피바다 등 民族歌劇이 아닌 ‘革命歌劇’을 다시 들고 나오므로써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혁명가극의 공연으로 남한사회를 교란해 보려는 이와 같은 북한측의 엉뚱한 주장으로 인해 실무대표접촉은 아무런 성과없이 무산되고 말았다.

(4) 南北體育會談

1988년 12월 21일 북한측은 “「제11회 아시아경기대회」에 남북한 단일팀구성을 위한 체육회담을 갖자.”고 제의해 왔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12월 30일 북한측의 제의에 동의함으로써 「로잔느체육회담」 이후, 2년만에 「남북체육회담」이 다시 열리게 되었다.

31)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접촉상황

- 제1차 실무대표접촉 : 1989.9.27.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
- 제2차 실무대표접촉 : 1989.10.6.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
- 제3차 실무대표접촉 : 1989.10.16.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
- 제4차 실무대표접촉 : 1989.11.8.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
- 제5차 실무대표접촉 : 1989.11.13.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
- 제6차 실무대표접촉 : 1989.11.21.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
- 제7차 실무대표접촉 : 1989.11.27.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
- 제8차 실무대표접촉 : 1990.11.8.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
- 수석대표 개별접촉 : 1989.12.4.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

- 32) 북한측은 고향방문단·예술공연단 인원을 각기 300명씩(2차접촉) 제의했고, 다시 250명으로 수정제의(4차접촉)했으며, 쌍방 각기 571명으로 재수정 제의(5차접촉)함으로써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

쌍방은 6회의 실무대표접촉을 가진 끝에 1989년부터 1990년 2월 7일까지 9회³³⁾의 남북체육회담 본회의를 갖게 되었다.

「제1차 본회담」에서 쌍방은 단일팀 구성·참가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단일팀의 呼稱·團旗·團歌·選手選拔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여, 團旗는 흰색바탕에 하늘색의 한반도지도, 團歌는 1920년대의 민요인 아리랑, 選手選拔은 가장 우수한 선수선발 원칙에 합의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제2차 본회담」에서는 선수단의 呼稱을 영어로는 KOREA로, 우리말로 코리아, 漢字로 高麗로 사용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제3차 본회담」부터 선수선발 방법상 의견차이가 나타났고, 「제8차 본회담」에 이르도록 많은 논란이 전개되었지만, 서울과 평양에서 공개적인 합동훈련으로 객관적이며 공정한 심판을 받아 선수를 선발하고자 하는 남한측 주장과, 쌍방 당국이 각기 알아서 적당수의 선수를 차출하자고 하는 북한측 주장이 대립되어,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리하여 「제9차 본회담」에 이르러 북한측은 “더 이상 회담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회담의 결렬을 선언했다.

33) 남북체육회담 본회의의 진행상황

- 제1차 회담 : 1989.3.9. 판문점 ‘평화의 집’
- 제2차 회담 : 1989.3.28. 판문점 ‘통일각’
- 제3차 회담 : 1989.10.20. 판문점 ‘평화의 집’
- 제4차 회담 : 1989.11.16. 판문점 ‘통일각’
- 제5차 회담 : 1989.11.24. 판문점 ‘평화의 집’
 - 제1차 실무대표접촉 : 1989.12.1.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
 - 제2차 실무대표접촉 : 1989.12.6.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
 - 제3차 실무대표접촉 : 1989.12.15.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
- 제6차 회담 : 1989.12.22. 판문점 ‘통일각’
 - 제4차 실무대표접촉 : 1990.1.10.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
 - 제5차 실무대표접촉 : 1990.1.15.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
- 제7차 회담 : 1989.1.18. 판문점 ‘평화의 집’
 - 제6차 실무대표접촉 : 1990.1.22.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
- 제8차 회담 : 1989.1.29. 판문점 ‘통일각’
- 제9차 회담 : 1989.2.7. 판문점 ‘평화의 집’

4. 主要爭點分析

가. 「南北不可侵宣言」問題

南北不可侵問題는 남북한 쌍방이 어휘구사에서부터 내용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현안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우리측의 ‘남북불가침문제’에 대한 제의과정을 살펴보면, 1974년 1월 18일 박정희 대통령이 年頭記者會見에서 「남북간 相互不可侵協定」의 체결을 제의했고, 1982년 1월 22일 전두환 대통령이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을 천명하는 가운데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제의했다.

그리고 1988년 8월 19일부터 1989년 11월 29일까지 「南北國會會談 準備接觸」에서 南北當局間 不可侵協定을 권고하는 문제(제1차 접촉), 南北不可侵問題(제2차 접촉), 南北不可侵宣言問題(제6차 접촉)로, 그 名稱을 바꾸면서 논의했다.

또한 1988년 10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은 UN총회연설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촉구하면서, 이 회답에서 「不可侵宣言」을 할 것을 제의했다.

한편, 북한측의 「남북불가침선언」에 대한 제의과정을 살펴보면, 1963년 9월 8일 「9·9절 15주년 기념대회」에서 처음으로 「北南不可侵條約」을 제의했다.

북한은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우리측의 「불가침협정」제의에 반대입장을 표명했으며,³⁴⁾ 「對美平和協定」締結 제의로 대응해 왔다.

34) 1976.3.28. 김일성은 日本 「世界」誌 편집국장과의 회견에서 “남한측의 불가침협정 제의를 반대한다.”고 말하고, “朝美平和協定締結後, 南北朝鮮軍縮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즉, 1974년 제5기제3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대미평화협정」체결후, 「남북불가침선언」채택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1984년 3월 7일 강성산 정무원총리는 “남조선이 미국으로부터 국군통수권을 접수하고, 美軍撤收, 停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의 대치 및 不可侵宣言을 할 수 있는 전권을 접수한다면 남북협상에 임한다.”는 제의를 해 왔다.

또한 1985년 1월 1일 김일성은 新年辭를 통해 “平和協定은 미국과, 不可侵宣言은 남한과 할 것”을 제의했다.

그후, 북한측은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에서도 「남북불가침선언」에 대한 종래의 주장을 고수했고, 1990년 5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의 김일성 연설과 1990년 「남북고위급회담」에 이르기까지 「남북불가침선언」 채택문제는 거둬되었다.

(1) 우리側 基本立場

우리측은 남북관계개선과 불가침의 실천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채택한 바탕 위에서 不可侵問題를 협의·해결하자는 것이다.

남북한의 현 상황에서 최소한도의 신뢰조성과 실천의지 그리고 확고한 保障裝置가 없는 이름만의 不可侵宣言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상대방의 체제를 부정하고 파괴·전복하려는 革命路線을 포기하지 않고 있거나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거부하고 있는 한, 不可侵에 관한 약속을 준수할 실천의지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우리측은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基本合意書(案)」(제1차·제2차)를 제의하였고, “남북교류 및 정치·군사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交流·協力 實施問題와 政治·軍事的 신뢰구축, 不可侵宣言 채택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해결할 것”(제3차)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和解・不可侵과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案)」(제4차・제5차)를 제의함으로써 기존의 3개 합의서를 하나로 묶은 포괄적인 單一合意書를 제시했다.

(2) 北韓側 基本立場

북한은 駐韓美軍撤收를 목표로, 미국과의 「平和協定」締結 및 「南北不可侵宣言」채택을 주장해 왔다.

북한측은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불가침에 관한 실천의지나 보장 장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不可侵宣言」을 우선 채택한 후, 불가침의 이행을 보장하는 대책을 토의하자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日・北韓修交의 촉진 및 賠償金支給의 명분을 찾고, 對美關係改善의 환경을 조성해 보려는 속셈이 있는 것으로 評價된다.

이상과 같은 남북한의 기본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다음과 같은 합의에 도달했다.

- ① 무력사용, 무력침략의 금지
 - ② 모든 분쟁의 평화적 해결
 - ③ 불가침 경계선은 현 군사분계선과 현 관할구역
 - ④ 불가침 이행・보장을 위한 「南北軍事共同委員會」³⁵⁾의 구성・운영
 - ⑤ 쌍방 군사당국자사이에 直通電話 설치
 - ⑥ 「南北軍事分科委員會」 구성・운영
- 이와 같이 쌍방은 불가침의 이행을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에 관

35)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역할: 대규모 부대이동,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한 條項에 합의했다.

따라서 「합의서」 채택이후, 남북이 얼마나 성의를 갖고 이행을 보장하느냐에 따라 실효성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다.

왜냐하면, 팀스피리트훈련, 非核共同宣言, 軍備減縮 등, 산적해 있는 懸案의 爭點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韓半島 非核地帶化」問題

북한의 核武器 開發問題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한반도만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세계의 모든 주요국가들이 북한의 핵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중심으로 한 회원국들은 북한이 「核擴散禁止條約」에 서명한 당사자로서의 당연한 의무인 「核安全措施協定」의 서명과 ‘核査察’의 수용을 증용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 핵우산의 존재는 북한에 대한 核威脅의 지속을 의미하므로 주한미군의 핵철폐뿐 아니라 이것도 함께 제거되어야 核査察에 응할 수 있다.”는 주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북한의 이와 같은 주장은 국제적 관심의 초점을 그들에 대한 핵사찰에서 미국의 對韓核雨傘保護로 돌려, 核武器開發 成功까지 시간을 벌어보려는 속셈과 한국내의 反美·反核運動을 고조시켜 보려는 戰略으로 評價된다.

북한이 주장하는 核保有國의 핵우산보호문제는 1968년 「核擴散禁止條約」이 만들어질 당시, 美·英·蘇 등 3개국이 각각 ‘핵우산 보호정책’을 천명하고, 이를 UN安全保障理事會가 결의안으로 채택함으로써, 그후 일관된 국제적 안전장치로 정착된 것이다.

그러므로 핵우산은 핵보유국이 非保有國에 대해 안전을 보호해주는 국제적 公認裝置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전문가들의 예상보다도 빨리 핵폭탄

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 우리側 基本立場

우리 정부는 그간 南韓內 核配置問題에 대해서는 是認도 否認도 않는(NCND) 입장을 堅持해 왔다. 아울러 한반도의 非核地帶化를 논하기 전에 남북한관계의 현실과 동북아 安保構造에 대한 신중한 고려를 바탕으로 두고, 核戰爭 위협 제거에 대한 주변관계국의 보장과 戰爭防止에 대한 남북간의 명시적이고 실질적인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측의 기본입장이다.

북한의 「核安全措施協定」締結은 국제법상의 의무이며, 여타 정치적 목적과 연계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先決要件인 것이다.

(2) 北韓側 基本立場

북한은 美·蘇 核武器競爭의 격화로 反核霧圍氣가 고조된 1970년대 말부터 韓半島 非核地帶化를 주장해 왔다.

1986년 6월 23일 북한은 성명을 통해 조선반도 비핵지대화창설에 관한 협상을 제의해 왔다.

1989년 11월 9일 핵무기철수를 위한 남북한·미국이 참여하는 '3者會談'을 제의해 왔다.

1990년 軍縮方案에서 핵무기철수를 최우선의 군축대상으로 제시했다.

한편, 북한은 현재 핵무기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³⁶⁾

북한은 1985년 12월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이래 「국제원

36) 1987년부터 미국·프랑스의 위성사진을 통해 핵연료 재처리시설 공장들이 확인되었다. 자체개발 200Mw급의 원자로가 건설중인 것도 확인되었다.(영변지역, 1991년 완공예정)

자력기구」와의 「핵안전조치협정」체결을 계속 지연시켜 왔다.

그리고 「핵안전조치협정」체결을 조건으로 ‘남북한 동시핵사찰 및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제의해 왔다. 또한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조선반도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안)」을 긴급제안으로 들고 나왔다.

북한은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도 다음과 같은 이른바 「非核地帶化宣言(案)」을 들고 나왔다.

- ① 쌍방은 核實驗, 생산, 반입, 소유, 사용의 금지
- ② 쌍방은 핵무기의 배치금지, 핵무기를 적재한 항공기 및 함선의 영공·영해 통행금지, 착륙·기항금지
- ③ 쌍방은 자기 지역내 핵무기 저장금지, 핵우산제공의 협약금지
- ④ 쌍방은 핵무기동원 및 핵전쟁을 가정한 군사연습의 일체중지
- ⑤ 주한미군철수 및 핵무기철폐
- ⑥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를 내외에 선포
- ⑦ 미국 및 주변 핵무기소유국은 조선반도 비핵지대화 지위존중
- ⑧ 쌍방은 이를 위한 공동기구 설치
- ⑨ 쌍방은 발효에 필요한 文本交換

이에 대하여 우리측은 다음과 같은 「非核共同宣言(案)」을 제의했다.

- ① 쌍방은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하고, 핵무기 제조, 보유, 저장, 배치, 사용금지
- ② 쌍방은 핵재처리시설, 우라늄농축시설 보유금지
- ③ 쌍방은 화학·생물무기 제거, 이에 따른 국제적 합의준수
- ④ 쌍방이 보유한 핵시설과 물질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과 별도로 쌍방이 합의에 따른 사찰실시
- ⑤ 이상 4개항의 이행을 위한 협의기구 설치

이와 함께 우리측은 緊急提案으로 “1992년 1월 31일까지 북한

순천비행장과 영변의 핵시설물을, 북측은 군산비행장이나 그 밖의 원하는 남한내의 군사·민간핵시설에 대해 시범사찰을 실시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제5차 회담」에서 채택된 「합의서」에는 핵문제에 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 합의서와는 별도로 1991년 12월 31일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남북간에 가서명 되었으며 1992년 1월 14일과 21일에 양쪽 총리가 서명하여 판문점에서 교환되고 2월 19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발효시켰다.

앞으로 전개될 핵관련 대표접촉에서 「非核共同宣言」에 대한 북한측의 이행 여부 및 그들의 眞心이 무엇인지 판가름이 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쌍방의 논란과 공방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제5차 회담」에서 쌍방이 「합의서」를 채택한 것 못지않게 관심을 끄는 대목이 한반도 전쟁위협 의 가장 핵심쟁점인 북한의 핵문제이기 때문이다.

다. 「팀스피리트訓練」問題

북한이 남북대화를 중단시키려 하거나 또는 연기시키고자 할 때, 상투적으로 들고 나오는 것이 「팀스피리트訓練」의 중지문제이다.

북한측의 주장은 “「팀스피리트訓練」이 핵선제타격을 기초로 한 전면적인 北侵訓練”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측 주장은 “북한의 全面南侵을 가상한 순수한 방어훈련”이라는 것이다.

이른바 「팀스피리트훈련」이란, 월남이 패망하고 赤化統一이 되자, 이에 대한 대응태세로서 1976년부터 시작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말하는 것이다.

1976년에는 한국군 4만명, 미군 6천명이 10일간 上陸作戰만 전개했으나, 1978년에는 10만명선을 넘었고, 1984년부터는 계속하여 매년 20만명선에서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1989년에는 병력의 10%를 축소 조정했고, 1990년에도 축소했으며, 1991년은 30%나 축소 실시하였다.

북한이 「팀스피리트훈련」 중지를 즐기치게 거론하는 저의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약화와 주한미군철수를 촉진하고, 대외적으로 위장평화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대내적으로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부각시켜, 전시동원체제를 항시화하고, 한국내의 내분조장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³⁷⁾

북한의 연형묵 정무원총리는 「남북고위급회담」(제1·2차)에서 다시 「팀스피리트훈련」 중지를 거론했다. 그는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긴박한 문제는 「팀스피리트훈련」을 중지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 군사훈련문제는 본회담의 장래 운명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하여 강영훈 총리는 “「팀스피리트훈련」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거나 상대방을 위협하는 공격훈련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북한이 노동당규약에 적화정책을 명시하고 있을뿐 아니라 우세한 공세적 전력을 휴전선 일대에 전진배치하고 있는 상황이 위협”이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남북쌍방은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들에 합의하고 착실히 실천해 나감으로써 더 이상 「팀스피리트훈련」이 불필요하게 되는 상황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자.”고 제의했다.³⁸⁾

37) 梁榮植, 앞의 책, p.182.

38)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주장에 앞서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軍人士交流, 軍部隊移動, 기동훈련의 사전통보, 고위 군사당국자간의 직통전화 설치, 軍事情報 공개 등의 방안을 제의하였다.

(1) 우리側 基本立場

「팀스피리트훈련」은 越南赤化(1975.4.30)와 군사력 前進配置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1976년부터 「韓·美相互防衛條約」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해진 防禦目的의 공개적이며 정례적인 軍事訓練이다.

북한은 「팀스피리트훈련」이 北侵을 위한 예비전쟁이라고 비난하면서 남북고위급회담을 중단하고, 全軍에 「戰鬥態勢動員令」을 발령하는 등 법석을 떨고 있으나 북한의 최광 총참모장 등 군사대표단이 훈련기간중에 쿠바를 방문한 것은 그들의 주장이 허구적인 것을 입증한 셈이다.

우리측은 1982년부터 북한측에 훈련계획을 사전통보하고 참관을 초청해 왔다. 그리고 1991년에는 훈련규모를 30%나 축소 실시하면서 이에 대한 북한측의 상응한 조치를 촉구하였으나 북한측은 오히려 남북대화를 중단시키는 구실로 악용하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측이 前進配置한 攻勢戰力의 위협이 제거되고, 對南敵對政策을 수정한다면 언제든지 「팀스피리트훈련」을 조정할 용의가 있는 것이다.

(2) 北韓側 基本立場

북한은 “「팀스피리트훈련」이 남북대화에 基本障礙가 된다.”고 강변하면서 그들의 대내외 정치선전에 이용하고 있다.

남북고위급회담의 3個 緊急課題와 1991년의 김일성 新年辭에서 「팀스피리트훈련」을 연계시키고 있으며,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바 있다.

그리고 「제5차 회담」에서 「합의서」가 채택됨에 따라 “불가침 이행을 위한 쌍방이 상호 군사훈련과 부대이동의 사전통보 및 통제, 군사당국자들로 구성된 訓練參觀團 교환,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등”에 대한 군사적 신뢰구축에 관한 조항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매년 실시해 오던 「팀스피리트훈련」이, 이 條項과 관련된 核心爭點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측이 이 조항의 합의과정에서 統制라는 어휘의 삽입을 고집한 점만 보아도 이같은 예상은 어렵지 않다.

라. 「駐韓美軍 撤收」問題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북한이 이른바 ‘反帝·反植民·反外勢 自主化’를 표방하면서 통일의 필수적 先決條件으로 내놓은 최대 쟁점이다.

남북대화에서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1973년 3월 14일 「제2차 남북조절위원회 본회의」였다.

이른바 ‘5個項 軍事提案’중 4항에서 “미군을 포함한 일체 외국인 대를 철수시킬 것”을 주장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후,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남북대화의 현안과제로 계속 강조되어 왔다.

(1) 우리側 基本立場

주한미군은 북한의 武力南侵을 억제하고, 유사시 미국의 對韓防衛公約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또한, 주한미군은 우리의 對北 군사력열세를 보완하는 전투력으로써 戰時對備 增援戰力 확보에 기여해 왔다.

그러므로 주한미군은 전쟁억제 平和維持軍으로서 앞으로 상당 기간 주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은 한·미연합방위를 보증하는 現場 抑制力으로 安保上 필수불가결한 核心戰力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남북대화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및 감축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면, 먼저 ‘세가지 前提條件’을 우선적으로 충족시켜 나아가야 한다.

첫째, 북한이 對南武力赤化戰略을 완전히 포기하고, 한반도 平和定着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미군의 철수·부분철수에 상응한 代替戰力을 우선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한반도의 軍事力均衡을 이루어야 한다.

셋째,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韓·美政府間에 충분한 사전협의와 완전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결국 주한미군문제는 북한이 武力赤化統一 기도를 포기하고, 한반도 緊張緩和와 平和定着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적극 호응해 온다면, 韓·美 양국간의 협의를 통해 남북관계 및 주변정세의 변화에 대응하는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 나아갈 것이다.

(2) 北韓側 基本立場

주한미군문제에 대한 북한측의 기본입장은 다음과 같이 집약될 수 있다.³⁹⁾

첫째, 조선반도의 평화는 미제침략군과 핵무기를 철수시키고, 북과 남의 군축을 통해서만 확고히 보장할 수 있다.

둘째, 미군철수문제는 조선반도의 평화를 담보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미군은 平和의 使徒가 아니라 侵略軍人이며, 평화의 파괴자이다.

셋째, 미국은 남조선을 영원한 植民地 軍事基地로 우리 공화국과 아시아의 사회주의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한 반공보루로 틀어쥐기 위해 침략군대와 핵무기를 계속 늘려두려 하고 있다.

미군의 남조선강점이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전쟁위험을 증대시키는 근본요인이며,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가로

39) 「로동신문」: 1990.4.22. “조선반도는 미군철수, 군축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參照.

막는 기본장애물이다.

넷째, 조선반도의 평화는 미군철수와 함께 북과 남사이의 균형 있는 군축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항구적인 것으로 될 수 있다.

북한은 남한이 미군 占領下에 있다는 소위 ‘南朝鮮解放論’에 입각하여, 지금까지 주한미군 철수를 통한 남북간 군사력 균형파괴를 추구하면서, 미국과의 平和協定을 제의(1974.3.25)한 이래, 「3者會談」提議(1984.1.10), 「祖國統一5大方針」(1990.5.13) 등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를 거듭 주장해 오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은 주한미군의 완전철수를 전제로 한 단계적, 부분적 감축을 제외하고는 종래의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을 수정하지 않고 있다.

마. 「多角的 交流・協力」問題

우리 정부는 「7・7特別宣言」, 「제43차 UN총회연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등에서 南北韓 交流・協力時代의 개막을 천명했다. 이는 40여년간 지속해 온 緊張과 對決의 남북관계를 청산하고, 民族共同體意識을 바탕으로 共存共榮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할 당위성에 따른 것이다.

1970・1980년대에 걸쳐 남북관계를 표류시켰던 제약 여건들을 완화하여, 1990년대에는 대화와 교류협력을 병행하여 ‘하나의 민족’이라는 民族共同體意識 아래 공동번영을 추구해 나아가야 한다.

남북한간의 다각적 교류협력문제는 1984년부터 1985년까지 5회에 걸쳐 개최되었던 「南北經濟會談」에서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당장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이다. 또한 ‘通行・通信에 관한 提案’도 남북한이 자유왕래와 전면개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 신뢰회복과 동질성회복을 촉진하자는 것이다.

특히 人的交流에 있어 1천만 離散家族問題 해결에 관심을 집중

하여 흩어진 家族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다.

(1) 우리側 基本立場

남북간의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새로운 和解・協力時代’를 열어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다각적 교류협력을 실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남북간의 人的往來와 物資交流, 經濟協力과 通信・情報의 交流는 信賴回復과 共同繁榮의 前提이기 때문이다.

우리측은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다각적 교류협력 실천방안” 중, 「通行・通信 및 通商(經濟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案)」 채택을 제의한 바 있다. 「제2차 회담」에서도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안)」 중, “경제교류협력 촉진과 人的交流協力 실시”를 촉구했고, 「南北交流協力委員會」의 설치를 제의했다.

그리고 「제3차 회담」에서는 “南北離散家族問題의 우선적 解決”을 제의했고, “南北經濟交流協力實現”을 촉구했다.

또한 「제4차 회담」에서 「和解・不可侵과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案)」 중, “자유로운 通行, 通信, 通商 및 經濟協力 支援保障”에서 10개항의 구체적 방안⁴⁰⁾을 제시했다.

그리고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화해・불가침・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됨으로써 우리측의 제의가 대폭 수용되게 되

40) 자유로운 通行, 通信, 通商 및 경제협력 支援保障

- ① 육로・해로・항로 개설 및 통과지점 지정
- ② 상대측 지역 방문 주민은 상대측의 질서와 안내에 따름
- ③ 자기측 지역 방문 주민에 대한 신변안전과 무사귀환보장
- ④ 판문점에 우편교환소 설치 및 전기통신교류 연결・발전
- ⑤ 우편・전기통신에 대한 비밀보장 및 군사적 목적 이용 금지
- ⑥ 우편・전기통신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국제적 협약에 따라 해결
- ⑦ 물자교역과 경제협력은 품목별, 사업별로 자기측 당국의 승인을 얻은자간의 합의에 의해 시행
- ⑧ 상호간 물자교역에 대한 관세면제 및 청산계정결제원칙 적용
- ⑨ 자본의 이동보장 및 자기측에 투자된 자본 보호조치 강구
- ⑩ 본 합의서 발효후, 6개월 내에 남북통행위원회, 남북통신위원회, 경제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었다.(「合意書」全文은 앞에서 설명되었음.)

(2) 北韓側 基本立場

북한은 ‘先 政治軍事問題解決, 後 交流合作實現’의 입장을 견지하여 교류협력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여 왔다.

즉, “통일의 가장 큰 내부적 장애요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류협력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북한측 연형묵 정무원총리는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진정한 인도주의사업을 해결하는 길은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는데 있다.”고 주장했고 안병수 대변인은 “통일이라는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교류협력문제에 선차성을 부여하는가, 정치·군사문제에 선차성을 부여하는가의 문제이다. 교류협력문제들이 현재와 같은 첨예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하에서는 원만히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측은 우리가 제의한 ‘이산가족문제의 우선해결’에 대하여 “인도주의사업이나 교류를 한 순간의 자극제”로 매도했고, “일시적인 미봉책”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제4차 회담」에서 “사람·물자·정보교류는 국가간의 교류가 아니므로 타당성도 없고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정치·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면 남북한은 신뢰의 바탕 위에서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과 교류를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정치·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분야별 교류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5차 회담」에서 북한측은 종래의 기본 입장을 다소 수정하여 우리측의 주장을 대폭 수용함으로써 「합의서」를 채택하게 되었다.

남북 양측이 이 「합의서」에서 신문·라디오·TV 등의 교류 확대

에 합의한 것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사회인 북한의 開放을 촉구할 수 있다는 면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 ‘開放’을 우려해서 「합의서」에서 ‘개방’이라는 문구의 삭제를 관철시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陸·海·空路의 개설과 경의선철도의 연결 등에 합의, 두만강·금강산개발 등 남북합작사업의 가능성이 보다 可視化되었다.

남북 양측은 앞으로 「南北交流協力分科委員會」에서 구체적 논의를 원만히 이룩함으로써 ‘通行·通信·通商’등 「3통협정」도 합의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중단된 「남북적십자회담」의 재개와 더불어 이산가족의 상봉·방문·재결합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5. 結 言

분단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남북한 당사자들이 상호체제존중의 바탕위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모든 현안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가는 남북대화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오늘날 한반도의 주변정세와 통일환경은 어느 때, 어느 시기보다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고 있으며, 통일문제에 직접적인 利害關係를 갖고 있는 주변4강도 남북대화를 통한 ‘한반도문제의 해결’을 바라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의 주체적 통일역량이 신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편 국제적 支配秩序가 다양화되는 과정에서 차츰 우리민족의 自決領域이 크게 넓어졌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통일의 외적 환경이 이처럼 유리하게 조성되어

가는 때에 즈음하여, 통일의 내적 환경을 유리하게 조성시켜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남북대화를 통한 관계개선이 우리의 最大課題인 것이다.

우리정부는 제6공화국의 출범과 더불어 많은 노력을 기울여 「7·7특별선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천명,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등, 1990년대 들어 南北對話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5회에 걸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기어이 「화해·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북한은 종래의 對南戰略을 아직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실질적 관계개선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대화와 협상의 끈질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북한의 對南戰略이 궁극적으로 ‘韓半島의 共產化追求’라는 原點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관계개선의 최대 장애가 되고 있다.

남북한이 통일문제를 인식하는데 있어서도 統一의 主體, 統一의 方法, 統一의 形態와 統一의 未來像에 이르기까지 統一政策 전반에 걸쳐, 추구하는 目標과 基本立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대결과 갈등구조하에서는 우리의 통일실현의 과정은 우선적으로 交流와 協力을 통한 민족적 동질성회복과 신뢰구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⁴¹⁾

우리정부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이번에 남북정부간에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남북대화와 협상을 통해 대결과 갈등관계를 화해와 협력관계로 전환시켜 ‘和解協力時代’를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民族共同體를 이룩하여 경제적·사회적 통합을 이룬 바탕위에서 점진적으로 정치적 통합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

41) 李秉龍, 「남북대화 및 교류에 관한 쌍방 입장과 방향」(통일한국, 1991.7월호), p.19.

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북한은 앞으로 당분간 ‘당국간 대화’와 ‘민간급 대화’라는 두개의 對話軸을 기본입장으로 하여 주변4강의 南北對話 壓力, 남한의 政治情勢, 북한의 內部事情 등 諸般變數를 고려하면서 남북대화에 임할 것으로 전망된다.⁴²⁾

한편 우리측은 앞으로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합의서」를 마련했으므로, 그 바탕위에서 실효성 있는 ‘核問題’를 조속히 해결하는 한편, 다각적인 交流協力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通行・通信・通商의 「3通協定」을 합의하자.”는 기본입장을 堅持해 나아가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의 남북대화는 책임있는 쌍방 당국자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상호체제를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쌍방이 민족적 親和力과 和合의 精神을 발휘하여 제반분야에서 다각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하나씩 둘씩 結實을 맺음으로써 民族共同體를 회복시켜 나아가야 한다.

42) 宋榮大, 「기존남북대화와 향후 전망」(통일한국, 1991.7월호), p.22.

IV (南北交流協力

鄭 秉 天(統一研修院 教授)

1. 序 言	229
2. 南北交流協力の 制度	231
가.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의 制定意義	231
나. 南北交流協力の 節次	237
다. 節次 違反時 措置	244
라. 南北協力基金의 設置 및 支援	245
3. 南北交流協力の 現況	248
가. 人的交流	249
나. 物的交流	252
다. 協力事業	253
4. 南北交流協力 推進計劃	254
5. 結 言	257

1. 序 言

남북이 분단된 이후 계속해서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남북한간에 交流와 協力の 필요성이나 그 실천에 관한 제안들이 언급되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까지 있어 왔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제안들은 충분한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서 제기된 것이며, 實踐의 問題를 심각하게 고려한 바탕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고 하겠다.

제6공화국은 1988년 출범과 동시에 북한을 敵對의 對象이 아니라 民族共同體로 회복·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정책의 방향으로 정하였다.

즉, '民族自尊과 統一繁榮'을 국정의 지표로 하고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신뢰조성, 민족화해와 평화정착을 기반으로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국민적 의지를 담은 「7·7宣言」을 천명하였다.

「7·7宣言」에서는 남북한간 제반분야의 人的交流를 적극 추진하며, 해외동포들의 남북한 왕래를 개방하고, 남북적십자회담이 타결되기 전에라도 人道主義的 見地에서 이산가족들의 생사·주소확인, 서신왕래, 상호방문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주선·지원하는 한편, 남북간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이를 민족내부 교역으로 간주한다는 등 실천조치를 취하였다.

정부가 「7·7선언」을 통해 남북간의 개방과 교류를 추진하는 先制的 措置를 취하게 된 것은, 남북간의 相互不信을 해소하고 공동체의식을 회복·발전시켜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 걸쳐 교류와 협력을 실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우리정부와 국민은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世界史의 흐름

속에서, 지난 반세기동안 불신과 대결을 지속해 온 민족사회를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간의 對決構造를 平和構造로 전환하고, 이질화된 민족사회의 동질화를 도모하여 민족공동체를 회복·발전시켜 나아감으로써, 궁극적으로 統一國家를 수립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는 데에 合意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세계정세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우리민족이 공동체관계를 회복·발전시켜, 국제사회에서 공존공영하며 민족적 이익을 보호·증대하고 특히, 東北亞地域 협력체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우리민족에게 맡겨진 國際的 使命이며, 우리의 지위를 고양할 수 있는 길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드디어 1991년말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라는 남북 정부간 최초의 公式 合意文書로 결실되어, 이제는 남북교류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合意書에 의하면 南과 北은 모든 분야에 걸친 교류·협력을 실시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南北經濟交流協力共同委員會」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또한 合意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서 「南北交流協力分科委員會」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우리가 남북간 교류협력을 실천해 나가고자 하는 것은, 이제까지 정치적 논쟁에 집착하여 한발짝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남북관계를 타개하고자 하는 노력이며, 우리의 통일노력이 단순히 북한의 當局者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까지도 고려하여, 우리민족의 基本權을 신장하고 自由와 人權 그리고 福祉를 함께 증진시켜 나가자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통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民族의 幸福과 自由와 福祉가 保障되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일진대, 이는 상호간의 互尊한

交流와 協力を 통하여 社會的・經濟的・文化的・政治的共同體를 形成해 나감으로써만이 가능하다는 데에 남북한이 합의하였다고 하겠다.

2. 南北交流協力の 制度

가.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의 制定意義

(1)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의 制定背景

民主國家에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는 政策과 法律로써 표출된다.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바와 같이 1988년부터 시작된 통일운동의 熱氣는 온 나라를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으며, 여기에서 파생된 일부 부작용은 國論分裂의 樣相을 자아내 國家的 危機로까지 보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혼란속에서 일부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과 민족공동체 회복이라는 정책방향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이 대두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정부는 남북간의 화해와 교류협력 그리고 민족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政策意志를 퇴색시키지 않고 꾸준히 추진하였다.

특히 정부는 이러한 정책의지를 실천하여 나아가는데 있어서 유념해야 할 사항은 시대의 흐름과도 일치하고, 국민의 統一意志를 반영하며, 질서있고 안정적인 남북관계개선이라는 요구를 충족시키는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국민적 합의와 정책의 일관성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다.

「7·7선언」이 발표된 이후 정부가 남북교류관련 법률을 준비하

였던 것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의지와 노력의 핵심적인 것이었고, 1990년 8월 1일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과 「南北協力基金法」이 制定・公布됨으로써 우리의 법체계상 분단 47年史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되었다.

現行 憲法 第4條는 “平和的 統一을 追求”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수립이후 통일과업을 정책으로 선언하고 헌법에 정하기도 하였지만 그 방법으로 ‘平和的 方法’에 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것은 1987년에 改正된 현행 헌법이 最初의 일이다.

따라서 제6공화국 출범과 동시에 정부는 헌법에 규정한 평화적 통일추구원칙을 실천하기 위하여, 1988년 「7·7선언」을 통해 남북한간 제반분야에 걸쳐 상호교류를 적극 추진한다는 정책수행 방향을 제시하였다.

「7·7선언」 이후 정부는 남북한이 상호 적대감과 불신을 극복하여 민족공동체로 회복・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실천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을 보다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법률제정을 추진하여 1989년 2월 13일에는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特別法(案)」¹⁾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이다.

정부가 「7·7선언」을 발표하고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特別法」을 제정하고자 한 것은 화해와 협력의 국제질서시대를 맞이하여 같은 민족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더 이상의 대결을 청산하여야 하겠다는 것이었으며, 남북한간의 人的・物的交流과 제반분야에 걸친 협력을 통해 민족공동체를 회복・발전시켜 결국은 통일국가를 이룩

1) 政府는 1989年 2月 13日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特別法(案)」을 國會에 提出하였고 그후 民主自由黨은 政府案과는 別途로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特別法(案)」을, 당시의 平和民主黨은 「南北交流促進法(案)」을 各各 國會에 제출했으며 國會에서는 上記 法案들을 결정하여 1990年 7月 4日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이라는 명칭으로 通過시켰고, 同年 8月 1日 公布되었다.

해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국민들 또한 세계의 모든 나라가 개방과 협력을 통해 평화와 국민복지를 추구하는 오늘날, 우리도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나아가는 것이 國權喪失・民族分斷・同族相殘이라는 痛恨의 20世紀를 마감하고 민족자존을 회복하며 통일번영을 이룩해야 한다는 결의를 강하게 표출하였던 것도 정부가 이러한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同法律(案)을 제출한 이후 국회에서 이를 심의함에 있어서, 同法律 제정의 전제가 되고 있었던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평가와 인식이 상이하여 여러가지 논의가 전개되었다. 약 1년반 정도의 논의를 통해 국민 각계의 의견이 광범위하게 수렴되었고, 마지막 단계에서 與野間 合意에 의해서 同法律이 제정되었다.

(2)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의 制定意味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의 주요 의미는 남북교류협력과 상호 개방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同法律의 제정은 또한 화해와 개방의 세계적 흐름을 반영함은 물론 우리가 시대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民主化의 定着이라는 과제에도 부응한다는 것이다.

민주정치 근간은 法治主義이다. 이는 곧 정부의 정책수행은 법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제까지 교류와 협력을 주장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法的 根據는 갖추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을 제정하였다는

것은 남북관계에 대한 정부조치를 統治行爲²⁾ 次元으로 다루던 이 제까지의 관행에서 벗어나 법적 근거를 갖는 行政處分으로 전환하였다는 것이며, 이는 곧 정부가 남북관계에서도 법적 근거와 법적 통제속에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밝힌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예외적으로, 또는 정부의 특별조치에 의한 施惠的 성격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보장되게 되었으며, 정부의 행정처분 또한 司法審査의 對象으로까지 취급되게 되었다.

정부가 남북한문제를 스스로 통치행위로 운영하는 慣行을 止揚하고 법치행정과 사법심사 등 민주정치의 本領을 실천하고자 한다는 것은, 우리의 國民的 力量의 성숙과 더불어 정부 또한 민주화를 지향해 가는 時代精神에 부응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3)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과 他法과의 關係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이 가진 의미와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同法律과 憲法 또는 國家保安法과의 관계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선 이 법률과 헌법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리헌법 제3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憲法規定과, 북한에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적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現實과의 상충문제를 交流協力法에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에서는 우리의 통치권이 북한에 적

2) 南北關係에 관한 政府措置를 統治行爲로 다룬 例로써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基本指針」이 있었으나, 이는 國會에서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特別法(案)」의 立法化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1989. 6. 12. 大統領特別指示로써 上記 特別法案이 立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南北交流協力 推進의 根據와 準則을 定한 것으로써 1990年 8月 1日 上記 法律이 制定・公布됨으로써 效力을 喪失하였다.

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전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제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이 違憲的 소지가 있다는 일부 학자들의 문제제기는 형식논리의 측면에서 볼 때는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대한민국의 統治權이 사실상 북한에 적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 법률의 성립기반을 부인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통일정책의 존립기반과 현실적 기초까지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우리 法制에서 「收復地區와 同隣接地域의 行政區域에 관한 臨時措置法」이나 「收復地域內 所有者 未復舊土地의 復舊登錄과 保存登記에 관한 特別措置法」 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한반도의 분단이 가져오는 문제중에 法的으로 처리하여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들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는 우리의 法制度가 북한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전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문제의 해결은커녕 그 실마리조차 잡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분단과 군사분계선설정 등 역사적 사실에 기인하여 우리 법제도의 운용범위가 사실상 제한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은 이 법률뿐만 아니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기존의 법률중에도 先例(國內財産 逃避防止法, 越南歸順勇士 特別補償法 등)를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것은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부득이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단지 피할 수 없는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을 인정하는 전제아래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일 뿐, 헌법상 규정된 領土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우리 스스로가 주권의 효력범위를 축소하는 의사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과 背馳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특히 우리憲法 前文과 第4條에서는 평화통일의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바, 이러한 헌법이념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하겠다.

또 하나의 법률적인 문제는 북한을 反國家團體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북한과 교류협력을 개방하는 이 법률이 법체계상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 것인가의 우려이다.

이러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으로 國家保安法을 폐지하면 된다는 견해가 있는바, 이는 우리의 현실을 잘못 파악하는 것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함으로써 문제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는 주장은 우리憲法 前文 및 第4條의 규정과 정부가 「7·7선언」을 발표하여 평화통일정책을 구체화함으로써, 북한을 하나의 政治的 實體로까지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즉, 이러한 상황적 변화(헌법 제4조는 제6공화국에서 최초로 규정되었음.)로 인해 헌법 제3조는 規範的 規定에 지나지 않는 死文化된 조항이 되었으므로, 헌법 제3조에 기초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남북관계의 현실에 맞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파괴에 대처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 또한 憲法的 原則이라고 생각한다. 현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기하는 것은 이로 인해 야기되는 法的 空白과 混亂도 문제이지만 남북한간에 일찍이 전쟁이 있었고 아직도 休戰狀態에서 남북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대치하여 긴장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의 완전 폐기에서 오는 국가적 불이익이 이를 폐기한 데서 오는 이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평화시대를 기조로 한 형법상의 내란죄나 외환죄는 이미 고전적이어서 오늘날 우리가 처한 국가안전의 방위에는 미흡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아울러 우리헌법 제3조와 제4조는 상호보완관계에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즉, 헌법 제3조는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여야 한다’는 當爲規範이며 제4조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당위를 추구하되 그 방법은 ‘平和的 方法’에 의하여야 한다는 原則을 천명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과 「國家保安法」은 나름대로의 立法目的과 保護法益이 있으며 현재의 남북관계에 비추어 볼 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이 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은 도외시해 버리기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로 보며 현실적 필요성이 다 같이 존재할 것이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같은 사안을 서로 다른 목적에서 규율하는 법률이 존재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과 상황이 복잡다기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부득이한 현상으로서, 다만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는 것은 서로 다른 입법목적에 갖는 법률을 조화있게 운용하는 데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

나. 南北交流協力の 節次

이제 우리는 남북간 交流와 協力を 정책으로 선언하고 이를 법적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북한 주민간 접촉, 남북한 왕래, 남북한간 교역 및 남북한간 협력사업으로 구별되어 있다.

이러한 남북교류협력행위의 구체적인 절차는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 및 「同法律 施行令」³⁾, 「同法律 施行規則」⁴⁾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바, 이 法令이 定한 바에 따라 이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南北韓 住民間 接觸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同法 第9條3項).

여기서 接觸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직접적으로 面談・會晤하거나 또는 通信(電話, 電信, 便紙, FAX, Telex 등)을 통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남북한 주민이 상호왕래를 한다거나 교역을 위해서 또는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히 接觸을 통해 상호 의견교환을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교류협력력이 성사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요소로서 남북한 주민간의 접촉이 개방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남한주민이 방북승인을 받고 북한에 가서 북한주민과 접촉하는 경우와 북한주민이 남한에 와서 남한주민을 접촉하는 경우 등 모두 接觸承認을 받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방문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연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접촉은 별도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同法施行令 第19條1項).

예를 들면 가족방문을 위하여 상대지역을 방문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또는 가족이 사는 동네에서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전화를 하는 것은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

3)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施行令」은 法律에서 委任된 事項과 그 施行에 必要한 事項을 規定한 大統領令으로써 1990年 8月 9日에 公布되었으며 全文 53條로 構成되었다.

4)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施行規則」은 法律 및 施行令에서 委任된 事項과 그 施行에 必要한 事項을 規定한 總理令으로써 1990年 11月 9日 公布되었으며 全文 10條와 各種 書式으로 構成되었다.

으로 政治人을 만난다든가 본래의 목적을 현저히 벗어나는 접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접촉승인이 필요하다고 해석되고 있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이 국제행사에서 북한주민과 접촉하는 경우, 외국에서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하는 경우, 외국에서 가족인 북한주민과 만나는 경우, 교역을 위하여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하는 경우 및 기타 부득이하게 事前承認 없이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한 후 申告를 하면 된다(同法施行令 第19條3・4項). 이는 인도적 목적 또는 前後事情으로 보아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접촉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상당히 개방적으로 접촉을 허용하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 당국간에 합의가 있거나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⁵⁾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더 쉽게 접촉이 허용될 수 있도록 길을 터놓고 있다.

(2) 南北韓 往來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상대지역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원 장관이 발급하는 ‘訪問證明書’를 소지하여야 한다(同法 第9條1項). 여기서 방문증명서의 발급절차를 보면 우선 남한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고자 할 때에는 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 신원진술서, 사진 및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同法施行令 第10條1項).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은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이라고 하겠다.

현재 정부는 북한당국의 招請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5)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는 南北交流協력에 관한 政策을 協議・調整하고 南北交流協력에 관한 重要事項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統一院에 設置한 機構로서 委員長은 統一院長官이 되고 委員은 關係部處 次官級 公務員(14人 以內)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은 남북한관계가 아직은 상호신뢰의 기초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에 간 남한주민이 사고를 당하거나 또는 억류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는 국민개인을 위해서나 남북한 관계발전을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안전이 보장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리주민이 북한에 가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政策的 判斷에서 북한방문을 허용하기 전에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身邊安全과 無事歸還保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앞으로 남북한 당국간에 「通行에 관한 合意書」가 체결되면, 북한방문을 하려는 개인이 이러한 보충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나, 그때까지는 방문신청자가 남북한 주민의 접촉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주민이 남한을 방문하고자 할 때에도 訪問證明書 發給申請書를 제출하게 하고 있다. 다만 북한주민의 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 제출이 현 단계에서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보아 남한주민이나 외국인 등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다(同法施行令 第10條2項, 第11條2項).

북한주민에 대하여 정부가 방문증명서를 발급한다는 것은 바로 방문자에 대한 신변안전보장을 約束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방문증명서는 남한지역에서 일종의 신분증명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남북한 왕래절차에 관해서도 남북한 당국간에 별도 합의가 있거나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特例를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同法施行令 第20條).

남북한 주민과는 별도로 우리 국민중 외국에서 영주권을 획득하였거나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해당 在外公館長에게 신고만 함으로써 자유롭게 북한을 방문하도록 하고 있으며(同法 第9條2項, 同法施行令 第18條1・2項), 외국에 살고 있는 北韓籍을 보유한 우리同胞 및 無國籍者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 쉽게 들어올 수 있

는 길을 터놓고 있다(同法 第10條).

다만, 남북한을 왕래하고자 하는 사람이 國家安全保障이나 公共秩序・公共福利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의 왕래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同法施行令 第17條3項). 더 근본적으로는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공공복리를 해치는 남북간 접촉・왕래 등은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同法 第3條).

즉, 이제까지는 「國家保安法」體系에 의하여 일체의 남북간 교류・협력이 反國家行爲로 규정되어 금지되어 왔으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남북간 교류협력중에는 국가안보를 해치지 않는 행위와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로 구분하게 되었고,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과 「同法施行令」은 국가안보를 해치지 아니하는 교류협력행위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안보를 해칠 목적의 교류협력행위는 근원적으로 이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남북한 왕래시 방문기간은 통일원장관이 방문증명서를 발급할 때에 1년 6개월의 범위내에서 정하며, 또 필요한 경우에는 최초의 방문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同法施行令 第16條).

(3) 南北韓 交易

남북한간 물품의 교역은 民族經濟共同體 형성의 기초가 될 것이며, 민족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간 교역은 그것이 제3국을 통한 간접교역이든 남북한간의 직교역이든 많을수록, 자유스러울수록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교역당사자가 물품을 搬出・搬入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同法 第13條). 여기서 교역

당사자는 남북한간의 현실과 상호 화폐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남북한간 교역이 우선 국제무역관행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외에 對外貿易法에 의하여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제한하고 있다(同法 第12條).

또 교역당사자가 정부에 搬出入申請을 하는 경우 교역대상물품 공고에 의하여 制限承認品目으로 분류된 물품의 반출입에 대해서는 통일원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고, 自動承認品目으로 분류된 물품의 반출입승인신청은 甲類外國換銀行의 長에게 하도록 하였다(統一院告示 第91-2號 第2條2項). 이렇게 함으로써 남북한간 교역도 가능한 한 자유교역의 원칙에 따라 폭넓게 개방하려고 하였다.

남북한간에 반출입되는 물품은 내국간 물품의 이동으로 간주하여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기타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負擔金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同法 第26條2項但書, 同法施行令 第50條3項의1).

이와 함께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한간 교역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수출에 준하는 각종 지원제도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同法 第26條).

앞으로 남북한간 교역이 활성화되고 남북한 당국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清算決濟方式에 의한 남북한간 교역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法令에서는 이러한 방향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同法 第19條, 同法施行令 第40·41條).

정부는 교역당사자에게 물품의 반출입에 관한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반출입물품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에 관하여 조정명령을 할 수 있다.

(4) 南北韓 協力事業

남북한간의 협력사업이라고 함은 남북한 주민들이 공동으로 행

하는 문화, 학술, 체육, 경제 등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하며, 남북한 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민족공동체형성과 통일국가건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남북한 협력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協力事業者로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同法 第16條, 同法施行令 第30條).

이는 남북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에 따라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러한 專門性과 能力을 갖춘 자에게 협력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남북한 협력사업자로서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은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최근 3년이내에 事業實績이 있어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法人・團體包含)이 협력사업자로서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통일원장관에게 協力事業者承認申請을 하여야 한다.

협력사업자로서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만 협력사업을 하게 한 것은 마치 건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사업을 할 수 있고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수출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같은 취지이다.

협력사업자로서 승인을 받은 자가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協力事業計劃書, 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紹介書, 상대자와의 協議書 및 북한당국의 確認書 등을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同法 第17條, 同法施行令 第34條). 이때 협력사업자는 상대자와의 협의를 선행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북한주민과 접촉하거나 또는 북한을 방문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협력사업은 그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협력사업자의 능력

으로 충분히 수행해 나갈 수 있으며, 남북한관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승인하게 된다(同法施行令第35條). 또한 협력사업에 부수되는 外國換의 거래는 外國換管理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될 것이며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特例를 정할 수도 있게 하였다(同法施行令第39條, 第41條).

남북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사업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국내세법을 적용하되 북한당국과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同法施行令第53條).

다만, 남북교류협력의 질서있는 추진을 위하여 협력사업자로서 승인을 얻은 자라도 협력사업 시행중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거나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및 3년간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등에는 협력사업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同法施行令第32條, 第33條).

이러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절차들은 앞으로 남북한 당국의 합의하에 通行·通信 및 通商과,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세부사항들이 정해진다면 보다 확대되고 발전되어 나갈 것이다.

앞으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구성·운영하게 되는 「南北交流協力分科委員會」와 「南北經濟交流協力共同委員會」를 비롯한 「部門別 共同委員會」에서 구체적인 대책과 실천조치가 이룩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이 진전되고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다. 節次 違反時 措置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한 주민간의 접촉, 남북한 왕래 또는 남북한 교역이나 협력사업 등 南北交流協力行爲를 할 경우 사전에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규정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동법률은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와 같은 교류협력 행위를 한 경우 罰則을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同法 第27條).

예를 들면 이산가족 상봉을 목적으로 또는 교역을 목적으로 정당하게 북한주민과 접촉하거나 북한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소정의 절차를 위반한 경우, 「國家保安法」이 적용되지 않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벌칙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처음부터 국가의 安全保障을 해칠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해칠 것을 알면서 남북교류협력행위를 한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아닌 「국가보안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안법 적용대상이 아닌 단순행위로서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한 남북교류협력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同法 第27條1項).

좀더 경미한 사항으로서 申告義務를 위반하거나 정부의 調整命 令 또는 정부에 대한 報告義務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同法 第27條2項).

라. 南北協力基金의 設置 및 支援

(1) 南北協力基金의 設置意義

남북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던 1989년 말부터 이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支援體制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政府는 이를 위하여 南北協力基金을 설치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이 설정되었고 이를 뒷받침할 「南北協力基金法」⁶⁾을 제정하게 되었다.

6) 「南北協力基金法」은 1990年 2月 22日 國務會議 議決을 거쳐 同年 3月 5日 國會에 제출되었으며 同年 7月 14日 政府提出案대로 國會를 通過하여 同年 8月 1日 公布되었다.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하여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여야 할 이유는 남북교류협력의 성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 때문이다.

즉, 남북교류협력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민족공동체를 회복·발전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런데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公共財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바, 우리 민족구성원 중 어느 개인이 남북관계개선으로 인한 便益(安全의 確保, 自由의 擴大, 民族自尊心의 高揚 등)을 享有했다고 해서 다른 구성원이 누릴 수 있는 便益의 總量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며, 더 나아가 남북한간에 관계개선이 이룩되면 민족구성원 전체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단위로서의 남북교류협력은 私的財貨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단위들의 종합인 남북교류협력은 公共財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남북교류협력이 내포하고 있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으로 인해 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公共財政으로 이를 뒷받침하여야 한다는 정책방향은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다.⁷⁾

결국 남북협력기금의 설치목적은 공공재인 남북교류협력을 지원하여 이를 촉진시킴으로써 남북한 민족공동체의 회복·발전에 기여하고, 평화적 통일정책수행의 의무를 규정한 憲法精神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2) 南北協力基金의 支援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은 人的往來 비용에 대한 지원과 같이 非償還性 支援이 있고, 또 경제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자금유자와 같이 償還性 支援이 있는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면에서는 상환성 지

7) 統一院, 統一白書, 1990. pp.191-192.

원이 바람직하나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촉진기능면에서는 비상환성 지원도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여기서는 남북협력기금의 지원대상과 방법·절차 등을 「南北協力基金法」과 그 施行令 등에 따라 설명해 보고자 한다.

(가) 無償支援

남북협력기금에서 無償支援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우선 남북한 주민으로서 自費에 의한 남북한 왕래가 어렵다든가 남북한 당국간 합의로써 왕래비용을 부담키로 한 경우는 물론, 남북한 교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인 바, 이때 그 기본적 경비(숙식비·교통비 등)를 基金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다음 문화·학술·체육분야 등의 남북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協力事業의 계획·준비·실시 및 사후처리에 소요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수익금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그 수익금을 제외한 범위내에서 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나) 損失補助

남북간 교역이나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남한주민이 사업시행 과정에서 搬出한 물품대금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이나 대금지급물품의 반입불능 또는 반입지연 등과 같이 본인에게 歸責事由 없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그 損失額의 100분의 90 이내 범위에서 기금으로부터 손실보조를 받을 수 있다.

손실보조를 받고자 원하는 경우에는 남북교역 또는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損失補助約定을 정부와 체결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 資金貸出

남북교역과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남한주민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나 자금이 부족할 경우 所要資金의 100분의 90 범위내에서 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고자 하는 교역

업자나 협력사업자는 정부와 자금대출 사전협의를 한 후, 資金貸出申請書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대출기간은 据置期間 3년을 포함해서 10년 이내이며 그 이자율은 년 5%로 되어 있다.

(라) 債務保證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남한주민은 기금으로부터 債務保證을 받을 수 있다.

기금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債務保證申請書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상 간략하게 남북협력기금의 支援制度和 節次에 대하여 살펴 보았는데, 이 외에도 남북교역협력시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 이를 기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였고, 기타 어떤 남북교류협력이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에서는 남북교류협력을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南北協力基金을 1991년에 250억원, 1992년에는 400억원을 造成하여 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경우에는 기금을 大幅增額·造成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3. 南北交流協力の 現況

오늘날 모든 나라가 開放과 和解, 交流와 協力を 추구하고 있는 것은 인류사회가 이룩해 놓은 지식과 경험을 共有하고 交流함으로써 국제사회의 發展을 도모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과학·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있어서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만이 인류공동의 進歩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

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에서 우리는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증대시켜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남북한이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합의해 나가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노력을 병행해 가고 있다.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과 「南北協力基金法」은 남북한을 통털어 통일을 지향하는 최초의 法制일 뿐만 아니라 남북간에 민족공동체 형성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국민과 정부의 강한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 남북간에 交流協力에 관한 「基本合意書」가 체결됨으로써, 이제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앞당길 교류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였고,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의 시대도 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7·7宣言」 이후 지금까지 남북교류협력 현황을 人的交流和 物的交流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人的交流

그동안 人的交流面에서는 몇번의 의미있는 남북교류가 이루어졌다. 즉, 1990년부터 남북의 總理一行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南北高位級會談을 6차례나 열어 통일문제를 책임있는 남북의 當局者間에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 「南北間 基本合意書」를 채택한 것이 라든가, 1990년말에는 통일축구대회와 전통음악회가 남북을 오가면서 민족의 성원속에 개최되었고, 또 1991년 4월에는 제85차 국제의회연맹(IPU)평양총회 참가차 우리의 政治人들이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왔으며, 같은해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제13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에 분단이후 처음으로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단합된

모습을 보인 것 등이 그것이다.

또한 다방면에 걸친 人士들과 離散家族들이 북한의 해당분야 인사들이나 가족들과 접촉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접촉은 앞으로로도 남북한간의 제반교류와 협력의 촉진제가 될 것이다.

특히 최근 남북의 經濟人들이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빈번히 평양, 북경, 홍콩 등지에서 북한측 人士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남북한 협력의 전망을 밝게 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또한 1991년 10월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을 협의하기 위해 유엔개발계획(UNDP)평양회의에 참가하는 우리의 政府代表團에 대하여 북한이 참가를 허용한 것은, 北韓의 앞으로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방향에 중요한 示唆을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남북간 인적교류가 國民的 輿望에는 크게 못미치고 있고 남북한 당국간의 합의에 의한 단체간 교류에 불과할 뿐 민간인의 개별적 왕래는 별로 없는 상황에 있다.

남북간 왕래가 시작된 1989년 이래 1991년 말까지 往來現況은 총21件에 887名인데 대부분 당국차원의 단체적 왕래이고 민간인 개별방문은 소수에 불과할 뿐이다.

<표 1> 南韓住民의 北韓訪問

(1989. 6. 12.~1991. 12. 31. 현재)

年度 \ 區分	申請	承認	成事
1989	1(1)	1(1)	1(1)
1990	199(7)	187(6)	183(3)
1991	244(12)	243(11)	237(10)
計	444(20)	431(18)	421(14)

出處：南北交流協力動向, 통일원, 1992. 1. ()는 件數

우리주민의 북한주민 접촉의 경우에도 接觸申請은 1,024件에 2,952名이며, 이중 접촉이 成事된 것은 274件에 1,489名이었다.

우리가 남북한교류에 관한 法制를 갖추고 적극적인 교류협력정책을 추진한 노력에 비하면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북한이 人的往來에 따른 否定的 波及效果를 우려하여 정치적으로 이용가능한 교류에만 選別的으로 응해 오는데 그 원인이 있다 하겠다.

<표 2> 北韓住民의 南韓訪問

(1989. 6. 12.~1991.12. 31. 현재)

年度 \ 區分	申請	承認	成事
1989			
1990	306(5)	306(5)	291(4)
1991	175(3)	175(3)	175(3)
計	481(8)	481(8)	466(7)

出處：南北交流協力動向, 통일원, 1992. 1. ()는 件數

<표 3> 南北韓 住民間 接觸

(1989. 6. 12.~1991 12. 31. 현재)

年度 \ 區分	申請	承認	成事
1989	70(36)	22(21)	
1990	687(235)	652(206)	366(52)
1991	2,195(753)	2,030(685)	1,123(222)
計	2,952(1,024)	2,704(912)	1,489(274)

出處：南北交流協力動向, 통일원, 1992. 1. ()는 件數

나. 物的交流

물적교류에 있어서는 인적교류에 비해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7·7宣言」 이후 조금씩 진행되었던 남북간 교역은 政府의 노력과 民間業界의 적극적인 참여로 1991년부터는 대폭적으로 증가되어, 비록 대부분 제3국을 통한 間接交易方式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북한의 4대교역국중 하나가 되었다.

1988년 남북간에 교역이 개시된 이후 1991년 12월 말까지의 總交易額(政府承認額)은 2억 3,809만弗에 이르렀으며, 이 중에서 總搬入承認額은 2억 766만弗, 總搬出承認額은 3,043만弗로 반입액이 반출액의 약 6.8배에 이르러 남북한교역은 반입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며 또한 1991년도 交易額(政府承認額)은 1억 8,967만弗로써 1990년도의 2,508만弗보다 7.6배나 크게 신장되었다.

남북간에 교역된 물품을 살펴보면, 우선 북한으로부터의 搬入品目은 오징어, 조기, 명태, 감자, 땅콩 등 농수산물과 무연탄, 시멘트, 장식 등 광산품 그리고 아연괴, 금괴 등 금속류와 기타 생사, 도자기, 공예품 등과 같이, 주로 一次產品과 中間原資材가 대부분이다. 다음 搬出品目은 농업용 비닐, 직물류, 설탕, 종이, 양말편직기, 칼라TV, 냉장고 등과 같이 생활필수품이 대부분인바, 이처럼 남북교역이 점차 남북한 상호보완적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있음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남북교역이 이제까지는 제3국을 중계지로 하는 間接交易의 방식을 취해 왔으나, 1991년 7월 우리의 쌀 5천톤이 직접 북한으로 반출되어 남북한 直交易이 실현된 것을 계기로 실질적 직교역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남북간 경제교류에 있어서는 북한의 國際交易慣行의 未熟, 外換의 不足, 交易物品의 不足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점점 심화되고 있는 북한의 經濟難과 中·蘇의 북한에 대한 友

好價格制度의 폐지 등으로 인한 북한의 대내외경제환경의 변화와 우리정부가 취하고 있는 관세의 면제,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지원 등으로, 앞으로도 남북간 교역은 경제적 수요에 의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表 4> 年度別 南北韓 搬出入現況(政府承認)

(1988. 10.~1991. 12. 31. 현재)

區分	年度	件數	商社數	品目數	金額(千弗)
搬入	1988	4	4	16	1,037
	1989	57	47	53	22,235
	1990	75	60	88	20,354
	1991	324	231	201	164,034
	計	460	342	358	207,660
搬出	1988				
	1989	1	1	1	69
	1990	4	4	4	4,731
	1991	35	16	54	25,637
	計	40	21	59	30,437
總計		500	363	417	238,097

出處：南北交流協力 動向, 통일원, 1992. 1.

다. 協力事業

남북간의 協力事業은 문화, 학술, 체육, 경제 등의 諸分野에서 추진될 수 있으며 이런 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된다면 민족공동체형성과 통일국가건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前述한 바 있다. 그러나 남북간 협력사업실적은 체육분야에서 2件이 있었을 뿐 우리가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분야 협력사업이나 기타 문화, 학술 등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은 남북간에 協議나

試圖은 있었지만 아직까지 成事되지는 못하고 있다.

체육분야에서 성사된 남북간 협력사업은 1991년 4월 일본에서 개최된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같은해 6월 포르투갈에서 개최된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에 南北韓 單一팀을 구성하여 출전한 사례가 있다.

남북한은 2차례의 국제체육대회에 出戰選手團의 호칭, 단기, 단기를 하나로 통일하고 선수단규모, 선수평가전, 선수선발, 합동훈련 등에 대해서 합의하여 單一팀을 구성, 출전했던 것이다.

單一팀 선수단의 呼稱은 코리아(英文으로는 KOREA·K.O.R)로, 團旗는 흰색바탕에 하늘색 지도(한반도)로 하고, 團歌는 1920년대의 아리랑으로 決定하여 사용하였다.

앞으로는 이 두 체육협력사업의 경험을 살려 체육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학술 등의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다.

4. 南北交流協力 推進計劃

앞으로 우리정부가 남북교류협력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갈 것인지에 대해 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1992~1996년)중 南北交流協力部門計劃을 中心으로 살펴보겠다.⁸⁾

內外의 정세변화를 볼 때 第7次 5個年計劃期間은 통일문제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우리로서는 통일을 구체적으로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남북교류협력의 中長期 推進計劃이 마련되고, 이러한 틀내에서 各分野의 교류협력이 상호 유기적인 연계하에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

8) 經濟企劃院, 第7次 經濟社會發展5個年計劃, 1991. 參照.

남북교류협력 부문계획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계획기간중 南北經濟·社會共同體의 기반조성을 기본목표로 하고,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이산가족, 학술, 과학, 체육, 청소년, 경제, 교통, 통신, 환경 등 各分野의 교류협력 活性化, 당국간 대화를 통한 교류협력의 制度化,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 운용, 북한 정보자료 개방 등 推進基盤 造成과 支援制度 擴充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政策課題를 推進해 나감에 있어, 交流→協力→同化→統合의 단계적 접근방식을 지향하되 상황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당국간 합의를 바탕으로 民間交流協力を 활성화시켜 나가는 한편, 북한의 經濟·社會體制에 대한 심층연구 등을 통해 남북통합에 대비한 對應態勢를 구축해 나가는 것을 기본 추진방향으로 하고 있다.

계획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남북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이산가족의 상봉과 자유왕래 실현, 학술, 과학, 체육, 문화, 예술, 관광 등 諸分野의 교류협력 확대를 추진해 나가며, 이를 위해 남북 당국간 수용가능한 시범적 교류협력을 우선 실시해 나가면서, 점차 당국간 합의서체택을 통해 교류협력 추진의 安定性과 持續性을 확보한 후 이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다.

南北經濟共同體 형성을 위한 과제로서는 間接交易의 활성화 및 直交易 실현, 분야별 경제협력사업의 단계적 추진, 환경보전을 위한 공동협력, 남북 교통·통신망의 연결·확충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경제교류협력의 궁극적 목표가 統一基盤 造成에 있는 만큼, 단기적 이윤추구보다는 相互 信賴를 회복하여 장기적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경제분야 교류협력을 살펴보면 남북교역에 있어서는 계획기간중

直交易實現을 목표로 상호 보완적 물품의 교역을 확대하며, 현재의 信用狀方式 또는 求償貿易方式을 清算去來方式으로 전환시켜 나갈 계획이며, 경제협력사업으로는 남북한 공동어로구역 설정, 지하자원 공동개발, 합작공장 건설, 해외 공동진출, 두만강유역 개발 계획과 같은 多者間 協力事業에의 共同參與, ADB·IMF 등 國際經濟機構를 통한 간접협력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다.

다음, 환경보전을 위한 협력사업으로는 自然生態系의 공동조사 연구, 환경보전대책의 공동수립, 남북한 지역을 연결하는 수자원의 공동관리·이용 등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한 환경실태파악을 위한 공동조사단 구성, 환경분야 자료교환체계 수립 등을 우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남북한의 교통·통신망 연결을 통일후를 대비한 장기적인 國土綜合開發計劃 차원에서 접근해 나가며, 이를 위해 계획기간중에는 우선 남북간 輸送需要와 복구가능성이 높은 京義線과 開城—汶山間 도로를 연결하고, 남북교류협력 진전에 따라 京元線과 金剛山線을 비롯해서 남북을 연결하는 鐵道와 道路를 단계적으로 확장·연결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이미 정부는 남북 교통·통신망 연결에 대비해 ‘自由路’ 건설, 京義線·京元線 복구계획 및 부지매입 등 우리측 지역의 철도·도로확장 건설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그리고 남북간 電信·電話網은 남북 당국간 통신교류에 관한 합의서 채택을 추진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南北協力基金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획기간중 政府出捐金과 債券發行을 통한 금융시장 조달 등의 방법으로 조성액을 크게 늘려 나가는 한편, 교류협력에 대한 基金支援制度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그리고 정부는 북한에 대한 情報資料公開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의 전제가 된다는 인식에서, 계획기간중 북한자료를 단계적으로

확대·개방해 나가는 한편, 放送·言論媒體의 상호개방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남북간의 同質性 回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정부는 남북교류협력 추진에 있어 상황변화에 따른 신속적인 調整과 修正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획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집행에 반영해 나가는 한편, 남북경제·사회공동체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 국토개발계획 등에도 이러한 계획을 반영함으로써 南北經濟·社會統合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5. 結 言

1991年 12月 13日 第5次 南北高位級會談에서 채택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분단이후 최초의 南北 政府間 合意書로서 남북교류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의 진전여부는 「南北交流協力分科委員會」와 「南北經濟交流協力共同委員會」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가 ‘합의서의 정신’에 따라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들 남북간의 교류협력기구들의 운영은 어떻게 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결국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對內外環境과 남북한 정부의 교류협력에 대한 태도에 따라 그 전개양상이 좌우될 것이다.

그런데 남북교류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환경을 보면 「獨立國家聯合」(CIS :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과 中國의 개방·개혁과 더불어 동북아시아 국가들간의 경제협력이 증대일로에 있으며 향후 유럽經濟圈의 浮上, 北美自由貿易地帶化 등 세계경제

의 지역블럭화에 대응하여 東北亞經濟協力體制 형성이 可視化될 전망이다.

東北亞地域은 역사적 전통, 자원, 기술, 자본 및 30여년간의 성장과정에서 표출된 잠재력으로 보아 향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經濟圈이 될 것으로 期待된다.

한편, 東北亞經濟協力體制를 구축함에 있어서 남북한간의 분단과 對決狀態의 해소없이는 그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사실로 인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주변국가들의 요구는 점점 더 증대될 것이다.

北韓은 1970년대 후반이후 급격히 둔화된 경제성장, 자본 및 기술부족으로 인한 성장잠재력의 한계, 주민생활품의 절대적 부족 등 심각한 經濟難에 봉착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경제의 침체현상은 최근 舊蘇聯과 東歐社會主義圈의 붕괴로 인하여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獨立國家聯合」(CIS)과의 무역이 대폭 축소되어 일부 基幹產業은 가동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북한은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개혁·개방과 對韓關係 正常化以後 심각한 외교적 고립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사회주의권 국가 일변도의 既存 對外政策의 수정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가중되는 경제난의 해결과 외교적 고립상태를 탈피하기 위해서 미국·일본 등 西方國家들과의 관계개선 및 경제협력에 박차를 가하는 등 對外政策에 있어서 대폭적인 변화를 시도할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UN가입으로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體制崩壞의 위험을 각오하면서까지 전면적인 개방과 교류협력을 시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겠다.

북한은 주민에 대한 사상통제와 정치교양을 강화하면서 體制維

持에 유리한 범위내에서 制限的으로 남북교류협력에 호응해, 올 것이다.

이상과 같이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우리정부의 꾸준한 노력과 周邊環境의 변화 그리고 북한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태의 서신교환 및 접촉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북한주민들에게 미칠 충격이 적고 당국의 통제가 용이한 一回性 交流形態인 체육·문화·학술분야 중심의 교류협력은 계속될 것이지만 주민간의 自由往來에 있어서는 체제 충격때문에 상당기간 소극적인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또한 제3국을 통한 間接交易 형태의 물품교역은 꾸준히 증대될 것이 예상되며, 비공개적인 直接交易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본격적인 直交易과 경제협력은 남북한간에 경제교류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추진될 수 있는데, 현재 북한측이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3通合意書」採擇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 불투명하다 하겠다.

그러나 북한이 극심한 경제적 침체와 주민의 생산의욕 저하, 그리고 사회주의권과의 경제관계의 단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經濟的 危機를 타개하기 위하여는 西方國家와의 경제협력과 資本·技術을 유치함으로써 突破口를 찾고자 할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앞으로 南北韓間의 經濟協力은 擴大될 것으로 展望할 수 있다.

통일은 하나의 과정이다. 그리고 평화적 통일은 상호 신뢰회복과 공존공영의 관계를 정립해 나감으로써 가능하며, 이를 실현하는 것이 남북교류협력이다.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는 相對인 북한과의 合意導出도 중요하지만, 이를 추진해 나가는 원동력은 어디

까지나 우리사회의 健全하고 굳건한 力量이다. 통일의 내외환경은 급속도로 호전되어 가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에 따라 分斷의 苦痛은 해소되고, 統一은 보다 빨리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다.

申 喆 均(統一研修院 教授)

1. 周邊情勢에 대한 問題認識	263
2. 國際情勢 概觀	265
3. 周邊 主要國의 政策方向과 韓半島	271
가. 舊蘇聯의 政策方向과 「獨立國家 聯合」의 登場	271
나. 美國의 對外政策과 韓半島	287
다. 中國의 政策方向과 韓半島	299
라. 日本의 政策方向과 韓半島	309
4. 周邊情勢의 急變과 統一環境	321

1. 周邊情勢에 대한 問題認識

통일은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이루어야 할 민족적 과제이다.

1991년 12월 13일 남북한이 역사적인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도출한 것은, 남북간에 평화의 기틀을 마련한 것일 뿐만 아니라 自主的 統一의 與件을 造成시켜 나간다는 의미에서 그 의의가 매우 컸던 것이다.

주변정세와 통일환경은 지난 2~3년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즉 동서대탕트 추세 증대, 공산권의 개방과 민주개혁, 특히 소련 고르바초프 前대통령의 ‘新思考’에 입각한 외교정책 전개와 우리의 적극적인 북방정책 추진으로 이루어진 韓·蘇早期修交, 1991년 9월의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그리고 한·중 접근강화 등의 정세추이는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오늘날 한반도통일의 여건과 시기조성은 남북한의 내부적 여건 성숙보다 외부적 환경급변이 주는 영향이 크다는 느낌마저 주기도 한다.

특히, 지난 1990년에는 동서독이 역사적으로 早期統一(10월 3일)을 이룩함으로써 동서냉전체제의 붕괴를 실감케 했다.

이와 같이 공산권의 급변과 더불어 독일의 조기통일, 그리고 한·소수교 등은 우리의 통일시기문제를 再照明해 주는 징후이기도 하다.

바야흐로 세계는 엘빈 토플러(미래학자)가 예시했듯이 교통, 통신, 우주과학, 매스컴의 발달 등 ‘산업정보화’시대로 53억 인류는 ‘地球村(Global town)협력주의’ 정신에서 생존권을 이어나가야 할 轉換期的 시대에 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문제의 국제화, 국제문제의 국내화가 日常化됨에

따라 우리와 관련되는 주변정세의 범위와 시야가 넓어졌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舊韓末의 쇠국정책으로 인해 隣邦의 동태에 어두운 나머지 나라를 잃은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특히 한반도는 그 地政學的 특수성으로 인해 어떤 나라보다도 주변강국의 직·간접의 영향을 많이 받아 왔다.

흔히 지정학상 한반도의 위치는 邊境的 위치, 橋樑的 위치, 緩衝的 위치, 中央的 위치 등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¹⁾

변경국가(Rim Land Country)적 위치란 한반도가 대륙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성격으로서 대륙적 침략 소지가 잠재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개념이다.

교량국가(Bridge Country)적 위치란 中·蘇 등 아시아 대륙세력과 美·英·日 등 해양세력이 각각 해양과 대륙쪽으로 팽창정책을 추구할 경우 한반도는 그 통로가 된다는 성격으로서 양대세력은 한반도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많다는 뜻이다. 멀리는 임진왜란(1592~1598년)때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征明假道란 말, 근세의 淸·日전쟁(1894년), 露·日전쟁(1904년), 中·日전쟁(1934~1935년) 그리고 한국전쟁(1950년) 등이 한반도가 지닌 교량적 성격을 잘 대변해주는 예이다.

완충국(Buffer State)적 위치란 주변국간의 세력투쟁에 있어 완충적 위치로서 주변국중 어느 한나라도 한반도를 독점적으로 지배하지 못하고,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정책의 원리가 작용한다.

중앙국가(Central Country)적 위치란 주변 강대국의 지리적 중앙에 위치함으로써 그 존재가치가 낮고 약할 때는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그 반대로 강할 때는 주변 강대국간의 세력다툼을 中和시키고 調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 申喆均, 「한반도 주변정세」(통일연수원 교재)(국토통일원, 1986), p.5.

1991년 말에는 大소비에트연방이 消滅하고, 小共和國別 국가들이 등장, 그것들이 우리 韓半島에 주는 意味를 생각해 봐야 한다.

핵전쟁의 위협을 감소시키려는 동서화해의 상황에서는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북방정책이 활성화되어 왔던 것은 北方外交에 있어 그 地理的 근접성이 기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本 教材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급변하는 주변정세의 변화를 검토하고 그것이 한반도의 통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國際情勢 概觀

오늘날 세계는 동서 이데올로기 대립이 현저히 약화되어 가는 반면, 국가간의 '경제적 생존권투쟁'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작금의 국제정세는 다음 몇가지의 구조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는, 美蘇間에 軍事的 冷戰史가 종식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미·소는 1979년 아프카니스탄사태를 계기로 '新冷戰時代'로 돌입했으나, 1985년 3월 소련 고르바초프 新政權이 들어선 이후 1987년 12월 레이건·고르바초프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역사적인 중거리 핵전력(INF) 폐기협정에 합의함으로써 새로운 데탕트시대로 접어들었다.

미·소가 1980년대 후반기에 대결구도에서 대화·협상시대로 바뀌게 된 이유는 크게 두가지가 되겠다. 첫째는, 핵전쟁의 예방이요, 둘째는, 미·소가 안고 있는 심각한 경제적 곤경이다.

특히 소련은 브레즈네프 前서기장의 18년 집권기간에 GNP의 14%를 軍備에 투입했을 뿐만 아니라 제3세계에 대해서도 GNP의 1%를 투입하여 軍備過多支出을 해 왔다. 거기에다가 黨중앙집권

적 관료주의체제가 갖는 구조적 모순으로 인한 非생산성으로 舊소련경제는 만성적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한편, 미국도 레이건 前대통령 재임초기 ‘힘’(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對蘇강경정책을 기조로 GNP의 6%를 군비에 투입했을 뿐만 아니라 천문학적 비용의 소위 ‘戰略防衛計劃(SDI)’ 추진 등 過多한 군비지출로 인해 심각해져 가는 국제수지 악화와 더불어 미국경제를 더욱 곤경에 빠뜨리는 요인이 되었다.

미·소는 이러한 배경하에서 군사적 대결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화해의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것이 바로 획기적인 단계적 군축으로 나가게 된 배경이 된다.

국제정세흐름의 첫번째 큰 특징은 全世界的으로 美·蘇간의 군사적 冷戰史가 종식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1989년 12월 고르바초프 前大統領과 부시 大統領간의 「몰타회담」은 美·蘇간의 군사적 냉전사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협력시대’를 열었다는 데서 그 의의가 컸다.

고르바초프 前대통령은 페레스트로이카와 新思考 외교정책 전개에 따라 앞으로 1995년까지 동구뿐만 아니라 亞·太지역에서도 25만명에 대한 減軍政策으로 나가겠음을 공표한 바 있다. 미국도 1995년까지 세계 모든 지역에서 전 군사력의 25%를 감축시킬 계획이다.

이같은 군축을 통한 냉전종식 선언은 먼저 유럽에서 이루어졌다. 즉, 파리에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1990.11.19.~21)가 개최되어 34개국 정상들이 「재래식무기감축조약」에 서명하면서 冷戰의 終熄과 敵對關係 解消를 선언했다. 유럽안보협력회의는 「파리憲章」을 채택, 자유로운 ‘하나의 유럽’으로 새출발을 선포했다.

한편 NATO와 WTO 22개국은 정치선언(1990.11.10)을 통해 평화와 다원적 민주주의의 가치관을 선포하고 재래식무기와 核 및 화학무기의 감축을 선언했다. 따라서 동서냉전체제는 먼저 유럽에

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지난 1990년에 동서냉전체제가 확실히 붕괴되는 과정에서도 지역분쟁의 돌발사태는 여전히 군사적 긴장을 야기시켰다.

즉, 1990년 8월 2일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다섯시간만에 무력으로 점령함으로써 걸프灣에 군사적 긴장을 야기시켰던 것이다.

걸프戰사태는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이 쿠웨이트영토의 이라크로의 귀속과 아랍민족주의를 명분으로 내건 聖戰을 선언하고 나섬으로써 부시 美행정부를 곤경에 빠뜨렸다.

걸프戰사태가 주는 교훈은 동서냉전체제가 붕괴되면서 미·소는 군사적 대결을 회피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3세계에 있어서의 지역분쟁은 쉽사리 종식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1991년 9월 부시 대통령의 核감축선언 등²⁾, 전반적으로 미·소의 核무기 동결과 냉전종식의 영향으로 한반도 核제거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등장했던 것이다.

국제정세흐름의 두번째 큰 특징은 공산권의 改革·開放으로 나타나는 정세의 급변이다.

1989년 하반기를 전후하여 특히 동구에 改革熱風이 일어나서 대부분의 1당 군사독재체제가 붕괴되었다. 즉, 스탈린식 1당 공산독재체제가 붕괴되고 多黨制의 허용, 자유총선거에 의한 대통령직선 등 정치적 민주화를 위한 각종 제도적 개혁이 일어났다.

경제적으로는 중앙집권적 경제관리체제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체제로 변화해 가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 高揚, 언론통제의 廢止 등 각종 사회통제 조치를 완화 내지 폐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산권이 개방과 민주개혁을 가져오게 된 근본적 배경은 美·蘇냉전체제의 붕괴로 인한 새로운 화해구조의 餘波와,

2) 조선일보, 1991.2.9.字

특히 고르바초프 前대통령의 페레스트로이카 추진과 新思考에 입각한 정책전개에 기인한 것이다. 이같은 배경하에서 공산권의 민주개혁의 여파는 동독에서 18년을 집권한 호네커독재정권에도 영향을 주어 1989년 11월 7일 베를린장벽을 허물어지게 했으며 동·서독의 조기통일을 가져오게 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공산당 1당독재체제의 붕괴와 시장경제로의 전환은 사회주의 이념의 종식도 가져왔다. 예컨대, 독일 통일헌법에는 '사회주의'란 용어 자체가 없어졌다.

더욱이 1991년 8월 소련 쿠데타 발생후 공산당의 몰락을 가져왔고, 그 여파로 고르바초프가 大統領職을 사임(1991.12.25)하고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됨으로써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종말을 가져왔다.

이제 공산권의 개방과 민주개혁의 바람은 몽골과 베트남은 물론 쿠바에까지 불어 닥치고 있다. 오직 북한과 중국이 아시아에서 사회주의국가로서의 連帶를 옹호·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국제정세흐름의 세번째 특징은 세계는 점차 '경제블록화' 추세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① EC는 1992년에 경제통합을, 1993년에는 정치통합을 지향하고 있다. 더욱이 1993년 1월 1일에는 EC 12개국과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7개국이 국경을 허물어 19개국의 유럽경제지역(EFA)으로 통합, 세계 최대의 경제블록으로 탄생한다. ② 여기에 자유무역협정(FTA)을 바탕으로 하는 북미경제권(미국, 캐나다, 멕시코)이 형성되고 ③ 중남미 5개국(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의 경제권, 그리고 ④ 북서아프리카에서는 1988년에 창설된 아랍그레브연합(UAM)을 모체로 경제통합체를 형성해 가고 있다. 또한 ⑤ 環太平洋經濟協力の 성격을 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³⁾ 등이 있어 세계는 5

3) 第一經濟新聞, 1990.7.4.字

大 경제블록으로 형성되어가고 있는 추세다.

이 경제블록에서는 지역적 협력으로 域內 관세동맹을 맺고 서로 간에 자국의 이익을 도모해 감에 따라, 세계는 더욱 지역별 경제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보듯이 냉혹한 ‘國家利己主義’가 팽배해 있고, 이것은 앞으로 自國利益 우선의 ‘多元的 經濟體制’로의 돌입을 예고하고 있다.

세계사 흐름의 네번째 특징으로서 중요하게 지적코자 하는 것은 아시아·태평양시대의 등장과, 亞·太지역에 제2의 냉전종식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다. 亞·太지역은 세계 제1의 경제권이 되어 있고, 미국과 일본은 아시아·태평양에 걸치는 環太平洋共同體를 제창하고 있는 것이다.

노태우 대통령은 21세기에는 한국이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중심 국가가 될 것임을 누차 언급한 바 있다.

세계사의 흐름은 「팍스 브리타니카」(Pax Britannica)시대에서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시대로, 「팍스 아메리카나」에서 지금은 「팍스 아시안 퍼시픽」(Pax Asian Pacific)시대에 들어와 있는바 이 시대에 일본이 변영의 절정기에 와 있다.

그래서 바로 「팍스 니포니카(日本)」(Pax Nipponica)시대에 와 있다고도 한다.

여기에서 주목코자 하는 바는 유럽에서 제1의 脫냉전이 시작된 것이라면 이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바야흐로 제2의 脫냉전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사 흐름의 마지막 특징으로서 들 수 있다면 소속민족들의 主權國家로서의 ‘분리독립투쟁’이다. 이것은 새로운 新民族主義的 태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소비에트聯邦이 붕괴됨으로써 11개 공화국(발트3국 및 그

루지야공화국 제외)으로 구성된 「독립국가 연합」의 시대⁴⁾가 온 것은 이들 共和國들이 레닌의 제국주의통치 유산에서 벗어나 共和國別 주권독립과 人權, 宗教의 異質에 따른 民族主義的 분리독립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유고도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요구로 연방의 해체라는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新疆省 회교도들이 독립을 위한 聖戰開始를 선언한 것들은 모두 민족주의에 바탕을 둔 소수민족의 분리독립투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수민족주의의 태동은 해외 우리 韓人社會에도 나타나고 있다. 소련 각지 韓人代表者들이 하바로프스크에서 「在蘇韓民族代表者會議」를 개최, 조선자치공화국 수립문제 등을 논의(소련 노브스티통신 1990.4.28)한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겠다.

戰後 알타체제는 베를린장벽 붕괴에서 비롯된 독일통일과 4大戰勝國(美·蘇·英·佛)의 권력포기로 결정적인 붕괴를 맞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세계는 지역간의 '協助體制', '統合'이라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연방에서 分離·獨立하려는 '分散'의 진통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세계는 앞으로 '統合'과 '分散'의 渦中에서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⁵⁾

결프戰에서 多國籍軍의 勝利이후 세계는 '힘' 우위의 美國이 주도하는 新國際秩序로 재편되어 가고 있다. 세계는 平和와 民主化라는 흐름에서 볼 때, 다음의 네가지 물결을 겪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미국독립전쟁에 자극받은 프랑스대혁명이라는 물결
둘째, 우드로우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라는 물결

4) 한국일보, 1991.12.20.字

5)金玉烈, 「北方政策에 따른 南北韓국제정치관계변화」(숙대 통일문제연구소, 1991.11), p.4.

셋째, 제2차 세계대전후의 세계적 민주화라는 물결

넷째, 공산권의 개혁·개방과 더불어, 냉전종식을 위해 또 평화와 民主主義라는 가치관 옹호를 위해 유럽과 亞·太지역에서 거세게 일고 있는 물결

오늘날 世界는 네번째의 물결속에 휘말리고 있으며, 이 거대한 물결을 북한 또한 거역할 수 없을 것이다.

3. 周邊 主要國의 政策方向과 韓半島

가. 舊蘇聯의 政策方向과 「獨立國家 聯合」의 登場

1991년 12월 25일 고르바초프 前대통령의 사임으로 소비에트연방은 완전 붕괴되고, 11개 공화국으로 구성된 「독립국가연합」(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이 들어서게 되었다. 세계와 한반도에 있어 舊蘇聯邦의 영향력이 매우 컸으므로 먼저 이와 관련하여 살펴본 다음, 연방붕괴 이후의 주변 주요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방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1) 舊蘇聯의 政策方向과 韓半島政策

(가) 政策基調

舊소련은 1985년 3월 고르바초프의 黨서기장 취임과 더불어 획기적인 새로운 정책을 선언, 개혁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 개혁)와 ‘글라스노스트’(Grasnost, 개방)를 표방함과 동시에, 그 철학적 뒷받침과 外交政策으로서 ‘노보예 무쉬레니예’(Noboe Mishelenie, 新思考)의 정책 개념을 들고 나왔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이 세가지가 모두 ‘개혁’이

라는 개념속에 포함될 수 있는 포괄성을 지니고 있다.⁶⁾

고르바초프 前대통령은 이 세가지 기치하에 黨관료주의 척결과 정치의 민주화를 추진하고, 경제적으로는 중앙집권적인 경제체제를 완화,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해 왔다. 그후 옐친 등의 급진파와 불가피하게 제휴를 하여 「5백일 계획」의 시장경제체제를 수용하였으나, 진통을 겪어 왔다.

한편 고르바초프 前대통령은 대외적으로 ‘新思考’의 개념에 입각한 정책을 적극 전개시켜 나갔다.

‘新思考’의 개념을 세가지로 정의해 본다.

첫째, 新思考의 철학적 개념이다. 이는 마르크스주의는 지금까지 계급투쟁을 지향해 왔는데 新思考개념에 입각한 마르크스주의는 계급·민족·국가를 초월, 인류가 요구하는 ‘보편적 가치관’을 수용하는 포용적 개념이었다.

여기서 ‘보편적 가치관’이란 계급·폭력투쟁보다 인류욕구의 평화지향성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新思考란 대외정책의 인식전환으로서 현실인정을 바탕으로 한 평화공존체제를 국제사회에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 두번째의 개념규정이 바로 한반도 정세에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서 한반도의 평화공존체제 즉, ‘두개의 주권국가’개념을 가져와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임을 지지하는 입장이 된 것이다.⁷⁾

이는 바로 북한의 ‘하나의 조선’정책을 수정시켜 대남통일전략을 와해시키는 것으로서 김일성체제에 부담을 주게 되었다.

셋째, 군사정책으로서 舊소련은 全世界적인 군사재편과정에 들어갔는데 종래의 공격전략에서 방어전략으로 바뀌었으며, 이에 따

6) Robbin F.Laird, "the Gorbachov challenge" in Soviet Foreign policyed by Robbin F. Laird proceedings at the Academy of science, vol. 36, No.4, New york, 1987, p.5.

7) 고르바초프 前대통령 자문위원, 메드베데프(Medvedev)는 노태우 대통령을 초청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에서(1990.11) 소련은 유엔에의 동시가임을 지지한다는 고르바초프의 입장을 전달.

라 군사기지의 재조정과 병력감축이 불가피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1988년 10월 당시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유엔총회연설에서 일방적으로 50만병력을 감축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고르바초프 前대통령이 이와 같이 정치·경제·군사 등 다방면에 걸쳐 ‘新思考’를 내세워 근본적인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첫째는, 소련이 당면한 심각한 경제적 곤경이다. 고르바초프 자신이 “소련경제는 더이상 떨어질 수 없는 바닥에 와 있다.”⁸⁾고 고백했다. 그는 스탈린식 일당체제하에서 중앙집권적 경제체제를 견지해 나가는 한 선진 자본주의국가를 따라갈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로서는 1인당 GNP 7천달러수준 이상을 넘어서기 어렵다는 것이 사회주의체제의 한계이다.

기존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저성장 일변도일 수밖에 없다. 1991년 1인당 GNP는 전년대비 2% 성장에 머물고 있다.⁹⁾

舊소련은 戰後 5개년 경제계획을 12차에 걸쳐 시행해 왔고 ‘스타하노프운동’을 비롯한 노동력동원운동도 펼쳐 봤지만 소비재 및 인민의 생필품문제도 해결 못하는 후진성을 보이면서 경제구조의 모순만을 누적시켜 왔다.¹⁰⁾ 舊소련이 대한민국에 접근한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이 생필품 해결을 위해서였다.

둘째는, 군사비용을 감축시켜야 할 필요와 군비경쟁에 대한 회의적 시각의 대두이다.

舊소련이 지출하고 있는 군사비는 연간 약 3천억달러로서 브레즈네프 18년동안 GNP의 14%를 軍備에 출혈투입해 왔다. 그뿐만 아니라 제3세계에 대해서도 GNP의 1%를 18년동안 軍事援助라는 명분으로 무상 제공해 온 것이다. 따라서 舊소련경제는 만성적 경

8) 고르바초프, 최고회의 인민대의원회 연설(1990.2)에서 표명

9) 「北韓 및 周邊情勢動向」(國土統一院, 1991.8), p.220.

10) 柳仁澤, 「韓半島 周邊情勢와 統一環境」, 「民主統一論」, 國土統一院, p.133.

제침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軍備競爭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란 미국의 소위 ‘스타워즈’(star wars, 별들의 전쟁) 즉, SDI계획의 추진으로 소련은 미국과의 무한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따라서 ‘확대균형적 군비경쟁’에 재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소련은 경제의 침체속에서 SDI를 포함한 또다른 새로운 차원의 확대균형적 군비경쟁을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된 것이다.

이같은 상황하에서 1990년에 와서 고르바초프의 군사정책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고 전세계에 걸쳐 自國軍의 撤收를 발표하고 실행에 옮겨 갔다. 당시 모이세예프 소련군참모총장은 1990년 11월 18일 크리스나야 즈베즈다(赤星)와의 기자회견에서 蘇병력 80~100만명과 전략무기의 50%를 10년계획하에 3단계로 감축한다는 초안을 최고회의에 제출했다.¹¹⁾

제1단계는 1994년까지 체코·헝가리·몽골 및 독일에서 전면 철수하게 되며,

제2단계는 1994년부터 1995년까지 새로운 전략배치군의 편성과 중앙사령부구조의 재편 및 군사지역의 재조사 등을 하게 되고,

제3단계는 오는 2천년까지 전략공격무기의 50%를 감축하게 된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은 군비감축은 궁극적으로 4백만 병력의 군사규모를 약 3백만~3백20만으로 감축하는 것이 된다.

셋째로, 고르바초프가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소련 국민의 民主化 요구가 거역할 수 없는 힘으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소련의 1인당 국민소득은 7,000\$대이며, 고등학교 졸업자가 1억명이 넘고 대학출신자도 1천2백만명이나 되

11) 한국일보, 1990.11.20.字

는데 이들이 중심이 되어 생활수준의 향상과 언론의 자유를 비롯한 자유화, 민주화의 요구를 강력히 제기해 왔던 것이다. 더구나 개별 공화국들까지 民族主義意識을 심하게 표출, 합세하였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고르바초프는 이른바 ‘혁명’으로 비유되는 개혁정치를 발상했고 추진해 온 것이다. 그동안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의 기치아래 추진해 온 정책은 대내 민주화확대, 대외경제개방(교역의 확대, 합작을 통한 자본, 기술, 경영지식의 도입 등), 축소균형 및 군비축소 지향, 동구권 개혁지원 등 다양한 개념이다. 고르바초프의 ‘新思考’는 군사력 균형문제에 대해서도 군사력증강에 의한 전쟁억제가 아니라, 상대국과 정치적으로 협조·의존체제를 만들어 전쟁을 억지하겠다고 하는, 즉 군사력균형에 의한 전쟁억지에서 정치력에 의한 전쟁억지(利害의 균형)로 구조 전환을 시도한 것이다.¹²⁾

고르바초프 前대통령의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정책 그리고 ‘新思考’는 그후 동구의 개혁과 개방 그리고 민주화를 가져오는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고르바초프는 1988년 4월 베오그라드에서 ‘獨自社會主義’를 선언한 이래 1989년 유엔연설에서 “모든 국가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재확인하고 1989년 10월 바르샤바 정상회담에서도 이를 다시 확인함으로써, 이른바 브레즈네프의 ‘主權制限論’을 수정하고 동맹국 정책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기조가 동구권의 개혁과 변화를 가속화시켰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나) 舊蘇聯의 아시아·太平洋戰略과 韓半島

고르바초프등장 이후 그의 新思考에 입각하여 對外政策上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아시아·太平洋地域으로 그 관심을 극대화시켰

12) 柳仁澤, 앞의 책, p.134.

다는 점이다. 냉전시대가 청산되어 가고 소련은 아시아·太平洋戰略에 있어서 ‘세계공동체형성’이라는 이상을 명분으로 정치·안보·경제·사회면에 ‘多者間協議體’ 창설을 주장하였다.

고르바초프의 아시아·太平洋戰略의 기초는 블라디보스톡에서 선언한 아시아·太平洋독트린(1986.7.28)과 그리고 크라스노야르스크演說(1989.9)에서 그 골격이 나타난 바 있다.

즉 ① 美·日·中 등 太平洋國家들과의 善隣關係 유지 ② 극동 지역의 海洋資源, 수산업, 임산자원을 비롯하여 天然資源의 개발 및 합작투자 추진 ③ ‘중국식 사회주의’를 理解 ④ 1989年内 아프가니스탄 주둔 소련군 6개연대 철수 및 중국과의 지속적인 관계개선 희망 ⑤ 日·蘇頂上會談 早期開催 희망, 日·蘇 近接地域에 合作企業設立問題 토의 ⑥ 아시아·太平洋安保會議의 히로시마(廣島)개최 ⑦ 모든 아시아·太平洋諸國과의 관계증진 희망 ⑧ 북한의 한반도 非核平和地帶化 창설제의 지지 등이다.¹³⁾

소련은 이미 1965년부터 브레즈네프 前서기장이 아시아집단안보회의를 주창해 왔는데 고르바초프 등장후에도 8개항의 구체적 제의를 했었다. 그 주요사항은 ① 아시아 核保有國의 核先制使用 포기 ② 아시아에서 核實驗 금지 및 모든 군사활동 凍結 ③ 核擴散 방지조약 서명 ④ 우주군사화 불가담 ⑤ 아시아 주둔 外軍基地 철수 ⑥ 기존 군사블록 해체 등이다.¹⁴⁾

이같은 맥락에서 고르바초프는 블라디보스톡선언에서 韓半島問題도 중요시하였다. 그는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해야 한다고 前提하고 이를 위해서는 韓半島의 非核平和地帶창설을 제의했는데 이것은 블라디보스톡선언에서 아시아·태평양안보회의의 개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13) 신철균, 「한반도 주변정세」(국토통일원, 1987.1), p.8.

14) 신철균, 같은 책, p.10.

<中·蘇和解>

고르바초프 前대통령은 亞·太戰略遂行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걸림돌을 중국으로 보고 블라디보스톡선언에서 중국과의 지속적인 관계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소분쟁은 1989년 5월 획기적인 중·소정상회담을 통해 갈등을 씻고 31년만에 새로운 선린우호협조관계를 정립하였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양국의 대내외 정세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덩소평의 '실용주의정책'과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중소간의 和解는 기실 예상되는 것이었다. 특히 양국은 함께 개혁·개방을 추구하고 있었고 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장완화와 화해가 절대 필요했었는데, 문제는 양국의 관계개선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의 극복여부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新思考' 정책은 이른바 3대 장애물을 중국이 만족할 정도로 조건없이 제거했던 것이다.

첫번째 장애는, 국경선 확정과 국경지대의 군사적 긴장완화문제인데 國境會談도 성공적으로 추진되었고(우수리江과 아무르江上的 국경선은 水路의 중간지점을 경계선으로 하기로 타결) 국경지대 병력도 대폭 후퇴시킴으로써, 사실상 장애물이 제거된 셈이다.¹⁵⁾

두번째 장애물인 아프가니스탄 문제도 소련이 撤軍을 결정함으로써 해결되었고, 마지막 장애물인 월남과 캄푸치아 문제는 캄푸치아 주둔 월남군을 철수하기로 함으로써 일단락 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중·소외상회담이 1988년 12월에 실현되었고 이어서 1989년 5월 양국 頂上會談이 성사되어 18개항의 합의사항을 도출함으로써 31년만의 중·소화해가 성취된 것이다. 그리고 中·蘇國境問題도 1991년에 들어와서는 90% 이상의 合意를 보았다.

15) H.Ellison, "Recent soviet policy in Northeast Asia", paper presented a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soviet union, china and Northeast, Seoul Korea, 1988.p.6.

중·소 관계개선에 힘입어 중국은 이제 美·蘇간에 균형자적 역할을 시도하고 亞·太지역에서 발언권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예컨대 ‘大三角關係論’¹⁶⁾類가 그것이다. 상대적으로, 미국의 입장은 극동아시아 지역에서 다소 약화될 수 있다. 한편 북한의 입장에서는 中·蘇 등거리카드의 활용폭이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韓半島>

舊소련의 아시아·태평양전략은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톡선언과 크라스노야르스크연설에서 제시되었지만 고르바초프 前대통령의 자문위원인 메드베데프(Medvedev)의 訪韓 演說(1990.11.23)¹⁷⁾에서 그 방향을 명백히 읽을 수 있었다.

노태우 대통령의 訪蘇(1990.12.13.~16)에 관한 고르바초프 前대통령의 親書를 휴대한 그는 이 연설에서 특히 亞·太地域 多者間 協議體 창설과 한반도 非核化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메드베데프가 행한 “亞·太지역에서의 소련의 新思考와 政策” 題下의 연설요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亞·太지역은 세계인구의 66%, 세계무역의 거의 절반, 세계 공업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亞·太지역 전 국가의 국민총생산은 2천년까지 EC의 2배를 능가할 전망이다.

② 亞·太지역의 주도적 국가들은 과학기술 진보의 가장 유망한 분야인 전자공업, 마이크로프로세서 생산, 산업용 로봇, 우주항공 기술, 새 에너지원 개발, 해양자원채취 등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다.

③ 亞·太지역의 최우선 당면과제는 정치적 ‘多者間協議體’를 구

16) 新華社 논설위원인 彭迪의 주장으로서 ‘2차대전후의 국제정치’는 미소간에 중국이 어느 쪽에 가담하는 不等邊 삼각관계였는데 앞으로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等邊 삼각관계가 될 것이라는 이른

17) 韓國經濟新聞, 1990.11.2.字

성하여 '공동의 집'을 마련하는데 있다.

④ 亞·太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이 지역의 군사적 대립을 본질적으로 해소시키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오는 1992년경에 소련은 몽골로부터 전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며 캄란만의 소련군 주둔도 실질적으로 제한될 것이다. 亞·太지역 군비축소 및 제한을 위한 소련의 실행계획은 △핵무기 감축과 화학무기 및 미사일 제조기술의 확산금지를 우선과제로 삼고 △재래식 무기분야의 세계적 차원에서의 대책을 강구하며 △해군력 감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⑤ 한반도에 '두개의 獨立政府'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고려한다.

⑥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선린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의 統一의 실현을 위해 전적으로 협조한다.

⑦ 소련은 특히 남북의 군사력 감축, 한반도에서의 외군철수, 신뢰의 구축을 지향하는 1990년 5월 31일의 북한측 제안을 지지한다. 한반도의 군사적 對峙狀況을 완화시키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

⑧ 한반도 전체를 非核地帶化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소련은 다른 핵강대국들과 함께 한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드는데 보증을 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IMEMO(소련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의 알렉세이 알바토프(Alexe Albatov)군축실장은 남북 핵미사일 동시제거를 제의하면서 구체적으로 주한미군의 랜스핵미사일과 북한의 프로그·스커드핵미사일을 동시에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¹⁸⁾

盧泰愚 대통령은 1989년 10월 유엔총회연설을 통해 6개국 동북아평화협의회의를 제의한 바 있다.

고르바초프 前대통령 또한 모스크바선언 후 일본의신기자회견

18) 북한 및 주변정세 동향일지(국토통일원, 1990.10.10), p.170.

(1990.12.31)에서 亞·太 지역분쟁을 해결하고 안정과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미국, 호주 등이 참여하는 亞·太지역 정상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하고 “소련은 한반도의 平和統一을 위해 국제적 협력이나 보증이 필요할 경우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소련이 亞·太지역 평화와 통일을 위해 적극 仲裁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1990년 한·소간의 파격적인 일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의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前대통령간의 정상회담이었다(同年 6월 5일). 兩頂上間에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논의가 있었고, 또한 조속한 修交와 양국간 交流協力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에도 합의했다. 이자리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의 실현과 북한의 개혁·개방에 있어 고르바초프의 협력을 요청했다. 아울러 한국은 북한보다 더 우월한 軍事力을 갖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곧이어 3개월만에, 역사적인 韓·蘇修交가 1990년 9월 30일 유엔본부에서 당시 崔浩中 외무장관과 세바르드나제 소련의외상간에 정식 수교의정서가 조인됨으로써 이루어졌다. 소련이 조기수교로 굳힌데는 한·소정상회담에서의 조기수교 합의원칙에도 있었지만, ① 대한민국과의 경제협력의 중요성 인정 ② 고르바초프가 당면한 경제난 해소책의 시급 ③ 페레스트로이카정책의 추진에 있어 保·革갈등으로 인한 고르바초프의 對內立地의 강화 ④ 그리고 소·북한과의 급속한 냉각상태가 역으로 작용했다는 점 등이 조기수교를 앞당기게 한 결과라고 분석된다.

한·소 經協關係에 있어서 소련은 소비재 및 생필품을 한국으로부터 공급받고 기초공학, 기초과학분야에 있어서의 앞선 기술을 한국에 공급함으로써, 양국간의 교류는 한국에 유익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교이전 韓·蘇 政府經濟代表團間의 첫 공식회담(1990.8)이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는데 우리측은 자원, 산림, 항공, 과학기

술, 통신분야 등 5개의 경제협력분야를 제시했고 경제협력에 필요한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어업협정 등 6개의 協定草案을 제시, 가서명하였다. 이 6개 협정안은 그후 노태우 대통령의 모스크바방문(1990.12.13.~16)에서 한·소 정상회담을 통해 정식 서명되었다.

한·소 정부경제대표단회담에서 소련측은 한국측에 석유화학공장 등 22개 프로젝트와 냉장고 등 40개 소비제품의 명세를 제시하였다.

한·소 경협형태는 貨貸借款形式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난 1990년에는 한·소간에 여러가지 형태의 협정이 체결되었다.

3월 31일에 KAL과 소련 아에로플로트가 서울-모스크바간에 첫 취항을 하였다. 이어서 韓電과 소련 원자력수출공사 대행업체인 美판코사간에 소련산 농축우라늄 도입계약이 체결되었다(5월 9일). 한국무역협회와 소련 상공회의소간에 무역협정이 체결되었으며(6월 14일), 한·소 무역 및 항공협정 가서명(9월 14일), 한·소 과학기술협정 가조인(9월 29일), 한·소 체육교류협정이 체결(10월 4일)되었고, 한·소 직통전화 4회선이 개통(11월 16일)되었다.

민간 기업인으로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고르바초프 前 대통령간의 회담(1990.11.5)도 그 의미가 컸다. 고르바초프 前 대통령은 정회장과의 회담에서 시베리아 및 연해주 지역개발에 관심을 표명하고, 특히 나훗카 經濟特區 설치와 관련 한국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¹⁹⁾

現代그룹이 소련 야쿠트 지역과 사할린으로부터의 천연가스관 설치를 북한을 통해 남한으로 잇는 작업이라든가 여기에 중국 길림성 및 사할린동포의 노동력을 활용하겠다는 계획 등은 民族同質

19) 같은 책, p.150.

性 회복과 統一環境 조성에도 유익하다고 본다.

1991년에는 한·소 航空協定(5월 29일), 한·소 漁業協定(9월 16일)이 체결되었다.

<韓半島에 ‘두개의 政府’ 實體 認定>

앞에서의 메드베데프의 연설이 시사하듯이 소련은 한반도에 ‘두 개의 독립정부’라는 實體가 있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종래 소련은 남북한 유엔동시가입과 4강 교차승인제에 부정적이었으나 고르바초프 등장후 新思考에 입각한 外交政策이 전개됨에 따라 이 문제에 있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오게 된 것은 중대한 변화로 봐야 한다.

특히 메드베데프 자문위원은 청와대를 방문(1990.11.7) 고르바초프 前대통령의 親書を 노태우 대통령에게 전하는 자리에서 “소련은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을 지지한다.”는 고르바초프의 뜻을 전달했다.

소련의 유엔동시가입 지지입장은 북한 김일성을 당혹케 했고 드디어 김일성은 돌연 1989년 11월 중국 瀋陽을 극비리에 방문하여 한국의 유엔단독가입문제가 제기될 경우 유엔 安保理에서의 중국의 拒否權 행사를 다짐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울러 경제협력과 부자세습체제 견지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련은 4強의 交叉承認제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소련 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티타렌코 소장은 일본 닛케이신문과의 회견(1990.4.21)에서 “한반도의 정세 안정을 위해 4강 교차승인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소련은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은 물론 한국의 유엔單獨加入의 경우에도 지지하였다. 또한 소련은 북한의 IAEA(국제원자력기구) 核査찰 수용문제에 있어서도 북한이 핵査찰을 거부할 시는 核제조 시설 및 기술분야에서 협조를 중단하겠음을 표명하였다. 사실 고

르바초프의 訪日(1991.4.17.~18)에 이은 제주도에서의 한·소 頂上會談(1991.4.19)은 유엔加入 촉진의 중요 계기가 되었다.

<불편한 蘇聯·北韓關係>

소련의 종래 한반도정책은 북한과의 同盟關係에서 북한의 제반 정책을 지지·지원해 왔으나 고르바초프 등장후 新思考와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추진, 그리고 공산권의 개혁·개방·민주화정책 등으로 對南北 등거리정책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소련은 북한과의 우호전통의 관계를 계속 표명하고 있으나 우리의 적극적인 北方政策과 고르바초프의 新思考政策의 만남과 전개과정에서 소련·북한 관계는 매우 불편하여 졌다. 특히 한·소 정상회담, 한·소 수교는 이러한 경향을 가속화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모스크바방송은 1990년 6월 13일에, IMEMO 연구원 안드레이 보치키가 노보스티紙에 舊소련정부가 북한측 통일방안만을 일변도로 지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요지의 글을 기고했음을 보도했다. 그리고 9월 13일 모스크바방송은 최근 蘇·朝(북한)經協이 “일련의 문제”에 부닥쳤다고 지적하고 건설지원 및 원료·전력 등의 공급이 중단됐음을 보도했다. 북한은 전체 원유수입의 40%를 舊소련에 의존하고 있는바, 원유와 전력의 공급 중단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LA타임즈紙(1990.10.30)는 소련의 對북한 核관련물품 선적중단 및 재래무기 공급을 축소해 나가고 있음을 보도했다. 북한주재 舊소련대표부의 알렉산드로포프는 現북한의 對蘇채무액이 약 40억달러에 이른다고 주장²⁰⁾했는데 舊소련은 1991년 1월 1일부터 원유를 硬貨로 갚아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북한경제는 더욱 궁지에 처하게 되었다.

소·북한관계는 점차 소련의 일부언론들이 북한에 대한 體制批判으로까지 나오게 됨으로써 더욱 악화되었다. 일례로 소련의 「論

20) 이즈베스차紙, 1990.9.15.字

據와 事實」誌(1990.4.1)는 “북한은 김일성의 개인박물관”이라고 비난하면서 “현 경제상태를 그대로 방치해 나가면 金日成體制는 루마니아식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맥락에서 소련 IMEMO 마르티노프 소장은 “북한에도 소련식 페레스트로이카와 같은 改革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1990.2.12). 그런가하면 소련 「노보예 브레미아」誌(1990.10)는 북한사회주의를 “世襲的 君主制”라고 비난했다.

대단히 주목되는 사실은 소련이 드디어 6·25남침에 대한 眞實을 밝히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소련군의 參戰도 처음으로 밝히기 시작했다. 소련 역사학자 미하일 스미르노프는 “6·25전쟁은 김일성에 의해 발발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소련국방부의 軍事史研究所長 보르코고노프 대장은 아사히신문이 발행하는 시사주간지 「AERA」에 기고(1990.6.23)하여 “6·25 당시 북쪽의 전쟁준비가 남쪽을 훨씬 능가하고 있었다.”고 했으며 “1950년 2월 김일성은 극비리에 모스크바를 방문, 모로토프 보좌관 통역하에 스탈린과 2시간에 걸쳐 회담했다.”고 폭로했다.

소련군의 6·25참전과 관련하여 모스크바방송은 6·25참전 공군조종사 게오르기 프나코프의 말을 인용, 공군7만명(전투기조종사, 기술자, 고사포병)을 동원, 지원했다고 보도(1990.3.21)했다. 또한, 모스크바방송은 「크리스나야 즈베즈다」紙 게재내용을 방송(同年 10.4), 6·25전쟁시 중국은 地上軍을 담당하고, 소련은 空軍을 담당키로 밀약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콤포몰스카야」최신호는 중공군 참전은 1950년 10월 2일에 결정됐고 蘇空軍은 1951년 3월부터 참전했으나 이 사실을 위장하기 위해 中共軍 복장에 북한공군 표지를 하고 참전했음을 밝혔다.

이같이 소련이 북한의 6·25 南侵事實과 소련공군의 參戰秘史를 처음으로 밝히는 것은 북한과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 북한의 부당한 비난을 감소시키고 당시의 기존 영향권을 재상기시켜 두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獨立國家 聯合」의 登場과 韓半島

(가) 蘇聯邦 崩壞와 「獨立國家 聯合」 時代

1991년 8월 19일에 발생한 쿠데타는 3日天下로 끝나고 말았다.

당시 고르바초프 大統領은 聯邦과 共產黨은 존속할 것으로 보았으나, 소련 상황은 예기치 못한 급변을 가져온 것이다. 1991년 8월 24일 고르바초프는 共產黨書記長職을 사임하고²¹⁾, 12월 25일에는 대통령직을 사임하게 됨에 따라 蘇연방은 사실상 68년만에 붕괴되고, 「독립국가 연합」(발트3國 및 그루지야共和國을 제외한 11개 共和國으로 구성)시대가 들어선 것이다.

소비에트연방은 레닌帝國主義의 산물이었다. 소비에트연방의 소멸은 바로 레닌時代의 청산을 의미한다. 또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청산이기도 하다.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상징하는 蘇聯邦의 소멸은 이 時代에 마르크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결정적 쇠퇴를 가져온 것임을 말해 준다.

공산당의 붕괴는 共產主義體制의 붕괴인 동시에 중앙집권적 공산주의체제의 붕괴이기도 하다. 「독립국가 연합」 時代에 들어가긴 했으나 「독립국가 연합」은 크게 두가지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하나는 자본주의 市場經濟原理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는 진통이요, 또 하나는 核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는 진통이다.

지금 러시아연방을 비롯해서 각 공화국은 價格自由化 조치에 따른 진통을 겪고 있으며,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다. 소련에는 2만7천 개의 核탄두가 분산, 배치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서 核무기의 발사버튼을 누가 갖느냐가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옐친 러시아연

21) IMEMO, Area Studies of the World, 1991.11, p.1367.

방 대통령은 核무기 버튼은 오직 하나만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러시아연방만이 갖는다고 하였으나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4개 공화국은 공동 核통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蘇연방 붕괴후 「독립국가 연합」의 장래가 결코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11개 공화국들은 資本主義 市場經濟原理 추진과정에서 공화국간 利己主義로 더욱 혼란이 예상되며 식량난과 더불어 앞으로 3~4년 또는 10년까지도 혼란이 예상된다.

(나) 「러시아연방」의 登場

러시아연방은 舊蘇聯 領土의 3分の 2, 人口의 60%를 점하고 있으며, 또한 시베리아의 全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1990년 5월 29일²²⁾ 러시아共和國 最高會議議長에 보리스 옐친이 취임했고, 그는 蘇聯邦 역사상 처음으로 러시아共和國에서 直選制 大統領選舉를 통해 대통령에 취임(1991.6.13)했다. 美國은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이끄는 러시아연방의 등장을 現實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소연방 붕괴와 러시아연방의 등장으로 우리의 北方政策이 일시 혼돈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經協 30억달러 약속에 따른 후속조치가 문제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신중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소연방 붕괴가 대한민국의 安保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우리의 북방정책추진에 있어 歷史的으로, 地政學的으로 초강국이었던 蘇연방은 우리의 安保에도 위협적 존재였다. 그러나 蘇연방이 소멸되고 小共和國들이 등장함으로써 오히려 우리에게서 國家安保라는 측면에서 다소 유리하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²³⁾

반면 北韓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이 미친다. 레닌의 大소비에트연방은 그동안 北韓의 背後 保護國家로서 강력히 작용해 왔으나, 이

22) IMEMO, 같은 책, p.1368.

23) 第一經濟新聞 社說, 1991.12.26.字

것이 소멸됨으로써 북한에게는 強力한 배경세력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나. 美國의 對外政策과 韓半島

(1) 對外政策 基調

전통적으로 몬로독트린으로 이어온 미국의 대외정책은 다음 몇 가지의 原則과 價値觀 그리고 道德性을 견지하려고 노력해 왔다. 즉 민주주의의 수호, 자유와 인권의 보호, 공산주의 팽창의 봉쇄, 세력균형의 유지, 핵확산금지를 위한 노력 등이다. 그러나 지역국 제정체에 있어서 미국 外交政策의 지속성과 신뢰성은 자주 결여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레이건행정부 당시에는 ‘힘’의 철학, 즉 미국의 강력한 國防力을 바탕으로 한 세계평화체제(Pax Americana)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추구했다.

따라서 미국의 對蘇戰略의 경우 소련의 제1공격에 대한 보복공격능력을 보유함으로써 공격의지를 억제하겠다는 종전의 개념(Mutually Assured Destruction)을 수정하여 처음부터 제1공격을 無力化시켜 승리의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소련의 승리를 거부’하는 전략, 즉 확증생존(Assured Survival), 相殺전략(Counter Vailing Strategy)을 확립했다.²⁴⁾

이 전략은 SDI(Strategic Defence Initiative)계획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우주무기를 개발하여 소련의 핵무기를 無用之物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스타워즈(star wars)의 연구를 강화시킨 것이다. 전문가들은 SDI방어망을 완벽하게 구축하기 위하여는 5천억~1조 달러의 경비가 소요되고 2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24) 신철균,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환경」(국토통일원, 1988), p.145.

그런데 소련의 입장에서 보면 우주무기 개발수준이 미국보다 뒤져 있고 국내의 심각한 경제사정상 미국과 우주무기경쟁을 할 수 없는 처지이다. 따라서 미국의 SDI추진을 필사적으로 막아야 하며 이러한 소련의 요구에 따라 미국은 SDI계획의 적극적인 추진을 일단 유보해 두고 있는 실정이다. 레이건 前행정부의 對蘇 강경정책에 따라 미국은 소련의 對美 양보 내지 타협자세를 유도해 냈고 對蘇 軍事均衡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1970년대에 손상되었던 세계 최강국으로서의 명예와 자존심을 회복한 것이다.

그러나 레이건 前대통령 재임 후기에 와서는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더불어 앞에서 시사한 바와 같이 無限軍備競爭의 의미가 상실되어 가고 단계적으로 全世界의 차원의 군축이 불가피해졌다.

이같은 배경에서 1990년 부시·고르바초프간의 頂上會談(同年 6.1.~2)에서는 쌍방간의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과 후속조치에 假서명하고 무역협정, 곡물협정, 화학무기 감축협정, 핵실험협정, 대학생 교류협정 등에 서명²⁵⁾한 것이다.

<美國의 심각한 財政難>

미국은 레이건 前행정부가 GNP의 6%나 되는 과도한 군비지출을 했을 뿐만 아니라 社會福祉 및 增稅를 반대한 '레이저노믹스' 추진으로 미국의 대외경쟁력이 약화되고 日本, EC, NICS(신흥공업국) 등의 세계무역시장 진출 등으로 미국경제는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방위비지출만 하더라도 1988년에 2천9백30억 달러였는데 이는 미국의 총누적 적자 4천억달러 대비 4분의 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1985년 6월을 기해 세계최대의 債權國에서 최대의 債務國으로 전락한 바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2천년에 가서는 1조달러의 적자국이 된다. 이렇게 되면 연간 1천억달러의 이자를 내어야 한다는 悲觀論도 나온다.

25) 북한 및 주변정세 동향일지, 1990.8, p.247.

부시행정부는 레이건 前행정부의 이 엄청난 赤字의 遺産을 안고 출범한 것이다. 워싱턴의 워터게이트빌딩, 뉴욕의 티파니보석상을 비롯한 중심가의 상업빌딩, 록펠러부동산회사 등 미국의 부동산이 일본을 비롯한 외국인 소유로 넘어갔다.

제2차 세계대전직후 전세계 GNP의 45%를 점하고, 당시만 해도 미국의 원조를 받지 않는 나라가 없을 정도의 富를 자랑하던 미국의 경제가 이제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소련문제 권위자인 미국의 조지 케난 교수는 워싱턴의 한 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1990.6) “소련은 더이상 미국의 敵國이 아니다. 미국과 미국 국민에 대한 최대의 위협은 이제는 軍事的 위협이 아니라 經濟的 위협”이라고 갈파했다. 그리하여 그는 오늘날 미국에 대한 최대의 경제적 위협국은 日本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매년 일본에게 5백억달러에 이르는 적자누증으로 심각한 무역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미국은 이제 그 최후의 카드로 현재 일본의 수출형 산업구조를 ‘內需主導型’으로 전환시키려는 國家戰略으로 나가고 있다.²⁶⁾

이것이 바로 1990년 6월 28일 미·일 구조조정협의회에서 타결된 결과이다. 그 핵심은 日本이 1991년부터 향후 10년간 공공투자에 지금의 규모에서 50% 확대하여 4백30조엔(2조8천억달러)을 투자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 공공투자액은 기실 일본 GNP의 9~10%선에 해당한다. 1990년도 일본 정부예산이 66조엔임을 감안할 때 매년 43조엔의 公共投資를 앞으로 10년간 쏟아 부어 일본의 경제구조 자체를 內需主導型으로 바뀌게 하려는 경제전략이다.

1992년 1월 아시아 순방(홍콩, 싱가포르, 한국, 일본)길에 오른 부시 美대통령은 일본방문(同年 1.7.~1.9)중 게파트案(일본이 향후

26) 每日經濟新聞, 1990.6.29.字

5년간 對美貿易黑字을 매년 20%씩 줄이지 않을 경우, 日製車의 美國판매제한)의 美의회 통과를 우려, 日本 스스로 對美輸出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2) 亞·太戰略과 한반도

(가) 亞·太戰略의 基調

미국의 세계전략은 對蘇戰略의 차원에서 고려되고, 그 우선순위는 ① 對蘇核戰略 ② 유럽 및 NATO 방위문제 ③ 중동방위 ④ 아시아, 태평양방위의 順으로 놓았던 것이 종래의 관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이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東北아시아地域에 대한 관심과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로 戰後 주요 군사적 대결과 분쟁이 아시아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둘째로 4強의 이해관계가 교차되는 지역이고, 셋째로 舊소련, 중국의 막강한 군사력이 배치되어 있고 특히 舊소련이 亞·太지역 진출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 역시 경제력을 배경으로 軍事大國化할 잠재력을 과시하고 있는 점과, 넷째로 무엇보다도 亞·太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이 지역이 세계의 정치, 경제의 중심부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 등에 기인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1991년 11월 12일 뉴욕아시아협회에서²⁷⁾ 亞·太지역 국가들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① 安保協力 ② 民主主義 實現 ③ 貿易擴大를 들었다.

부시 美대통령은 1989년 12월 고르바초프와 가진 몰타회담에서 ‘몰타정신’이라고 하는 “새로운 협력시대”를 선언했는데, 그것이 냉전구조의 청산을 의미한다면 미국의 亞·太전략도 安保 위주에서 긴장완화, 경제중시로 전환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27) 한국일보, 1991.11.13.字

(나) 韓半島政策

戰後 美·蘇冷戰 양극체제하에서 韓美간은 지금까지 전통적 友邦國家로서 견고한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다. 한반도의 분단으로부터 한국전쟁, 전후복구사업의 원조, 한국군의 월남파병과 한국의 경제성장과 발전, 그리고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매우 긴밀하였으며 단순한 선린의 관계를 넘은 강력한 同盟國의 관계였다.

미국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도 對蘇前哨基地로서의 한국의 안보 전략적 위치를 중시했다.

이같은 基本認識에서 미국은 1983년 11월 레이건 前美대통령 방한중 韓美共同聲明 제4항에서 “한국의 안전이…미국의 안전에 직결”됨을 천명함으로써 한국이 미국의 ‘死活的 利害地域’임을 시사했다.

미국정부는 각 圈域別로 주요도를 설명함에 있어 상이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勢力圈(Sphere of Influence)에 대해서는 ‘死活的 重要’(Vitaly Important), 利害圈(Sphere of Interest)에는 ‘重要’(Important), 그리고 그밖의 권역에 대해서는 ‘我國의 利害’(In Our Interest)라는 식으로 기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종종 어떤 지역이나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의 안보에 緊要’한(Essential) 것으로 나타낼 때가 있는데 이러한 지역으로는 東歐, 日本과 韓國이 포함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미국의 對韓 정책방향은 1986년 10월 21일 릴리 前大使가 부임에 앞서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에 잘 나타나 있다. 첫째, 한국의 安定과 安保의 지원, 협력 둘째, 民主主義와 自由에 대한 공약 셋째, 번영하는 相互貿易關係의 배양에 정책의 기본을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²⁸⁾

28) 유인택, 앞의 책, p.164.

그러나 한국의 적극적인 北方政策 추진과 국내 일부의 강렬한 反美性向, 미국의 심각한 경제적 여건에서 연유된 한미통상마찰 등으로 양국은 전통 우호협력관계를 다짐하면서도 현상황은 실제로는 갈등이 있고 소원해져 가고 있는 조짐이 보인다.

<北方政策과 韓·美 通商摩擦>

우리의 적극적인 북방정책에 대해서 미국은 원칙상 환영의 표시를 해 왔다. 美 국무성 대변인은 1980년 3월 13일 한·소관계 정상화와 미·북한관계는 별개라고 규정하고 북한의 前進的인 자세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²⁹⁾

그러나 미국은 세가지 의미에서 우리의 적극적인 北方進出을 달가롭지 않게 보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 첫째 이유는 한국이 미국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없이 북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서 오는 소원감

둘째는 한·소 국교정상화로 한국이 방대한 시베리아개발에 적극 진출, 이 지역의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경우, 결국 이것은 시베리아를 중심으로 舊소련의 南下進出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를 확립해 주는 결과가 되며

셋째는 한·소교역의 현격한 증가(1995년 전까지 100억달러 도달 예상)는 기존의 한·미 통상관계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이 미국시장에서 번 돈을 소련에 부어 넣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

1990년에 들어와서 미국은 韓美通商關係에 있어 무차별공세로 나오고 있다. 1990년 11월 15일 돌연 訪韓한 솔로몬 美國務省 亞·太담당차관보는 우리의 과소비 억제운동, 농수산물개방 반대운동 등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금융, 통신, 지적소유권, 외국인투자 등 한미간 통상현안에 대한 한국측의 성의있는 자세를 촉구했

29) 북한 및 주변정세 동향인지, 앞의 책, p.114.

다.

또한 그레그 駐韓美大使도 한국외교협회초청(1990.11) 연설³⁰⁾에서 영국의 정치가 팔머스튼卿의 말을 인용하면서 오늘날 국제정치는 “영원한 友邦도 영원한 敵도 없다. 오직 국가간에는 영원한 利害關係가 있을 뿐이며, 이 말은 韓·美간에도 적용된다.”는 냉혹한 말을 했다.

1990년에 와서 특히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과정에서 韓美간의 통상마찰은 감정적 대립으로 나타났다. 결국 UR협상은 미국과 EC간에 의견이 팽팽히 맞서서 당초 계획인 1990년에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91년, 92년으로 넘어간 것이다.

미국의 對韓 통상마찰이 본격화된 것은 미국의 적자폭이 확대되고 우리의 對美黑字가 늘어난 1985년부터 그 強度가 높아졌다.

한미무역불균형은 1987년에 95억 5천만달러에 달했던 對美黑字가 1989년엔 그 절반인 47억 2천만달러로 격감되었는데 1991년에는 오히려 對美 貿易赤字가 7억달러였다.³¹⁾

미국은 한국을 ‘第2의 日本’으로 간주, 美·日構造調整協議會의 다음 목표가 한국이 될 우려마저 보인다.

한미간의 통상마찰에도 불구하고 쌍방은 한반도 核문제와 統一努力에 있어서는 認識을 같이하고 있다. 노태우 대통령의 1991년 7월과 9월 두차례에 걸친 美國방문과 유엔총회연설(9.24)에서도 북한의 核사찰수용 그리고 한반도 統一에의 기본틀에 인식을 같이한 것이다.³²⁾

<韓·美安保와 防衛費分擔>

지난 1990년 워싱턴에서의 제22차 한미안보협의회 합의사항을 보면 한·미안보공약을 재확인하면서, 한국이 신장된 경제력을 바

30) 세계일보, 1990.11.21.字

31) 每日經濟新聞, 1992.1.10.字

32) 조선일보, 1991.9.25.字

탕으로 주한미군 유지비용중의 한국측 분담액을 상당부분 더 부담하는 대신 양국 군사관계에 있어서는 한국의 主權行使를 확대하기로 한 내용이다.³³⁾

이것은 한미간의 안보관계가 의존관계에서 대등관계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으나 한미군사관계가 지닌 安保라는 본래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이로써 한국정부가 부담하는 駐韓美軍에 대한 1991년도 방위비가 1억 5천만달러로 대폭 늘어났다. 이는 전쟁예비물자 저장관리, 장비정비, 연합방위증강사업, 군사건설사업, 연합방위능력향상 등 5개 분야에 대한 직접지원비로, 1990년의 7천만달러보다 배이상 증액된 것이다.

이밖에 유사시 美軍의 신속한 한반도 파견을 위해 마련되고 있는 「戰時駐留國支援協定」(WHNS) 일괄 조기 체결합의도 비록 '유사시'라는 단서가 붙기는 했으나 한국의 경제적 부담을 요구하는 대목이다.

이와 같은 경제적 부담을 대가로 한국은 지금까지 美軍將星이 맡고 있는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와 한미연합사령관이 겸직하는 地上軍構成軍司令官을 1992년말 이전에 한국군장성으로 보임하는데 미국의 동의를 얻어 냈다. 지상군구성군사령관의 한국장성 임명은 평시 作戰指揮權을 한국군에게 전면 이양하기 위한 중간단계로 自主國防을 향한 하나의 도약대로 평가되고 있다.

이밖에 1993년이후 실시될 주한미군의 2단계 감축계획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한국측이 먼저 '案'을 제시, 이를 토대로 협의할 하도록 함으로써 미국이 한국의 정세판단을 존중하기로 한 점은 제22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얻어낸 성과다.

停戰委代表의 한국군으로의 교체에 대해 북한은 강력한 반대를

33) 동아일보, 1990.11.16.字

제기했는데(1990.11.19), 교체합의사항이 “휴전협정과 정전협정기구를 파괴하려는 고의적인 행위”³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한편, 제22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의 큰 쟁점은 미국으로부터의 次世代戰鬥機 구입문제다. 차세대전투기로 선정된 세계 최신예 FA18전투기의 제작사인 美 맥도넬더글러스社(MD)가 최종 계약단계에서 당초보다 40%의 엄청난 가격인상을 요구해 와 계획 자체가 암초에 부딪치게 되었다. 차세대전투기사업(KFP)의 골자는 1백20대의 FA18 전투기를 3단계에 걸쳐 1999년까지 도입하는 것이다. 이문제로 인해 우리 國會에서도 논란이 일어났으며 國防部는 이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세계가 軍縮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미국이 군사정책의 재편을 추진하고 미국내 주한미군 감축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駐韓美軍의 단계적 감축문제는 1990년에 들어와서 한미간에 잠정적이나마 합의를 보고 있다.

1990년 4월 4일 한·미 國防部는 주한미군 3단계 감축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1단계('90~'93년) : 공군병력 3천명 및 지상군 비전투요원 5천명 감축

2단계('94~'95년) : 앞으로의 상황과 북한의 반응에 따라 추진

3단계('96년 이후) : 추후 계속논의³⁵⁾

이밖에도 聯合軍 野戰軍司令部 해체, 「군정위」 수석대표의 한국군장성 임명, 평시통제권 환원 등이 원칙적 합의사항이다.

위의 단계적 감축사항을 보면 사실상 1단계만 병력감축현황을 밝히고 있고, 2단계와 3단계는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봐서 북한의 對南危險度에 따라 결정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34) 동아일보, 1990.11.20.字 AFP연합 발신보도

35) 경향신문, 1990.4.4.字

그 정세판단은 제22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한국측의 情勢判斷을 중심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北韓의 核査察 受容問題와 美北韓關係>

북한에 대한 미국정책은 원래 舊소련과의 동맹관계에서 북한을 이탈시켜 開放化, 民主化시키는데 있었다. 그러나 소련의 '新思考' 전개와 한소수교로 소련·북한관계가 소원해지고 남북한이 相互 實體 認定과 개방화추세로 나감에 따라 미·북한관계는 장기적 관점에서 개선의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근년 미·북한 접촉경위를 보면 美 內國人 북한여행 허용(1977년 3월), 美탁구팀 평양탁구대회 참가(1979년 4월), 美국무성 北韓外交官과 제한적 공식접촉 허용(1983년 2월), 북한은 중국을 통해 美國에 3者會談 제의(1983년 10월 8일) 등이 있었으나, 1983년 10월 9일 비마 아웅산사건직후 '북한외교관 접촉금지'라는 美측의 조치로 단절되고 말았다. 그러던중 1984년 9월 金日成은 對美關係 개선의 의사를 피력했고, 1985년 10월에는 美측이 학술회의에 참석하려는 북한학자 3명에게 최초로 입국비자를 발급했다.³⁶⁾

1987년 3월 9일 美國은 自國外交官들에게 제3국에서의 북한외교관접촉을 허용하는 이른바 「외교관의 북한관리 접촉지침」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으며, 연이어 4월에 북한과 약품 및 식량을 중심으로 한 '人道的 交易'을 취할 것임을 밝혔다.³⁷⁾

미국 상무부가 議會에 제출한 연례보고서(1990.1.22)에 의하면 1989년 미국의 對北韓 수출액은 8백40만 달러이다.

1988년 10월 31일 미국의 對北緩和政策이 발표된 이래 현재까지 북경에서의 미·북한 외교관접촉(참사관급)이 14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는데, 미군유해 송환문제와 북한측의 대화격상(大使級)요

36) 한반도 주변정세, 앞의 책, p.161.

37) 한반도 주변정세, 앞의 책, p.162.

구, 북한의 핵안정협정 체결 수락문제 등으로 난항을 거듭해 왔다.

미국은 북한을 쿠바, 리비아 등과 더불어 국제테러지원국으로 지목하고 있다.

미·소간의 軍縮이 실현되어 가고 있고 東北亞 冷戰氣流가 완화 되어갈 이 시점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가장 신경을 쓰면서 경계하고 있는 것은 바로 북한의 핵개발 가능성이다.

헨리·S·로웬 국방부 국제안보담당차관보는 북한이 “核연료 재처리공장을 건설중”이라고 발언(1990.4.12)했고 미국 카네기재단은 핵수출 규제에 대한 도전보고서(1990.4.19)에서 “북한이 3~4년내 핵무기개발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1991년에 와서는 북한은 1년내 핵무기개발의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北韓의 핵개발 일지>

1956년 蘇聯 도브나 핵연구소와 연구협정 체결

1959년 蘇聯과 원자력협정 체결

1962년 寧邊에 원자력연구소 설립

1965년 蘇聯에서 연구용원자로 IRT-2000도입(2MW)

1973년 전국공업자대회에서 金日成이 原電 조기건설 언급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原電건설 및 핵에너지 개발의 필요성 강조

1981년 日사회당과 東北亞비핵지대 창설을 위한 공동성명 발표

1985년 蘇聯과 原電건설협정 체결-발전용 원자로 VVER-4404기 도입추진, 핵확산금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가입

1986년 정부원에 원자력공업부 신설

1987년 30MW급 연구용원자로 자력건설

<자료:중앙경제 1990.11.26>

미국은 1986년 북한을 비롯한 10개국을 핵무기생산 초기단계 국가들로 지목한 이래 계속 우려를 표시해 왔다. 寧邊의 研究用原

子爐 주변에 핵폭발실험장과 핵연료재처리용으로 보이는 50~2백 메가와트의 高出力爐가 건설되고 있는 것을 미군 정찰위성이 확인했다는 것이다.

日本の 요미우리(讀賣)신문(1990년 11월 16일 뉴욕발 보도)에 의하면 유엔주재 북한대사 許鍾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수락 전제조건으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美軍의 핵과 북한의 핵시설을 동시에 사찰하고 △미군의 핵이 북한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는 보증을 미국측이 할 것 등 두가지를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미국은 1990년 10월 5일 日・北韓 관계개선 교섭과 관련 4개항의 요망서를 일본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① 북한이 원자력기구사찰을 수락토록 일본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 ② 對北補償 불허표명 ③ 日本의 원조로 인한 北韓軍事力 강화불원 ④ 남북대화 촉진을 위한 배려 요청³⁸⁾등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핵에 대해서는 美・蘇가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舊소련의 노드리시모나 일본태평양상장은 1990년 11월 26일 “미・소간에는 北韓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노력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밝히고 “일본이 합세한다면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볼때 북한은 일본과의 조기수교 교섭과정에서도 核협정 체결의 요구를 받고 있어 핵사찰 수락요구가 對美・日 관계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1991년에는 북한의 IAEA(국제원자력기구) 핵안전협정 체결문제가 國際社會의 관심사였다. 美國은 북한의 핵개발뿐만 아니라 核재처리시설 폐기 등 원천적 봉쇄로 나간 것이다. 북한은 1991년 말에 와서 결국 핵사찰 수용을 비치기 시작했으며, 1992년 1월 31

38) 日本 요미우리신문, 1990.10.5.字

일 ‘핵안전협정’에 서명했다.

韓·中 早期修交의 가능성 등 동북아에서의 冷戰構造가 바뀌어 가는 추세하에서 미국은 북한이 核개발만 자제한다면 미·북한관계개선도 멀지 않은 장래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 中國의 政策方向과 韓半島

(1) 內外政策方向

1977년 7월에 등장한 등소평의 실용주의 집단지도체제는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을 당면목표로 근대화작업을 추진하였다.

중국의 經濟近代化 推進은 2段階로 나누어

① 今世紀 말까지를 제1단계로 설정하여 國民總收入 1조달러, 1人當 國民所得 8백~1천달러를 실현하고,

② 제2단계에서는 금세기 말부터 2030년 내지 적어도 2050년까지는 4개현대화(農業, 工業, 科學技術, 軍事)를 실현, 先進國의 經濟水準에 접근시킨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³⁹⁾

중국의 대외경제개방정책은 법적으로는 1979년에 제정된 「中外合資經營企業法」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 기업법은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과감한 문호개방 조치법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현대화계획을 이념적으로 정당화한 것이 ‘중국식 사회주의’이며 그 이론적 토대를 제시한 것이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이라고 할 수 있다.

등소평은 1982년 9월 黨 12全大會 연설에서 “우리의 현대화건설은 중국의 현실을 바탕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외국의 경험을 활용하고 참고하여야 하나, 외국의 경험과 모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성공을 거둘 수는 없다. 중국의 특색에 맞는 사회주의

39) 신철균, 「한반도 주변정세」(통일연수원 교재)(국토통일원, 1987), p.170.

를 건설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다.”고 밝힘으로서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을 강조했다. 또한 중국식 사회주의 위상에 관해서는 趙紫陽 前총서기가 1987년 10월 黨 13全大會 연설에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은 마르크스주의의 창시자가 상정했던 대로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된 기초위에 건설된 사회주의가 아니며 또한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도 그 사정이 같지 않다. 인구의 4분의 1이 문맹 또는 半문맹이고 지역간, 부문간에 심한 격차가 엄존하며 과학기술의 평균수준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7억 이상의 인구가 농촌에 살고 기본적인 수공업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아직도 ‘사회주의의 초급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은 1979년 7월 국무원이 廣東省 深訓에 외국자본과 선진기술 도입을 위해 우대정책을 실시하는 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을 결정하고 이어서 珠海, 仙頭, 廈門 3개도시에 특구를 증설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1984년 3월에는 14개 연해도시(大連, 秦皇島, 天津, 煙台, 青島, 連雲港, 南通, 上海, 寧波, 溫州, 福州, 廣州, 甚江, 北海)와 海南島를 개방했고, 1985년 1월에는 다시 長江三角洲, 珠江三角洲, 閩南廈(門)·漳潭(州)·泉(州) 3각지구를 연해경제개발구로 개방했다. 特區 우대정책을 點에서 面으로 확대한 것이다. 1988년 3월에는 대외개방의 범위를 다시 廣東省전역, 福建省전역과 揚子江 3각주 및 遼東반도와 山東반도에까지 확대시켰다. 이리하여 외국으로부터 합자회사, 직접투자, 차관, 기술이전과 합작자원개발을 유도해 나갔다. 그리하여 1979년에서 1988년까지 중국은 16,325건에 791억달러 상당에 달하는 경제협력계약을 해외의 회사나 단체들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經濟改革을 추진하면서도 政治改革은 뒤로 미루었다.

중국의 天安門事態는 중국이 정치개혁을 거부하고 있는 데서 기인한 것이다. 즉 독재와 부패한 黨관료체제가 청산되어야 한다고

反旗를 든 민주화운동으로 폭발했다. 끝내는 수많은 流血 犧牲을 초래하면서 보수강경파가 물리적 힘으로 민주화운동을 정벌하고 만 것이다.

1990년에 들어와서는 보수강경파의 黨 중앙체제가 더욱 강화되었으며 모든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시작했다. 이 작업은 북경시 黨員 91만명을 대상으로 재등록 작업을 추진하여 천안문사태의 민주화시위 가담자와 지지자를 전면 숙청 조치했다.

중국은 2년만에 黨·政분리원칙을 취소하고 정부부처와 각 위원회에 대한 黨통제를 강화했다. 그리고 학원단속법을 발표(1990. 2. 9)하면서 먼저 대학생들에 대한 思想教育을 의무화시켰다.

한편 李鵬 총리는 1990년 1월 10일 계엄령해제를 발표하고 음력 신년사에서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희망하였는데 이는 天安門事態 이후 미·일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무역제재를 해소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江澤民 총서기는 軍은 공산당의 절대적인 지휘통제하에 있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그 목적은 天安門事態이후 軍의 이탈 내지 동요를 막기 위한 데서 나온 것이다. 또한 중국의 保守權府는 군부숙청을 대대적으로 단행하였는데, 廈州, 濟南軍區 등 7大軍區의 사령관을 모두 경질했다.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정책과 동구의 개혁열풍이 천안문사태와 같은 중국 민주화운동을 더욱 촉진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강택민 총서기는 “중국은 소련방식의 급진개혁은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강조했으며(1990.2.9), 인민일보사설(1990.6.3)을 통해 “社會主義만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소련개혁은 소련의 내부문제이며 중국은 소련과의 관계를 포함한 국제관계에서 평화공존 5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흐루시초프가 이끄는 소련을 修正主義帝國으로 비난한

것과 마찬가지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를 맹비난하였다.

중국은 북한에 군사·경제원조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공산권의 본질적 변화의 여파가 몰려 오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만은 社會主義 連帶國으로 결속시켜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 당국은 북한이 社會主義路線을 견지할 것을 진작시키고 있다. 吳學謙 중국 부총리는 북한은 중·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고, 江澤民 총서기는 일본 와다나베 의원과의 접견(1990.5.4)에서 북한은 계속 사회주의노선을 견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⁴⁰⁾ 더 나아가 강택민 총서기는 1990년 9월 23일 북한 이종옥 부주석과의 회담에서 사회주의의 궁극적 승리를 강조했다.

중국은 舊소련의 노선에 대해서는 비판하면서도 舊소련과의 실질적 협력관계는 그대로 지속시켜 왔다. 이는 李鵬 총리가 모스크바를 방문(1990.4.28), 6개의 양국간 협정을 체결한 데서도 엿볼 수 있다. 즉, 국경지대 감군 및 군사분야 신뢰협정, 중국의 對蘇 생필품 공급협정, 소련의 對중국 핵발전소 건설지원협정 등이 그 예이다.

그후 중·소는 상호투자보장협정과 이종과세방지협정(1990.7.21)도 체결했다.

주지하다시피 중국 당국은 天安門事態後 강력한 중앙계획 아래 일련의 긴축경제계획안을 발표했다. 그 핵심은 근로자들에게 보다 적은 보수에 보다 높은 생산성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긴축경제는 黨中央 지시하에 근로자들의 사기를 저하시켰고 시장메커니즘의 순환을 저조하게 만들므로써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은 당초 그 목표에 크게 미흡한 결과를 가져왔다.

40) 북한 및 주변정세동향, 앞의 책, p.105.

중국은 긴축재정적 국면을 전환시켜 産業化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개혁과 개방정책의 추진에 있어 改革, 保守派間의 심각한 의견 충돌이 있어 왔다.

사실 지난 10여년에 걸친 개혁추진과정을 통해 ‘主시장경제, 從 계획경제’가 자리잡은 상황에서 중국이 社會主義 計劃經濟로 복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1990년 11월에 들어서서 중국의 최고지도자 등소평은 改革과 開放政策의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중양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조화⁴¹⁾’를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조정을 하게 된 것이다.

1991년에는 국민경제사회발전 10개년계획 및 제8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관련, 계획경제와 함께 商品經濟, 기업책임경영체 채택 등으로 개혁을 추진했다.

한편 1990년에 들어와서 중국은 대만에 대해 「祖國統一 5個年計劃」을 제의했다.

그 이전에 대만의 李登輝 총통은 제8대 총통취임연설(1990.5.20)에서 對中國敵對關係 종식을 선언하면서

- 학술, 문화, 경제, 무역, 과학기술 등의 교류
- 對대만 무력사용 포기 및 外交의 孤立政策 포기
- 중국내 민주화
- 자유경제체제 도입 등을 제의했다.

이에 대하여 중국의 등소평은 「조국통일 5개년계획」 3단계를 제의(1990.9.18)한바,

제1단계는 중국과 대만간 교류증진(1990~1992년)

제2단계는 공산당과 국민당간 대화(1992~1994년)

제3단계는 통일달성(1995년) 등이 골자로 되어 있다.⁴²⁾

41) 북한 및 주변정세동향, 앞의 책, p.227.

42) 홍콩의 South China Morning Post紙, 1990.9.19.字

중국, 대만 양자간의 제의를 비교해 보면 중국의 제안에는 역시 공산주의 합작전략·전술로서의 統一戰線戰術이 깔려 있고, 대만 측의 제안은 양자사이에 깊이 패인 不信의 골을 메꾸기 위해 우선 다각적 交流協力を 진행시키되 武力을 통한 강제통일방식을 포기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대만은 중국내의 민주화와 자유경제체제 도입의 불가피함을 제의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흥미있는 것은 중국이나 북한이 모두 1995년을 統一完成期로 잡고 있다는 것이다. 1992년 현재 등소평은 88세, 김일성은 80세로 모두 고령인바, 1995년은 分斷 半世紀(50년)가 되므로 김일성은 1995년 이후로 통일을 넘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2) 中國의 韓半島政策

중국은 2050년까지의 ‘社會主義 現代化 建設’ 달성을 우선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변환경의 安定이 요구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전쟁방지와 긴장완화문제에 중요한 관심을 갖게 된다. 이점은 1983년 11월 胡耀邦 前총서기의 일본 방문과 1984년 1월 趙紫陽 前首相 및 1985년 7월 李先念 前國家主席의 美國訪問에서 이들이 모두 ‘韓半島의 平和와 安定의 重要性’을 강조한 점에서도 알 수 있다.

특히 中·蘇 관계개선(1989. 1. 5)이후에는 中蘇가 한반도문제에 공동의 입장을 취하여 왔는데, 1990년 4월 25일 錢其琛 외교부장과 소련 세바르드나제 前의무장관은 회담을 갖고 “남북한 대화가 한반도 긴장완화에 필수적”이라고 합의한 바 있다.

1991년에 와서도 江澤民 총서기는 日本의 中日新聞 가토 회장과의 회견(3.29)에서 “한반도의 안정이 세계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역사적으로나 또한 지리적으로 한반도와 중국은 인접해 있어 淸나라때부터 淸朝從屬關係(국제법상의 관계가 아닌)나 唇亡齒寒(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입술은 한국, 이는 중국을 뜻함.)의 동일 안전권내 유대관계나 또는 한반도는 '중국의 庭園'이니 하는 意識的 觀念이 있어 왔다.

중국과 북한은 지금도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 발표때마다 '兄弟之間' 또는 '血盟關係'(중국의 6·25참전)라는 의리관계를 표현하고 있어 이러한 의식은 앞으로 한·중 수교문제에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中國은 1983年 民航機事件때 우리가 보여준 好意에 크게 주목하여 그후부터 大韓民國에 好感을 갖기 시작했으며, 특히 '86아시아경기대회에 중국선수단 520여명이 대거 참여하였고 北京副市長(張伯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韓·中關係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韓·中關係의 발전을 우려하는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中國 李先念 前國家主席은 경기대회 종료직후인 10월 초순에 평양을 방문하기까지 했다.

金日成이 모스크바를 방문하게 된 理由 중의 하나도 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韓·中관계가 발전하고 '88서울올림픽에 중국의 참가가 확실시됨으로써 초조한 데서 온 것이었다.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우리 大韓民國의 經濟的 底力을 內外에 과시했고 中國도 우리에게 대한 認識이 高潮되었다. 중국은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한국자본주의 모델의 경영방식에 관심을 가졌다.

1989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된 吳學謙의 보고서는 중국 외교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다. 주은래의 平和共存 5原則을 시대에 맞게 구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同 보고서는 ①패권주의에 반대하고 평화유지에 노력한다. ②정책사항등을

개개 문제별 처리의 원칙하에 실용적으로 결정한다. ③소련이나 미국과 동맹 또는 전략적 관계를 수립하지 않는다. ④제3세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⑤경제·통상·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어느 국가와도 협력한다 등의 원칙을 담고 있다.⁴³⁾

위의 ③항 ④항은 중국이 政經分離原則을 견지하면서도 외교관계가 없는 나라와도 경제협력을 도모하겠다는 것을 포괄하고 있다.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정책과 동구권의 개혁·민주화의 熱風이 아시아 공산국들에게 불어 올수록 중국은 북한과의 社會主義 連帶性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1990년만 해도 2월 23일 홍콩 경제일보 보도에 의하면⁴⁴⁾ 등소평은 김일성이 1989년 11월 북경을 방문했을 때 중국의 對韓關係 4개 원칙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즉 ①통일에 위배되는 행동 회피 ②남한 불승인 ③對韓貿易은 간접 민간무역에 국한하고 ④對韓 공식 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同年 3월 14일 강택민 총서기는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에 김일성에게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을 견지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統一方案을 지지하며 미군은 철수해야 하고, 北·南·美 3자회담을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부정적 자세였던 중국이 1990년 4월 11일에 와서, 吳學謙 부총리는 對韓修交에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나 처리는 대북관계를 고려 신중을 기할 방침이라는 말을 하고 나섰다.⁴⁵⁾

중국은 북경아시아경기대회를 2개월 앞두고 袁木 국무원 대변인이 「日本經濟新聞」(1990. 7. 29. 字)을 통해, 그리고 江澤民 총서기가 당시 중국을 방문중인 일본 미야자와(宮澤喜一)前부총리를 통

43) FBIS-CHI-88-066, April, 1988, p.14.

44) 북한 및 주변정세 동향일지, 앞의 책, p.117.

45) 한국일보, 1990.4.11.字

해 아시아경기대회 종료후 한중무역사무소가 설치될 것이라고 하고, 그 창구는 중국의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와 한국의 대한무역진흥공사 (KOTRA)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실 북경 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 우리는 중국을 적극 협조·지원했다. 물질적 지원(현금)외에도 약 1천만달러의 광고비를 썼으며 북경비행장의 손수레(push cart)는 물론 시내 곳곳의 한국상품전 현수막과 주요 체육관내에 세운 광고판을 통해서 한국의 상품들을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었다.

또한 아시아경기대회 기간중 한국의 財界巨物들이 중국을 방문하고 경제협력문제를 협의했으며 약4천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중국에 관광비를 쏟아 부었다.⁴⁶⁾

중국 각지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 기업은 현재 모두 31개로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이 한·중관계는 북경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더욱 긴밀해 졌다.

1989년 한국의 對공산권 교역량은 42억 1천7백만달러로 그중 對中國 교역이 31억 4천2백만 달러인바 이 무역액은 對북방교역 총규모의 75%를 점하고 있다.

북경아시아경기대회후 한달도 채 안가서 드디어 1990년 10월 20일 한국과 중국은 사실상 準정부기능의 성격을 갖는 무역사무소 교환 설치에 합의했다. (정식 명칭 : 「大韓貿易振興公社 駐北京事務所」, 「中國國際商會 駐서울代表處」) 그리하여 1991년 1월 25일 중국은 초대 駐서울대표처 대표에 徐大有 中國 國際商會 副會長을 임명했다.⁴⁷⁾

1991년 11월 APEC(아시아·太平洋 경제협력) 각료회의에는 中國 錢其琛 外交部長이 참가, 李相玉 外務部長官과 韓·中貿易協定

46) 韓國經濟新聞, 1990.12.3.字

47) 北韓 및 周邊情勢 動向日誌(통일원, 1991.7), p.25.

의 연내 체결을 위한 실무회의를 가질 것에 합의했다.

(3) 中國・北韓關係

북한의 統一政策에 대해서도 중국이 한국과 관계개선을 하게됨에 따라 종래의 적극 지지에서 앞으로는 소극적 지지쪽으로 나갈 것이 예상된다. 중국은 북한과 함께 사회주의 연대를 가일층 강화시켜 나가되 미국・일본의 對北關係改善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미국의 월 스트리트 저널紙(1990.12.11. 字)에 의하면 김일성이 1990년 9월 중순 중국을 방문했을 때 江澤民은 더이상 북한에 경제원조를 해줄 수 없음을 통고하는 한편, 經濟改革과 對外門戶開放을 통해 북한이 경제난을 타개해 나가도록 촉구한 것으로 보도되었다.⁴⁸⁾

1991년 9월 남북한 유엔同時加入이 이루어지고 핵사찰을 수용하라는 국제여론의 압력이 가해지자 金日成은 극비리에 북경을 방문(同年 10.4), 경제지원과 父子世襲體制의 정통성을 다짐받으려 했으나 중국 당국은 경제지원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⁴⁹⁾

중국은 북한당국의 ‘하나의 조선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북한의 연방제지지, 단일의석하의 유엔동시가입 지지 태도를 보였으나 세계의 開放化와 現實認定의 추세하에서 한・중수교가 이루어지면 중국도 결국은 북한의 개방화 권장과 더불어 남북한에 대한 현실 인정의 방향에서 中國・北韓關係를 再調整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48) 조선일보, 1990.12.13.字

49) 동아일보, 1991.10.3.字

라. 日本의 政策方向과 韓半島

(1) 政策基調와 趨勢

제2차 세계대전의 戰犯國家이며 敗戰國인 일본은 패허에서 벗어나 1970年代에 와서 세계속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1980年代에 와서는 경제대국을 바탕으로 '정치대국'으로 부상하는데 주력하였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경제대국, 정치대국과 더불어 점차 '군사대국화'하는 추세에 있다.

일본 대외정책의 기조는 미·일안보협력체제하에 '全方位外交'를 표방하고 있다.

즉 "특정방침이 없는 것이 외교방침"이라는 말과 같이 어느 나라와도 등을 지고 살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朝日新聞은 "이제 일본은 독자적인 외교노선을 펼 때가 되었다."고 했고(1988.8), 1988년 11월 다케시다(竹下) 前총리는 "세계에 공헌하는 일본"을 표방했는데, 이는 정치·군사적 차원의 역할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된다.

나카소네 前총리는 1983년 1월 당시만 해도 미·일 양국이 '共同運命體關係'임을 강조한 바 있으나 일본이 미국의 經濟力을 추월함에 따라 미·일 통상마찰이 일면서 독자적, 자주적 방향이 더 커지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미국의 核우산 밑에서 安保無賃乘車(Free Rider)에 힘입어 경제건설에만 매진한 일본은 미국이 아시아지역에서 영향력이 쇠퇴해질 것에 대비, 미국의 역할을 대신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리하여 일본은 극동, 동남아문제에 관한 한 유엔을 비롯한 어디에서나 정치적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음이 뚜렷하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시대마다 그 시대를 특징짓는 국수주의자들이 있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8세기에는 모토오리노리나카

(本居宣長)의 ‘日本文化中心論’, 19세기에는 요시다쇼오잉(吉田松陰)의 ‘富國強兵擴張主義論’, 다루이도키치(樽井藤吉)의 ‘大東合邦論’, 20세기에는 후쿠자와유키치(福澤諭吉)의 ‘脫亞論’ 등이 그것이다.⁵⁰⁾

한편 日本史의 일관된 목표는 일본민족의 우월의식을 바탕으로 한 아시아의 제패였다. 도쿠가와(德川) 막부 말기에는 ‘아시아連帶論’, 明治시대에는 ‘大아시아主義’, 昭和시대에는 ‘東西聯盟-大東亞共榮圈’을⁵¹⁾ 내세웠다. 일본이 소련을 의식하면서도 亞·太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예컨대 정부개발원조(ODA)를 1988~1992년 기간중 500억달러 규모를 상정하고 있는데, 그 70%는 아시아 국가에 원조하겠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토론토 서방 7개국 정상회담직전인 1988년 6월 다케시다(竹下) 前총리는 중국, 태국,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정상회담에서 이들 국가의 이익을 대변해 주겠다고 의견을 청취했는데 이는 日本이 NICS의 경제적 권익을 옹호하고 있다는 제스처라 하겠다. 또 일본은 1987년 12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아세안(ASEAN) 6개국 정상회담에 업저버로 참여하는 적극성을 보이기도 했다.⁵²⁾

또한 日外務省은 天安門事態 이후 동결된 365억엔의 對中國 개발 차관을 재고하겠다고 발표(1990.11.2)하였다. 아시아에서 일본의 정치외교적 주도권은 캄푸치아 내분뿐만 아니라 카슈미르분쟁, 중국·대만관계 및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조정역할을 하려는 자세로 나오고 있다. 그런 역할을 일본자신은 ‘공현’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지만 歐美國家들은 日本의 ‘주도권 겨냥’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앞의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미국의 對日構造調整을 언급했지만 미·일간의 통상마찰은 심각하다.

50) 유인택,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환경”, 「민주통일론」(국토통일원, 1989), p.154.

51) 유인택, 같은 책, p.154.

52) 유인택, 같은 책, p.156.

세계 10대 은행중 9위까지가 모두 일본계 은행이 차지하고 겨우 10위가 미국계의 시티뱅크이다. 1989년 10월 미쓰비시(三菱) 그룹에서 록펠러그룹(부동산회사)을 인수함으로써 미국인들로부터 “미국의 심장을 강탈해 갔다.”는 비난을 받는가 하면, 일본의 소니(SONY)회사는 美 콜롬비아영화사를 인수하기도 했다. LA시가지의 고층빌딩의 22%를 일본 부동산업체가 점하고 있다. 일본은 全領土(37만평방km)의 10분의1 정도의 땅을 해외에 두고 있다. 일본은 세계 최대의 債權國家가 되었고, 순해외채권액은 3천억달러를 훨씬 넘어 섰다. 이는 미국의 순채무잔고 5천억달러와 대조된다. 1988~1989회계년도에 책정된 순해외개발원조예산은 100억달러로서 세계 最大援助國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2) 日本의 軍事大國化

일본이 점차 군사대국화로 가는 것은 일본의 방위예산을 보아도 알 수 있다. 1990년도의 방위예산은 4조 1천5백93억엔으로 GNP 대비 0.997%, 일본회계 세출예산 대비 6.27%에 달한다.⁵³⁾ 세계군사전문지 밀리터리 밸런스(Military Balance)집계로는 일본의 방위예산규모가 미·소·영·불·독일에 이어 세계 6위이지만 엔화를 달러로 환산하면 미·소에 이어 세계 제3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美 국방성의 분석이다.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펴낸 國防白書(1990.11.8)에 따르면 일본은 1천2백27억달러(1986년 환율기준)를 투입한 新中期防衛計劃(1986~1990년)에 이어 이보다 약 3백40억달러나 증액된 1천5백67억달러를 투입해 次期防衛力 整備計劃(1991~1995년)의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⁵⁴⁾고 밝혔다. 일본의 이같은 방위력 증강은 1991년

53) 한국일보, 1990.10.26.字

54) 서울신문, 1990.11.8.字 국방부귀 「'90국방백서」인용, 1990.11.8.字

부터 시작되는 차기방위력 정비계획기간중 AWACS(공중조기경보기), 초수평선(OTM)레이다, 공중급유기, 多聯裝로켓시스템(MLRS) 등의 도입추진을 포함하고 있다. 기실 일본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제한된 범위안에서 專守防衛概念의 재무장이 허용된 이래 지난 40년동안 자위대의 지속적인 戰力增強(년 7%)을 해 왔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은 차기방위력 정비계획(1991~1995년)에 착수하게 되어 자위대의 戰力은 앞으로 더욱 증강될 전망이다.

미국은 앞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거의 철군하고 이 지역 방위를 當事國들에 맡긴다는 방위계획을 갖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서 일본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본의 방위력 증강은 결과적으로 한·미·일의 安保協力關係에 새로운 변수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北韓·蘇·中간의 군사관계와 域內國家들의 군사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욱 간과할 수 없는 것은 東西解氷이 무르익어 가고 있는 오늘의 국제상황에서 이에 구애되지 않는 일본의 軍國意志이다. 1990년 4월 23일 가이후 前총리는 의회에서의 질의답변에서 “미·소 긴장완화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防衛大綱을 개정치 않겠다.”⁵⁵⁾고 답변한 데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6월 28일에도 가이후 前총리는 이같은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가이후 前총리의 이러한 답변은 동서해방에 관계없이 「차기방위력 정비계획」(1991~1995년)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일본의 방위계획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아시아에서 미군의 철수에 따른 힘의 공백을 일본이 점차 메꿔 나가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자위대의 국제적인 군사적 역할의 示唆는 걸프전쟁이 발생

55) 북한 및 주변정세 동향일지, 앞의 책, p.187.

했을 때 보인 일본의 태도에서 역력히 드러났다. 자위대의 해외파병에 대해서 1990년 9월 21일 日 외무성은 輕武裝 자위대원의 걸프灣 파견문제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는데 9월 27일에는 가이후 前 총리가 자위대 중심의 유엔평화협력대 창설 및 해외파견 등을 골자로 하는 「유엔평화협력법안」을 발표하자 야당들의 거센항의와 대외적으로는 과거 日本의 침략을 받았던 韓國, 中國, 東南亞諸國의 맹렬한 비난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일본은 결국은 11월 8일 유엔평화협력법안을 폐기기로 확정하고 자위대와는 별개의 「유엔평화유지활동 협력대」를 편성, 대치키로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日本 정부는 1991년 10월에 세계평화 유지명목으로 '유엔평화유지활동법안(PKO)'을 衆議院에 제출하는 등 군사적 진출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다음 일·소간의 가장 큰 현안문제는 북방 쿠릴열도인 쿠나시리·에토로후·하보마이·시코탄의 4개섬 영토반환문제이다. 이 4개섬은 舊소련의 태평양진출 전초기지로서 그 전략적 의미는 매우 크다고 평가되고 있다. 舊소련은 일본으로부터 첨단과학기술제품을 수입하고 일본은 우리의 北方政策 추진 이전에 이미 시베리아를 개발하는 조건으로 진출하고 있었으나 소련은 이 4개섬을 일본에 반환하지 않고 있어 日·蘇平和協定の 체결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소관계는 이러한 현안문제의 냉각속에서 고르바초프 前대통령의 訪日이 어려웠다.

그러던중 고르바초프 前대통령은 1991년 4월 5년여만에 일본을 처음 방문(16~18일)하여 가이후 前일본총리와 여섯차례의 회담을 가졌으나, 일본이 요구하는 북방 4개도서 반환문제에는 부정적이었다.

다만 일본측과 공동성명에서 북방 4개도서를 '領土問題'로 규정하고 ① 4개 도서에서의 日·蘇주민 교류확대 ② 일본국민의 無비자방문 ③ 4개 도서주둔의 蘇軍을 삭감한다는 원칙에만 합의했다.

그리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南北對話의 진전을 기대하고, 高位級會談 再開支持, 韓·蘇修交 및 日·北韓 수교 환영, 북한에 대해서는 核사찰을 수용할 것 등을 촉구했다.⁵⁶⁾

(3) 日本의 韓半島政策

지정학적 위치(변경국, 교량국, 완충국, 중심국)에서 볼때, 일본과 한반도는 一衣帶水의 불가분의 관계로서, 서로의 안정과 평화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被植民統治의 유산을 안고 있는 한반도는 역사적 감정속에서 그후 모든 평화와 안전문제 그리고 國益(특히 경제)과 관련하여서는 일본과 갈등관계에 놓여 있었다.

戰後 일본의 한반도정책은 미·소양극체제 속에서 미국의 對한반도정책의 맥락에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일본이 經濟大國化함에 따라 정치적·외교적 역할을 현저히 증대시키면서,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의 韓半島問題 논의에 주도권을 가지려는 속셈을 나타내곤 하였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일본은 미국의 對韓政策의 맥락속에서 親韓政策을 유지하면서 政經分離原則下에 對남북한 등거리외교를 해 왔던 것이다. 親美 자유세계의 일원인 일본은 한반도의 공산화가 일본에 위협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위치와 더불어 한국의 安保가 일본의 安全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1969년 11월 21일의 닉슨-사토 공동성명은 “한국의 안전은 일본 자신의 안전에 필수적이다.”라는 한국관련 조항을 두었다. 또한 1980년대에 와서는 1983년 1월 나카소네 前총리의 訪韓과 1984년 9월 전두환 前대통령의 訪日을 통해 兩國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긴요”함을 강조했다.

56) 통일위, 北韓 및 周邊情勢 動向日誌, 1991.7, p.154.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1969년의 닉슨-사토 공동성명에서는 미·일양국이 안보영역을 한국과 일본으로 국한시켰으나, 동아시아에 위치한 일본은 1983년 한국과의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연결시키고, '한국조항'에서는 한국을 '한반도'로 표현하는 등, 일본이 남북한을 등거리외교로서 대등하게 확대 취급하려는 속셈을 깔고 있다. 1984년 9월 전두환 前대통령의 訪日에서 양국은 ① 자주적 분단극복의지와, ②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주체적 개척, ③ 안보, 경제, 과학, 기술, 문화, 교육 등에 걸쳐 상호협력 및 유대강화를 다짐했다. 1986년 9월 21일 나카소네 前총리의 訪韓에서 양국은 남북한의 유엔가입과 남북대화촉진을 지지했다. 통일 및 한반도긴장완화 문제에 있어서 나카소네 前총리는 韓·日共同聲明 第5項에서 우리의 統一政策을 지지한다고 표명했다. 그리고 韓半島緊張緩和를 위하여 南北間의 直接對話를 지지했다.

일본은 經濟大國이란 힘을 바탕으로 한반도에서의 政治外交의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역할을 증대시키고 있다.

즉, 1984년 3월 나카소네 前총리는 北京을 방문하여 ① 韓半島에서의 전쟁방지를 위한 日·中國協力에 동의하고 ② 韓·中國間의 이산가족 재회를 仲裁한 데서도 알 수 있다. 1986년 11월 8~9일 나카소네 前총리가 재차 중국을 방문했을 때는 한·중국 무역사무소 설치를 당시 호요방 총서기에게 제의한 바 있는데 호요방 총서기는 북한을 의식, 시기상조라 거절했으나 일본의 居中調停의 의지를 우리는 여기서 읽을 수 있다.

1990년대의 한·일관계는 새로운 협력시대에 들어감에 있어 몇 가지 기본사항의 해결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첫째는 보다 명확한 植民統治의 청산문제이며, 둘째는 제일교포의 法的地位問題가 해결되어야 하고, 셋째는 한·일간의 심각한 貿易不均衡의 시정이다. 그리고 우리는 일본의 기술이전을 크게 기대해 왔으나, 日本은 늘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여 왔다.

일본이 요구하는 21세기 ‘새 한일협력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과거의 식민통치 청산과 관련, 진정한 사과와 표징이 있어야 한다. 전두환 前대통령의 訪日(1984.9)시 히로히토 日本 천황은 “유감”을 표명한 바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크게 미흡하다. 그리고 1990년 5월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중 아키히토 日本 천황은 “痛惜의 念”을 표했다. 그리고 가이후 前총리가 “사과”의 표시를 했다.

재일교포의 법적지위문제는 노대통령의 訪日을 계기로 보다 촉진되어 그후 제15차 한일정기각료회의(1990.11.26~27)에서 매듭지어졌다. 합의사항은 ① 지문날인 적용배제 ② 강제퇴거사유 완화 ③ 재입국허가 기간연장(현행 1년에서 5년으로) 및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의무의 탄력적 운용 등이며, 그리고 1990년 4월 한·일외무장관회담시 타결된 재일교포 3세관련 합의사항을 일본에 살고 있는 1, 2세에게도 모두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제15차 한·일각료회의에서 매듭지은 재일교포 법적지위 문제의 합의사항은 ① 무역산업기술협력위원회 설치 ② 1991년 제3기 對韓 GSP(일반특혜관세) 계속부여 ③ 우리 鐵구조물 생산업체의 일본수출 보장 등에 불과했다.

노태우-가이후 한일정상회담에서는 기술 및 경제협력문제에 대한 일본측의 협력약속은 있었으나 실제 기술이전문제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약속한 사항은 ① 중소기업 자동화사업과 관련 5년간 1천명의 우리 기술자를 日本에서 연수시키는 것과 ② 국공립연구기관의 항공우주·해양·생명과학·신소재부문의 공동연구 ③ 한일 원자력협력 ④ 한·일 기초과학교육위원회 설립 ⑤ 신소재특성 평가센터 설립 ⑥ 근로자직업병 예방을 위한 기술협력을 약속하였으나, 제15차 한·일각료회의에서도 일본측은 약속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을 뿐 구체적 이행은 하지 않고 있다.

1991년 정초에 방한(9~10일)한 가이후 前총리는 노태우 대통

령과의 한·일정상회담에서 ① 북한·일본 수교교섭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정세 ② 亞·太지역에서의 협력증진문제 ③ 한국의 對日 무역역조시정 및 기술이전 등 쌍무현안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한·일 우호협력 3원칙에 합의했다. 이 3원칙은 ① 한·일 양국의 진정한 동반자관계 구축을 위한 교류협력과 상호 이해증진 ② 亞·太지역의 평화·번영·개방을 위한 공헌강화 ③ 汎세계적인 諸문제의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기여 등이다. 그리고 일본의 對北修交 5原則(① 對북한 교섭에서 한국과의 충분한 협의 ② 남북대화의 진전을 고려해 교섭을 진행하며 ③ 북한의 핵안전협정 체결 ④ 對북한 경협이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연결되지 않도록 하며 ⑤ 북한의 개방을 유도)을 재확인하였다. 가이후 前총리의 訪韓을 계기로 재일교포의 법적지위 문제에 있어 지문날인 문제는 매듭지어졌다.

한·일 무역역조현상은 극심하다. 1991년 한해의 무역적자만도 90억달러 가까이 이르렀다. 1965년 韓·日 국교정상화이후 27년간 누적된 對日赤字는 무려 6백 60억달러에 달한다.⁵⁷⁾ 우리나라는 일본의 연간 1백70억 달러의 시장이 되고 있으면서도 특히 첨단산업 기술에 있어서는 부메랑효과 등을 내세워 기술이전을 꺼리고 있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일본은 동북아에서의 平和와 安定을 위해 ‘정치적·외교적 공헌’을 할 것임을 거듭 천명해 왔다. 1990년 3월 6일에 가이후 前총리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6개국(남한·북한·미·소·중·일) 동북아협의회 제의(盧泰愚 大統領 1989. 10. 유엔총회연설)를 지지한다⁵⁸⁾고 언급했으며 同年 5월 盧泰愚 大統領의 訪日中에 이를 거듭 지지했다. 이것은 일본이 소련·미

57) 第一經濟新聞 社說, 1992.1.18.字

58) AFP통신, 1990.3.6.

국이 참가하는 동북아평화협의회에서 한반도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보려는 일련의 속셈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991년 11월 5일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신내각이 발족했다.⁵⁹⁾ 아시아에서의 盟主의 地立을 다지려 하는 일본에게 있어 아시아諸國과의 신뢰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했으므로 미야자와 총리가 취임 후의 첫 방문국으로 韓國을 선택한 것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1992년 1월 16, 17일 양일간 미야자와 총리는 정신대 희생자 및 태평양전쟁 유가족들의 시위가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訪韓, 노태우 대통령과 두차례 정상회담을 가졌었다. 미야자와 총리는 정신대 문제에는 깊이 사과하였으나 정신대 관련 보상 및 무역역조 시정, 기술이전 문제에는 여전히 소극적이었다.⁶⁰⁾

(4) 日本・北韓關係

미·중관계가 화해의 길목에 들어서고 남북간의 접촉이 시작되자 일본은 이러한 기류에 편승하여 1971년 구노쥬지外 234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日・朝우호촉진의원연맹을 결성하였으며, 1972년 1월 23일에는 13명의 의원이 평양을 방문한 바 있다.

그후 1984년에 들어와서 중단되었던 남북대화가 12년만에 재개되고 國際和解氣流가 증대되자 일본은 남북한 등거리외교를 점차 적극화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1984년 10월 15일에 그간 연기되어 왔었던 「日・朝 민간어업협정」을 체결하였다.

일본정부는 북한당국과의 공식적인 대화나 접촉은 하지 않았으나 민간인들을 비롯한 정치인, 경제인들이 개인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 묵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와 함께 1985년 4월에는 작가 등 300명의 일본 민간인들이 대거 평양을 방문한 바

59) 통일원, 북한 및 주변정세 동향일지, 1991.12, p.350.

60) 조선일보, 1992.1.16.字

있다.

한편 1985년에 일본을 방문한 북한측 인사들을 보면 1985년 2월 9일~16일 김세진 북한체육지도위원회 사무총장外 5명, 1985년 2~3월 윤성찬 영화총무국장外 30명, 1985년 3월 사로청 중앙위 부위원장 등 5명, 1985년 4월 김기남 노동신문주필 등 3명, 1985년 6월 5일~10일 金佑鍾 日·朝우호친선협회장 등이다.

그리고 1986년 10월 1일 「日·朝우호촉진의원연맹」은 상호 무역대표부 설치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아직까지 그 결정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 1986년~1988년 기간은 북한 민홍구 하사의 일본망명과 그를 납치했다는 문책으로 일본 후지산마루(富士山丸)선원을 북한이 억류시킨 문제와, 1987년 11월 안다만해협 상공에서의 KAL기 폭파만행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치적 제재 등으로 양국 관계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1988년 9월 사회당간사장 야마구치 츠르오(山口鶴男)의 訪北, 1989년 1월 북한 노동당 국제사업부 부부장 김양건外 3인의 訪日(사회당 당대회에의 초청), 1989년 3월 다나베마코토(團邊誠)의 訪北 등은 일·북한 관계를 진일보시켰으며 특히 1989년 3월 다케시타 前수상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호칭했고, 우노소스케(宇野宗佑)는 “일본은 이제 북한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택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낸 바 있다.

1990년에 들어와서 동서냉전체제가 붕괴되어 가고 한소수교, 한중무역대표부설치 등 우리의 적극적인 北方政策이 가시화됨에 따라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개선 의사를 표명하기 시작했다. 일본 외무성은 앞으로 북한외교관과의 접촉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1990.2.10).

또한 6월 4일에 나카야마 前외상은 참의원 예산질의 답변에서 對북한수교 용의를 표명했다. 드디어 6월 15일 가이후 前총리는 중의원 외무위 답변에서 북한정부의 존재를 공식 인정한다고 표명

했다.⁶¹⁾

이를 뒷받침하거나 하듯 나카야마 前외상은 6월 20일 한국 기자와의 회견에서 일본이 對北 관계개선을 위해 적극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그리고 7월 14일에는 가이후 前총리가 美 CNN과의 회견에서 “남북대결종식에 일본이 기여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이러한 일련의 계획된 시나리오에 따라 드디어 同年 9월 25일~28일 가네마루신(金丸信)을 단장으로 한 日本의 自民·社會黨과 北韓의 勞動黨과의 3黨會談에서 9월 28일 김일성은 돌연 수교를 제의함에 따라 조기수교 원칙에 합의하고 이를 위한 교섭을 同年 11월중에 개시하도록 합의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日帝 36년, 戰後 45년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당의 입장에서 약속함으로써 일본내는 물론 한·일간에 논란의 여지를 발생시켰다. 즉 9월 28일 북한 勞動黨, 일본 自民黨, 社會黨 3당은 회담을 통해서 과거에 대한 사죄 보상문제, 재일조선인 차별철폐문제, 아시아에서의 핵위협 철폐문제, 3당의 상호협조 등 8개항의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노동당 창건 45돌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10월 9일에는 도이 다카코 日本 사회당 위원장이 평양을 방문, 김일성과의 회담에서 김일성은 南北對話의 조건으로 팀스피리트훈련의 중지를 요구했다. 10월 10일 김일성은 평양을 방문한 오자와 자민당 간사장에게도 朝·日간의 조속한 國交正常化를 위한 노력을 요청했다. 그리고 3당간의 8개항 공동선언에 따라 북한측은 1983년 10월 간첩혐의로 억류한 日 후지산마루 선장 및 기관장을 석방했다.

일·북한 접촉 및 수교에 있어 우리는 일본에 누차 한국과의 事前協議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최호중 외무장관은 1990년 10월 6일 조선일보와의 회견에서 일본은 對북한수교에 앞서 북한에 대한

61) 국토통일원, 앞의 책, 1990, p.268.

핵안전협정체결을 요구해야 하며, 원조 배상금을 북한이 軍備에 사용하게 해서는 안되고, 배상시기와 關連 戰後 45년 제외 등 5개항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요구했다.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도 日 넛케이신문사 초청강연(1990.10.30)에서 일본의 배상금이 북한의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일에 사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1년 9월 17일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이 이루어지자, 일본매스컴은 북한승인 문제를 보도하기 시작했다. 북한이 核査察 수용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日·北韓 關係개선은 韓·中修交보다 먼저 이루어질 전망이 커졌다.

4. 周邊情勢의 急變과 統一環境

세계사의 흐름은 동서냉전체제의 완화와 더불어 ‘共存共榮’ 그리고 이를 위한 ‘開放化’, ‘自由化’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사적 흐름속에서 공산권이 전반적으로 개방과 민주개혁을 이루고 있으며 1당공산독재체제가 붕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이념 자체도 결정적인 쇠퇴기를 맞고 있다.

북한이 아무리 主體思想으로 무장하고 閉鎖體制를 견지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 거대한 물결을 거역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공산권의 급변, 그리고 우리의 적극적인 北方政策으로 이루어진 한·소수교와 한·중 접근강화는 결국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켜 남북대화에 있어서나 우리의 평화통일 환경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된다.

본론에서도 언급했지마는 이제 東西冷戰體制의 종식기류는 유럽에서 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태동하고 있는바, 이러한 氣流의 축은 「韓·蘇 모스크바선언」에서부터 점차 이루어

지는 징후가 보였다.

이것은, 우리가 美·日을 비롯한 우방국의 협조를 바탕으로 亞·太 평화협약체제 속에 북한을 끌어 들여 북한의 위협을 줄이고, 亞·太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어 평화정착의 객관적 환경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모스크바宣言 이후 고르바초프 前대통령은 1990년 12월 30일 亞·太 지역분쟁을 해결하고 안정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미국과 호주 등이 참여하는 亞·太 지역 정상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한 바 있다. 노태우 대통령의 東北亞 6個國 平和協議會議 제의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국제적으로 보장케 하는 제도적 조치가 되며 나아가서 북한당국의 對南冒險과 혁명적 統一戰線을 포기케 하는 제도적 조치로서 중요한 것이다.

염려되는 바는 국제적 여건변화에 대응함에 있어 북한 共產主義體制와 우리의 自由民主主義體制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共產主義 北韓은 그 체제가 갖는 속성, 즉, 硬直性, 教條性, 革命性, 閉鎖性으로 인해 국제정세 대응에 있어 창의와 신축성이 결여되어 있다. 반면에 自由民主主義體制인 南韓은 自律性, 開放性, 創意性 등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국제정세변화에 現實主義에 입각, 능동적으로 신축성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東·西關係는 사상과 제도를 떠나서 國家利益優先主義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정세변화의 대응에도 現實主義 입장에서 대처해 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地球上에서 오직 北韓體制만이 그 경직된 속성으로 인해 國際情勢에 대한 認識과 洞察力이 결여되어 있다.

南北韓은 이 認識과 接近法에서 결판이 났다. 한반도가 武力統一이 아닌 平和統一을 지향한다면 한반도 통일은 다음 몇가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첫째, 韓半島에서 戰爭이 抑止되어야 한다.

둘째, 緊張緩和를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셋째, 이러한 환경이 구축되면 남북한은 現實에 바탕을 둔 立場에서 남북한의 相互認定 및 和解協力體制를 확립해야 한다.

네째, 自由民主主義體制가 국제적 타당성과 현실성을 지닌 理念으로 확고해지는 상황에서 볼때 통일은 自由民主主義的인 ‘多樣性을 前提로 한 하나로의 調和’라는 形態로서 이룩되어야 한다.

주변국이 한반도에서 그들의 國家利益上 공통적으로 바라는 環境條件은 한반도의 平和統一 지향의 단계적 여건과 현실적으로 脈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統一環境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展開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와 긴장완화 여건조성 그리고 和解協力體制의 확립을 위해서는 ① 남북당사자간의 직접대화 ②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 ③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④ 주변국의 교차접촉, 교차수교, 교차승인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위에서 ①, ③은 이루어졌으며, ②도 상당부분 추진되고 있고, ④도 조만간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평화통일 환경조성은 우리의 평화통일정책 전개과정과 脈을 같이 하고 있으나, 북한은 아직 이 현실성과 합리성 그리고 順理를 거역하고 있다.

1990년대는 동북아 軍事情勢의 調節期(주한미군 철수문제, 남북군축문제, 한반도 非핵화문제 등)가 될 것이다.

미국과는 평화통일 환경조성을 위한 우리의 북방정책 수행과정에서 다소 갈등이 있었으나,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미국이 계속 노력해 줄 것이 기대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심각한 재정난 때문에 軍備縮小를 해야 하므로 북한의 한반도에서의 전쟁모험을 적극 저지해야 할 입장이다.

중국은 북한을 의식, 명분상 교차승인을 거부해 왔으나 결국 交叉承認을 머지않아 인정할 것이다.

주변국중 일본이 韓半島統一에 소극적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일

본은 한·소관계의 급진전을 견제하고 북한을 원조하여 남북을 이간시키려는 속셈도 가지고 있다.

통일된 한반도의 번영이 이웃 일본에 위협을 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한반도가 분단된 상태하에서 남북한 등거리 외교로 계속 남북한을 견제하고, 한편으론 이익을 취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도 한반도가 共產化되는 경우 즉시 위협을 받기 때문에 전쟁이 재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때, 주요 주변국들은 한반도에서의 戰爭抑止와 緊張緩和에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주변국들의 이러한 점이 우리의 平和定着努力과 맞아 떨어짐으로써 한반도의 평화통일환경은 매우 유리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美·蘇 냉전구조의 붕괴, 이데올로기의 퇴색, 공산권의 변혁, 한·소 및 한·중접근의 강화 등은 북한이 자체의 심각한 경제적 곤경에서 탈피하기 위해 일본과 수교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게끔 하고 있다. 이는 ‘하나의 조선’이란 명분을 고집해 온 북한이 스스로 논리의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북방정책추진은 일본과 미국의 對北관계개선(교차수교)을 가져오게 됨으로써, 결국 북한의 對南 革命觀의 수정과 戰略·戰術 모두의 수정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주변정세의 변화로 북한이 우리의 유엔동시가입을 결국은 받아 들였듯이 現實認定의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 수 없으며, 김일성도 武力統一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고르바초프 前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에게 “독일통일이 현실로 나타났듯이 한반도 통일도 결코 환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반적인 주변정세는 우리에게 분명히 유리하게 전개되어가고 있다.

이와 같이 유리한 입장에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國民和合을 이룩하는 일이다. 우리 내부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면 오늘날 전개되고 있는 주변정세의 好機를 놓치고 만다. 부끄러

운 과거를 후손들에게 넘겨주지 않으려면 통일을 준비하는 民族共同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주변정세의 급변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우리 국민의 自主·民主力量을 가일층 배양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民主統一論

—統一問題— (통연 92-2-7)

1992年 2月 15日 印刷

1992年 2月 20日 發行

發行處 統一研修院

서울特別市 道峰區 水躑2洞 山 73-13

電話 901-7123~4

印刷處：農園文化印刷(株)

